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4. 8.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2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8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8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9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9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9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4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82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83

5. 종합의견 ····· 85

6. 첨부자료 ····· 90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이숙연) 후보자 서면답변서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8.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4. 7. 5.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4. 7. 8.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7. 16.) 상정

제416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4. 7. 25.) 인사청문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4. 8. 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4. 7.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7. 8.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9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박범계, 허 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주진우 위원
-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위원

○ 같은 달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범계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허 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4. 7. 5. ~ 8. 5. (32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7. 5. ~ 7. 15. (11일 간)

- 제1차 위원회(2024. 7. 16.)

○ 인사청문회 실시

- 제4차 위원회(2024. 7. 25.)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6차 위원회(2024. 8. 5.)

다. 회의경과

○ 202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7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7월 25일 제4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5분)를 실시함.

○ 8월 5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4. 7. 16.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위원 -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4차	2024. 7. 25. 10:00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대법관 후보자(이숙연) 선서 및 모두발언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5분) ○ 대법관 후보자(이숙연) 마무리 발언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6차	2024. 8. 5. 10:00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218	671	284	263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8	5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	강원랜드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	1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	경찰청	60	35	25	-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제3항 - 형실효법 제6조
5	고려대학교	4	4	-	-	
6	고용노동부	13	13	-	-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	3	1	1	- 공수처법 제17조 - 정보공개법 제9조
8	공무원연금공단	9	4	2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9	관세청	27(33)	27	6	-	- 비소관 사항
10	관악구청	1	1	-	-	
11	교육부	40	22	3	15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2	국가인권위원회	5	5	-	-	
13	국가정보원	1	-	1	-	- 해당자료 부존재
14	국민건강보험공단	34	5	2	27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5	국민권익위원회	13	13	-	-	
16	국민연금공단	10	1	3	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7	국방부	7(4)	4	-	-	
18	국세청	97	97			
19	국토교통부	42(34)	-	8	2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20	근로복지공단	4	4	-	-	
21	금남고속	9(8)	8	-	-	
22	금융감독원	38(32)	1	28	3	- 금융실명법 제4조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3	금융위원회	5(7)	1	6	-	- 해당자료 부존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4	금융정보분석원	1(-)	-	-	-	
25	기획재정부	9	9	-	-	
26	농림축산식품부	4	-	1	3	- 해당자료 부존재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7	대법원	500 (501)	501	-	-	
28	대전광역시청	8	8	-	-	
29	대한변호사협회	1	1	-	-	
30	대한적십자사	6	5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1	도로교통공단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2	동행복권	7	7	-	-	
33	라피끄	13	6	3	4	- 해당자료 부존재 - 해당사항 없음
34	릴슨프라이빗에커티 주식회사	3	3	-	-	
35	법무부	56(58)	7	35	1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36	병무청	10(13)	12	-	1	- 국방부 소관사항 부분이첩
37	보건복지부	1	1	-	-	
38	부산광역시청	4	3	1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9	서울특별시청	11	-	2	9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0	서울특별시교육청	8	6	2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사항 없음
41	서초구청	1	1	-	-	
42	용산구청	1	1	-	-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43	외교부	7(5)	1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4	이화여자대학교	7	4	3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5	인사혁신처	3(2)	2	-	-	
46	제이앤프라이빗에커티 주식회사	3(1)	1	-	-	
47	제주반도체	4(6)	4	1	1	- 해당자료 부존재
48	제주특별자치도청	6	2	1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9	조달청	7	7	-	-	
50	주택도시보증공사	2	-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1	중소기업은행	1	1	-	-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13	2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3	특허청	4	-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4	포항공과대학교	4	-	4	-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5	하운드	9(11)	8	3	-	- 해당자료 부존재 - 해당사항 없음
56	한국거래소	4(5)	3	2	-	- 해당자료 부존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본시장법 제383조
57	한국고용정보원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8	한국과학기술원	1	1	-	-	
59	한국도로공사	2	2	-	-	
60	한국은행	12(17)	11	3	3	- 자료 부존재
61	한국장학재단	4	1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62	한국주택금융공사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63	한국토지주택공사	3	-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64	행정안전부	38	24	14	-	- 해당자료 부존재
합 계		**1,218**	**909**	**163**	**146**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601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7인)	박범계	허 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4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 <부록> 대법관 후보자(이숙연) 서면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7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4인)	허 영	김남근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2인)	곽규택	박준태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숙연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음.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음.

○ 저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에 임하였음.

○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었음.

○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였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임.

○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

원내 성희롱, 성차별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행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과 재판절차에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음.

○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 또한,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함.

○ 저는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음.

○ 동료 법관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식재산 전담부 근무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주요 지식재산 국제컨퍼런스의 기획, 추진을 맡아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조하였음.

○ 저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음.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됨.

○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저는 특허법원 근무 중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전산학부 학생들과 법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면 요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 이와 함께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음.

○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또한 사법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음.

○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음.

○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론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져야 함. 너무 사법이 정치화되다 보니 정치인 관련 재판에는 정치인들이 가서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압박이 있는데, 후보자는 소신있게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 지키며 용기있게 재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 각오되어 있음.
○ 해고소송까지 경험하며 법조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인지?	○ 그러함.
○ 후보자는 2010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적 있음. 영결식 장의위원 중 한 명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는 순간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 하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함.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후보자와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	○ 국장에서의 법적 보호 이익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음. 국장은 고인께서 전 대통령으로서 돌아가셨고, 추모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례위원이라 할지라도 장례식 방해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항소심에서 무죄판단이 나왔고, 이후 판결 보고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역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생각하라는 법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죄 선고함.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을 생각하며 많이 돌아봤고 아쉬운 판결임.
○ 유사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음. 카이스트 수료식에서 R&D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한 사람이 검찰 조사까지 받음.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함. 카이스트 대학생은 무혐의 결론이 나 불송치 되었음. 후보자가 판결했다면 어땠을지,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지 생각되는데?	○ 그 판결 이후 돌아보고 반성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 2022년 서울고법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에서 후보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음.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보유 행사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후보자가 있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후보자의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 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해 공동 작업을 했는지 증명할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후보자는 노동 전문재판부를 1년 넘게 근무했으면서도 내세울 만한 노동 사건은 전무한 것 같음.	
○ 당시 후보자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도 있음. 현대미포조선이 생산 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어 사내에 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 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 대법원 판결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가장들의 생계가 있음.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음.	○ 자동차 제조는 상당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중에 간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한 건임. 나머지 사건은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파견을 인정했음.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판단을 해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그것은 온정주의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판결은 대법원에 지금 계속 중이고, 다른 재판부 판결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음.
○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다른 결론이 나오면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람.	○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음.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건 대법원	○ 재판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내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판결문을 읽어 보았는지? 해당 사건이 상고기각 되었다고만 답변하였는데, 후보자가 항소심에서 8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고, 오늘 대법원에서 32명 중 27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음. 그중 3명은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 기간 동안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임. 동 사건은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음. 이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판결이었으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음. 대법원 판결문을 정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계기로 삼겠음.
○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되어 심사중에 있음.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가지고 사건을 대해주시기 바람.	○ 명심하겠음.
○ 후보자는 공학도 출신인데, 법원의 재판업무가 인간 사회의 모든 사회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과학분야, AI 분야에서 사법부 역량을 확장해 줄 것을 기대함.	
○ 여성 법관으로서 대법원을 구성하게 되면 양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2017년 12월 사법농단 관련, 법원에	○ 제가 글을 쓸 당시에는 뒷조사 파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후보자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적은 것이 있음.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대상 컴퓨터를 조사위원회에 임의 제출했다 하더라도 저장 정보까지 임의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장주의 예외로 보기 어려워 열어 봐서는 안 되다고 하고, 판사들의 뒷조사 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없고 사찰 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데 열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함.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있다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법원 조사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음. 그 이후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고 이제는 생각을 바꿈.
○ 그때 판사 사찰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고 떠들썩한 사실이었으므로 그 당시 몰랐다는 답변은 옹색함. 계속 적법절차를 얘기하는데 영장전담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절차적 위반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정당하게 규명해야 하는 조사를 방해하는 인상이 있어 드리는 말씀임.	○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음. 저는 사법농단에 전혀 관련이 없고, 조사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음. 저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쓴 글임. 나중에 사건의 실체를 알고 저도 부끄러웠음.
○ 포항공대를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 후 거리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대학을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한 적 있는지?	○ 학생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학생회 활동이나 여학생회 활동을 함.
○ 그것의 일환으로 가두시위에 참석한 것인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의 젠더관에 대한 의심이 듦. 후보자가 부회장인 젠더법학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임. 동성혼의 인정 문제 성전환 관련 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임.	
○ 후보자의 젠더법학회 발제문 중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성적지향은 다양하며, 모든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함. 결혼한 분의 성적지향이 양성애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 전통적 혼인질서와의 관계가 우려됨.	
○ 후보자의 젠더법학회 발제문 중 '에이즈는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함. 에이즈는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는 거짓임. 이런 식의 발언은 우려됨.	
○ 후보자의 젠더법학회 발제문 중 '성별정정은 성전환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 우리나라는 성별정정 허가에 대한 예규에서 성전환 관련 외과수술이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있음. 후보자는 젠더법학회에 발제문이 CHATGPT를 통해	○ 젠더법학회에서도 동성애와 성별정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 젠더법학회는 외부학회로 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음. CHATGPT에 대한 질문 중 성별정정과 관련해서는 제 스스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을 물어본 측면도 있음. 제가 CHATGPT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예시로 인용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이런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주시길 바람.	리기는 어려움.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음. 동성애 인정 등은 우리사회의 가족관, 전통, 국민인식 등을 종합하여 입법적 해결해야 함.
○ 젠더법학회 부회장,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음. 젠더는 무엇인지?	○ 젠더는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젠더법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젠더법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비판이 많음. 특히 성별 정정은 성전환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여 사퇴촉구 성명서까지 발표되었음.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 발제문의 주요 주제는 딥페이크였음. Chat GPT에 그러한 발언을 담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시를 보여준 것임.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연구한 바가 없어 발제를 할 자격이 없음. 또한, 발제 내용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참고자료에 잠깐 쓰인 것임.
○ 발제문 말미에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후보자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남성을 범죄화하는 등의 비판이 있는데, 후보자가 동의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 것이 맞는지?	○ 그런 것은 아님.
○ 발제문의 경위 및 원고화에 대한 설	○ 발제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성편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명을 부탁드림.	과 딥페이크와 관련한 내용이었음. 성편향에 대해서는 아마존의 여성체험 관련 인공지능이 여성에게 불이익 준 점과 관련해 남녀간 성편향 관련 내용이었음. 성별정정 및 성전환자 관련 언급은 없었음. 딥페이크 관련은 향후 해결방안 관련 내용이었음. 조배숙 의원님의 질의는 부록에 별지로 덧붙인 내용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음. 하나의 예시로든 내용임. 제가 CHATGPT의 결론을 예상하거나 유도한 것은 없음.
○ 후보자에 대해서는 젠더법학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인공지능의 차별 금지 원칙을 법규화한다는 문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임. 예시문을 만들 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주최 측에서 제공한 것인지?	○ 제가 한 것은 맞음. 다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예시한 측면은 있는 것 같음.
○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면서 이것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보고 이를 순화하도록 하였음. 기독교측에서 볼 때는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밖	○ 해당 내용이 모두 저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음. 회의에 참석하면서 예시로 가볍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많았다고 생각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장에 후보자의 생각이 담긴 것인지?	

2) 대법원의 구성·기능 및 사법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1)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두 분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질문했는데, 올해 초 있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수긍가능해야 하고 편향적일때는 임명보류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서 실제로 대법관 후보자 예정인 후보자의 제청이 좌절된 일이 있음. 이 사안에 대해 현직 판사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대통령실에 의해 침해되는, 이런 사법부 독립이, 삼권분립이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대법관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 바람.	○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 있으나,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삼권분립을 위해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행사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림.
○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나한테 맞는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럴 것인지?	○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평가받는 민주적 국가임. 그런데 법관의 임용방식과 관련하여 미	○ 선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헌법에 마련된 법관 임용의 규정들은 대법원장에 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 등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은 법관을 선출하거나 선출직이 임명하는 구조임. 미국 같으면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주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거하기도 함.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국민주권국가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의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우리 법원도 선진국들의 법관 임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해 임명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려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지?	○ 법관직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림. 말씀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법관 임용에 있어서도 고려할 것이 있다고 생각함.

(2-2) 사법정책·제도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지연 관련>	
○ 이번 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럿 나옴.	○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함.
○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관 증원, 재판부 확충도 필요할텐데 그 외에 근무평정 제도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생각한 것이 있는지?	○ 법관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상황이라 재임용을 통과할 경우 파격적 처우 개선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함.
○ 대법관이 되시면 연구를 계속 해서 사건이 지체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 명심하겠음.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후보자도 문제의식을 말한 적 있음. 민사 1심 합의부 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함.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재판지연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법관 수가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함. 법관 수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함. 법원 내부적으로 사무부담의 장기화, 적절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법관이 대우받는 법원으로 만들어 가야 함.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재판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양형 관련>	
○ 유족구조금에 대해 아는지?	○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취지랑 다르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됨. 통계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유족구조금을 언급한 1,2심 판결 분석해보면 총 57건 중 37건 약 70%가 유족구조금 지원을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임.	
○ 강원도 영월에서 여자친구 19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도 유족구조금을 가지고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감면해주는 것은, 강제징수하고 모범납세자로 표창하는 것과 같음.	
○ 양형기준표 상에 감경기준에 유족구조금이 들어있는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정리된 입장이 있는지?	○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가 중대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게 감경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재벌 총수에 대한 오락가락 양형에 대해 묻겠음. 기업인들의 경제 범죄에 대해 징역 5년 구형을 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는 이러한 재벌 맞춤형 양형 방식은 2009년 대법원 양형 규정이	○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행된 이후 조금씩 바뀌고는 있음. 그러나 재벌총수의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에 대한 국민 비판이 여전히 높은데 인정하는지?	
○ 재벌이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처벌 받아선 안 되겠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기업의 경영 공백 우려, 건강상태 좋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관대한 양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민적 비판 경청하고 사법부 인식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 있다고 보는데?	○ 맞는 말씀이고, 감형사유가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사유들로 감형을 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치적 이유로, 전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어느 중소기업인에게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고,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 지급이 되었음에도 최종 대법원 판결이 실형 6년을 받음. 전 정부하고 가깝다는 정치적 이유로 누구는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하면서 누구는 실형 6년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양형 차이가 크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이러한 오락가락 양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 구체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원이 힘 있는 자에게는 눈치를 보고 상대적 약자에게는 무거운 형을 때리는 것 아닌지? 대법관이 되어도 정치적 사건에서 제대로 기준 세울 수 있을지?	○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양형이 정해지고 적용되도록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살피겠음.
○ 결기가 필요하다고 보임.	○ 명심하겠고, 저는 형사부 있을 때 이렇게 집행유예 양형을 하지 않고 재벌 총수들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양형한 것으로 기억함.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도 있음. 이러한 헌법 가치에 맞는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양형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람.	○ 명심하겠음.
<수사 사법통제 관련>	
○ 후보자의 인사말 중 인상에 남은게 사법부가 국민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임. 미란다 판결 아는지? 체포 되기 전이나 수사 받기 전에 당사자가 충분히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지해서 위축되지 않고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편의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있음. 또 압수수색영장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적이 있음. 발부도 쉽게 많이 되고 대상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부하여 수사기관들이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음.	
○ 법원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제도가 문제 많다는 것 때문에 규칙 개정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음. 영장실질심사처럼 검찰이 대면해서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다던가, 영장을 발부할 때 검색어 등을 특정해서 범위를 최소화한다던가, 이해당사자가 압수수색 의견을 제시하면 조서에 기재한다던가 하는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며 법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용되지 않게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판례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필요성 인정함. 영장판사를 하며 느낀 것이 주거지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수사기관 의견을 듣고 싶을 때가 있었음. 대면심리나 서면심리, 사전에 심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법으로 해야 한다, 법원 차원에서 형사소송규칙이나 판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다가 법률안을 존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속영장 심문제도처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균형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음.
○ 사법부는 입법부가 입법할 동안 계속 기다릴 것인지?	○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음.
○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면 적극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먼저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있을 것 같음.
○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후보자의 포토라인 초상권 침해 판결에서, 신원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함.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20년간 검경 조사과정에서 자살자 전수조사 통계를 보면, 20년간 무려 241명이고, 연평균 12명이며, 매달 한 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수사기관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법원도 수사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제도나 규범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법무부 훈령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수사절차법이나 인권보	○ 그런 수사절차의 규범들이 마련되면 상당히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후보자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주인공인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 사실과 상관없는 사적 대화의 언론 보도에 따라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는지? 사망 직전 수차례에 걸쳐 마약 정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당시 수사 과정에서 1차, 2차는 공개소환을 받았고, 3차만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공개소환이 되었음. 당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수사를 과도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 배우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공개소환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정보가 나오면 되고 공개소환 장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까지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 후보자가 판결한 사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취재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등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 피의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인인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으나, 공인이 아닌 경우는 널리 알릴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까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공개소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 공개소환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을 할 때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됨. 야당 대표 등을 공개 소환하여 망신을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99%이상 자판기 식으로 발부되는 게 현실임. 사법통제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 그리고 법원에서 결국은 이 영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 압수수색 영장 관련 대면심리제, 대법원에서 추진하다가 스톱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전 심문, 사전 의견조회 등 여러 표현 가능하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심문 대상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심문 방법도 간이한 방법으로 같이 병행되면 압수수색 영장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발부율이 높다는 것은 놀랐음. 그 중 일부 기각도 있다는 점은 살피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 과도하게 발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겠음.
○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 여러 고민했지만, 압수수색이 되어서 목적을 달성한 정보들은 폐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리고 청문회 처음이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말씀드린거 같음. 돌반지도 마찬가지고, 배당금도 제가 좀 생각이 짧고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 사죄드림. 그리고 지적한 국고보조금 이야기는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음. 배당 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몰랐는데 부적절한 점 사죄드리고 공직자가 자기명의로 비상장주식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불찰이라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함.
○ 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처리 예규라는 것이 있음. 거기 보면 22년 1월 법정구속 관련해서 예규가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는데 아는지?	○ 알고 있음. 얼마만에 개정된지는 모름.
○ 후보자에게 법정 구속률을 요청드렸더니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법정 구속률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지?	○ 따로 관리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법정 구속 보며 제도적으로 이게 맞나 생각하게 됨. 정말 다 자백하고 그런데 실형선고하지 않으면 도망갈 거 같은 확실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1심 선고받으러 갈때는 마치 교도소 담장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심정으로 가는 사람이 덜컥 법정구속이 되어버리기도 함. 그동안 무죄를 다투던 사람은 항소심에서 정교하게 다퉈서 무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이 되면 더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김. 법정구속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이 맞는지?	○ 형사사건 재판하며 항상 고민하는 문제임. 특히 실형선고할 때 그러하며, 무죄추정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함. 어떤 경우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피고인들에게도 예측가능성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 있어야 할 것 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당장 주변 해할 우려라던지 범죄 저지를 우려라던지 강력범죄가 아닌 한 최종심에서 확정되고 구속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고, 도주의 우려나 보복이 아니라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음.
○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음. 어제 박영재 후보자가 조서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를 해봤으니 질의드리는 것임.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조서로 구속을 심판하는 것임. 강력범죄도 아니고 위해할 것도 아닌데, 증거도 다 확보되어 기소만 남은 것임.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 미리 구속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이른바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을 불러온다고 생각함.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확실히 유죄판결 확정되어 구속된다면 수사기관에 정치적 개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함. 자기가 수사과정에서 누군가 구속시켜 정치인에게 영향 미치게 하고 회사도 망하게 하는 것 아닌지?	○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했고, 법원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영장의 발부나 기각이냐의 일도양단이 아니라 조건을 제약해서 신병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구속영장이 우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 없어야 할 것임.
○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발의하겠다고 함. 압수수색영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청구하는 것인데 검찰개혁 TF에서 추진	○ 그런 취지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여 이상하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문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를 깔고 법안을 추진하는 모양새임. 영장 발부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심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요새는 계좌를 보거나 휴대폰을 볼 때 무조건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너무 많음. 수사 초기에 영장에 대해 사전심문을 하겠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기밀이 누출되거나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될 여지가 충분함. 그래서 후보자는 심문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다른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참여권을 안 주는 것이 맞겠다고 말함. 그런 취지가 맞는지?	
○ 후보자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영장 심문을 하는 것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구속영장은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를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적 사건 또는 대기업 사건에서 심문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왜 심문을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에 대해 끝없는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음. 영장심문제도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수사 현실에서 맞는 것인지 숙고 해주기를 바람.	
○ 영장전담판사를 몇 년 했는지?	○ 2년 함.
○ 민주당은 수치를 제시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마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판기 찍어내듯이 발부한다고 주장하고,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폄. 실제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판단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지?	○ 그렇지 않음.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일정 부분 제한해서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부 기각은 1% 정도이지만 일부 기각은 10%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판사들이 기록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 정도는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영장 발부에 대해 항상 엄정하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있음. 지금 영장전담판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형사사법체계 관련>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면 기각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경우도 해당함. 최근 논란이 되는게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시행령을 통해 넓혀놨음.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주니 혼선이 있는 것 같음.	○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판단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 법원에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루니 검찰은 수사범위를 넓혀 언론기관 수사, 위증죄 수사하는 등 넓히고 있음.	
○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말씀에 공감하고, 모법에 위임이 없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등가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 2016년 이후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
○ 최근 김만배, 신학림 사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배임횡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 명예훼손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내의 것인지 판단을 하고 발부한 것인지?	○ 판단했을 것으로 보임.
<법원조직·운영 관련>	
○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에서 처리	○ 대전임. 특허청의 위치와 관련이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할 해사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만 어디에 설치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함. 특허법원이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와 그 이유를 아는지?	
○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림. 부산은 세계 7위의 항만이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임. 부산항이 국내 처리 물량의 76.8%를 담당하고, 부산에는 이미 해사법원과 관련된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서 여건도 잘 조성되어 있음. 제21대국회에서도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 법안이 제출되었고, 제22대국회에도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만약 설치하게 되면 여건을 갖춘 부산에 설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	○ 잘 알겠음.
○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함. 미국은 전체 예산에서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59% 이고, 유럽은 더 큼. 프랑스는 2.31%, 스웨덴은 6% 수준임. 사법부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해야 함.	○ 그 말씀에 찬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예산이나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음. 노력하도록 하겠음.
○ 2022년 기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	○ 많이 노력하겠음. 많은 관심 바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부 예산은 2조원 수준임. 미국은 50조원, 프랑스는 16조원, 스웨덴은 8조원임, 다른나라와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대한민국 사법부 예산이 너무 적은데 법원에서 너무 노력 안하는 것 아닌지?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 예산이 적은 걸로 보여짐. 법원의 예산독립 부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사법행정을 담당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예산의 증액은 필요함. 다른 나라 국민이 법관 3명을 쓸 때 우리나라는 법관 1명을 쓰는 상황임. 사법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증액이 필요함.
○ 법관이 현장검증을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음. 2008년 만들어진 증거조사 출장여비 업무처리 지침에서 적은 비용만을 지급하는 등에 기인함. 당사자들의 경우 돈이 얼마 들어도 비용을 예납할테니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과거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고 통상 10여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함. 현재는 시간도 많이 들고 법관이 자비로 직원들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런 현상을 유념하여	○ 맞는 말씀임. 현장검증비가 줄어든 배경은 업무시간 중에 가기 때문에 급여와의 이중수령 문제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장검증에 다녀오면 야근을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현장검증에 갈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음. 예납도 당사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주셨으면 함.	
○ 법정에서 법관의 막말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됨.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법부의 권위,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람.	○ 유념하겠음.
<법관인사제도 관련>	
○ 올해까지는 판사 선발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7년 이상임. 법조경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법원 구조상 합의부 재판을 하려면 배석판사가 필요함. 5년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함.
○ 법조일원화에 따라 현재 법관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변함. 현재 대법관 정년이 몇 세인지?	○ 70세임.
○ 법조일원화는 너무 젊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했던 것임. 로스쿨을 졸업하고 10년 정도 지나 30세 중후반 정도에서 법관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였음. 단계적인 시행 과정인 7년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을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 개혁의 큰 틀에서 후퇴하는 조치로 생각함. 법관 충원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변호사로 바로 출발한 젊은 변호사에게도 10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적극적	○ 사법행정을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민사에서도 배심제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법조일원화에는 대륙법제를 영미법제로 전환하는 개념도 포함한 것임. 법원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맞음. 법원 구성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로 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임명 풀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함.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법원이 어떤 준비를 해온 게 있는지?	
○ 우수법관 수급을 위해 승진기회 확대 등 핵심인재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의하는지?	○ 동의함.
○ 구체적으로 인사제도 개선 TF 등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 제가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름. 추측컨대, 법원장제도, 고등법원 판사제도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임.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 함. 우수법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연구가 되어야 함.
○ 10대 로펌 등에서 법관으로 임용이 많이 되는데,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음. 이분들이 법원으로 가면 보수는 적지만 일은 편해서 쉬러 간다는 생각할 정도로 법원이 도피처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직무성과급 추가, 단기연수 기회 증가, 복잡한 사건 처리한 법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함.	○ 법관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데,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 내부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 재판업무 AI 활용 필요성 관련, 심의관으로도 근무하셨고 시스템도 구축	○ AI를 통해 사건을 분석 대조해서 쌍방 다투는 쟁점을 분석해서 법관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았다고 들음. AI 활용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에게 제시하면 법관들이 사건을 대할 때 마치 약도를 가지고 낯선 장소를 가는 것처럼 매우 도움받을 것이라 생각함. 다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요약해주는 등으로 판결문 작성을 보조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차세대 전자소송에서 유사 판결문 추출 기능을 구현 중이라 알고 있고, 내년에 오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예정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음. 올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 착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 그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람.
○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부분 전자소송이 도입됨. 우리나라 전자소송은 세계 최고 수준이 맞는지?	○ 맞음.
○ 전산 마비되는 사태 발생해서 재판에 차질이 온 적도 있음. 보안 문제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 맞는 말씀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보안을 위해서는 여러 장비라던지 물적, 인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부족했던 것 같음. 전자소송 기록에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기에 보안 강화를 위해 예산이 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관심을 부탁드림.
○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기재부와 논의한 적 있는지?	○ 업무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나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리걸테크 사업이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런 갈등이 오래 지속되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어떠한지?	○ 미국은 리걸줌 같은 업체가 변호사 단체와 오랜 협의 끝에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리걸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고,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만 부진한 경우 리걸테크 산업 주도권 및 AI 주권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함.
○ 후보자도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게 국회와 대법원 및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유념하겠음.
○ 공학도로서 AI에 대해 법원에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이미 재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음. 프린스턴대학의 AI전문가를 최고책임자로 임명함. 일부 주에서는 AI보조판사라 해서 초벌 판결을 제안해주고 있음. 호주나 네덜란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AI가 분할해서 계산도 해줌. 사	○ 판결문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리걸테크업체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 제도라던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공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비실명화임. 어디까지 비실명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법부에 AI 도입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효용성이 인식되는데,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요한 것은 AI가 학습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많아야 함. 풍부한 판결문을 입력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적음. 판결문 공개에 제한이 많음. 아직 AI를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아서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함. 법원에서 어느 정도 비실명화를 하게 되면 공개로 인해 혹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입법적 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무처리나 복잡한 사건의 쟁점 정리, 유사 판결의 추출 등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런데, Chat GPT는 오염된 학습에 의한 오염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AI를 심리 방향이나 쟁점 정리처럼 사법작용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AI가 가지고 있는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AI는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보조원 정도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I 개발함에 있어서도 정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특허법원 관련> ○ 후보자는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활동을 했고, 특허법원도 근무함. 특허법원의 본안사건 수가 최근 3년간 계속	○ 특허법원 있을 때 많이 고민함. 미국 법원으로 가는 이유 중 2가지 큰 부분은 디스커버리 제도의 유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줄어들고 있음. 반면 언론보도를 통해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특허분쟁도 미국법원에서 판단 하기도 함.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정도로 큰 규모의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처음 특허법원이 도입됐을 때는 사건도 늘고 전문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해결도 빨리 안 되고 시간도 지연되고, 형사법원과 같이 가며 서로 미룬다거나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늦어지며 나오는 현상 아닌가 우려됨. 방지대책이 있는지?	증거확보를 잘 하기에 유리한 미국 법원으로 간다는 것임. 두 번째는 손해배상 액수가 비교가 안 되게 미국이 큼. 그것은 아마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임. 그렇지만 시장은 작지만 특허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논의하기도 했음.
○ 아시아권 국가들의 쟁송을 우리나라 특허법원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지?	○ 아직 없고 중재센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자는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전문성 있는 법원 만들 때는 명분을 해외사건도 유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 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음. 속도의 문제와 비용대비 실효성의 문제 같은데 전문법원 전체와 관련해서 고민 바람.	○ 명심하겠음.
○ 과거에는 특허권 피해자의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손해 범위를 산정했다면, 최근 특허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생산능력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	○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개정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매출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하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이 조항이 일선 법원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림.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은지?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 입법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
○ 한·중·일은 전 세계 특허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음. 유럽에는 특허통합법원을 만들었음. 한·중·일이 특허와 관련하여 협력이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는지?	○ 필요하다고 느낌. 한·중·일뿐 아니라 아시아 지식재산연합법원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도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단계로는 중재센터를 만들어서 중재 합의한 사건을 처리하고, 2단계는 특허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며, 3단계는 통합 법원의 형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전 중재센터가 산자부 소속이다가 법무부로 가져감. 그런데 오히려 당초 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되지 않음. 후보자는 법원이 관여하는 중재센터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행정부가 하는 중재센터를 생각하는지?	○ 법원이 관여하는 중재센터를 생각했음.
<기타 사항> ○ 후보자는 국민들이 기술탈취 및 침해사건 등 관련 재판의 진행방식에 불신 있는 것 아는지?	
○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건에서 손해를 입증하는게 힘들고, 대기업에 증거자료가 편재되어 있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내놓게 하는 것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필요함.	
○ 기술탈취 피해 업체 중 43%는 입증 곤란으로 소송제기를 포기함. 후보자는 기술관련 분쟁을 많이 다뤘으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지?	○ 그러함.
○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 피해 막기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데, 대기업들이 영업비밀 주장하며 증거자료 내놓지 않으면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비자 단체들의 승소가 어려운 상황임.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 특허법원 근무시 침해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 연구한 바 있음. 직무발명 보상 사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실적들을 가지고 매출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음.
○ 그런 경우 많았고 효과가 있었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증거를 냈는지?	○ 많지 않았고, 증거자료도 끝까지 내지 않았음. 많은 한계가 있었음.
○ 법원이 대기업 등의 증거 미제출 관련 문제 해결하기 위한 판례 법리 및 법원행정처의 심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적극적으로 공감함. 실무상 수단으로 문서 및 증거 미제출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외국의 경우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판사들이 먼저 본 후 열람 지시등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음. 지금도 인카메라 심리제도 통해 노력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시도 해볼 생각 안 해봤는지?	○ 인카메라 제도를 실행해 본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은 함.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증거수집에 어려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 국회도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한 바 있고, 독일식 전문기술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도 있었음. 하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만, 사건을 다루는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심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함. 사법행정차원에서 이런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함.	
○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기술적 분쟁해결을 위해 사법행정적 또는 판례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 실무에서 다양한 방안 논의중인데 저도 미약하나마 일조할 의지가 있음.
○ 고의적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는데, 어느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지?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도입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이 잘 인정하는지? 왜 인정이 안 되는지?	○ 잘 인정이 안 됨. 자료가 제출이 안 되서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액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재량손해로 인정한 바가 많음. 재량손해에 2~3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
○ 인정된 배상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납품액 부당감액한 건에서 1.6배를 인정한 바 있는데, 후보자는 1.3배~1.6배가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부족하다고 봄.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기준을 만들거나,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례법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 판례를 만드는 부분은 적극 동의함. 법원행정처가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재판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현재는 기준이 없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판례 및 법원행정처의 기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러움.
○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모아서 해당 판사들이 기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런 방법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봄.
○ 22년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를 아실 텐데, 국회에서 자료제출 명령제도나 영업비밀유지제도를 도입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임. 대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제조물책임법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공감함. 디스커버리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받고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인터넷에 음주운전,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피하는 방법, 경찰조사 회피 방법 등 관련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런 행태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해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 법원도 범죄예방활동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이런 행태를 인지해 향후 재판에서 신경 써주시길 바람.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가진 행태에 대한 엄격한 처리가 필요함. 제주간첩단의 재판과정에서 기피신청, 관할이전신청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는 매우 부적절함. 이런 사건을 참고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재판지연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부로서는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통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대응이 쉽지만은 않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지난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중 노동분야 판결이 많았음. 노동분야 판례가 너무 자주 변경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재계의 우려 등이 있음.	
○ 최근 대법원장은 파견근로자 문제를 판례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입법을 호소한 바 있음. 법원이 판례를 통해 소수자를 보호한 측면이 있지만, 입법의 불비를 판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이 되시면 신중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함.	○ 오전에 말씀하신 파견 사건을 확인했는데, 저희 재판부에서 선고한 판결 중 일부는 파기환송, 일부는 상고 기각된 바 있음.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간접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함. 상고기각된 부분은 그것으로 확정됨. 오늘 파견 판결이 하나 파기환송된 것이 있는데 원심에서 파견인정한 것을 상고심에서 파견을 부정한 것임. 파견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와 도급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움. 판단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법원에 사건도 굉장히 많음. 입법적으로 파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노동현장과 법원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 출소되면서 각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 결국 정부에서 속칭 제시카법을 추진하고 있었고 폐기되었음. 제22대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일정한 조건에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동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도 있기에 그 법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방위 차원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유명한 쯔양 사태가 있었음. 사이버 렉카 연합이 공갈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임. 녹취를 보니 고소당해 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만원 나오고 끝나겠지만, 범죄 수익이 크니 벌금 얼마만 내면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범죄 저지르는 게 이득이라는 발언이었음. 대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계를 보니 기소된 사람의 82.5%가 벌금형에 그침. 처벌이 약하니 사이버 렉카라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	○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기의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이나 다른 피해자들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올리고 협박하여 수익 얻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타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에 그로 인한 이익 회수 방안이 효과적 방법일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고려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만 집중하고 죄의식 없이 영상을 올림. 여기에 대해 후보자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안으로 가짜뉴스 통해 얻은 수익 강제회수하고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부분 있다고 생각함.
○ 여수시장을 거쳐 경험한 일인데, 시민들로부터 선출되어 행정행위 하면서 행정과 관련돼서 불법한 것이 없다면 정상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서, 시민 전체에 세금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공공재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행정과 관련되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시에다가 기부해라, 지역사회에 기부하라고 권유함. 이게 사회공헌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시장이고 시민들도 좋아함.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대법원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정당한 인허가라도 대가성 있게 요구해서 받으면 개인에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음. 제3자 뇌물 교부 관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 많이 고민한 기억이 있음.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 이해할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8년까지 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 대법 판결 나왔는데, 판결 나오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한 단체장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함. 판결 전에 제3자 뇌물 수수하게 한 사람들이 공공단체나 지자체가 공익성이 있다면 가벌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렇게 볼 여지도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재명 당 대표가 2015년에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하게 한 것을 기소해서 재판하고 있음. 그 당시에는 설사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 것임. 그래서 법원에서 유념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유념하겠음.

(2-3) 수사·재판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공개 소환 및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 유사 전례 들어본 적 있는지?	○ 들어본 적 없음.
○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반면, 제1야당 대표 배우자는 선거 후 2년이 지나 기소했음. 이런 형평의 어긋나는 사례 들어본 적 있는지? 너무 차별 아닌지?	○ 구체적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여러 재판을 받을 때 병합심리하여 한곳에서 동시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 원칙적으로는 병합심리 해야 함.
○ 대법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표의 병합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 대법원의 구체적 결정에 대해 제가 당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대해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 및 각 사건의 진행단계의 차이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앎.

(2-4)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법관이 본인 집무실에서 알고 지낸 사업가를 8번 만났고 이후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음.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자신의 며느리가 속한 기업 법무팀을 공관으로 불러 식사를 한 사례도 있었음. 이런 사례들은 적절하지 않음. 법원의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의 행동이 국민의 관심사항이며, 논란이 생길 경우 사법 신뢰가 깨지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람.	○ 알겠음.
○ 사법농단 사건, 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판사들이 각종 인맥 네트워크에 묶여 고위 법관 출신이 있는 대형 로펌이 인맥을 이용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오해일 수도 있고 관행으로 자리 잡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재판 이후 상급법원 법관들이 하급법원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인된 바도 있음. 알고 있는지?	○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음.
○ 부적절하게 재판 관여 요청 한 것도 있었음. 임성근 판사 사건에서 중간	○ 무죄 판단을 받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 판단 요청한 것은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된 바 있음. 결론 어떻게 됐는지 아는지?	
○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취지인데,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갑질일 수 있으니 재판 관여 같은 위법한 행위 했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해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이 있음. 어떻게 보면 상식과 법리 간에 괴리가 있는 것임.	○ 재판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오해만 받아도 안 될 심각한 행위라 생각함. 다만 이 사건 일부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드리기 어려움. 저는 이렇게도 파악해 봤음. 이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판사 각각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함. 말씀대로 권한이 없는데 없는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음.
○ 판사가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매도하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사례 있음.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 이용호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는 공격적 발언을 한 게 있음.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인 일부 판사	○ 판결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겠으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방법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겠지만 사법부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는 식으로 해당 판사에 대해 발언을 서슴지 않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6개월 실형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판사들이 정치성향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글까지 들고 나와서 판사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함.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하기도 했고, 법원에서 정치판사라는 문구 대형 현수막에 대해 고발하기도 함. 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정치권 공격들이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법부 독립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소신을 말씀바람.	

3)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 민주당 주도로 두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무위에 그침. 최근 판사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 있었음.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몇 건 발의되어 있음. 법관은 아직 없으나 발언들이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는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탄핵의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탄핵을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함. 탄핵에 관한 권한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 다수결 만능주의, 횡포가 논란임.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참여 및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후보자 생각은?	○ 공감함.
○ 전원합의체에서도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나 토론과 숙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 모범 보여주시길 기대함.	○ 알겠음.
○ 후보자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절제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함.	
○ 탄핵발의는 국회의 권한임. 과거의 검사 및 판사 탄핵이 거의 없었다는 게 향후 이들을 탄핵소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지?	○ 그렇지는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의요구의 정당성 확인하는 여러 정치적, 학술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옴. 그런데 최근 대통령 헌법 권한 행사에 있어 재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삼권분립 정신에 기반하여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국회에는 재의결 권한이 있는 것임. 양 권한의 균형이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거부권 15차례 행사한 전례 들어본 적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없지 않은지?	○ 그런 것 같음.
○ 거부권에 대해서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법에서는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음. 삼권분립 정신을 구현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행사되어야 함.
○ 거부권에 대한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헌법학회의 통설임. 들어본 적 있는지?	○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내재적 한계로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학자들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면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음.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동의하는지?	○ 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음.
○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절제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함.	
○ 거부권은 국가안위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15번 행사한 게 적절한 것인지?	○ 정치적 사안이라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대기업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매뉴얼 확립, 노동 관련 법인을 통한 컨설팅 등 대비가 잘 되어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무과실책임이 강조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대비가 쉽지 않음. 대비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함. 행정지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되어야 법의 취지를 살리고 중소기업도 경영의 어려움 없이 법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수가 많으므로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예산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기업에 요구하는 안전관리 요구가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공감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및 자금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처벌의 기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대법원에서 살펴볼 때 예견 가능성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 유의해 판단하겠음.
○ 행정지도와 법률적 지원 중 어떤 게 선후가 되어야 할지?	○ 행정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적인 지원도 많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근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함. 헌법상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헌법 제36조를 보면 분명히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감. 우리 헌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판결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 이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해당 판결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고, 민법이나 가족법상 동성혼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임. 이 판결 이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제도에서 같은 요구가 쏟아질 것임.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 체계인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사법부가 사실상 개헌 및 입법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음.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왜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되지 않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위원님 말씀대로 동성혼 인정 여부는 입법부의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함.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규범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임. 동성커플의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인정 판단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 대법원 판결에서 후보자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답은 못하겠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동성애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사실은 제가 크리스천이라 신앙적 부분이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임. 혹시 사건화가 될 수 있어 구체적 입장이나 성향을 밝히기는 어려움.
○ 대법원에서 21년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며 성별정정허가 판단에 성전환 수술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고, 올해 초에는 참고사항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왔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여 여탕에 들어간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성전환수술 여부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상 적절한지?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시민단체의 선진적인 모습으로 앞서가는 것이 적절한지?	○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더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음. 젠더법연구회는 비교적 진보적 의제들을 다루는 연구회임.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OECD 국가 중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높음. 양성평등 부분이 아직 미진함.
○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남녀 간 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되는 방향에 있지만, 임금에 관해서는 양성평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하는 것인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처분적 법률이라고 들어봤는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데,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정 케이스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입법만능주의로 흐를 문제가 있음. 이번에 전국민 25만원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처분적 법률 문제임. 그래서 여러 점을 고려하면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은지, 힘든 자영업자에게 주는 게 좋은지는 차치하더라도 신중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진행 중 사안이라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처분적 법률은 행정권 침해할 여지가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람.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해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어 혹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서 나온 논란임. 후보자는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 너무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4) 후보자의 개인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법관 후보까지 오신 분들은 신상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나, 몇 가지 지적이 있음.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 있음.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임.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음. 다만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끼쳐 송구함.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음. 갈등도 있었음.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함. 아쉽게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심려끼쳐 드려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음. 계약할 무렵 큰 수술도 받음.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느라 그런 것 같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완납했다고 말씀주셨음. 보도를 보니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회에 기부할 계획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계획 있는지?	○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가진 주식을 어려운 분들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함. 그 전에도 기부를 해 왔음. 10여년 전부터 기부를 해왔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 기부를 했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 이번에 다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비판 받는 문제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의미있다고 생각함. 대법관이 되면 관리해 주시기 바람.	○ 명심하겠음.
○ 후보자에게는 청렴성 도덕성이 필수라고 보는데?	○ 전적으로 공감함.
○ 후보자의 20대 자녀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음. 주택 매입 과정에서 2억 6천만원의 전세금 제외한 3억 8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빌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의 전형적 방식임.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함. 후보자가 제출한 장녀의 보유주식 이력을 보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만 8세에 아버지 돈을 증여받아 원금 14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됨. 장녀가 직접 투자한 돈은 400만원에 불과함. 장녀가 대학원생이 맞는지?	○ 졸업하고 취업 준비중에 있음.
○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녀가 아버지의 돈을 종잣돈 삼아 주식, 주택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매입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떨 거라 보는지?	각함.
○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민생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실까 하는 것임.	○ 저도 법정에서 처음 시작은 해고자였음. 그래서 소수자나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그렇지만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후보자 가족이 2006년에 ㈜금남고속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사모펀드를 매각해서 시세차익 22억을 얻은 적 있는지?	○ 그런 것 같음.
○ 본인은 이것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매입했다는 것인지?	○ 그러함.
○ 후보자는 총 배당금을 7억 7천만원 정도 받음. 그런데 배당금이 한 주 금액과 거의 같음. 26,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배당금이 1년마다 21,472원, 없었던 해도 있지만, 그 다음에 73,000원도 주고, 계산해보니 배당금 단 2년만 받으니 원금이 다 빠짐. 이것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이런 투자라면 누구든지 투자하지 않을지? 2년만에 배당금으로 원금이 다 회수됨. 정확히 2,837만원 투자했는데 2년만에 2,833만원을 배	○ 그 부분은 사실 주식 사놓은 것은 투자이기도 함. 아무리 친척이지만 시숙의 경영 방어만을 위해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은행 이자 정도의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음. 18년 이후에는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당금으로 받음. 후보자가 이 때 매입했다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이해할텐데 후보자가 샀을 때는 2006년이고 10년 이상을 배당을 계속 받았음. 2년만에 원금이 다 빠짐.	
○ 이 회사가 원래 시숙 회사인지? 아니면 시아버지나 가족 회사인지?	○ 이 회사는 굉장히 다수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지분을 확보해야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임. 시숙이 대표가 된 것은 2013~4년 정도임.
○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샀다는 것도 그러면 말이 안 맞음.	○ 말이 잘못 전달되었는데 방어보다는 확보를 위한 것이 정확한 것 같음.
○ 10년 이상인데, 경영권 확보 시간이 10년인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음.	○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와 경영권 확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음.
○ 장녀가 8세때 주식을 샀음. 장남은 그것보다 더 어릴 것임. 장남은 도대체 5살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탄하는 그 황제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렇게 어릴 때 10세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 받고 13배 차익을 누림. 더 문제는 ㈜금남고속이라는 회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임. 사실은 국가의 회사로 봐도 될 정도임. 06년부터 16년간 이 회사에 나간 보조금이 1,374억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 06년, 07년 매수할때는 차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함. 시숙께서 코로나 겪으며 여러 어려움 처해서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같이 일괄 매각해서 차익을 얻은 것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 3억원, 올해 3억원을 기부했음. 자녀에 대해서는 요즘은 돌반지 대신 주식을 사줌.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임. 그 것을 편법증여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회사에서 단 2년만에 배당으로 투자 수익을 뽑고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들은 재산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음.
○ 지적하는 지점은 그게 아님.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빼서 투자한 것과 같음. 국민들도 2년만에 원금을 뺄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누구나 투자함. 후보자 자녀는 그런 특혜를 누린 것임. 후보자도 마찬가지임.	
○ 장녀가 성년이 된 나이인 2017년에 부친으로부터 화장품 비상장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5년 만에 처분하여 60배 가까이 이득을 취함. 시세차익에 의한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마련하고, 수증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부담함. 그 외에도 주식을 취득한 화장품회사에 단기 근무하고, 마련된 자금으로 갭투자도 함. 후보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모두 납부하고 위법성은 없었다고 했는데, 어제는 돌연 사과하고 사회 환원 의사를 표명함. 어떤 의견인지?	○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생각함. 위법성은 없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함. 매우 송구하고 사회 환원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함.
○ 대법관이 된 후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권영준 대법관도 로펌 관련 사건은 회피하겠다고 약속했는	○ 남편 비상장주식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백지신탁 등을 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 후보자도 그 정도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정리하겠음.
○ 남편이 변호사이니 로펌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당연한 말씀이고, 남편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적만 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휴업 신고도 하였음. 해당 로펌 관련 사건은 일절 맡지 않도록 하겠음.
○ ㈜금남고속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 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시숙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숙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	○ 경영권 확보와 투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음.
○ 당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주식을 판 사람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이었는지?	○ 그렇지 않음.
○ 통상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은 전문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회사가 중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음. 후자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	○ 맞음.
○ 거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매매 가격에 있어서 특혜를 본 것이 있는지?	○ 매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나, 회사에서 당시에 통용되는 가격으로 정해주지 않았나 생각함. 매매 가격에 있어 특혜를 본 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장주식은 배당 여부를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결정하므로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어렵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기도 함. 투자할 때 2년 사이에 얼마를 배당받을 것을 알고 투자했는지?	○ 전혀 몰랐음.
○ 버스회사의 경우 통행량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이익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버스 구간을 유지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음. ㈜금남고속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보고해 주기를 바람.	○ 알겠음.
○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기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30여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음.
○ 후보자의 기부 계획은 현재 비상장주식도 팔아서 따로 기부하겠다는 취지인지?	○ 주식 그 자체를 기부하겠다는 말임.
○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약 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앎.
○ 후보자 본인도 ㈜금남고속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을 매수할 때 시숙이나 배우자와 의논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까 답변에서 투자의 개념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배당 요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고 함. 어떤 의미인지?	○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이윤을 얻음.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투자했다는 의미임.
○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인데 왜 배당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다고 답변했는지? 답변을 이해하기 어려움. 보통 사달라고 하는 쪽에 배당을 얼마 준다고 약속하며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송구하고 배당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답변은 정정하겠음. 다만 시숙이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음.
○ 다른 의원의 질의에서, 요새 아이들 돌이나 백일에 금반지가 아니라 주식을 사주고, 이를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의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이 답변이 대법관 후보자를 청문하는 자리에서, 후보자 가족의 재산 관계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고,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해 이런 식견을 가지면, 가족 및 지인 관련 판결에서 동정심에 따를 수 있다고 의심되지 않을지?	○ 정말 죄송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함. 자녀들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잠시 평정심을 잃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작년 20~34세 청년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월 263만원 정도 됨. 장녀가 집을 취득했는데, 평균적인 청년이 24년 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지경임. 국민은 이런 시각으로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 부의 대물림이나 양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최종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함.	○ 유념하겠음.
○ 집을 취득할 때, 주식을 3억 8,500만원 팔아서 다시 갚았는데, 올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주식 가치를 6,000만원으로 신고함. 팔 때는 최고 시가로 팔고, 재산신고는 축소해서 신고하고 이런 과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인정함.
○ 집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배우자가 주도한 것이라 저는 전혀 몰랐음.
○ 해당 집에 지금 살고 있는지?	○ 임차인이 살고 있음.
○ 집 매입 과정을 보면, 재개발사업 절차상 아주 중요한 시점에 중도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짐. 정말 몰랐는지?	○ 배우자는 모르겠으나, 저나 장녀는 전혀 상황을 몰랐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로 보임. 확인해서 답변해주기를 바람.	○ 알겠음.
○ ㈜금남고속건은 후보자가 알고 있는 일이고, 딸의 라피끄 주식 증여문제는 잘 모르는 문제라고 답변했는데. 어디까지 후보자가 아는 것인지?	○ ㈜금남고속은 제가 구매해서 알고 있고, 다세대 주택은 구매 이후에 알게 되었고, 라피끄 주식도 양도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한 후에 알게 됨.
○ 일반 주식거래 시장에서 공개된 주식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금남고속건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고 배당을 통해 2년만에 원금을 회수한 건임.	
○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 기부가 완료된 금액과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53억 1,400만원임.	
○ 남편 사업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힘을 빌려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듦.	
○ 후보자 자녀가 보유한 ㈜금남고속 주식을 단지 부모가 사줬다는 게 문제가 아님. 금남고속 주식 취득은 비공개 정보 이용 또는 가족 찬스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지적함.	○ ㈜금남고속 주식 취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사기 어려운 점 생각했어야 함. 이 부분은 가족찬스라는 점 인정함. 주식 관련 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점 말씀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12월 12일 후보자가 금남고속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데, 매입단가가 26,000원임. 같은 해 배당금은 한 주당 73,000원임. 본인의 구매액보다 세배 이상을 배당금 수입으로 획득함.	○ 배당금액은 많다고 인정함.
○ 2015년 후보자의 주식구매는 내부정보 이용 또는 후보자의 시숙과 미리 얘기가 된 것으로 보임.	○ 미리 약속해서 산 것은 아님.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오전의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는데, 적자노선 보조임.
○ 손실이 있어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배당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어 보임.	○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노선 운행보조에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적자노선 비용을 지급한다고 봄. 배당액은 나머지 노선의 흑자로 배당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아님.
○ 기업의 적자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메꾸고, 흑자는 주주끼리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며, 혈세 낭비임.	
○ 회사의 존재가 이익은 본인이 가지고, 손실이 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메꾸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운용 방식이 아님. 잘못된 것임.	
○ 후보자가 받은 2015년 배당금액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됨.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이므로 일반국민들이	○ 그런 점 유념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후보자의 주식 관련 문제를 보면 자괴감과 의문점을 가질 것임.	
○ ㈜금남고속 주식 매매 관련 경영권 확보 및 방어라고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자녀와 후보자가 주식을 매매한 금액이 소액인 상황이고, 대주주인 시숙이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없어서 해당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듦.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 주식을 샀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경영권 확보와 투자를 위해서 산 것임.
○ ㈜금남고속의 주식 매매 관련 사건은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보임. 2006년 자녀들의 주식 매입 관련 사항을 후보자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2007년, 2008년에는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것임.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매입에 관여하고 그 명의를 후보자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보자, 자녀 등이 지속적으로 매입했다면 이 건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보임. 그 후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이국현 등 특정인으로부터 매입했는데, 어떻게 매입한 것인지?	○ 주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줬음.
○ ㈜금남고속 주식 매입 과정에서 누가 특정인과 연결을 해 준 것인지?	○ 시숙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주당 7만 3,000원씩 배당을 해준 게 이례적임. 후보자가 배당받기 전에는 2만 2천원, 1만 3천원 정도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배당이 없었음. 2015년에 배당받은 금액이 1억 7천만원, 가족 전체로 보면 3억 7천만원을 배당받음. 시숙 본인이 주식을 사서 배당받으면 되는데, 왜 후보자가 주식을 사게 하고 그 배당을 후보자가 받게 한 것인지? 즉, 주주 본인이 본인 재산을 늘리면 되는데, 동생의 처에게 사도록 소개를 하고 배당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왜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것인지?	○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음.
○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배당한 것이 공직자인 후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한 방법인 것이 아닌지?	○ 그건 아니었음. 시숙과 다른 돈거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음.
○ 후보자에게는 주식 취득 문제, 아빠 찬스 문제 등 가족이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명 전에 기부한 금액이 31억원, 기부 이행하기로 약정한 금액 22억원으로 총 53억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제주반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이	○ ㈜제주반도체는 제주도에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임. 회사에 공헌한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부를 한 것인지?	
○ ㈜금남고속과 같은 부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식 차액 문제 등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남고속 관련 후보자가 주식취득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음. 후보자가 주식 취득에 관여한 게 맞음? 주식 취득 후 사후에 통보받은 것은 아닌지?	○ 사실 자녀 주식이나, 저의 주식 취득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금남고속 주식 취득을 하면서 그 진행과정은 잘 몰랐다고 한다면, 배당금이 나오는 과정은 확인한 게 맞는지?	○ 확인은 했음.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모름.
○ 후보자 배우자는 제주 소재 기업에서 현재도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지?	○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음.
○ ㈜제주반도체의 전신인 ㈜이엠엘에스의 창업 멤버로 참여하여 변호사, 감사,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23년 상호 변경 이후에는 대표이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엠엘에스는 2006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고, 2	○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심에서 전원 집행유예가 되었음. 거기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 이사직까지 한 분이고 임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왜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 변호사이다 보니 기술파트가 아닌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그 분이 기술 분야를 담당함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
○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임.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판사 임용 이력까지 있었던 분이 이 사건 담당 변호를 맡아 전원 집행유예가 됨. 이게 적절한 것인지?	○ 1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스카우트된 직원은 전부 퇴사시켰으며, 해당 사업은 모두 접었음.
○ 그렇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인지?	○ 없어지지는 않음.
○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배우자 회사 대표와 안면이 있는지?	○ 있음.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는 회사는 경기도에 있었음. 제주도를 떠난 이후 회사가 제주도로 이전함.
○ 후보자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조언이나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고, 직접	○ 조언을 한 적 없음. 당시 배우자는 직원 스카웃이나 영업비밀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개입한 바 없음. 남편에게 정도를 걷는 사업가가 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담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라고 늘 조언하고 있음.
○ 가족의 재산형성과정이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불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가족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지?	○ 준법경영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논의를 하고 있음.
○ 신축 빌라 구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 남편의 전언에 의하면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함. 투기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향후 주의하도록 하겠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조합이 결성되거나 재개발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함.
○ ㈜제주반도체의 전신인 ㈜이엠엘에스의 기술유출 사건 관련하여 어느 단계에서 알게 된 것인지?	○ 1심, 2심 재판 단계에서 알았고, 남편이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했었음.
○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조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법관이 다른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함. 부적절한 처신을 한 바 없음.
○ 후보자가 제출한 기부내역에 따르면, 31억 가량을 기부해 왔고, 22억원 정도가 추가 기부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는데, 기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 10여년 전부터 기부를 해왔음. 그래서 소득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기부하는 삶을 살자고 해서 기부해 왔고, 그러다가 금남고속의 주식이 생각지 못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되며 거기서 발생한 차익이 있었음. 그 차익이 아마 작년이었는데, 많은 차익 혜택은 혼자 가족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라 생각해서 모교에 각 1억원씩, 그리고 후원해왔던 단체에 1억원 총 3억원 기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남편 2억원, 제가 1억원을 기부함. 남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금으로 1억 6천만원의 주식, 제주반도체에 올해 22억원 정도 기부함.
○ 사회고위층의 기부활동이 사회적 메시지가 되는 경우 있음. 기부 활성화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함. 37억원 주식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용처가 있는지?	○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어려운 이웃 특히 청년들의 자립이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아이들 어려운 노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고, 방법이나 기부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음.
○ 아빠찬스 관련, 후보자 자녀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14배, 64배 시세차익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사회지도층 법관의 부모찬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반성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후보자에게 의원실에서 요청한 많은 자료들이 제출 안 됨. 그리고 특히 상장,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증여한 주식이나 현금 규모, 증여세	○ 비상장주식 등록 관련하여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등에 대해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했음. 작년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가 왜 낙마했는지 아는지?	
○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 천만원 이상 상장,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때문에 낙마했음. 추후에 후보자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 신고 누락 부분이 나온다면, 그리고 후보자가 하는 해명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 앞에 그 책임을 질 것인지?	○ 책임지겠음.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등록한, 신고한 재산 중 상장, 비상장 주식, 증여세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기에 오늘 문제가 된 ㈜금남고속뿐만 아니라 여러 주식 관련한 후보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말씀드림.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였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니,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음.

○ 저는 이공계 출신이자 여성법관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법원 내에서는 소수자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워킹맘이기도 한데,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 보호의 사명을 다하기에 최적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고 엄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음.

○ 제가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애정,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공정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음.

○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제가 2012년에 첫 등원을 했는데, 9월 달에 네 분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음.

○ 이번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여야 위원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법리적인 측면 또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 지향, 비전에 관해서 충실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청문회는 처음으로 경험함.

○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함.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을 포함해서 양당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후보자께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점은 굉장한 강점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잘 대변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음.

○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5. 종합의견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① 임명동의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음.

첫째, 대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

셋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 등을 검증함.

넷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딸이 19세 때 아버지의 돈을 받아 산 화장품회사 비상장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주식투자로 번 돈을 다시 부동산에 갭투자해 7억7,00만원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해당 주택은 역세권 도시개발 재개발사업 대상주택이었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택구입시 자금은 부친에게 증여받은 3억 800만원과 대여받은 3억원이었고 이 중 대여금을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갚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로서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후보자의 가족이 인척이 운영한 운수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했다가 지난 해 매도해 후보자 본인 7억900만원, 배우자 13억4,000여만원, 딸과 아들 각각 4,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매입과 매각으로 인한 차익실현은 법관에게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수긍하기 힘들고, 특히 비상장주식으로 인한 배당금 수령액이 2년내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과다하며,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매입목적을 경영권 확보 지원과 투자목적이라고 밝혔으나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 매입목적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이 회사는 적자보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1,374억 지급받은 회사인 점,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

파견소송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해명이 부족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여성 법관으로서,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후보자가 후보자 딸의 수증, 비상장주식 매입,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전 기부하거나 기부약정한 금액이 53억1,400만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37억원으로 총 90억원 정도인 점과 가족과 관련하여 차후 본인이 맡을 재판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사건이 배당되면 회피하겠다고 밝힌 점,

후보자가 내린 노동관련 판결 중에는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인 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형식,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 수사권의 범위 적정성, 법관에 대한 탄핵발의의 문제점,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문제점, 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 법원장 추천제·법조 일원화·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수사절차의 입법필요성,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판결의 문제점, 리걸테크와 변호사단체의 갈등 해소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있게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여성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은 후보자가 현재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이숙연) 서면답변서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 범 계 (63년생, 대전 서구을) · 4선(19 · 20 · 21 · 22대)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제68대 법무부장관 · (전)서울 · 전주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837호 784-6960 6788-6456 F)6788-6460

2024. 7. 9.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 사		허 영(70년생,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21 · 22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수료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610호 784-1840 6788-7431 F)6788-7435
			김 기 표 (72년생, 경기 부천시을) ·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전)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 (현)민주연구원 이사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324호 784-4840 6788-6061 F)6788-6065
			김 남 근 (63년생, 서울 성북구을) · 초선 ·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회관 929호 784-2470 6788-6251 F)6788-6255
			박 희 승 (63년생,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 (전)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519호 784-5031 6788-6161 F)6788-6165
			백 혜 련 (67년생, 경기 수원시을) · 3선((20 · 21 · 22대)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졸업 ·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1004호 784-6130 6788-6566 F)6788-6570
			주 철 현 (59년생, 전남 여수시갑) · 재선(21 · 22대)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민선6기 여수시장 · (전)대검찰청 강력부장, 광주 · 창원 검사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관 536호 784-6341 6788-7311 F)6788-7315
국민의힘	간 사		유 상 범 (66년생,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전)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736호 784-4760 6788-6811 F)6788-6815
			곽 규 택 (71년생, 부산 서구동구) · 초선 · 서울대 사법학 학사, 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전)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28호 784-5970 6788-6711 F)6788-6715
			박 준 태 (81년생, 비례대표) · 초선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전)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 (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20호 784-6430 6788-6176 F)6788-6180
			조 배 숙 (56년생, 비례대표) · 5선(16 · 17 · 18 · 20 · 22대) · 서울대 법학 학사, 동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전)서울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전)수원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606호 784-5711 6788-6946 F)6788-6950
			주 진 우 (75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전)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전)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39호 784-9423 6788-7271 F)6788-7275
조국혁신당			박 은 정 (72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 (전)법무부 감찰담당관 · (현)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17호 784-3080 6788-6551 F)6788-6555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 · 박영재 · 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7.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대법관(노경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2.(월)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박영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4.(수)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5.(목)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경 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및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각각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정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 7. 16.(화)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024. 7. 22.(월) 10: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024. 7. 24.(수) 10:00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4차> 2024. 7. 25.(목) 10:00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5차> 2024. 7. 26.(금) 09: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경우 미개최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2.(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3]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4.(수)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4]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5.(목)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

2024. 7.

대법관 후보자 이 숙 연

- 목　　차 -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 ····· 3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4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5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7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8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9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2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13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4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5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17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18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9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0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1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22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3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6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27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28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0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1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3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4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5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6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7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39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0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2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3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44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45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47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48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49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50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51

40. 후보자의 모친이 은아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로 근무 중인지 여부 ····· 52

41.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동행복권이 2018년 복권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 53

42.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주반도체 대표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약 5천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6월에는 5억 5천만원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54

43.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뒤늦게 서류를 처리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55

44. 올해 2월 28일 다트 공시에서 제주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2% 감소했고, 매출액도 7% 감소하였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6월에 5억 5천만 원이라는 특별히 고액의 급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 56

45. 후보자의 자녀가 주식회사 라피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자금 마련 경위 ····· 57

46. 후보자의 자녀가 효창동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 및 취득자금 마련 경위 58

47.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건 또는 성과는

무엇인지 ····· 59

48. 후보자의 2019~2023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60

49. 후보자의 장녀의 2022~2023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61

《허영 위원 서면질의》 ····· 65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65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66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69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70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71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 72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77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79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80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83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85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87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88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89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90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 92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3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95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97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98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100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101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3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4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5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106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9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110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1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12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113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4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115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6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7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8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9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20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121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3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5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127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128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9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130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131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133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35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6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7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8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40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41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

지? ····· 143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45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147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148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49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51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52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153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154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55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157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158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대법원은 지난 '23.1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임. 이중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24년 상반기(1월~5월)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72.3%에 달해 사실상 3심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함 …… 159

66-1. 가사 사건의 경우 '24년 상반기 82.3%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일반 민사 사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59

66-2.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상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기능을 수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사제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61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일반적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깨고, 위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 위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조된 건은 아닌지, 작성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출처를 신뢰할수 있는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62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163

68-1. 필요하다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은 무엇인지? ····· 164

68-2.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64

68-3. 개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65

68-4.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기고 대신 징계나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67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168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169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171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 175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175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176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177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178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179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180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1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2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3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184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185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6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7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188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89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0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2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3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4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195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96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197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198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200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203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205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6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208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10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12

3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13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215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

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16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7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18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0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1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2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3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24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225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227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8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229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0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1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32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3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4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35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36

52. 50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237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238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9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1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43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44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5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46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47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48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250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1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252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254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55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260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261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3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65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66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7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69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70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71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273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75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76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78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79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1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282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283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5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286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87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288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89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2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94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5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96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

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297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98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9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00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302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03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04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06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7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08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09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310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311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2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13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314

109. 위 108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16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17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18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320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1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323

115.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325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326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327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329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 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331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33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

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334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335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36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37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38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39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340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341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42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3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4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5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6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347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8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349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350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352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 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353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355

141. 배우자의 다량의 주식으로 인해 차후 본인이 맡을 재판이 이해충돌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356

142. 141번과 같은 우려를 없애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유 주식 중 사업연관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또는 처분을 권유할 것입니까?

····· 357

143.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에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58

144. 143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59

145.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 360

146.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

까? ····· 361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 365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365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67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69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71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설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73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 375

7. 법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78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79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381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383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84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86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88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89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392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394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96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97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98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00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01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02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04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05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07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09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411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13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15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7

31.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졸업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18

32. 후보자는 2006년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어 2년 간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맡아 법관업무 포탈을 처음으로 개발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9

33. 후보자는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 업무 관련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20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 425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25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426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427

3-1.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430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431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33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 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434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436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39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41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442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44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446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448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0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451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52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 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453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55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456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457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458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459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60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461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462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64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465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466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467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69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471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472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73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 474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476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477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479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80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81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482

41.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녀가 가지고 있는 제주반도체 주식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483

42.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베네비오/아란코스메틱 채권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484

42-1. 각 회사의 사업 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개요, 연평균 매출액 등 ····· 486

43. 장녀의 용산 효창동 건물 매매 경위와 목적 및 자금 출처 ····· 487

44.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발생 경위 및 근로소득을 받은 사업체에6서 배우자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은? 각 건별로 기술.(예: 램스웨이, 주식회사 밥스누 등)

…… 488

45. 후보자 본인, 장녀,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발생 경위, 금액, 납부 날짜 …… 489

46. 후보자 본인, 장녀,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증여세 발생 경위, 금액, 납부 날짜 …… 491

47. 배우자 및 두 자녀의 금남고속 주식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492

4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별지 틀' 정비 내용 및 정비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 …… 493

49. 후보자의 2021, 2022년 사업소득 발생 경위 …… 494

50. 후보자 장녀의 2020년부터 2022년 기타소득 발생 경위 …… 495

51. 후보자 장녀의 라피끄 주식 매매 경위 및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496

51-1. 후보자 장녀의 2017년~2024년 라피끄 주식 거래내역 …… 496

52. 후보자의 겸직 신청 현황 및 결과 …… 497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 501

1.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후보자 본인은 그 덕목을 갖추었다고 보는지 …… 501

2. 대법관후보자로 거론되고, 최종적으로 제청되기까지의 절차 중 후보자 본인의 인지 시점과 인지방식 …… 503

3.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와 현재 대법원

• 사법조직에서 이러한 폐단이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 504

4.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위법심사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506

5. 한정위헌・한정합헌과 같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2017년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 역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507

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및 재판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509

7. 사형제 폐지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11

8.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12

9. 「차별금지법」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14

10. 형사재판 양형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접하는 형사판결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15

11. 법조계에도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 516

12.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17

13. 후보자가 생각하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세칭 '변호사시험 오탈자'관련 후보자의 입장 ····· 519

14.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해충돌'의 정의 ····· 521

15.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대중에게 판결이 자유롭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후보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 522

16.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524

17. 후보자의 판결 중 기억에 남는 5가지 …… 526

18.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528

19. 피의사실공표죄 폐지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반대한다면 그 이유 …… 530

20.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나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32

2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와 (2)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방안 …… 534

22.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에는 후관예우도 문제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 536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 ····· 538

2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539

25.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40

26.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541

27.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542

28.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 ····· 543

29.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 ····· 545

30.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그 이유 ····· 546

31.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47

3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48

33.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추진과 이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50

34.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국변호사 자격내역(취득일시, 외국 로스쿨 학력, 외국법자문사 등록여부 포함) ····· 551

35. 후보자 장녀・장남의 현재 직업(학생인 경우 학교・학년 등 포함)과 직업이력(직종, 사명, 직급, 재직기간, 급여(총계 및 수급기간단위에 따른 평균) ····· 552

36. 후보자 장녀・장남의 (주)제주반도체 주식 보유・처분이력 및 각 경위 ···· 553

37. 후보자 장녀・장남의 비상장주식 보유・처분이력 및 각 경위 ····· 554

38.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근거 ····· 556

39.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58

40.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억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560

41.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61

42.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563

43.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예산안의 하자 치유여부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564

44. 광주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65

45. 대법관 등 사법분야 인적구성에 있어서 성평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566

46. 심신미약・주취 등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것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567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판례에 관한 설명 및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568

48. 현재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근거 포함) ····· 571

49.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관한 형사법체계가 인권보호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573

50.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574

51.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575

52.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576

53.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577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 581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581

2. 후보자의 좌우명 ····· 583

3. 존경하는 법조인 ····· 584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585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587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589

7. 법관 재직 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590

8. 법관 재직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591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592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593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594

12.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95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96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98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16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600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5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601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

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602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604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5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606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 ····· 607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608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9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0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1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2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 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614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615

29.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616

30.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17

31. 후보자는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관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해박한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음. 현재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발전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음.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변호사법을 비롯한 국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는? ····· 619

32.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22

33. 앞서 리걸테크 산업이 많이 발전한 국가들을 보면, AI의 출현으로 크고 작은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소송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4

34. 국내 리걸테크 관련 여러 법률서비스들이 있음.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후보자가 인상깊게 보았던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사법부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 것이 있는지? ····· 625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 629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629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630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633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635

5.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영장, 이유 ····· 636

6.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637

7.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638

8.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639

9. 자녀의 주택구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녀의 주택 구입과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입장 ····· 641

10. 후보자 또는 가족이 이제까지 꾸준하게 기부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기부하게 된 계기, 기부 단체와 규모 ····· 642

11.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645

12.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646

13.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648

14. 회생법원의 사건 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649

15.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650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652

17.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653

18.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655

19.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657

20.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659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 663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3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664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665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666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668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9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670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671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673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676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77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678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680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83

15. 舊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684

16.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85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686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687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688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689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90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91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92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93

25. 배우자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694

26. 자녀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695

27.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과거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던 전력이 있던 곳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회사에 재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 697

28.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99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 703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03

2.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704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705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 706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08

6.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710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711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2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4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5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6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7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8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19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0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2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5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6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7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28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0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731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2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3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4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5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736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38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739

30.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741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742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744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745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46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 747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748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49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51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52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53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755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57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758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60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761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65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66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768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69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70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71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772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73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774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775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777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779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780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781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782

61. 계속 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783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84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85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786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87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788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789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790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791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92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794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795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796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98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99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801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02

78. 배우자 조형섭의 2025 APEC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기는? ····· 803

79.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재임 시기는? ····· 804

80. 한국젠더법학회 소속으로 한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활동 세 가지. ····· 805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 809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809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12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13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814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816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817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

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 징계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징계 절차의 위법성만 강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대거 해촉하고 교체한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소위 "패소할 결심"이 논란을 낳기도 했음. 현직 대통령과 검사 재직시절부터 특수관계를 형성해 온 한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음.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직 대통령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고위공직 당사자(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인지? ····· 819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

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821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 822

9-1. 오석준 대법관과 라과디아 판사의 평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22

9-2. 평생을 법관에 봉직해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평소 후보자가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의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경력 또는 이력이 있는지? ····· 824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26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827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 829

12-1.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법원 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29

12-2. 감사원의 사실상의 직무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평정비율 개정,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31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832

14.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34

15.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36

16.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

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37

17.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38

18. 현재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39

19.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 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840

20.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

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 841

21.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842

22.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843

23.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44

24.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 845

24-1.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검찰 내부지침인 예규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45

24-2. 현재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 846

24-3. 검찰의 과도한 영장 행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제안 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47

25.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848

26.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850

27.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 수사

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위 4개 주요사항별 각각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이관에 그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 852

28.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 854

29.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1)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편을 분리 독립 2)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3)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 필요적 심문 및 필요적 증거조사 도입, 2. 3개월 시한 폐지, 3. 심리 공개를 규정하여 재정신청이 활성화, 신속화할 수 있도록 함. - 준항고 제도의 활성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적 심문 제도 및 심문 종료 후 2주 내 결정을 하도록 함. ····· 857

30.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월 12일,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정보 공개를 판결하였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취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견해는? - 비공개된 대검찰청 예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책은? ····· 858

31.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60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보자 로 책을 기에 하다는 점을 고 있 니다. 다, 보자는 법원에 27 간 으면서 사건에 정성을 아 헌법과 법률에 공정하고 실한 재판으로 국민 에게 보 하고자 력하고, 보자의 경 과 지혜가 하 사안의 본 을 통찰하는 을 리지 하고 정 하는 자세로 아 니다.

○ 인사청 요청사유서를 통해, 재판지 이 심화 고 있는 어 건 에서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의 를 회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에 소수자·약자의 권리 지 실 보호하 사회를 통합하며, 인공지능 시대가 하는 에서 사법 가 아가야 할 향을 준 하는, 어 지 시 해야 하는 대법관의 역할과 사 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 니다. 이공 이자 지 적인 와 실 를 통해 보자의 성, 사법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다 한 가치를 할 수 있는 열린 가치관 등 보자가 점이 고 생각하는 요소를 재 아, 헌법이 한 사 을 다하는 ‘ 하는 사법 ’, ‘국민으로 와 사 는 사법 ’가 수 있 의 을 다하겠 니다.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하 심 재판이 지 원인 에는 관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를 대기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고심 수 하 한 재판을 하기 위하 력하고, 하 심 재판에 향을 사건에 관하 는 우리 사회가 아가야 할 향과 가치 기준을 적시에 제시하는 지혜로 재판을 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법원 내에 지 법 이론에 관한 기 를 세우는 에 력이 하 니다. 최 어 자정보 수 수 의 위와 법의 제한, 위법수 와 능력 판단에 관해 쟁이 화 고 있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자 와 관 하 , 국가의 정당한 형 권 행사 실 적 실 견과 의 자의 이 시 보호 등 기본권 보호 형사 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고, 보다 적이고 관 며 가능한 법리를 세우기 위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현재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재판 에의 한 인공지능 안 인공지능에 관한 등 의를 성화하 , 현재 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재판 에 하고, 법원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쟁점

에 대하 대 하는 기 하고 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대법관은 과 소 로 고통 는 성과 소수자를 위해 생을 헌 하 니다. 대법관은 대의견을 이 것으로 유 하지 ” 의 가 아 시대의 기 를 고 한“ 통찰력과 합리적 론, 수 적 의사소통을 통해 와 다른 생각을 가 대 을 기고 분하게 으로써, 위에 지고 는 이 아니 종이를 서서 물 이는 물감과 이 견고한 의 시대를 변화시 니다.

○ ”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위해 . 하지 다른 사 당 을 할 수 있는 법을 아 .“는 의 은, 어 한 과 변화 은 시대를 호 하는 사 의 공감 에서 와 갈 이 할 수 있다는 의 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으로 할 수 있게 다면, 다 한 견해를 하면서 가 공감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사회에 법의 정 과 가치를 리 내리는 기 하고 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2012~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 보자는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이 사건은 민간기 에 하는 성 로자가 고 보 법 제 70 제2 이 정한 아 청기간(아 종 시 로 12)을 과하 위 청을 하 다는 이유로 지 분을 고 분의 소를 하는 사건이 니다.

- 해당사건의 1심에서는 위 청기간을 행 정으로 해 하 원고가 소하 으 , 보자는 이와 리 소심 판결에서

아 제 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 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고자 하 고, 고 보 법 제70
제2 의 ‘ 청’은 아 를 지 기 위한 이자
소 시 단사유로서 기 청을 하는 의 의 적
정 정 로 해 이 당하다고 판단하 , 아
지 등 분을 소한 판결 니다.

-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의 다수의견(8인)은 아 이 1 이내에 아 를 청하 한 을 행 정으로 보아 이 기한을 넘 청하면 를 을 수 다는 해 으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하 니다. 다 , 소수의견(5인)은 원심과 이 시 정으로 해 하 니다.

- 위 대법원 원합의 판결은 아 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2021 법률 정 해의 주요판결에 정 고 주요 론에 소 어 법 와 은 로자 의 관심이 사건이 사회가 지 는 대한민국의 어 에서 아 이 니다. 아 의 (고 등과 가정 립 지원에 관한 법률)와 아 지 (고 보 법)이 이원화 어

있는 법 에서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
의 보장을 위한 법적 해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 제65 는 법관과 법률이 정한 공 원은 심판의 대 이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찰청법 제37 는 사가 심판의 대 임을 정하고 있 니다. 법관, 사가 를 행하면서 헌법이 법률을 대하게 위 한 에는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은 소 사유를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면 심판청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청 인을 해당 공 에서 면하는 결정을 고하게 니다.

○ 이 한 정을 종합하 보면, 법관이 사의 은 청 인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를 의 한다고 수 있 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이 법관의 분을 보장하는 것은 어 지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혜를 주 는 지가 아니 로 분보장에 게 법관은 리의식과 책임감을 가고 수행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적으로 어 한 위 행위가 사유가 수 있는지는 화하 하기에는 어 분이 있고, 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 면 보자가 인적인 의견을 기 적 치 한 면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65 는 소 사유를 ‘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 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청 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 인을 해당 공 에서 면하는 결정을 고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 심판 사건에서 ‘ 심판청 가 이유 있는 경우’ 대통 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가 있는 를 한다고 판시하 니다. 위 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내 을 종합하면, 의 사유가 는 헌법·법률위 은 법관의 면을 정당화할 정 의 대한 헌법·법률위 행위이어야 할 것 니다.

○ 다 , 적으로 어 행위가 사유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화하 하기에는 어 분이 있고, 적인 사건에 관한 것은 보자가 인적인 의견을 기 적 하지 한 면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우리법 회는 법원 내 공식 임은 아니지 법관 로 성 단 로 고 있고, 국제인권법 회는 대법원 하 분야 회 의 하 로 하는 법관이 면 가 할 수 있고 회원수가 500 이 넘는다고 고 있 니다.

○ 우리법 회, 국제인권법 회가 정한 정치적 향성을 고 있어 사법 의 화를 우 하는 시각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보자가 법관으로 재 하면서 경 하기로는, 법관 로 성 단 가 리 정치화, 세력화 다 , 소 회원의 으로 인해 사법 의 화가 고 있다고 보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 공 자 이 가지겠으 , 법관 자 에게 주어 을 해내고 어 하고, 이를 위해 분야의 회 을 통해 성을 화하기 위한 력을 게을리 하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법 회 국제인권법 회 한 한 임 하 고 생각합니다.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 면,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자 공감합니다.

○ 성 , , 력, 세대, 경력 등을 고 하 대법관을 성하면, 대법원 성을 다 화하는 에 어 정 이 수 있는 면이 있 니다. 다 , 사회현 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으로 는 인적 성 으로 분하기 어 우 로 한 인적 성 가지고 대법관 성의 실 적인 다 성을 보할 수 니다.

성을 가지고 대법관 성의 형식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실 적인 다 성을 보하지 하는 결과가 우 있 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를 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 인사 법 인 하 대법관 보 위원회를 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우리 는 국과 리 고허가제가 지 아 사건에 대해 고가 허 고, 로 인해 대법원에 수 는 사건수가 아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점을 고 하면, 사건에 대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하 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은 가 한 면이 있 니다.

○ 다 , 심리 행제 에 대해 의 판이 있는 심리 행제 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21대에서 의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는 민사소 법 정 등 법적 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 력에 관한 장 이가 있고, 법률 법 의 위헌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해 의 치가 생 지가 있다는 점 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제에 관한 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의 지에 기관 자 에게 주어 책 를 적 분 하 본 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관의 관 에 대해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기관의 력을 지켜보시고, 헌법 정권자인 국민 서 지혜 게 판단해주시기를 합니다.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시행 등이 법의 위임 위를 어 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 , 대법원은 “하위 법 이 정한 내 이 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로 하 야 하는 본 적 사 으로서 의회유보의 원 이 지켜 야 할 역인지, 당해 법률 정의 법 적과 정 내 , 정의 , 다른 정과의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야 하고, 위임 정 자 에서 의 내 을 정 하게 수 있는 어를 사 하 위임의 한 를 분 하고 있는 적 의 의 한 를 어 는지 , 하위 법 의 내 이 법 자 로 위임 내 의 대 을 할 수 있는 위 내에 한 것인지, 수권 정에서 사 하고 있는 어의 의 를 넘어 위를 장하 소하 서 위임 내 을 화하는 단 를 어 로 법을 한 것으로 가할 수 있는지 등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 니다(대법원 2015. 8. 20. 고 2012 23808 원 합의 판결).

○ 보자는 기본적으로 위와 은 판 지를 하는 장을 고 있 니다.

○ 정 가 시행 시 위법의 법(정) 지를 하지 은 경우 위와 은 위임 위를 하 다고 수 있는지는 적인 사안에 리 판단 수 있을 것으로 보 니다.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행정안 하 제 제 원 해자지원재단이 제 해자 소 정판결의 판결 지 이자를 지 하기로 하는 이른 ‘ 제 해 제3자 변제안’이 에 것으로 고 있 니다.

○ 제3자의 변제공 은 제3자 변제에 관한 제로 민법 제469 제1 단서의 ‘ 의 성 이 당사자의 의사 시’의 해 과 관 하 변제가 허 는지, 공 관이 이 한 사유로 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에 관하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정 의 제3자 변제안을 기 로 한 공 청에 대해 공 관의 수리 분과 이에 대한 이의 청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 고, 위 기각결정에 대해 고 가 행 이 로, 결과를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 어 있는 사안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관한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 보자로서 정 판결의 결과에 대한 적인 견해를 하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법률에서 대통 의 적인 수사 지 권에 대하 는 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은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행 법 찰청법은 법 장관은 찰사 의 최고 감독자로서 적으로 사를 지 , 감독하고 적 사건에 대하 는 찰 장 을 지 , 감독한다고 정하고(제8), 찰 장은 대 찰청의 사 를 아 리하고 찰사 를 하며 찰청의 공 원을 지 ,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을 니다(제12).

○ 다 , 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 대 이 수 있는 제에 관해서 대법관 보자로서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은 치가 기 에는, 현행법 법정형으로 사형이 정 어 있고 제 형 건을 하게 고 하 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고 어야 할 사건이 면 사형을 고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 고 생각합니다.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어 한 를 어 게 할 것인가 하는 제는 기본적으로 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제 니다. 법 를 하고자하는 본 지, 사법정의에 하는 수사·기소를 한 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법원과 찰에 대한 국민의 를 회 하고, 형사사법 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에 대하 는 인식하고 있 니다.

○ 다 , 사실관 법 적 의 정당성 는 판단자의 관점이 견해에 대적 수 있어서 이를 성요건 요소로 하는 것이 적 한지에 대하 면 한 가 필요하다고 사 니다.

○ 법관의 단 한 판단 의 과 소수적 견해 지 수사 형사 의 대 이 소지가 있어 자 법관의 수행을 지 치게 위 시켜 로 시대 이 당시의 건 한 식과 경 을 한 향적 판결의 등장에 림 이 수 있 니다. 한 정치권력는 사회세력에 의하 자 의 정치적 장과 이해관 에 대 는 판결을 한 법관을 하는 수단으로 어 법관의 독립을 해할 우 가 있 니다.

○ 이 , 법 이 는 의 성, 법원· 찰의 판결·결정에 을 가 사건 관 인 의 고소· 고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해의 우 지 으 로, 위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면 하고 한 가 필요할 것으로 사 니다.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사소 법 제247 는 사는 형법 제51 의 사 , 인의 , 성행, 지능과 경, 해자에 대한 관 , 행의 기, 수단과 결과, 행 의 정 을 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니다. 우리 는 기소 의주의와 어 사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하고 있어 사의 권한이 다른 에 하 지 치게 다는 판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이와 대 는 기소법정주의, 의가 인정 면 시 기소를 해야 하는 제 를 하는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제 사정을 고 이 시 기소하 야 한다고 하면 적 정의에 하고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수 다는 판이 있 니다. 이 제 장단점이 있는 이는 법정책적 결정사 이 고 할 것 니다.

○ 다 기소 의주의를 하 , 사의 재 권 행사에는 합리적인 한 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 법 사법적 통제장치로 재정 청제 를 고 있 니다. 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당 기소 분을 내 지 찰청 소 사가 공소유지를 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정성을 당하기 어 수 있으 로 2007 지 공소유지변호사제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적으로 어 한 국가권력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니다. 헌법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 에 합하 야 하고 권한을 해서는 안 니다.

○ 대통 의 인사권 행사 가지 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대통 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 국회의 의 등 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 어지는 장치가 어 있으며, 국회는 국회법, 인사청 회법 등에 의한 인사청 회를 통하 공 보자를 사, 하는 청 를 치게 니다.

○ 이 한 헌법과 법률 는 권분립의 원리를 현하고 적으로 국민의 통제 장치 는 점에서 결국 대통 의 인사권 행사 헌법과 국민에 의하 통제 다고 수 있 니다.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관 우 관 우에 관하 국민 의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판단하 야 하고 법관 임 경력과 정 당사자 는 소 대리인과의 관 가 재판결과 재판 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니다 , 한 의 해를 에 지하는 것 한 사법 의 역할이자 의 할 것 니다.

○ 관 우 관 우 등을 지하기 위하 공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 형사소 법 제 사유, 법관 등의 사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이 지대로 실 성 있게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리고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 력을 하 야 할 것 니다.

○ 관 우에 관하 는,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 관 우,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성 형이 가 다는 국민 의 지적이 있 을 고 있으며, 성 는 해자에게 생 지 수 는 고통을 기고 정 적인 을 어 게 는 대 이 로 이에 대하 정한 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 성 의 한 을 원하는 국민적 요 에 대하 는 게 아 필요가 있으 , 법정형을 과 하게 향하는 것은 형사법 정합성 면에서 가 필요하고, 사건에서 책임에 하는 적정한 형이 어 게 수 있다는 점을 고 할 필요 있 니다.

○ 아가 본적으로는 성 자에 대한 과 성 생원인 등 사회적 경에 대한 원인 의 력이 이 어 야 하고, 성 재 지 대책의 , 아 ·청소 등 성 에 약한 사 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종합적인 법이 의 고 시행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허위사실이 아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로 하는 정에 관하 ,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하는 사가 생하고 현의 자유와 론· 판의 자유를 지 치게 위 시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재판소는 에 사실적시 에 관한 헌법 제307 제1 에 대하 합헌결정을 내린 있고, 대법원 역시 2020. 11. 19. 고 2020 5813 원합의 판결에서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행위에 대한 형사 의 필요성은 재한다는 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에 의 보호법 , 법 적 등에 어 건 한 식과 통 적인 법 감정을 가 인이 면 지 는 행위가 인지를 하는 것이 현 하다고 보기 어 점, 대법원이 의 의 에 대하 관적인 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 할 , 해당 이 형법정주의의 성 원 에 위 지 는다고 판시하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고 2012헌 37 원재판 결정, 2020. 12. 23. 고 2017헌 456 등 원재판 결정, 2021. 9. 30. 고 2021헌가2 등 원재판 결정).

○ 결국 사실적시 , 의 화 는 국회에서

현의 자유, 론· 판의 자유, 국민의 권리의 위 등
의 정 , 사실적시로 인하 해 수 있는 인의 와 인 권
보장의 필요성, 형사제재가 적 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 분한 의견수 을 에 법
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 이 고 생각 니다.

○ 다 이를 대로 치한다고 하 , 이를 적 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의견이 우 한 것과 이 현의 자유, 론의 자유가 지 치게 해 지 세심한 제한 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점 잡하고 다 해지는 사건에 대 하 재판 의 성을 화하는 한 재판 지 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 는 분이 있 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 회의에서 2020 우 적으로 법원 해사법원의 치를 하는 것이 당하다는 의견을 힌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위원회와의 관 를 어 게 정할 것인지에 제 적·인적·재정적 변화의 위가 게 지고, 에 치법원의 수와 지역, 형사사건의 관할 , 심제 등에 대하 다 한 견해가 있는 , 사회 각 의 의견을 수 하고, 를 으로 국회에서 심 있는 의를 법원의 치 적인 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니다.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적 해 제 는 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정보 보호법, 제 물 책임법 허법, 법, 자인보호법 등 지식재 권법에 이 어 있고, 이를 대 하 는 임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기 이 지식재 권 해자에게 실제 해 보다 은 의 해 을 하 으로써 위법행위를 지하고, 위한 해 생을 하 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 고 생각합니다. 다 , 이 제 역시 경제성장 해 우 , 소 의 등 이 있을 수 있 니다. 서 이 적 해 제 를 하고 있는 허법 등의 시행 사 등을 고하 대 적 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형법 간통 정이 지 어 유책 우자와 간자에 대한 형사 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갈 하 유책 우자에 대한 위자 수를 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가 행 고 있고, 최 한 사건에서 재판이 에 른 위자 수가 통 적인 이 사건에서 인정 는 수에 하 우 게 인정 면서, 재판 의 재 을 제하 정한 위자 정기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 지에 관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위자 수가 실제 사건에서 정 적 고통을 하는 실 적인 역할을 할 수 있 현실화 적정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판 분 을 통한 위자 정기준과 수의 현 , 물가변 의 고 등을 한 심 있는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현대사회는 대 분의 정보가 자정보의 형 로 생성·보관 고, 장 의 본 적 성 해당 에 에 관 정보와 지 은 정보 이 재 어 있을 수 에 으 로, 는 자정보 수·수 으로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대하게 해 우 가 당 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수사의 행성과 성을 고 할 심 의 대 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 는 것이 당하리 생각 니다.

○ 이를 형사소 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이 의 , 국회에서 면 한 와 분한 의견 수 을 지혜로 결론을 기를 기대합니다.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수·수 장 당 법관 이 사건에서 의 소 정 등을 하게 고 하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수·수 장 이 적 고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이 있는 것 고 있 니다. 서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수·수 장은 적 수사 기 단 보를 위하 청 로, 청 를 기각하는 것보다는 의 유 를 인하 기 위해 수수 의 대 필요하 과다하게 청 분 을 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 하는 경우가 으며, 이와 이 장의 기각 은 10%에 이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장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수 의 필요성이 분 소 는지 면 심사할 필요가 있 니다. 장실 에서는 청 는 수수 장의 수가 지 치게 은 경우 실한 심리를 하는 에 당한 어 을 니다. 법관이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 게 고 할 수 있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제 적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보자는 2011 서 지 법원 장 판사를 으면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니다.

○ 법원은 자정보에 대한 장재판의 심리에 있어 의와 관 정보에 한정하 수·수 의 위를 적 제한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법한 건 수사로 한 의 능력을 적 적으로 정하고, 아가 법론으로 수 자정보의 관리 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안 을 해 필요가 있 니다.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자정보 장 의본 적 성 와관 정보와 지 은정보 이 재 어있을수 에 으 로, 이에 대한 수·수 은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대하게 해할 우 가 니다.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하 자정보 수·수 에 대한 보다 세심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을 통해 수 관정보 이 적법한 를 이 건 수사로 의자에 대한 으로 수 있다는 우 에 이 공감합니다.

○ 보자는 2011 서 지 법원 장 판사를 으면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니다.

○ 장 단 에서 실한 심리를 통하 수 대 등을 적 제한하고, 행 과정에서 수자의 권을 실 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법으로 자정보에 대한 분 한 수를 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 수 정보가 실 기 는

지 인할 수 있는 제 안 역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사기관 의 사는 행정 사에 해당합니다. 행정 사는 경찰, 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성 을 리하고 적 는 법률 다 니다.

○ 위 권력기관 은 법률에 사자에게 과 , 정지 등 이 한 분을 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분이 사자에게 치는 향이 형사 보다 경우가 니다. 서 행정 사 수사기관의 수사와 가지로 적법 원 이 준수 필요가 있 니다.

○ 한 권력기관과 사인인 사자가 실 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수는 으 로, 사자의 어권 행사를 위하 서는 변호인의 력을 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최 제 고있는 제 력, 지 성 에대하 고인의 책임에 는 정한 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 성 형기준이 2021. 1. 1. 시행 고 있는 , 형위원회에서는 지 성 의 심각성을 고 하 종 실 보다 정한 형이 이 어지 형기준을 것으로 고 있니다.

○ 최 제 력 사건에 대하 제 력 의 관 의 수성을 고 한 이 필요하다는 소리 있는 것으로 고 있니다. 다 , 력 형기준에는 보 · 원한, 감에서 행을 지른 경우 ‘ 할 한 행 기’에 해당하 가 인자로 열 하고 있으 로 형이 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관에 있 해자의 원은 형기준의 원 정의 정에 의사 시의 실성 등을 한 요건을 한 경우에 한하 인정 수 있을 것 니다.

○ 사건을 당하는 재판 가 이 력에 대한 실한 형 심리를 통해 고인의 책임에 합하는 른 형을 내 것으로 기대하면서, 형위원회에서 국민 의 우 와 의견을 분 고 하 형기준의 가적인 정 필요성을 실 하 주리 생각합니다.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보자는 2017. 7. ~ 8. 임법관 해 수 적으로 , 아이 , 를 하 ‘ 유 주요국 사법제 아이 사법 의회’에 대해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 하 니다.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본인: ① 대 지 법원 경주지원 91가합4546 사건, ② 서 지 법원 2022가단5299716 사건

- ① 보자가 제 당해고를 당하 해고 인을 한 소 으로, 1심에서 소(1992. 8. 21.) 고 소기각 고기각으로 대로 정 니다(대 고등법원 1993. 3. 18. 고 92 7987 판결, 대법원 1993. 11. 9. 고 93 23145 판결). 보자는 공대 대 원 현 장경 을 고자 제 에 대 공 사원으로 사하 하 , 과시간 시내에서 열린 회를 우 하고 시적으로 가 하 다는 이유로 면 고 해고 인의 소를 제기하 니다. 1심에서 보자 본인이 원고로서 소 을 행하면서 준 서면을 성하고 관 법률을 공 하는 과정에서 법 에 관심을 가지게 는 , 소 기간이 어지면서 법 을 공 하리 고 고 대 법과대 에 하 법 인이 는 기가 니다.

- ② 사 관 에서 한 법원 원이 보자 인 등을 청 한 사건(서 고등법원 2019 52142호)의 당재판 (행정 6) 법관 3인과 대한민국을 대로 국가

소 을 제기하 고, 보자는 고 1 으로 법원행정 법
당관의 안내에 정 법 공단을 소 대리인으로
임하 니다. 2023. 5. 31. 원고 청 기각 판결이 고 고
보자 본인에 대하 는 원고가 소하지 아, 대로 정
니다.

○ (母): 서 지 법원 2020가합592567 사건

- 심한 간소 을 유 하는 아 주자에게 보자
의 어 니, 보자의 자 가 소 행위 등의 지
해 청 를 한 사건으로, 2021. 11. 3. 원고 소
판결이 고 고, 소로 대로 정 니다.

○ 4 이내 인 이 재판을 고 있는지는 지
합니다.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로 시적으로 지 한 경우는 있으 , 세 을 하고를 한 사실은 니다.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해당 사 니다.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해당 사 니다.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보자의 장 는 ① 대 원 시 소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은 역대 (2021 14,508 원, 2022 13,089 원 각 기 소), ② 보자와 우자로 재 을 은 약 3 원, ③ 장 가 수하 보유하고 있 장주식의 시가가 하 으로 을 수하는 등으로 약 6 6,700 원의 재 을 고하 니다.

○ 보자의 장 은 원 아 이 , 시 수 한 와 는 등 1,700 원의 재 을 고하 니다.

○ 자 은 보자와 우자로 을 는 과정에서 세, 주식 과정에서 소 세 등을 성실하게 하 니다.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　　니다.

40. 후보자의 모친이 은아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로 근무 중인지 여부

○ 서는 실제 은아유치원을 하시며 원장으로 재 니다.

41.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동행복권이 2018년 복권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 보자의 우자가 경 하는 ㈜제주 에서 소시 을 성 하 권수 사 자 정 찰에 가하 고, 관 정에 른 가를 권사 자로 정 것으로 고 있 니다. 적인 내 은 보자가 지 합니다.

42.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주반도체 대표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약 5천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6월에는 5억 5천만원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보자의 우자로 , 위 회사가 2015 9 이 자를 고 2023 에 175 원의 이 을 으며 2024 어 에서 1분기 48 원의 이 을 성하는 등 회사의 안정적인 과 지 성장에 기 를 하 기에 이사회 결의를 5 원을 지 게 다고 합니다. 5 원은 원 이 로 합 하 5 5 원이 지 것으로 보 니다.

43.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뒤늦게 서류를 처리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보자의 우자가 리한 것이 보자가 자세한 경위를 지는 합니다. 우자에게 기로는 각 해당 에 필요한 서 를 성하 고, 관 세 소 세를 성실 하 으며 게 서 를 리한 는 다고 합니다.

44. 올해 2월 28일 다트 공시에서 제주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2% 감소했고, 매출액도 7% 감소하였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6월에 5억 5천만 원이라는 특별히 고액의 급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 보자의 우자로 , 위 회사가 2015 9 이 자를 고 2023 에 175 원의 이 을 으며 2024 어 에서 1분기 48 원의 이 을 성하는 등 회사의 안정적인 과 지 성장에 기 를 하 기에 이사회 결의를 5 원을 지 게 다고 합니다. 5 원은 원 이 로 합 하 5 5 원이 지 것으로 보 니다.

45. 후보자의 자녀가 주식회사 라피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자금 마련 경위

○ 보자의 우자는 2013 경 ㈜ (서 대기 지주회사의 자회사) 립자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자본 을 자하고 사내이사 내지 공 대 이사를 니다. 당시 위 회사에 장으로 있 유능한 원이 회사를 하고 2017. 1.경 화장 R&D 기 인 ㈜ 를 립하자, 보자의 우자는 생기 인 ㈜ 에 기 자본 을 자하고 3,200주를 주당 15,000원에 인수하니다.

○ 대 에서 식 생 공 을 공하 보자의 장 아 지로 자를 권유 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800주를 인수하는 , 위 회사는 생 회사 기에 주식인수가가 지 아 1,200원(= 1주당 15,000원)에 주식을 인수 니다.

○ 장 가 한 (300 원)과 보자의 우자가 한 (900 원) 합 1,200 원에 주식을 인수하 니다.

○ 위 은 900 원은 과세 한 내로서 세 과 대 이 아니 으 , 이 2023 수 과정에서 보자의 우자로 지원 은 과 합 하 세 를 니다.

46. 후보자의 자녀가 효창동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 및 취득자금 마련 경위

○ 보자의 장 는 대 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 하기 위해 2022. 8. 23. 서 소재 다세대 주 을 7 7,000 원에 수하 니다.

○ 약 3 800 원은 보자의 우자로 고, 세(약 4,600 원)를 하 니다.

○ 4 6,200 원 (1) 2 6,000 원은 임대 보 으로 당하고, (2) 지 2 200 원은 으로 하 한 2023. 5. 장 가 기 보유하고 있 ㈜ 주식으로 대물변제하 니다.

47.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건 또는 성과는 무엇인지

○ 한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 회장으로 하 시기에 한국 법 회와 공 으로 ‘ 판 간기 세 , 판 아보기” 는 세 를 최하고, 3 10 유 이 지정한 세 성법관의 을 기 하 성 인권이 위기에 한 아 가니 의 에 대한 을 고 법관 을 당하고 국 로 한 아 가니 성법관 을 위해 을 한 이 의 있 니다.

○ 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한 것을 보 있게 생각합니다.

48. 후보자의 2019~2023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보자는 소유 는 공 소유인 서 관
지를 보자 4자 가 각 1/5지분을 사 의 으로
니다.

○ 보자는 아 기재와 이 세 약 1 8,000 원을
허가를 아 분할 하 니다(임 의안에 ‘최
5 간 국세 지 세 에 관한 사 ’ ‘ 내역 ’
). 위 은 보자의 소 으로 하 니다.

순번	납부일	금액	대상 재산
1	2019. 1. 30.	5,867,860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35-1, 2 토지의 각 1/5 지분
2	2019. 1. 30.	30,464,030원	
3	2020. 1. 22.	33,190,490원	
4	2021. 1. 28.	32,648,400원	
5	2022. 1. 25.	32,094,290원	
6	2022. 12. 30.	31,546,190원	
7	2023. 12. 5.	30,917,010원	
합계		196,728,270원	

49. 후보자의 장녀의 2022~2023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보자의 장 는 2022. 8. 23. 서 소재 다세대 주 을 7 7,000 원에 수하면서, 수자 3 800 원을 보자의 우자로 고 2022. 11. 세 46,172,000원을 하 니다.

○ 위 세는 보자의 장 가 보자 우자로 하 하 고, 이 2023. 5. 장 가 보유하고 있 장주식(㈜ 주식)을 보자 우자에게 하 을 대물변제하 니다. 에 대해서는 소 세를 하 니다.

허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허영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대법원은 헌법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다수결 원 이지 하는 법, 행정 역과, 리 법치주의에 각하 국민의 권리 제와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 야 합니다. 과정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한 , 대법원은 요한 국가·사회적 제에 관하 법률적 쟁 이 제기 고 하 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고 을 최종 향을 결정하고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법 해 통 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하 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한 건은 수 , 수 건의 현실적 는 재적 분쟁을 종결시 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국민과 기 , 공공기관과 국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요 고 등하며 자유로 사회로 아가기 위한 행 지 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역할을 통하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 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 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제가 지 27 간 재판을 당해 지 시간 을 아보며 대법관 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로 한 제가 대법관 보자로 것과 대법원장 서 를 제청하 이유에 대해서 은 생각을 해보게 니다. 를 아 보며, 지 지 재판을 하면서 제가 고 법관으로서 가 과 사법 성원으로 관심 고 력하 에 대해 리고, 제가 국회의 의를 아 대법관이 다면 를 수행하는 의 다 을 는 것으로 대 하는 것을 해해 주시기 니다.

○ 는 지 시간 법관으로서, 제가 법원의 공정 과 을 법정에서 주하는 당사자 에게 주기 위해 최 을 다하 니다. 은 사건이 당사자에게는 의 수 있 을 심하고 가고 경 하는 으로 정성을 아 재판에 임하 니다. 는 의 어 시 의 경 을 자 분 아 대법원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 의 은 소리 치지 고를 경청하기 위해 력하고자 합니다.

○ 사법 의 본 인 재판 와 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에 과 기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가 하고, 는 이공 이자 지식재 권법에 대한 성이 있고,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사법 가 어

한 향으로 아가고 준 해야 하는지 고민해 고, 적인 실 을 하 이행해가고 있 니다.

- 보자의 임관 이 로 과 기 분야와 법 분야에서 어 능력을 가 이공 법관이 다수 임 으 , 이분 이 대법관 보자의 자리에 기 지는 적어 5 이 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으로 5 간 우리사회는 지식재 , 인공지능, 지 , 기 변화, 기 등 과 기 관 분쟁이 가할 것으로 니다. 이에 과적으로 대 하기 위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이 한 지식과 경 을 가 대법관이 시 필요하 , 보자 에는 이 한 지식과 경 을 가 분을 기가 어 니다.

○ 보자는 법 회의 간사와 회장을 역임하며 법원 내 성 등 화 정 과 재판에서의 아 , 성,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 한 재판자 간을 주 하 니다. 보자는 법 회 을 통해 은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안 을 대법원 판결에 아낼 적임자이자, 법관 의 이 력하겠 니다.

○ 제가 국회의 의를 아 대법관의 를 게 다면, 지 지의 경 을 으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 성과 이를 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하고 화 게 해결하기 위해

력하겠 니다. 한 사법 가 변화하고 하는 지 사회와 인
공지능을 수 하 하고 실한 재판을 현하며, 국민
의 사법에 대한 성을 향 시 수 있 의 을 다하겠
니다.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법원은 헌법이 하고 있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를 책임지는 최 의 보 니다. 헌법이 과 원리에 각한 최종적 법 해 을 통하 국민 생 에 요한 의 를 지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 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성하는 원으로서, 해 한 법률 지식은 물론 은 통찰력, 공정 과 사 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 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균형감각, 은 사 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 등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대법관은 사법적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법관으로서, 분쟁에 관하 성의와 정성을 다하 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해내고, 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소 과 한 책임감을 가 야 할 것 니다.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는‘ 간 보(百尺竿頭 進一步)’,‘ 이 을 자 이 사 하 ’는 을 우 으로 아 니다.

○ 법관으로서, 한 인이자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에게 주어 에 최 을 다하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한 을 내 고자 력하 니다.

○‘ 이 을 자 과 이 사 하 ’는 은 분 실 하기 지 지 , 이를 다 하면서 이 이에 가 의 에 가 지고자 력하 니다. 법관에게 필요한 것은 법리에 대한 해 한 지식과 론능력, 유 한 장으로 판결 을 성할 수 있는 능력 은 아 것 니다.‘ 이 을 자 과 이 사 하는’ 으로 재판에 임할 , 분쟁으로 은 당사자 의 을 아 사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 법정과 기 에서 주하는 당사자 의 소리에 기 이며 감하는 한 재판을 실 하고자 최 을 다하 니다.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는 국 대법관으로서 생 성과 소수자 인권의 장을 위해 헌 한 이 (Ruth Bader Ginsburg)를 경 합니다.

○ 대법관은 과 소 로 고통 는 성과 소수자를 위해 생을 헌 하 니다. 대법관은 대의견을 이 것으로 유 하지 " 의 가 아 시대의 기 를 고 한" 통찰력과 합리적 론, 수 적 의사소통을 통해 와 다른 생각을 가 대 을 기고 분하게 으로써, 위에 지고 는 이 아니 종이를 서서 물 이는 물감과 이 견고한 의 시대를 변화시 니다.

○ "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위해 . 하지 다른 사 당 을 할 수 있는 법을 아 "는 의 은, 어 한 과 변화 은 시대를 호 하는 사 의 공감 에서 와 갈 이 할 수 있다는 의 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으로 할 수 있게 다면, 다 한 견해를 하면서 가 공감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사회에 법의 정 과 가치를 리 내리는 기 하고 니다.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주요 적]

○ 제가 게 생각하는 판결 로는, 1심에서는 재해로 인한 사 , 수행 으로 인정 지 로자, 경찰, 공 원의 에 대해, 소심에서 이를 인정 으로써 사 자의 를 회 하고 유 이 에 른 를 을 수 있 한 것을 고 니다.

- 서 고등법원 2019. 7. 24. 고 2019 31664 판결: 과로에 시 리 경찰공 원이 행 고를 고 하 다가 로 사 한 사건에서, 1심과 리 수행이 주 원인이 어 사 한 것으로 판단하 을 인정한 사

- 서 고등법원 2019. 9. 25. 고 2019 44028 판결: 서로 재정 원이 관 감사를 자 한 사건에서, 1심과 리 재해로 인한 사 으로 판단한 사

- 서 고등법원 2019. 8. 21. 고 2019 33066 판결: 로 지 공단 원이 과로와 가 적 어 사 한 사건에서, 1심과 리 와 사 사이에 당인과관 가 있다고 판단하 이를 재해로 인한 사 으로 판단한 사

- 서 고등법원 2019. 11. 20. 2019 35062 판결: 지에서 과

한 과 에 시 리 사관이 수 기 이 ·
이 어 사 한 사건에서, 사 과 공 수행과 사이에 당인
과관 가 있다고 보아 을 인정한 사

○ 최 정보화 기 의 과 인공지능 의 에
어, 2023. 10. '인공지능 회'를 립한 것 니다.

- 회는 법관과 재판 원 33 으로 하 으 , 현재 회
원 수가 160 으로 가하 니다. 간 세 , 법률이
에 대한 , 공 등을 통해 사법 가 인공지능을
에 · 하고 법률이 에서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 지 법 법리의 실 의 을 위해 력한 것 니다.

- 보자는 2011. 2. ~ 2012. 2. 서 지 법원 장 법관
으로 하면서 본인의 사 위 (형사소 에서의 지
의 과 능력)을 기 로, 법관 과
수사기관의 의견을 하 , 지 에 대한 수수 의
위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수자의 권을
보장할 수 있 수수 장에 하는 기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하 니다.

- 이 한 력은 지 에 대한 수수 장 실
에 어 정 고, 대법원 판 의 법리가 화
고 하는 력이 기 하 다고 생각합니다.

[점(아 기)]

○ 2012~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 보자는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이 사건은 민간기 에 하는 성 로자가 고 보 법 제 70 제2 이 정한 아 청기간(아 종 시 로 12)을 과하 위 청을 하 다는 이유로 지 분을 고 분의 소를 하는 사건이 니다.

- 해당사건의 1심에서는 위 청기간을 행 정으로 해 하 원고가 소하 으 , 보자는 이와 리 소심 판결에서

아 제 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 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고자 하 고, 고 보 법 제70
제2 의 ‘ 청’은 아 를 지 기 위한 이자
소 시 단사유로서 기 청을 하는 의 의 적
정 정 로 해 이 당하다고 판단하 , 아
지 등 분을 소한 판결 니다.

-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의 다수의견(8인)은 아 이 1 이내에 아 를 청하 한 을 행 정으로 보아 이 기한을 넘 청하면 를 을 수 다는 해 으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하 니다. 다 , 소수의견(5인)은 원심과 이 시 정으로 해 하 니다.

- 위 대법원 원합의 판결은 아 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2021 법률 정 해의 주요판결에 정 고 주요 론에 소 어 법 와 은 로자 의 관심이 사건이 사회가 지 는 대한민국의 어 에서 아 이 니다. 아 의 (고 등과 가정 립 지원에 관한 법률)와 아 지 (고 보 법)이 이원화 어

있는 법 에서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
의 보장을 위한 법적 해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로 사건)

- 보자는 위 재판의 주심으로서,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을 하 니다.

- 이 사건은 대장 , 주 등 인기 의 주인공을 로 화한 주요 론에서 은 관심을 고 보 하 고, 대법원(2012. 3. 29. 고 2010다20044 판결)은 원심의 지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 으며 위 대법원 판결은 2012 법률 의 주요 분야 요 판 로 정 기 하 니다.

- 보자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수 한 대한 자 을 하 위 판결의 법리를 어 (「지적재 권법 하에서의 법행위법의 역할」, LAW & TECHNOLOGY, 서 대 기 과법 , 2010)을 하 사건으로 기 하고 있 니다. 리고 2013. 7. 30. 「 정경쟁 지

보호에 관한 법률」 정 시 정경쟁행위에 '성과 행위'가 는 기가 사건이기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다고 생각하 , 보자가 가장 판결 내리기 어 고 아 사건으로 사건 판결이 있 니다. 2008 경 세 적으로는 국 위기를 게 고, 국내에서는 이른 ' (Knock-In Knock-Out)사 '로 어지는 장 생 로 인한 소기 의 해가 사회 제가 고 약 919 의 기 이 약 3 에 하는 해를 은 에서, 대법원은 2013. 9. 26. 고 2013다26746 판결 등에서 원 적으로 자는 공정 행위가 아니고 은행은 ' 판 '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다는 판시를 하 고, 보자가 2012 ~ 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시 사건의 해 기 의 소심(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등)을 적으로 당하면서 위 기 의 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 으로 대하고 잡한 사건 기 을 과정과 사안에 서는 제가 어 소 의 아픔을 지켜 수 에 이 아 고 가장 어 사건으로 기 고 있 니다.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대법관 보자인 에서 임 의 적 을 리는 것이 른 면이 있으 , 인적 이 을 위한 변호사 은 하지 을 정 니다.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 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최우 의 과제는 재판지 을 해소 으로써 한 재판을 을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는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하는 과제 니다. , 분하고 관적 자 를 대로 실한 심리를 정의 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기를 는 국민 의 소리에 유 하고 이를 적으로 소화하 , 한 재판이 실한 재판의 다른 이 이 지 법원 내 의 다 한 의견을 경청하 세심하게 제 를 · 하고 이를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을 종의 통 에 유하 본다면, 해결 안은 ① 통 에 하는 로 장 등 기 시 (= 재판), ② 현 간의 원인 제 (= 심리 을 위한 제 재판지 장애 요소 제), ③ 적정한 통 이로에 유 수 있 하는 대 수단의 (= 1심 실화 정 등 대 적 분쟁해결 수단), ④ 과 기 을 한 로 이 의 최적화(= 인공지능 기 과 자소 등의 재판) 등의 다 한 면에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 를 당하는 법관을 분 원하고, 법관임 제 를 하 우수한 역 과 자 을 가 법관을 보할 필요가 있 니다. 이 우리 사법 법관 1인이 당하는 수가 은 야 과 주 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 정 로 은 이고, 국민 은 요한 법적 분쟁에서 단독판사보다 법관 3인으로 성 합의 에서 분한 론과 고를 사건의 결론을 내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하 재판 수를 리는 한 가 있기 니다.
법 인 과의 보수 , 국적인 보 제 등의 요인으로 능력이 인재를 하는 것이 지 은 현실 에서, 적정한 법 경력 요건의 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의 요인이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하 이를 하는 것 요합니다. 심리 실기한 공 법에 대한 제재 화 등 기 의 소 법 정에 른 소 지 를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적정하게 하는 한 으로, 재판지 의 원인으로 지적 고 있는 감정제 의 , 정보의 균형과 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리 제 의 , 사 분 의 장기화를 통한 필요한 재판 지 등 다각적인 면의 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 가 리에서 분쟁 당사자를 주하는 1심 단 를 실화하 분한 자 를 으로 실 적인 공 과 심리를 통해 수

긍할 수 있는 종국적 결론이 하 , 당사자 의 적
감을 제고하고 관성적으로 소심, 고심 지 이 이 어
지지 하는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최대한 하고,
자소 과 재판 등 시간과 장소적 한 에 애 지 는 심
리 수단을 적 적으로 으로써, 사법 의 성
을 최대한 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쟁점 정리 유사판결 , 심리 향
제안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으로써, 법관은 심적인
판단 에 하 재판 의 와 를 향 시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한 이 하는 인공지능을 사
법 역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 할 수 있 , 법원 한
리적 기준과 지 을 하 이를 적으로 제안·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사법 은 기본적으로 정의로 재판에 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합하게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재판지 현 이 심각해 권리를 제 지 하는 국민 이 아지고 있 니다. 법적 분쟁으로 고통 는 국민 이 하리 으로 할 수 있 사건 리의 성을 이기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하고 관 재판제 를 할 필요가 있 니다.

○ 한 사법 가 헌법이 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 을 분 감당할 수 있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 론으로 의 사법 독립이 하게 지켜 야 합니다. 이를 위하 는 재판 는 법관에 대한 과 한 판이 자제 는 국가적 화가 형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가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위 을 제고하기 위하 고심의 제와 식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사건 에 른 과 한 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 해 을 통한 법 서의 유지·형성이 는 책 를 수행하기 어 실정이 로, 공론화를 통하 적 한 안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대 화 등 지 기기에 대한 수수 등 제수사로 인

하 국민의 기본권이 해 다는 우 가 아지고 있 니다. 소위 “ 지 시대”에 과 사생 대 분을 재 성할 수 있는 위와 은 정보는 자 인에 대한 국가의 사찰이 인권 해로 이어 수 있는 , 수사의 행성, 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해 지 장 관 제 와 심리 를 하 는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성을 화하며, 정보화 시대에 는 사법정보 시 을 어 국민의 을 하는 에 각고의 력을 다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 해 다 고사건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대법원이 법 해 통 기능은 물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에 당한 지장이 고 있는 임을 고 있 니다. 이 한 제 을 하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위 을 제고하기 위하 서는 어 한 식으로 고제 에 대한 이 이 어 야 할 것 니다.

○ 기 고제 을 위해 안이 의 고 고법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고법원 안은, 고심의 법 해 통 기능과 권리 제 기능을 분리 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 하고, 국민은 실한 권리 제의 기회를 게 다는 장점은 있 니다. 한 , 대법원이 당하는 사건과 고법원이 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 기준이 하지 고 대법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른 안으로는,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현실과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는 ,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고이유서 원심 법원 제 제 를 하 우 고심의 을 경감하는 안 니다.

○ 장기적으로는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고이유가 있는 사건, 판결이 고 을 사회적으로 향력이 사건을 하 고심을 행하고, 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 는 소심 판결로 종결 으로써, 한정 사법 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 하고 고심을 적과 지에 게 하며 다수의 분쟁을 기에 종 시 수 있을 것 니다.

○ 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은 법 원화 제 를 정 시 고 관 우 등의 우 에 대한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 고등법원 판사의 은 이 제가 는 , 은 로 인하 법관 생 의 안정성이 해 고, 장기간 하 은 소심 재판 를 당 에 의 이 하 는 등 다 한 제가 제기 고 있으며, 이 한 제가 고등법원 판사의 사 유인과 대형로 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 고등법원 판사 의 제가 아니 법관이 공통적으로 고 있는 제로, 법관의 의 을 고 하고 우를 하기 위해 최대한의 력을 기 야 할 것이고,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하 대형 로 으로 이 이 아니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법 에 대한 국민의 가 기대에 치지 하는 점에 대해 보자는 가 아 고 안 게 생각합니다. 과 사법의 독립에 대하 의 을 으 사건, 사법행정권 사 , 국민의 이에 지 는 판결, 최 에 지적 고 있는 재판지 제 등이 적인 원인이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법 의 성원은 이 한 지적에 대하 하기보다 로를 아보고 고 헌 적인 자세로 재판이 는 본 의 에 최 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쟁점을 기에 하고 적 한 소 지 를 통해 실한 심리를 에는 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지 이 판결을 고 으로써 재판지 등 필요한 해를 사는 이 어야 할 것 니다.

○ 한 사법행정 역에서는, 은 재판으로 를 회 할 수 있 재판제 에 를 가하고, 국민 가 고 적으로 재판에 할 수 있는 안을 해야 할 것 니다.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사법 은 기본적으로 정의로 재판에 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합하게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과제는 재판지 해소 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 에 으로 하지 하는 국민 이 고통을 고 있 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 는 법관사 분 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재판을 당하 하고, 감정제 등 각종 재판제와 인사제 를 하 고 력하고 있 니다.

○ 다 , 사법 의 자 적인 력 으로는 재판지 제를 해결하는 한 가 있 니다. 법관, 재판 원을 원할 필요가 있고,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 을 인재를 법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과 민원서 에 인공지능기 을 할 필요 있 니다. 이 한 은 법적 이 으면 실현하기 어고, 분한 보 필수적이 고 생각합니다.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에서 생할 수 있는 관 우는 법관이 자가 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 는 결과 등에서 당한 혜 혜 을 는 현 을 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 로는 법관으로 아 면서 관 우 로 의심 을 한 행 을 하지 다고 생각하지 , 의 인적 경 을 어 관 우의 유 를 단정하 리는 것은 적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은 국민이 관 우 관행이 재한다고 고 있고 실제 분쟁이 생하면 관 우를 기대하고 가능한 당 법관과 분관 가 있 한 경 이 있는 변호사를 임하 고 력하며 고 의 수임 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관 우를 기대할 한 요소를 단하는 등 사법 를 회하기 위해 시 해결해야 할 제 고 생각합니다.

○ 관 우 등을 지하기 위하 공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를 고, 형사소 법 제 사유의 하 로 정하고 있으며,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이 지대로 실 성 있게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리고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 력을 하야 할 것 니다.

○ 한,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정 이 에 하 변호사로서 을 하는 현 과 관 우의 해의 지 적 등으로 유사한 지의 법률안이 의원 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 적이 있 다시 한 공론의 장에서 적 적인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 사회 적으로 가 장적 화, 공서열을 하는 화에서 인의 성을 시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합의 내에서 법과 원 , 법관의 심에 재판을 하 야 하며, 관 화 기수 화는 이 한 법원의 성과 합하지 니다. 에 종 에는 제 등으로 인해 관 화가 는 이 있 으 , 고등법원 장판사 제 지 이 ‘ ’, ‘ ’ 에 기 한 법원의 관 화 제가 어 정 해소 고, 최 법 에서 기수, 등에 른 위 서를 하는 분위기가 화 으며, 다 한 의 법 인이 법관으로 임 는 법 원화제 , 경력대등재판 의 등 법원의 화 이 과 이 다고 생각합니다.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하 심 판결에 대한 이 아 다는 지적에 대해 보자 역시 사법 의 원으로서 게 아 이고 있 니다. 원인은 가지에 있겠으 , 재판이 지 고 재판에 대한 적 감이 어지는 것이 한 원인이 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재판 을 권리를 실 보장하는 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이 분 기 위해서는 보다 하 심 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률을 이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 심 화는 보다 당사자 에게 에 대한 을 주는 실한 심리를 제공 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한 수의 법관과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을 원할 필요가 있고, 법관으로서 능력과 자 을 인재를 법관으로 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인력 의 원인 하 는 법관의 심리 이 가하는 제 (공판 심주의, 심리주의, 사 성 의자 서 능력 소 등)가 가하고 있다는 점 니다. 서 본적으로는 법관 재판보 인력의 원이 있어야 하 심 화를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재판제 를 점 하 적이고 는 와 기간을 단 할 필요가 있 니다. , 인공지능기 을 재판시 에 하고, 사실관 의 요와 의 주장 다 는 분을

쟁점으로 정리하 법관에게 기 보고서를 제시하게 하는 등 사건 심리와 판결 성의 보 수단으로 으로써 본 의 재판 심리 에 행정적, 적 소 를 가는 이 것이 고 생각합니다.

○ 법관을 대하고, 각각의 역에 법원을 치하는 등으로 재판의 성을 제고하고, 사 분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과 단 을 최소화하는 것 하면서 실한 심리에 기 할 것으로 보 니다. 한 1심에서 실한 심리가 이 어 수 있 수 제 필요가 있 니다.
제 (deposition), 서제 제 등 우리 의 소 에 는 리제 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국민 재판에서 법 등을 통해 심원의 결에 기 력을 하고, 유 판결 은 사실과 , 적 법 을, 판결 은 공소사실 결결과 을 기재하게 하는 등 판결 성 식을 대 간이하게 으로써 재판 의 을 이고 국민 재판을 성화하는 안을 할 필요가 있고, 형사관제 으로 형심리를 실하게 으로써 고인과 해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형이 이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성 법원에 하 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심에 독립하 심판하 정하 재판독립의 원 을 하고 있 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심에 심판할 어 한 간 이 향을 아서는 안 니다. 사법 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독립 어야 하고, 재판을 하는 법관 사법 내 의 세력으로 독립하 재판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판독립의 원 이 보장 어야 하는 이유는 사법 가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하기 위 이며 재판독립의 원 은 자 가 적이 수는 니다.

○ 최 에는 각종 정치적 단 이해 단, 론으로 독립하는 것 요해지고 있 니다. 법원의 재판 국가 이 로 에 대한 합리적인 판과 은 지 가능하고 법원 이유 있는 판은 겸허 수 해야 합니다. 다 , 최 재판 결과에 대한 이 법관 인에 대한 인 공 성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고 있고 이에 법관 이 위 는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이 위 로 우 가 있 니다. 정 를 넘어 합리적 이유 이 자 의 주장을 관 시 하는 사회 각의 분위기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은 사법 의 당한 력에 대 하

는 것은 물론 사법 내 의 리에 경 지 고 법과 원 에 재판하겠다는 법관 로의 경각심과 력이 있어야 성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법행정 재판 지원이 는 본 역할에 역 을 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해가 생할 지가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 력에 관한 장 이가 있고, 법률 법 의 위헌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해 의 치가 생 지가 있다는 점 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제에 관한 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의 지에 기관 자 에게 주어 책 를 적 분 하 본 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법관은 국민 의 사자로서 책임감과 사 감을 가지고 사건에 정성을 다해야 하지 , 법관의 사 감에 기대어 생 요하는 것은 하지 고 지 가능하지 을 것 니다. , 과 가정의 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아 분 화의 변화 등으로 법관 인의 책임감과 생 을 하는 식의 기 는 이 유지 수 다고 생각합니다.

○ 은 시대를 아가는 다른 사 으로서 법관 가 과 시간을 보내면서 는 정서적 기 과 보 , 유대감을 고 균형 잡힌 을 아갈 수 있을 , 로소 시대의 가치 변화를 읽고 법과 식에 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 적 유, 통찰력과 지혜를 하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와 아 , 아기 단 , 아시간 등의 제 를 에 있어서 에 른 이 다른 성원 인에게 가는 제를 해소하고, 가와 아 을 고 사 할 수 있 과 가정의 립에 화적인 장 분위기를 성하는 것 요합니다.

○ 본적으로 법관 1 이 리해야 하는 사건이 적정한 수준이 수 있 , 법관 원, 재판지원 인력 보를 통해 하고 실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건을 하는 것이 가장 시 하게 해야

할 사법정책의 하　　고 생각합니다.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최 생한 대 안 사고로 수 은 인 이 생 것을 국민의 한 사 으로서 우 안 게 생각하고, 재 지를 위해 국가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안 사고 생에 관 보호 치 위 , 주의의 위 등이 있는지 적 사실관 를 현장책임자 등의 법적 책임 를 가리게 것으로 보이 , 이 한 적 과실 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 를 적 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장을 고 있 니다.

○ 다 , 현재 이 원 사와 관 한 관 자 의 형사재판이 인 에서, 대법관 보자가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세사기로 인해 은 사 이 이 수 는 해를 고 있는 점에 대하 국민의 한 사 으로서 대단 안 게 생각하고 있니다.

○ 대법원은 2023 소위 ‘ ’ 사건과 이 임대인이 사 한 경우에 한 행을 위하 등기가 지지 임 인이 임 권등기 의 청을 할 수 있 관 를 제정하는 등 등기 를 하 고, 법원사 관등이 임 권등기을 임대인에게 하기 에 임 권등기를 할 수 있 하는 내 의 주 임대 보호법 정에 관 (임 권등기에 관한)을 정하는 등 한 임 인을 보호하기 위한 력해 것으로 고 있 니다.

○ 한 , 2023 기에 서 , 로 , , 인 등에 세사기 해자 이 면서 관할법원인 서 지 법원 인 지 법원의 임 권등기 의 한 리에 어 이 있 으 , 현재는 어 정 안정화 것으로 고 있 니다. 기 인력 재 치, 사 분 정 등을 통해 어 임 권등기 수요에 대 하고, 임 인이 임 권등기 제 를 ·적 정하게 하 과적으로 임대 보 을 보 할 수 있 제 와 실 를 지 적으로 점 ·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 한 다수의 해자에게 회 하기 어 해를 힌 세사기 자 에 대하 책에 하는 정한 을 과 으로써 법원의 재판이 , 의 기능을 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 니다.

○ 세사기로 해를 으 분 이 이 생하고 있는 현실을 안 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21대 국회에서 ① 등기의 등기사 으로 ‘ 재 에 하는 의 에 관한 주의사 ’을 하고, ② 등기기 에 ‘ 의 시 원 에 기 을 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의 주의사 을 기 하 하는 내 의 등기법 정을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법 향 당하지 , 장기적으로는 의 경우 대 적인 권리관 에 향을 치는 요하고 심적인 사 을 등기 에 기 할 수 있 원 에 관한 사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은 임 인 의 권리를 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 안에 관하 다각적인 와 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다 , 1997. 12. 이 현재 지 사형을 행하지 고 있 에 하고 인사건이 게 감소하는 세 는 통 가 있고, 사형제가 의 적 과가 있다는 실 적 가 는 , 아리 한 인자 하 다른 적(위하 과)을 위해 생 을 해서는 안 다고 생각 니다.

○ ,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의 을 제로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은 치가 기 에는, 현행법 법정형으로 사형이 정 어 있고 제 형 건을 하게 고 하 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고 어야 할 사건이 면 사형을 고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 고 생각합니다.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인권은 향유하는 대적인 자유와 권리이 로, 성을 가 인간인 성소수자의 인권 요한 가치로 보호하 야 합니다. 한 성적 지향성은 지 내 한 사적인 역이 로 인에 대한 요 위해가 수 지 는 한 아야 하고,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당한 견이 적 을 아서는 안 니다.

○ 최 에는 결 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사실 , 성 관 는 물론이고, 성의 을 통한 가 의 성 등 로 유형의 생 공 가 등장하면서, 적 의 로서의 '가 '의 을 어 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 하 다 한 의가 행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이 한 사회적 변화를 하 생 을 공유하고 생 을 호적으로 주고 는 이른 "생 자관 '를 정하 이에 대해 인에 준하는 권리 의 관 성립의 내 을 은 법률안이 의 다가 임기 로 기 것으로 고 있 니다.

○ 성간 애, 성간 결 , 자기 성 결정권 등 성소수자에 대하 어 한 법률적, 제 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현행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 의 인식, 시대적 , 성소수자의 행 권 보장 요청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관하 는 대한민국 헌법 의 지에 대한민국 임시정 가 수립 1919 이 는 견해와, 대한민국 정 가 수립 1948 이 는 견해가 있고, 어 한 견해를 하는 지에 현대사를 해 하는 관점과 역사적 정통성을 하는 대 에 다소 이가 있다고 고 있 니다.

○ 1910 국권 이 독립을 쟁 하 는 력의 으로 1919 해 에서 임시정 가 수립 고, 제 이 기를 1948 대한민국 정 를 수립하면서 이 분단 현실을 주하게 니다. 이 한 의 역사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 을 , 는 시점이 각각 국가적으로 우 요한 의 를 가 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정치적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의 적 장을 지 하는 것을 해하 주시기 니다.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자는 이 한 점을 심하면서 사건에 임하 고 다 과 은 판결을 고하 니다.

-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 기니 공화국적의 원고의 민 청에 대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을 종합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하 니다(서 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

- 4 대 제로 한 실 시 관리 로자의 당 를 통 로의 장으로 수 있는지가 제 사건에서, 당 시간 게시간은 4시간, 공 5시간으로 보고 지 시간의 로에 대해 장 로수당을 지 해야 하며 재 정하 가로 지 해야 한다고 판단하 , 와 유사한 본 의 를 수행하는 야간 로자의 이 을 보호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1. 12. 10. 고 2019 2046214 판결)

- 이 에 보자는 ① 서 고등법원 2021. 4. 2. 고 2020 2036077 판결에서 치 제9호 위 으로 수감어 재판을 은 원고와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고, ② 서 고등법원 2021. 9. 17. 고 2021 2014364 판결에서 1998. 10. 17. 대 대생이 고 로 하행 에서 23 에 치 고, 현장에서 사 한 로 견 사건에서 통사고를 당하게 경위에 대한 경찰의 실수사를 인정하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사건 등이 있 니다.

○ 에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회장으로 한 시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하 니다.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5 소 세법 정으로 종 인 과세가 시 고, 정 소 세법은 2018. 1. 1. 시행 고 있 니다. 이는 공 과세의 원 , 세형 의 원 의 면에서 종 인 국민 소 에 대한 세 을 내야한다는 면이 고 법적 결단이 생각합니다.

○ 한 , 종 인 과세의 경우 과세소 의 위를 종 단 가 자 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실 적으로 실 세 이 다는 점을 판하는 주장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간 종 인에게 세 을 과하지 관행과 국민정서, 종 의 수성 등에 대한 고 필요하 로, 국회에서 분한 의와 를 사회적 합의에 결정할 사 이 고 생각합니다.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론의 자유로 형성과 을 통하 다수 의견을 약시켜 민주적 정치 서를 생성 유지시켜 가야 하 로 현의 자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현의 자유는 요한 헌법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 어야 합니다. 다 인의 사적 법 보호 어야 하 로, 현의 자유 보장과 인 권 보호 는 법 이 할 에는 적인 경우에 현의 자유로 어지는 가치와 인 권의 보호로 성 는 가치를 형 하 제의 과 법을 정하 야 합니다.

○ 대법원 론· 판의 자유와 보호 사이의 한 를 정 에 있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하고 관적으로 국민이 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사안에 관한 현이 론형성이 공 론에 기 하는 것인 경우 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화 어야 한다고 시한 있는 (대법원 2002. 1. 22. 고 2000다37524, 375331 판결), 기본적으로 판결의 지에 공감합니다.

○ 다 , 이른 '가 '와 이 의 적인 허위정보를 보 를 하 인 등에서 정한 인이 단의 지역, 성 , 등을 이유로 · 적 현 등을 과 하게 사 하는 것은 현의 자유로서 보장 는 한 를 넘은 것이 고 생각합니다.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65 는 대통 , 국 리, 국 위원, 행정각 의 장 등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의 소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 제1 이 정한 ‘ 심판 청 가 이유 있는 경우’를 ‘ 청 인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이고, 대통 에 대한 면결정은, ‘대통 의 을 유지하는 것이 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수 대통 이 국민의 임을 하 국정을 당할 자 을 실한 경우’에 정당화 수 있다고 시하 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 1 결정).

○ 보자 기본적으로 이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에 공감하는 장을 고 있 니다.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5·18 주민주화 은 헌정 서 에 서 시민 이 민주주의를 위해 지 가며 한 고한 의 를 가 사건 니다.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통치 를 정하는 치지 고 우리 사회가 적으로 아가야 할 향과 원 , 가치를 제시하는 본적 으로서, 정은 고 의 정치적 성 을 가지고 있 니다. 5·18 주민주화 의 헌법 수 는 분한 의 과정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 어야 할 사안이 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사회는 인이 가지는 가 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 시 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향으로 해 으 , 고민해야 하는 인권 현안 이 아 있 니다. 현안 에는 이주민, 아 · 청소 , 인, 성소수자, 성 등 사회적으로 약한 성원 의 요 가 있으며, 어 하 소 할 수 는 요한 과제 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지 은 사 의 력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해 관행 어 으 , 성과를 지 기 위해 지 적으로 력하고 현재의 해 을 하기 위한 이 이 어지지 는다면 인권 은 제 할 수 있 니다. 법원 사법 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 실 적 등, 재판청 권 등을 현하기 위해 각종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제 을 위한 력을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경 수사권 정에 관한 형사소 법, 찰청법 정안은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우 에 법 니다. 법 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결권을 해하 다고 판단하 지 법안 통과 자 는 가 아니 고 판단하는 등 적 정당성을 치열한 법적 분쟁이 있 니다.

○ 현재에 찰 수사 위를 하 수청, 공소청 과 관 하 정치권, 국민, 정 등에서 치열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법률의 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에서 수사가 지 잡한 사건에서 실한 수사가 이 어지지 는다는 우 가 있는 , 이 한 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1990 대 찰 에 고위공 자의 리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관서(이른 ‘고위공 자 리수사 ’) 치에 관한 의가 있 고, 2020 ‘고위공 자 수사 ’ 는 이 으로 법률안이 통과 어 고위공 자 수사 가 치 니다.

○ 고위공 자 수사 치 과정에서 은 론 보 , 사회 각 의 의견과 론이 있 고, 이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 이 성 것으로 고 있 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 고위공 자 수사 제 가 합헌이 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에 있 이 제 의 합헌성에 의 을 제기하는 견해 있는 , 향 과정에서 독립성과 립성을 유지하 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현에 할 수 있기를 는 니다.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판 심주의 형사사건의 실 에 대한 유· 의 심 형성은 공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 야 한다는 원 을 합니다. 2000 대 공판 심주의를 실 적으로 현하기 위하 공소장 본주의, 분리제 제 가 실시 니다. 현재는 공판 심주의가 실하게 현 고 있으며, 요 사건에서는 과 한 의와 인 청 등으로 인한 재판이 지 는 해 생하고 있 니다. 서 공판 심주의가 유 실해 다는 에는 의하기 어 니다.

○ 향 형사재판에서 시제 의 실 성 제고, 국 변호제 의 대· 화, 변호인의 의자 실 화, 해자 보호 해자의 권 보장, 주의를 화를 위한 사건당 심리시간을 분 보 등을 통하 공판 심주의를 실 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합니다.

○ 제가 대법관 보자로 제청 것 성, 이공 으로서의 경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경력이 대법원 판결에 다 한 가치관을 할 수 있으리 는 기대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를 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 인사 법 인 하 대법관 보 위원회를 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는, 법 대 원 제 와 법 원화 제 가 정 어 감에 법 인 아니 법관 성 자 다 해지고 있어 대법원의 다 성은 보다 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대사회는 대 분의 정보가 자정보의 형 로 생성·보관 고, 장 의 본 적 성 해당 에 에 관 정보와 지 은 정보 이 재 어 있을 수 에 으 로, 는 자정보 수·수 으로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대하게 해 우 가 당 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수사의 행성과 성을 고 할 심 의 대 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 는 것이 당하리 생각 니다.

○ 이를 형사소 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 것으로 고 있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이 의 , 국회에서 면 한 와 분한 의견 수 을 지혜로 결론을 기를 기대합니다.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이 장 를 결정 에 있어 실제로 과 의 경 에 있는 사건 이 다수 재합니다. 에 현행 제 하에서는 · 의 자 가능하 로, 의자의 어권을 보장 과 시에 해자에 대한 해 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 한 대 이 어 면이 있 니다.

○ 에서 재판을 을 수 있게 하 자장치 , 해자 지, 행 지, 약 등 사 지, 의 기관 치 는 원 등의 건을 과할 수 있게 다면, 의자의 어권을 보장하는 시에 해자 보호 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 21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 이 의 다가 기 것으로 고 있 니다. 22대 국회에서 건 장제 가 법화 기를 기대합니다.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헌법 제53 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 의 재의요 권과 재의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화 요건 하의 재의결에 른 법률안 정에 관하 정하고 있 니다. 이는 권분립의 정 하에 행정 와 법 가 호 견제와 균형을 이 게 하기 위한 우리 헌법 의 장치로 고 있 니다.

○ 사법 의 원이자 대법관 보자로서 대통 의 헌법 권한인 재의요 권 행사에 관하 적으로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국법관대 회의는 각 법원에서 한 법관 대 이 회의 행을 통해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관한 사 에 대해 건의하는 기 로, 사법행정의 성을 이고 법관독립에 관한 사 재판제 에 법관 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기를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법관대 회의 관 , 각 법원에서 법관의 대 성에 대한 제제기와 국법관대 회의 행 과정과 결과를 하게 공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각 법원의 대 정은 자 적으로 이 어지고 있고, 회의 화를 제로 공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식을 할 지점은 는지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가 2021 과 2022 국법관대 회의에 하며 로는, 국법관대 회의 의 이 우 에 사건 당 등에서 를 지 하 지원 인력이 한 점은 어야 할 것으로 보 니다. 한 국법관대 회의의 성 과 역할

이 정의 고 있지 은 점, 심 이 법원 로 법관 수
대 대 의 수에 가 점 등은 으로 고 어야 할 사
으로 생각 니다.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점 잡하고 다 해지는 사건에 대 하 재판 의 성을 화하는 한 재판 지 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 는 분이 있 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 회의에서 2020 우 적으로 법원 해사법원의 치를 하는 것이 당하다는 의견을 힌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재 위원회 와 이원화 어 있는 분쟁 해결 를 과 시에, 제의 실 성을 제고하기 위한 를 는 법원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위원회와의 관 를 어 게 정할 것인지에 제 적·인적·재정적 변화의 위가 게 지고, 에 치법원의 수와 지역, 형사사건의 관할 , 심제 등에 대하 다 한 견해가 있는 , 사회 각 의 의견을 수 하고, 를 으로 국회에서 심 있는 의를 법원의 치 적인 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니다.

○ 경법원에 대해서는 경사건이 해 이 어 고 적인 분이 아 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 우리 에서 아 적인 의가 이 어지지는 은 것으로 고 있 니다.

국의 주, 호주, 인 , 등은 경 제를 적으로 다 는 경법원을 것으로 고 있 니다. 이에 대해서 경 사건의 정의와 수건수 등의 분 을 통해 독립 법원을 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 하고 사회 각 의 의견을 수 하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합 관 정법(이하 ' 합법'이 한다) 제3 와 관 하 , 민사 책임이 면제 는 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해에 국한 고, 정당성이 는 쟁의행위는 법행위를 성하고 이로 아 해를 은 사 자는 합이 로자에 대하 해 을 청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니다.

○ 이 한 대법원의 해 은 "사 자는 이 법에 의한 단 는 쟁의행위로 인하 해를 은 경우에 합 는 로자에 대하 을 청 할 수 다."는 합법 제3 의 에 른 것이로, 대법원의 해 으로 인하 합법 제3 가 해 청의 가 다는 지적은 당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한 22대 국회에 해 책임이 면제 는 쟁의행위의 위를 대하는 내 의 법률안이 의 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분은 국회에서 사회 각 의 의견을 분 수 하 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공 을 위해 소 을 제기한 경우에 소자에게 소 을 률적으로 시 경우, 경제적으로 어 원고는 공 소 을 제기하기 어 고 적으로 공 소 이 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 분 수긍할 면이 있 니다.

○ 민사소 법 제99 , 제100 는 적인 소 제기를 고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 소 소자 주의를 기본 원 으로 하 , 적으로 소한 당사자에게 소 을 할 수 있 정하고 있 니다. 서 소 의 성 과 당사자의 지위 등 제 사정을 고 하 공 소 의 경우 소 을 소자에게 시 한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게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현행 '변호사 보수의 소 에 관한 '은 소 에 는 변호사보수 을 재 으로 감 하는 제 를 고 있 니다. 공 소 의 소 정에 있어서 이 정을 력적으로 적 한다면 공 소 소자의 을 화하는 안이 수 있을 것으로 보 니다.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법 원화제 는 사회적 경 과 이 한 사 을 법관으로 임 하 사회현 에 대한 은 이해를 으로 수준 은 재판을 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기 위한 제 니다. 이 한 법 원화제 의 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 , 법관 임 자 을 화하는 것 으로 국민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법관을 당 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법 원화제 를 성공적으로 정 시 기 위해서는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을 분 보하고, 법관 보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를 하 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을 지 는다면, 법 원화제 의 장점은 사 지고, 사건 리의 성 해 어 재판지 등 각종 제가 심화 수 에 니다.

○ 법원에서 안 법 원화 정 을 위한 제 과제에 대해 · 해 것으로 고 있 니다. 지 10 간의 제 시행 경과를 으로 향 제 가 지에 게 정 어 갈 수 있 와 를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대사회는 대 분의 정보가 자정보의 형 로 생성·보관 고, 장 의본 적 성 해당 에 에 관 정보와 지 은 정보 이 재 어 있을 수 에 으 로, 는 자정보 수·수 으로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대하게 해 우 가 당 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수사의 행성과 성을 고 할 심 의 대 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 는 것이 당하리 생각 니다.

○ 이를 형사소 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국회에서 분한 의를 른 제 가 기를 기대합니다.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우리 의 안보 의 수성 역사적 경을 고 할 , 국가보안법 지 에 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는 국회에서 이 한 국민 의 다 한 의견을 분 하 법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지 지 은 이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 합헌결정을 은 현행 법률을 하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 우리 는 과 국가보안법이 아 과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제 적이 있 ,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 하는 경우 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지 치게 해 지 형법정주의 의 원 에 적 제한 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2018 과 사회적으로 요한 화 로 른 '성인지 감수성'은 성 균형 을 인식하고 안에서 성 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한 이 한 제점을 해 낼 대안을 아내는 능력을 합니다. 법관에게 요 는 성인지 감수성은, 해자가 성 력 등 해 당시 에서 보이는 을 가 한 물리적, 사회적 성 의 하에, 는 심리 에서 하는 ' 의 (power of context)'을 고 하 가 으로써, 해자 의 성 판단을 치지 아니하고 정 하게 사실인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고 생각합니다.

○ 서 해자의 을 이해할 능력과 의사가 하 는 해자다 을 한 지 해자의 행 이 에 지 는 다는 이유 으로 경 에 어 다고 보아 해자 의 성 을 하는 것의 위 성을 경고하고, 사실 인정을 에 있어 당사자의 과 어를 사회적 에서 정 하고 하게 이해하 야 이 을 고 가치를 판단하는 이 가능할 것이며, 야 공정한 재판이 실현 것이 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18. 4. 12. 고 2017 74702 판결 2018. 10. 25. 고

2018 7709 판결에서 성 ·성 력 관 사건의 해자 의 성을 판단하는 기준 하 로 '성인지 감수성' 을 제시하고, 한 최 대법원 2024. 1. 4. 고 2023 13081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이 성 해자 의 력을 관적 정 이 다른 경 등에 에 제한 이 인정하 야 한다 , 에 해당 공소사실을 건 유 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 는 아니 는 점을 하 니다. 이는 기 성인지 감수성 관 판 에 치 는 지는 아니며 정의 원 에 른 시 고 생각 니다.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기 , 단 등 당사자 이 대한 자 를 소지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 를 의 가지고 있지 은 의 재 현 이 심화 고 있 을 감하고 있고, 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식을 가지고 있 니다.

○ 의 재 현 을 해소할 안 하 로 리 제 의 을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 제 는 로 사 자 에 대하 당사자 에게 위한 을 허 하 , 공정한 경쟁이 이 어 수 있 하고 의 재 현 을 화하는 을 수 있기 니다.

○ 국의 에 의하면 리 제 를 통해 회사 단 내 의 정보가 사회에 공 으로써 사회가 해지고 회사 단 내 의 합리한 분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소 의 면 이 아니 사회 의 성을 하는 면에서 리 제 가 과적인 법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리제 가 소를 하 대 의 를 위해 수 있다는 우 가 있으 로, 이를 식시 수 있

인 제 , 대 이 제 한 자 를 다른 적으로 하
제3자에게 유 할 경우의 제재 등 필요가
있 니다.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은 자가 의 하지 은 은 력이 과 면서 을 제어할 수 는 현 으로 고 있 니다.

○ 사고가 소 자의 과실인지 자 의 결 으로 인한 것인지 에 원인을 하는 어 을 고 있으며, 자 결 에 대한 책임이 해자에게 있는 에서 현재 지 관 과 적 이 분하지 다는 이유로 제 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최 생한 사고를 기로, 자 를 정 적으로 행하 생한 사고와 관 하 결 에 대한 책임을 제 사가 지 하는 내 의 제 물책임법 정안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자 의 잡한 적 성 가가 아 소 자가 제 물의 결 을 하는 것이 사실 가능하다는 점을 고 한 것으로, 법률안의 기본적인 법 지에 공감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이 정 대법원 판결에 관하 적인 의견을 리는 것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건에 관하 대법관 보자가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경제 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정경제 법’)은 이 이 5 원 이 이면 3 이 의 유기 역, 50 원 이 이면 기 는 5 이 의 역에 하 하고 있으 , 이 한 가 은 가 ‘ ’의 관 에 있는 경우에 가능하 로 수 에 해당하는 다수 해자 을 대 으로 한 세사기 에 대하 는 가 이 가능합니다.

○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종 유사 수법의 행에 관하 는 에 해당하지 는 경우에 해 을 합 하 가 하 하 하는 법률 정안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이는 수, 기판력 등에 관한 형사법의 간을 는 것이 로 경합 관 의 수 를 로 에 른 기판력의 위(면소 는 의 위), 공소장변경의 허 , 가기소 가능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심 적이고 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형법 사기 의 법정형을 향하는 안 고 해 수 있겠으 , 유사한 법정형을 다른 와의 형 형 의 정합성 등 사정을 다각적으로 하고 분한 사회적 의를 법정책적으로 결정 어야 할 사 이 생각합니다.

○ 한 , 사기 형기준은 2011 정·시행 이 권고형
위가 수정 지 아 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른
이 국민인식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고, 최 형위원회에서 심 지 을 최하고 형실 에 대한
사와 분 을 행하는 등 사기 의 형기준의 형 위
형인자의 수정하기 위한 의 에 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형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하 공정하고 관적인
형기준을 정하 것으로 생각합니다.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행정 판사화 정책은 법관의 관 화 경향을 해소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에 할 지가 있다는 해를 식시 는 분 이 면이 있 으 , 한 으로 재판 경 과 법률적 지식을 판사가 당해야 할 재판지원과 재판제 역 이 약화 는 제가 생하 것 사실 니다.

○ 사법 의 본 은 하고 공정하며 실한 재판을 하는 있고, 이는 재판을 당하는 법관의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가능한 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원행정 에 적정한 수의 판사가 치 어 사법행정 를 당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행정의 재판지원 역 을 화하면서 시에 재판의 독립을 실 적으로 화할 수 있 , 사법행정제 에 대하 장기간에 와 의 에 른 시 이 지 적으로 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헌법 제109 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의 안 보장 는 안 서를 해하 한 을 해할 가 있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심리’이지 판결은 아 니다. 판결을 적시에 공 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성을 제고하 사법의 책임성을 화할 수 있을 것 니다.

○ 위와 은 헌법 의 판결 공 의 원 은 판결 의 공 이는 정할 수 는 것이어서, 판결 은 공 할 경우 당사자의 이 시를 게 해할 수 있는 가사, 소 사건이 , 정의 원 에 위 수 있는 정 형사 판결이 아 한 원 적으로 고 지 이 리고 면적으로 공 어야 한다는 것이 보자의 의견 니다.

○ 다 , 법원의 판결 제공의 가 는 민사소 법과 형사소 법 정에 의하 공 는 판결 의 시적 위가 제한 어 있고 인정보가 공 지 아니하 실 리를 하 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한 판결 을 열 하 할 것을 우

하 , 판결서 인 열 서 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건당 1,000원을 고 있 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판결 공 에 소 적인 것 보 지 있 니다.

○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현재 정 시점 이 의 판결 을 열 대 을 정한 민사소 법, 형사소 법의 해당 을 사회적 의를 위를 대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에 의하 , 실 화의 위를 으로 정하고(인의 주민 등 호, 주소지, 생 등 실 화하고 인의 성 과 법인은 실 화 대 에서 제), 이를 넘어서는 분의 실 화는 고 당사자의 열 제한 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는 의 으로 해당 분을 실 화 내지 열 제한 치를 하며, 위와 은 실 화 치 등을 한 경우 판결 공 로 인한 법원과 성원 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률이 다면, 판결 공 가 원 해 것으로 보 니다.

○ 아 법원으로서 행력과 기판력의 준이 는 당사자의 인적사 이 기재 분과 본 분을 분리하 판결서를 성하 , 자는 권한있는 자에게 공 하 , 자는 면 공 하고, 민감한 사실관 는 가 적 판결서에 기지 는 등의 력 행 어야 할 것 니다.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 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은 안 ·보건 치의 를 위하 인 해를 생하게 한 사 주, 경 책임자, 공 원 등을 으로써 대재해를 하고 시민과 로자의 생 과를 보호하기 위한 적으로 제정 어 2022 시행 고 있 니다. 보자는 기 등의 이 과정에서 자의 안 과 생이 경시 는 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 법의 법 지에 공감하고 있 니다.

○ 다 위 법에 대하 는 사고에 적으로 관 하지 은 자에 대하 책임주의원 에 하 과 한 이 이 어 다는 판이 있고, 면 법 시행 에 사 주에 대한 의 수위가 아 지 과가 다는 지의 대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위 법률은 시행 지 약 2 에 지 지 아 아 판결 고 건수가 지 아, 위 법의 과가 있는지 를 단정 기에는 이 다고 생각합니다. 위 법 시행으로 인한 과 안에 대하 다 한 가 행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향 판결가 적 고 관 가 분 이 어지면, 국회에서 국민 의 의견을 분 수 하 제 적 안을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수 장 당 법관 이 사건에서 의 소 정 등을 하게 고 하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수·수 장 이 적 고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이 있는 것 고 있 니다. 서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수·수 장은 적 수사 기 단 보를 위하 청 로, 청 를 기각하는 것보다는 의 유 를 인하 기 위해 수수 의 대 필요하 과다하게 청 분 을 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 하는 경우가 으며, 이와 이 장을 기각 은 10%에 이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장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수 의 필요성이 분 소 는지 면 심사할 필요가 있 니다. 장실 에서는 청 는 수수 장의 수가 지 치게 은 경우 실한 심리를 하는 에 당한 어 을 니다. 법관 이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 게 고 할 수 있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제 적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 , , 해자 위해 우 가 있는 의자에 대하 적시에 을 보 으로써 실 실 을 하고 2 해를 지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요한 기능 하 고 할 것 니다.

○ 다 우리 헌법은 정의 원 을 하고 있고(제27 제4), 형사소 법은 수사의 원 을 시하고 있 니다(제198 제1). 서 고인의 어권을 실 적으로 보장하고 으로 인하 실 적 실 견이 지 을 수 있 하는 것 역시 우 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 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법관으로서는 장심사를 에 있어 의 필요성과 고인의 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 있고 하게 형 하는 것이 우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우리 형사사법제 의 제 하 는 국민의 관심과 수사기관의 역 이 지 치게 에 어 있는 점이 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 로 정 는 고인이 본안재판을 기 에 론에 의한 유 정을 고, 로 인하 어권이 심각하게 제약 에서 재판에 임하게 며, 을 위하 쟁을 기하는 등 실 실 이 생하기 합니다. 한 형사사법의 심이 장단 에 어 정 가장 요한 본안재판은 다른 주 을 지 하는 정 적 이 는 제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서 고인의 , 인 해자 위해 가능성을 최대한 제하면서 시에 고인의 어권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분 보장할 수 있는 향으로 제 가 적정하게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건 장제 을 통해 정한 건(자장치 , 해자 지, 행 지, 약 등 사 지 등)으로 을 대 할 수 있 한다면, 정의 원 과 수사의 원 을 하고 의자의 어권을 보장하는 시에 해자 보호 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장 고제 가 는경우 장재판의 본안화 심화, 의자의 지위 안정, 적 심이 소 등 다른 제 와의 등에 어 은 제점이 생할 수 있어 장 고제의 단독 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장 고제 을 단독으로 하 , 적 사안의 내 , 수사의 경과 수사 장실 심사 에서의 의자 등에 우 는 장재판의 성 관적 기준의 립이 는 장고제의 지를 성할 수 있을지 의 이 있 니다.

○ 현재 찰은 장이 기각 경우 재청 할 수 있고, 의자는 적 심을 통하 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을 수 있으 로 장 고제의 필요성이 지 기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 는 법 에서 보 이 수사의 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의자 의 사정(해자와의 합의 등) 와 을 것이 로, 변화에 장을 재청 하 적 심을 청하는 것이 과 의 기각 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 를 는 장고제에 해 실 이 있을 것으로 보 니다.

○ 장 고제를 한다면 장 와 기각이 는

단적인 판단을 지 할 수 있 건 장 제 와
하는 것이 한 향이 고 생각합니다.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이 장 를 결정 에 있어 실제로 과 의 경 에 있는 사건 이 다수 재합니다. 에 현행 제 는 · 의 자 의 가능하 로, 의자의 어권을 보장 과 시에 해자에 대한 위해를 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 한 대 이 어 면이 있 니다.

○ 대 분의 국에 재하는 건 장제 을 통해 정한 건(자장치 , 해자 지, 행 지, 약 등 사 지 등)으로 을 대 할 수 있 한다면, 정의 원 과 수사의 원 을 하고 의자의 어권을 보장하는 시에 해자 보호 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아가 공판 심주의를 실현하고, 인 제 의 관성· 성을 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 있을 것 니다.

○ 이 분에 대하 21대에서 법안이 의 다가 임기 로 기 것으로 고 있는 , 22대 국회에서 법이 이 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 게 제 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다 한 법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으로써 기소기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 통제를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화할 수 있다는 성론이 있는 면, 대 수사의 공 이 생기고 실수사로 인해 국민의 해가 어 다는 대론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이 분은 국회에서 의를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이 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경 수사권 정이 기소권한 분에 관하 는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법이 고, 현재 수청, 공소청 과 관 하 정치권, 국민, 정 등에서 치열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이에 대하 는 국민, 사회단 , 찰, 법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과 론 등을 통하 각 각 의 분한 의견수 등을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 법원 재판에 향은 ‘ 대 수사청’의 지위, 역할, 수사 대 등이 적으로 어 게 결정 에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다 의 수사기관을 립하 사회 안 보호를 위한 수사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 유지하는 한 의자의 기본권 보장에 소 이 제 가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대통 의 사면권은 헌법에 정 제 로, 대통 은 국민 통합, 국가의 이 , 인권 등 다 한 적으로 사면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니다. 다 사면권은 제 의 본 적에 게 행사 어야 하고, 법치주의 권력분립을 하는 식으로 행사 어서는 안 것 니다.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시행 등이 법의 위임 위를 어 다면 의회유보의 원 에 하고 의회의 법권을 해하 권분립에 한다고 할 것 니다.

○ 시행 등이 법의 위임 위를 어 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 , 대법원은 "하위 법 이 정한 내 이 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로 하 야 하는 본 적 사 으로서 의회유보의 원 이 지켜 야 할 역인지, 당해 법률 정의 법 적과 정 내 , 정의 , 다른 정과의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야 하고, 위임 정 자 에서 의 내 을 정 하게 수 있는 어를 사 하 위임의 한 를 분 하고 있는 적 의 의 한 를 어 는지 , 하위 법 의 내 이 법 자 로 위임 내 의 대 을 할 수 있는 위 내에 한 것인지, 수권 정에서 사 하고 있는 어의 의 를 넘어 위를 장하 소하 서 위임 내 을 화하는 단 를 어 로 법을 한 것으로 가할 수 있는지 등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 니다(대법원 2015. 8. 20. 고 2012 23808 원 합의 판결).

○ 해당 시행 이 의 위임 위를 어 인지 는, 위와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판단하 야 할 것으로 보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정 행정 법이 인지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보자는 2011 성 법관으로는 으로 서 지 법원 장 판사 를 하며, 사유의 필요성, 당성 등이 한 장 청 에 대해서는 기각한 사 가 적지 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이 적인 사건을 하는 것은 적 하지 을 이해하 주시기 니다.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 고인에게 실 적인 이을 으로써 소 재 권을 현 하 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력을 인할 수 있으, 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 은 단 의 과실에 의한 것 으로는 하고 적어 필적이 어 의 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고 2014 10199 판결 등)는 것이 대법원 판 의 장 니다.

○ 보자는 2002 제주지법, 2010 서 지법, 2015~2016 서 고법에서 형사재판을 당하 고, 고인 에서 공소권 을 주장한 사건이 1~2건 있 으 , 위 대법원 판 의 법리 사실관에 어 실제 사가 공소권을 한 사 로 보기 어 주장을 아 이지 것으로 기 합니다.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대법원은 지난 '23.1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임. 이중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24년 상반기(1월~5월)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72.3%에 달해 사실상 3심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함

66-1. 가사 사건의 경우 '24년 상반기 82.3%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일반 민사 사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원에 수 는 사건수가 당 은 점을 고 하면, 사건에 대하 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니다. 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하 면 고제 를 본적으로 하지 는 한, 심리 행 제 를 유지하는 것은 가 한 면이 있 니다.

○ 가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보다 법률적 쟁점이 다 어지기보다 사실관 재 분할 , 위자 수가 쟁점인 경우가 고 이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사 이 아니어서 심리 행 이

은 것으로 니다.

○ 다 , 심리 행 제 에 대한 의 판이 있는 심리 행 제 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어 심리 행 제 에 하고 과 한 에 있는 고심이 본 의 기능을 회 할 수 있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등의 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국민의 재판 을 권리를 실 보장하는 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 분 기 위해서는 보다 하 심 화 를 통해 재판에 대한 률을 이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하 심을 화하는 한 , 심리 행 제 를 한 에서의 고제 안에 관한 · 지 할 필요가 있 니다.

66-2.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상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기능을 수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사제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우리 는 국과 리 고허가제가 지 아 사건에 대해 고가 허 고, 로 인해 대법원에 수 는 사건수가 아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점을 고 하면, 사건에 대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하 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은 가 한 면이 있 니다.

○ 다 , 심리 행제 에 대해 의 판이 있는 심리 행제 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21대에서 의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는 민사소법 정 등 법적 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서면질의】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일반적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깨고, 위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 위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조된 건은 아닌지, 작성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출처를 신뢰할수 있는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민사사건 가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제 한 의 성과 력을 면 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 는 공감합니다.

○ 통 보호법 제14 제1 은 지 공 지 아니한 인간의 대화를 할 수 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민사, 가사사건에서 법감청에 의하 화통화 내 은 제4 에 의하 능력이 다고 판시하 것으로 고 있 니다.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헌법 정과 관 하 다 한 의가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고 의 정치적 제에 관하 대법관 보자가 적 의견을
는 것이 심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원론적으로, 현행 헌법 정 의 시대적 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기본권 보장이 는 헌법의 사 을 실 다할 수 있는 향으로 국민적 합의 하에 헌이 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68-1. 필요하다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은 무엇인지?

68-2.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현행 헌법 제정 이 우리 사회가 이 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성 와 변화를 하 헌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헌법은 국가의 간을 이 는 가장 요한 위법이 로, 정 와 정 향은 국민의 은 이해와 지지를 기 으로 결정 어야 하고, 국민적 결단과 합의를 어 하게 결정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고 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제에 대하 세하게 리는 것이 적 하지 으 , 원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하는 향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치 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실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 현 수 있 하는 향으로 정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3. 개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을 성 에 있어 사법 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해야 한다는 지에 공감합니다. 헌법에 정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사법 의 정치적 립성 독립성 보를 위한 것 아니 법·행정·사법 3 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주요 헌법기관의 공정한 성에 할 수 있 하 는 지에서 것으로 보 니다.

○ 한 ,「헌법」제104 제2 에 른 대법관 제청에 관하 각 의 인사로 적이고 다 한 의견을 수 하기 위하 「법원법」제41 의2 2011. 9. 16.자「대법관 보 위원회 」의 제정을 통해 대법원 하에 대법관 보 위원회를 이 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한, 대법원장은 사회 각 각 으로 대법관 보를 은 다 , 사회 각 를 대 하는 분 로 성 대법관 보 위원회의 정한 과 심사를 최종 보자 에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의사가 것으로서 것이 지니는 민주적 정당성이 지 니다.

○ 다 , 대법관 보 위원회 성에 관한 를 헌법에 는 것

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분으로 향 가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4.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기고 대신 징계나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대법관의 임기를 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이 고 생각합니다.

○ 한 현행 헌법 제106 제1 “법관은 는 고 이 의 형의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 지 아니하며,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지 아니한다.” 고 정하는 , 대법관을 한 법관의 분보장이 재판의 독립 실현에 있어 는 의 를 고 하면, 해임이 가능하 하는 헌법 정은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 이 있으면 , 이 으면 유 ’ 는 이 아 우리 사회에서 행하는 현실을 안 게 생각하고, 사법 에 은 보자로서 게 아 니다.

○ 과 를 지른 경우에 재 이 분하면 변호인을 임하 분한 법적 력을 고, 재 이 으면 변호인을 임하지는 하는 것은 물론 해자에게 해를 회 하고 원 한 합의를 하는 것 어 형에서 한 유리한 정 하 대적으로 을 게 현 이 당기간 지 어 것이 현실 니다.

○ 국 변호사제 를 통한 변호인 력권의 대, 형 사제를 통한 실 적 형자 의 수 등 경제적 에 른 형가 사법정의를 하지 법원 안 제 적 을 해 으 , 으로 각고의 력을 기 이 한 이 역사의 유물로 사 수 있기를 합니다.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경권 보장과 기 변화는 인간의 과 가치에 결 는 요한 제 니다. 최 기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 하는 에 이 고, 우리 에서 다 한 형 의 경소 이 제기 고 있는 경권 보장을 위한 사법 의 역할이 점점 요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에서 다 한 형 의 경소 이 제기 고 있고, 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 소 에 관한 공 변론을 행하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경소 은 당사자의 권리 제에 치지 고 요한 정책 변화, 경 보호에 대한 인식 등 분야의 을 가 수 있으 로, 사법 에서 국제적 향과 판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통찰하 판단할 수 있 기 역 을 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 내 경법분야 회 등 분야 니 를 통하 경 관리 법리에 대한 심 적 가 이 어지는 것으로 고 있고, 법관 수 로 인 것으로 고 있는 , 이 한 력 이 지 고 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국가의 정책이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 법률을 해하고 적 할 경권이 분 보장 할 의 가 있다

고 할 것 니다(대법원 1995. 5. 23.자 94 2218 결정). 경
보호는 우리 세대에서 는 제가 아니 로, 세대에 적
하고 지 가능한 생 을 물 수 있 안 과 은
시야를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최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고 에서 법관 인을 공 하고 하는 경우가 있 니다. 물론 사법 의 재판권 국민으로 은 것이고, 판결에 대한 의견 은 국민 의 법감정과 변화하는 가치관을 할 소 한 통로가 다는 점에서 건 한 판을 장 어야 하는 면 있겠 니다. 판결 내 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의 독립을 해하는 결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 사회가 게 인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위와 은 행위로 인하 사법 에 대한 국민의 가 당하게 우 가 있으 로, 사법 는 이에 대하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

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 인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법관이 사법 내· 로 당한 향을 지 재판 심의 사법행정제 , 법관 인사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는‘ 간 보(百尺竿頭 進一步)’,‘ 이 을 자 이 사 하 ’는 을 우 으로 아 니다.

○ 법관으로서, 한 인이자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에게 주어 에 최 을 다하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한 을 내 고자 력하 니다.

○ ‘ 이 을 자 과 이 사 하 ’는 은 분 실 하기 지 지 , 이를 다 하면서 이 이에 가 의 에 가 지고자 력하 니다. 법관에게 필요한 것은 법리에 대한 해 한 지식과 론능력, 유 한 장으로 판결 을 성할 수 있는 능력 은 아 것 니다.‘ 이 을 자 과 이 사 하는’ 으로 재판에 임할 , 분쟁으로 은 당사자 의 을 아 사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 법정과 기 에서 주하는 당사자 의 소리에 기 이며 감하는 한 재판을 실 하고자 최 을 다하 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는 국 대법관으로서 생 성과 소수자 인권의 장을 위해 헌 한 이 (Ruth Bader Ginsburg)를 경 합니다.

○ 대법관은 과 소 로 고통 는 성과 소수자를 위해 생을 헌 하 니다. 대법관은 대의견을 이 것으로 유 하지 " 의 가 아 시대의 기 를 고 한" 통찰력과 합리적 론, 수 적 의사소통을 통해 와 다른 생각을 가 대 을 기고 분하게 으로써, 위에 지고 는 이 아니 종이를 서서 물 이는 물감과 이 견고한 의 시대를 변화시 니다.

○ "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위해 . 하지 다른 사 당 을 할 수 있는 법을 아 "는 의 은, 어 한 과 변화 은 시대를 호 하는 사 의 공감 에서 와 갈 이 할 수 있다는 의 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으로 할 수 있게 다면, 다 한 견해를 하면서 가 공감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사회에 법의 정 과 가치를 리 내리는 기 하고 니다.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는 우리 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 의 기 을 으 가인로 생 을 경합니다.

○ 의 아호인 '가인(街人)'은 ' 를 기 에는 하는 리의 사 '이 는 으로, 는 제 점기 한 현실 에서 한 과 민 의식으로 은 독립 가를 로 변론하고, 대법원장으로 재 하는 안 어 한 에 하지 고 사법 의 독립을 지 기 위해 헌 하 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는 27 의 법관 생 안 수 은 한 법관, 법 인 을 고 경하며 장점을 우기 위해 력 해 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을 경하고, 분 법관으로서 의 자세와 가 을 니다. 재판관 은 제가 사법 수생 시 지 수 으로 게 어 법 인의 을 한 가 을 주 고, 이 재판 에 실 화하면서 재판실 와 법리에 대해 지하게 고민하고 하는 을 통해 공 하고 력하는 판사의 을 소 보 주 니다. 에 수로 을 성하시고 성 등을 위한 다 한 에 헌 하는 을 통해, 의 은 이 어주고 다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최 의 성대법관이 대법관 니다. 대법관 은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 등을 지향하는 기 적인 대법원 판결이 는 기 하 니다. 2010 세 성법관회의 서 최를 하고 성공적으로 회의를 으로써 우리 사법 의 국제적 위 을 이고 성 법관 의 역 과 리 을 어 리 니다. 대법관 임 에 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청 지법이 제정 는 기를 하 고, 에 형위원회 등 공 을 위한 에 헌 하고 니다.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대법원은 헌법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다수결의 원이 지 하는 법의 역과 리 법치주의에 각하 국민의 권리 제와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 야 합니다.

○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 성과 이를 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 보장하고 니다. 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사 을 다하기 위하 이 시대가 법원에 요 하는 것이 인지 하고 다 한 의견을 경청하 ,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니다.

○ 사법 의 본 인 재판 와 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에 과 기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가 하 니다. 는 이공 이자 지식재 권법에 대한 성이 있고,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사법 가 어 한 향으로 아가고 준 해야 하는지 고민해 니다. 사법 가 변화하고 하는 지 사회와 인공지능을 수 하 하고 실한 재판을 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성을 향 시 수 있 의 을 다하고 니다.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 의 국민 이 각자의 행 을 하며 을 위해가는 과정에서, 필 적으로 인의 자유와 권리의 경 와 하게 는 제가 생하게 니다. 법관은 사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 판결을 통하 위와 은 권리 제, 분쟁 해결을 당하는 역할을 다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성하는 원으로서, 헌법이 과 원리에 각한 최종적 법 해 을 통하 국민 생 에 요한 의 를 지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적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각하 국민의 권리를 제하며 법 서를 유지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 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 아니 향 법원에 수 수 있는 재적 사건에 향을 다는 점을 유 하면서,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 을 다하 야 할 것 니다.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자 로 책을 기에 하다는 점을 고 있 니다. 다, 보자는 법원에 27 간 으면서 사건에 정성을 아 헌법과 법률에 공정하고 실한 재판으로 국민 에게 보 하고자 력하고, 보자의 경 과 지혜가 하 사안의 본 을 통찰하는 을 리지 하고 정 하는 자세로 아 니다.

○ 인사청 요청사유서를 통해, 재판지 이 심화 고 있는 어 건 에서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의 를 회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에 소수자·약자의 권리 지 실 보호하 사회를 통합하며, 인공지능 시대가 하는 에서 사법 가 아가야 할 향을 준 하는, 어 지 시 해야 하는 대법관의 역할과 사 에 대한 기대를 다시 인할 수 있 니다. 이공 이자 지 적인 와 실 를 통해 보자의 성, 사법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다 한 가치를 할 수 있는 열린 가치관 등 보자가 점이 고 생각하는 요소를 재 아, 헌법이 한 사 을 다하는 ‘ 하는 사법 ’, ‘국민의 고 사 는 사법 ’가 수 있 의 을 다하겠 니다.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보자는 과시간 에 독서를 게을리 하지 으며 법관으로서의 인관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 위해 력해 니다. 기 에 는 책이 으 , 최 에 읽은 것으로는 리 , 에 , 대니 허 로 공 의 'AI 이 의 세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가 가장 기 에 니다. 이 책은 AI의 을 역사, , 국가와 세 서, , 리의 에서 고찰하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지 고 시민을 보호하며 를 보하기 위해 해야 할 AI 에 관해 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 니다.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리 , 에 , 대니 허 로 공 의 'AI 이 의 세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를 합니다. 한 유 하 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 '과 형 사법정책 원장 의 '재판으로 읽는 세 사' 필독서로 합니다.

○ 소 로는 한 가가 5.18. 주민주화 을 인물 의 심과 고통을 한 현 에 어 '소 이 다' 니다. 한 최 의 성 력 장으로서 자 의 경 을 적은 '형 사 ' 자 의 에 실한 경찰관의 을 통해 형사사법 를 당하는 보자의 리를 수 있는 책으로 감 게 읽 기에, 에게 독을 하고 니다.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적으로 ‘세 에서 하다고 인정 는 이 이 자 , 는 이 위’를 의 하는 것으로 이해 고 있 니다.

○ 대법관의 지위에 는 것은 법 인 아니 국민 에게 ‘ ’로 인식 고 있 니다. 이는 ‘책임’과 ‘소 ’의 다른 이 으로 아 이며, 이를 지 기 위해 한 자기 제와 각고의 력, 한 헌 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다 하고 있 니다.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성원이 자 의 행 권을 한다 한 기본권을 자유 게 행사하면서 공 의 다른 성원과 생하고 공 할 수 있는 경 를 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당해야 합니다.

○ 법관의 최대 사 은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 원 에 각한 실한 재판을 하는 것 니다.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고, 사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 판결을 통하 권리 제, 분쟁 해결, 적 가치 기준 제시의 역할을 다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법관의 본분을 다한다면, 위 당 사 와 관 이로를 다고 수 있을 것 니다.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회 는 이 기보다 아 게 생각하는 이 있 니다.

○ 2012 ~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자는 한 사 이지 , 법원에 27 간 으면서 사건에 정성을 아 헌법과 법률에 공정하고 실한 재판으로 국민 에게 보 하고자 력하고, 보자의 경 과 지혜가 하 사안의 본 을 통찰하는 을 리지 하고 정 하는 자세로 아 니다.

○ 적어 보자가 로를 가하기에는 가 실 는 은 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의 은 분야와 자에 다 하게 정의 는 것으로 고 있으 , 인적으로는 ‘ 사 에게 고 공 한 기준을 공정한 를 통하 적 으로써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는 과정’을 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의 한 자 이 은 서에서 ‘정의’의 에 대해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 주의의 관점에서 정리를 시 하 적인 인기를 기 하 니다.

- 이와 이 ‘정의’를 갈 하는 국민 의 소리에는, 우리 사회가 고 한 원 에 의하 고 소수자의 의견 면 지 으며 각자의 력과 헌 에 른 정당한 이 주어지기를 하는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적·다각적이고 시대에 임 이 변화하는 ‘정의’의 내 을 하고 적 하기 위해서는, 열린 으로 성찰하고 하며 임 이 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적인 의 의 ‘정의’를 넘어 국민 이 사법 에 는 정의는 종의 ‘사법정의’ 고 할 것 니다. 이 역시 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 것이지 , ‘공정한 와 공 한 기준이 적 는 재판 과정을 통하 법의 지 를 립하고, 행위에 하는

가능한 법적 결과가 어, 분쟁이 해결 고 사회가 통합
는 과정 는 한 '를 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정의를 실현하 면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하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의 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고 있 니다.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의 에 대한 다 성 이 , 실현 법에 대한 각자의 생각 다를 것 니다.

○ 다 ,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며, 다수의 성에 수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지 보호 으로써, 실 적 법치주의를 현하 야 합니다.

○ 국민이 법을 고 의지하며 가치를 의 준 으로 아 에 행 하는 것이 자 , 로소 정의가 실현 다고 할 수 있을 것 니다. ‘정의’는 물 있는 정한 가 아니 , 법원을 한 우리 사회 성원 가 임 이 점 하고 성찰하 아가야 할 지 가 다고 생각합니다.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사회의 잡화, 다변화 경향과 정치적·이 적인 의견 대립이 심화 면서, 정치적으로 요한 의제를 민주화의 공론의 장인 사법적 과정을 통해 이 어지는 이른 '정치의 사법화' 현 이 고 있 니다.

○ 보자 인적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는 법의 지 를 공고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 , 대의 민주주의를 으로 한 정치의 역에서 대화와 을 통해 원 해결 어야 할 제로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한 현 은 아니 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분쟁 해결의 성 원 적으로 단적인 결론이 게 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의' 실현을 시 하는 경향이 적 면, 과 론의 대 인 대 을 고 의 관점에서 보게 어 자 의 의견은 시 관 어야 하고 지 은 결과는 정의 지 하다는 관 에 우 있 니다.

○ 이 수 , 재판이 는 수단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사 을 은 법관으로서는 소 을 고 법과 심에 른 재판을 하 야 할 것 니다. 한 정의 실현의 최 보 인 법원이 정치적 립성 에 리지 , 법원 안 에서 한 건을 성하기 위해 력하 야 할 것 니다.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성원이 자 의 행 권을 한다 한 기본권을 자유 게 행사하면서 공 의 다른 성원과 생하고 공 할 수 있는 경 를 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당해야 합니다. 아가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과 책임 지 다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은 사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 판결을 통하 위와 은 권리 제, 분쟁 해결, 적 가치 기준 제시 역할을 다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는 주어 사건에 성의와 정성을 다하 가장 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 을 다하 니다. 당사자의 을 경청하고 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 는 판사, 단의 판결이 아 의적인 해결 안을 기 위해 력하는 판사가 기 위해 력하 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 로 법관으로서 점수를 주는 것이 적 한지 겠으, 굳이 가하자면 90점을 주고 니다.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보자는 2006~2007 법원행정 소 정보화심의관으로 할 당시 수 의 원 보다 은 주 원 을 이 고 법관과 원 의 요 를 해가며 각종 시 을 당하 으며, 기 정실 소 으로 사법행정의 현장을 경 할 수 있 니다.

○ 한, 법원행정 에서 주관하 소 법원 내 에 장 는 원으로 하 법원내 각종 현안에 관한 안을 하 고, 2010 세 성법관회의, 2013 한 지재소 , 2023 허법원 국제 등 대형 국제회의 유치, 기 , 에 관 하며 행정사 를 니다. 법 회 , 인공지능 회 립 등 보자의 재판 로 당한 기 에 는 니다.

○ 보자 로 점수를 주는 것이 적 한지 겠으 , 굳이 가 하자면 85점을 주고 니다.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법행정 역은 재판권 행사를 제 한 역, 법원의 , 법관 인사 등 각 법원과 법관 에게 민감한 사 지 하고 있 니다. 법원행정 가 아 다른 의 사법행정기 에서 이를 당한다 하 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수 있 니다.

○ , 사법행정으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는 사법행정을 당하는 주 가 인지의 제가 아니 , 사법행정 역과 재판사 의 한 분리, 법관의 관 화 지, 사법행정사 의 성·민주성 보를 실현할 수 있는 법론의 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사법행정기 를 는 것이 사법 의 민주성과 성을 제고하는 것에 치지 고 사법 로의 향력 행사와 의 통로로 어 사법 의 독립을 해할 우 있다는 점에서,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고 재판제 를 으로써 사법 의 재판 기능을 원 하게 과 시에 사법 의 독립 한 실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사법행정의 와 본 면에서 , 원 법관으로 성 사법행정기 의 형 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행정기 치안의 단 가 유 각국의 사 를 보 사법행정기 의 성원이 이 법관으로 성 어 있 니다. 이에 관하 유 의회는 2010 “법관 독립· 성 책임성에 관한 권고”에서 사법위원회의 성원 이 이 법관으로 원 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한 있으며, 국제판사회가 2017 공 한 판사세 헌장에서 사법위원회는 자 의 대 성을 보장해주는 에 에 의해 다수의 판사 로 성 어야 한다고 시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관으로 성 의 사법행정기 는 아니 , 법원행정에 하는 판사를 소 으로써 한 과를 성하 는 시 있 니다. 이 한 법원행정 판사화 정책은 법관의 관화 경향을 해소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에 할 지가 있다는 해를 식시 는 분 이 면이 있 으 , 한 으로 재판 경 과 법률적 지식을 판사가 당해야 할 재판지

원과 재판제 역 이 약화 는 제가 생하 것 사실 니다.

○ 사법 의 본 은 하고 공정하며 실한 재판을 하는 있고, 이는 재판을 당하는 법관의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가능한 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원행정 에 적정한 수의 판사가 치 어 사법행정 를 당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행정의 재판지원 역 을 화하면서 시에 재판의 독립을 실 적으로 화할 수 있 , 사법행정제 에 대하 장기간에 와 의 에 른 시 이 지 적으로 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사법 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 니다. 한 사법 은 법원을 위한 관점이 아니 ,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요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최우 의 과제는 재판지 을 해소 으로써 한 재판을 을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는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하는 과제 니다. , 분하고 관적 자 를 대로 실한 심리를 정의 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기를 는 국민 의 소리에 유 하고 이를 적으로 소화하 , 한 재판이 실한 재판의 다른 이 이 지 법원 내 의 다 한 의견을 경청하 세심하게 제 를 · 하고 이를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을 종의 통 에 유하 본다면, 해결 안은 ① 통 에 하는 로 장 등 기 시 (= 재판), ② 현 간의 원인 제 (= 심리 을

위한 제 재판지 장애 요소 제), ③ 적정한 통 이로에 유 수 있 하는 대 수단의 (= 1심 실화 정 등 대 적 분쟁해결 수단), ④ 과 기 을 한 로 이 의 최적화(= 인공지능 기 과 자소 등의 재판) 등의 다 한 면에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 를 당하는 법관을 분 원하고, 법관임 제를 하 우수한 역 과 자 을 가 법관을 보할 필요가 있 니다. 이 우리 사법 법관 1인이 당하는 수가 은 야 과 주 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 정 로 은 이고, 국민 은 요한 법적 분쟁에서 단독판사보다 법관 3인으로 성 합의 에서 분한 론과 고를 사건의 결론을 내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하 재판 수를 리는 한 가 있기 니다.
법 인 과의 보수 , 국적인 보 제 등의 요인으로 능력이 인재를 하는 것이 지 은 현실 에서, 적정한 법 경력 요건의 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의 요인이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하 이를 하는 것 요합니다. 심리 실기한 공 법에 대한 제재 화 등 기 의 소 법 정에 른 소 지 를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적정하게 하는 한 으로, 재판지 의 원인으로 지적 고 있는 감정제 의 , 정보의 균형과 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리 제 의 , 사 분 의 장기화를 통한 필요한 재판 지 등 다각적인 면의 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 가 리에서 분쟁 당사자를 주하는 1심 단 를 실화하 분한 자 를 으로 실 적인 공 과 심리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종국적 결론이 하 , 당사자 의 적 감을 제고하고 관성적으로 소심, 고심 지 이 이 어지지 하는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최대한 하고, 자소 과 재판 등 시간과 장소적 한 에 애 지 는 심리 수단을 적 적으로 으로써, 사법 의 성을 최대한 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으로써, 법관은 심적인 판단 에 하 재판 의 와 를 향 시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한 이 하는 인공지능을 사법 역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 할 수 있 , 법원 한 리적 기준과 지 을 하 이를 적으로 제안·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사법 의 본 인 재판 와 사법행정에 과 기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가 하 고, 는 이공 이자 지식재 권법에 대한 성이 있고,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사법 가 어 한 향으로 아가고 준 해야 하는지 고민해 니다.

○ 보자는 법 회의 간사와 회장을 역임하며 법원 내 성 등 화 정 과 재판에서의 아 , 성,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간을 주 하 니다. 이를 통해 은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안 을 대법원 판결에 아내고, 성법관 의 이 수 있을 것 니다.

○ 보자가 국회의 의를 어 대법관으로 임 다면, 이공 이자 지 적인 와 실 를 통해 보자의 성, 사법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다 한 가치를 할 수 있는 열린 가치관 등 보자가 점이 고 생각하는 요소를 재 아, 헌법이 한 사 을 다하는 ‘ 하는 사법 ’, ‘국민으로

와 사 을 는 사법 ’가 수 있 력하겠 니다.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하 심 재판이 지 원인 에는 관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를 대기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고심 수 하 한 재판을 하기 위하 력하고, 하 심 재판에 향을 사건에 관하 는 우리 사회가 아가야 할 향과 가치 기준을 적시에 제시하는 지혜로 재판을 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법원 내에 지 법 이론에 관한 기 를 세우는 에 력이 하 니다. 최 어 자정보 수 수 의 위와 법의 제한, 위법수 와 능력 판단에 관해 쟁이 화 고 있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자 와 관 하 , 국가의 정당한 형 권 행사 실 적 실 견과 의 자의 이 시 보호 등 기본권 보호 형사 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고, 보다 적이고 관 며 가능한 법리를 세우기 위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현재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재판 에의 한 인공지능 안 인공지능에 관한 등 의를 성화하 , 현재 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재판 에 하고, 법원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 대 하는 기 하고 니다.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 대법관 이 치열한 의와 고를 내 은 판결에 대해 대법관 보자로서 가하는 것이 심 고 적 하지 은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소 인적으로 주 하 의 있게 생각한 대법원 판결은 아 와 니다.

- ① 치의 적 · 행에 이 는 의 국가 을 적으로 하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212620 원합의 판결)

- ② 제 행 의 행 의 의 를 에 대한 법한 유형력 행사 는 대 에게 공 심을 으 수 있을 정 의 해 고지로 해 하 종 판단을 변경한 판결(대법원 2023. 9. 21. 고 2018 13877 원합의 판결)

- ③ 자정보에 대한 수수 시 장 원본 을 원 적으로 제한하고 의사실과 관한 정보의 제를 지하며 제· · 력 과정의 변호인 등 기회를 보장하 으로써, 지 의 수수 과정에서 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 적법성을 화한 판결(대법원 2015. 7. 16.

고 2011 1839 판결)

○ 가장 아 판결로는 인민 당 재건위 사건을 수 있 니다. 위 사건은 대법원의 고기각 판결 사형이 행 어 이른 '사법 인'으로 리고, 재심에서 가 고 니다. 재판이 권력으로 독립 어 본인의 기능을 다하지 하 다는 면에서 당 아 판결이 생각하고, 사법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니다.

○ 치 제9호 적 · 행행위가 국가 법 제2 제1 에서 하는 공 원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한 법행위에 해당하지 는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정한 판결(대법원 2014. 10. 27. 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고 2012다48824 판결) 아 게 생각합니다. 위 판결은 이 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212610 원합의 판결에 의해 기 니다.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최 의 정치적 론 등이 판결에 대한 과 한 이 법관 인에 대한 공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 니다. 판결 내 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를 정쟁의 수단으로 하 는 행위로 수 있 니다.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위와 은 행위로 인하 사법 에 대한 국민의 가 당하게 우 가 있으 로, 사법 는 이에 대하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 인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법관이 사법 내· 로 당한 향을 지 재판 심의 사법행정제 , 법관 인사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관하 · 론이 대립하고 있고, 주장 대로 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는 인간의 생 자 를 원 하는 것으로, 단 사형이 행 경우에는 판이 있 다고 해 이 수가 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 행한 역사적 경 있 니다.

○ 면,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 가 있 을 제로 한 정(제110)이 있는 점으로 보아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하고 있다고 지가 있고, 인이 다수의 인 인 등 인 적 가 재하고, 한 로 안 하다고 수 는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 보형으로서의 성을 게 시 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 지 는 해 의 사 합리성, 당성 으로 결정할 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 의 법 감정과 의견의 분한 수 을 결정하 야 할 것 니다. 국회에서 이 점 을 종합적으로 고 하 결정하 주실 것이 고 생각합니다.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 소 가 가하고 화 고 있다는 보 가 고 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이와 관 하 법소 하향과 은 소 법 정, 아가 소 법 지와 은 주장 제기 고 있는 것으로 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한 가 필요합니다. 소 은 정 적 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성인에 해 사회성이 고정 지 아 을 통한 가능성이 로, 보적 관점에 각하 형사 에 의 하는 것이 아니 , 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 한 보호 분을 하 과 치 를 행 으로써 은 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소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 의 경제적 등 소 생의 본적 원인에 관한 다각적 와 , 재 지를 위한 인 등 적 적인 사회의 지원과 대 이 필요합니다.

3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어의 향 등으로 인하 점 수위가 아지는 청소 에 대한 을 법소 하향을 통해 대 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을 위한 하 의 안으로 경청할 한 의견이 고 생각합니다.

○ 다 , 형사책임 을 률적으로 하향하면 책임능력을 다고 보기 어 소 지 형사 의 대 이 우 가 있 니다. 한 우리 사회는 소 이 건 한 인 을 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을 할 책 가 있다는 점과, 보보다는 화를 하는 소 형사사법의 적 분 고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니다.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 력에 관한 장 이가 있고, 법률 법 의 위헌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해 의 치가 생 지가 있다는 점 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제에 관한 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의 지에 기관 자 에게 주어 책 를 적 분 하 본 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관의 관 에 대해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기관의 력을 지켜보시고, 헌법 정권자인 국민 서 지혜 게 판단해주시기를 합니다.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법 의 해 ·적 권한은 사법권의 본 적 내 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 과 화 해 하는 것은 법 을 해 하고 적 하는 대원 에 해당하며, 합헌적 법률해 을 하는 법 의 해 ·적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하는 것이 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적인 분쟁에서 법률의 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각 기관에 한 권한 분장을 넘어서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 이 법의 를 넘어서는 해 을 한다면 사실 법률을 다른 내 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 국회의 법형성권이 해 지 있 니다. 한 한정위헌결정에서 제시 해 에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소하게 는 경우, 소한 당사자가 통 의 소 가 아니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 제를 으 고 시 으로써 심 제 에 심각한 을 하고, 사법권의 행사를 통한 정당한 권리 제가 단적으로 지 가능성을 제할 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은 인정 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형결정의 력이 재판소원의 허 에 관한 기관의 판단에 이가 있어, 로 인해 국민 이 해를 게 다는 지적이 있 을 고 있 니다.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견해를 지 , 기관의 권한 분장과 관 하 국민 이 해를 는 이 우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 간은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 고 있고, 법원 대 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를 하 법 을 해 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의 지에 기관 자 에게 주어 책 를 적 분 하 본 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형결정의 기 력과 에 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내 을 사실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해 을 통해 국회의 법형성권을 해하고 심 제 를 기 으로 한 재판 를 유지하 성할 수 있는 법적안정성에 당 정적 향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과 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 수 은 재적 사안과 관 국민의 기본권을 하고 실하게 보호하는 것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관이 적 한 해결 안 을 기 위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적으로는 기관의 권한 위에 관한 헌법이 법률의 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니다. 다 , 이는 최고법원의 권한 위에 관한 것이 로 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대법원은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요한 정치적 사안 에 대하 사법 에 판단을 요 하고, 재판 결과에 대하 정치적 이해관 에 어 한 에서 하는 사 가 종종 있는 대법원은 관 으로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공고 할 필요가 있 니다.

○ 대법관은 법관보다 한 경 하고 가는 자세로 헌법과 법률, 적 · 관적 심에 정치적 · 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재판하 야 하고, 재판에 대한 의 이 해가 생하지 법정은 물론 사생 의 면에서 사 행에 각한 주의를 기 야 할 것 니다. 한 으로, 사회적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고 판결 내 에 대한 법리적 면, 적 당성 면의 건 한 판이 아니 인 공 성의 를 넘는 에 대하 는, 단호하고 정한 장을 해야 할 것 니다.

○ 법원 의 다른 기관과 론 , 정치 에서 사법적 분쟁의 최종적 해결과 사회 통합을 하는 대법원 판결의 요성과 을 분 할 필요가 있 니다. 아가 사법 의 성권, 법률안제 권 등 사법 의 정치적 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 건의 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헌법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다수결 원 이지 하는 법, 행정 역과, 리 법치주의에 각하 국민의 권리 제와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 야 합니다.

과정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한 , 대법원은 요한 국가·사회적 제에 관하 법률적 쟁 이 제기 을 최종 향을 결정하고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법 해 통 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하 야 합니다.

○ 이 한 역할을 통하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 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 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가 잡화 고 다변화 에 른 가 한 현 수 있지 , 다 한 가치관과 이 이 서로 하는 가 분쟁의 정 가 화 고 성원 사이의 갈등과 이 심화 고 있는 점이 다소 우 니다. 에 대화와 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우리 사회의 공공 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관 제 에 법적 쟁점이 사건화 어 법원의 을 리는 경우가 아지고 있 니다.

○ 이 한 갈등과 이 해결 지 은 적 면, 결국 에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과 가 사 지고, 이 의 과 기본권이 시적으로 해하는 결과가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 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를 대고 해결해야 할 제 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은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치지 고, 이 한 갈등에 내 하는 가치관과 이 이 화를 이 수 있는 안이 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공정한 를 당사자 을 넘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 가 수긍할 수 있는 지혜 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성의와 정성을 다하 ,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할 것 니다.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을 하 고위 공 임 법관이 임 로 대형로 , 기 고 변호사로 하는 것은 관 우에 대한 국민 의 우를 고 할 사법 에 대한 를 하시 수 있어 적 하지 고, 자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 이 재 기간 은 경 과 능력을 하 법률 화 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생 를 위해 정기간은 을 고 을 해야 하는 현실적 건과 의 자유 등 아 고 할 필요가 있 니다.

○ 의 자유의 해 에서 어 면서 사법에 대한 제고할 수 있 , 법 인 이 공 을 에 성 리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 할 수 있는 제 적 건이 기를 니다.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 우는 법관 등 공 에 사 이 한 변호사 등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 는 결과 등에서 당한 혜 이 혜를 는 것을 의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실와 관 공정해야 하고, 사법 의 독립은 국민의 가 이 어야 하 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 심을 수 있는 이른 관 우가 재하지 는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이 할 수 있을 지, 단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가 실제 관 우를 경 한 적은 고, 재판 내에서 법관이 는 이유로 공정한 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니다. 변호사 의 현실에서는 법관 등 재 경력을 가 사 이 이를 보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른 관 우가 있는 것 시하 , 적어 한 기대를 가 사 의 인식에 하 고 의 수임 를 지 는 사 가 있다고 고 있 니다. 이 한 사정 로 인해 국민 서 관 우가 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한 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적지 은 국민이 관 우 관행이 재한다고 고 있고 실제 분쟁이 생하면 관 우를 기대하고 가능한 당 법관과 분관 가 있 한 경 이 있는 변호사를 임하 고 력하며 고 의 수임 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 사법 를 회 하기 위해 관 우의 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공 자의 이해 지법, 형사소 법,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가 실 성 있게 고 있는지 점 하고,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한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서 력을 하 야 할 것 니다.

○ 본적으로,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정 이에 하 변호사로서 을 하는 현 과 관 우의 해의 지 적 등으로 유사한 지의 법률안이 의원 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 적이 있 다시 한 공론의 장에서 적 적인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관 우에 대한 국민의 우 를 본적으로 식시 면, 법관에 대한 우 화, 시니어판사제 , 생법관제 의 정 을 통해 법원 내 우수한 법관 이 장기간 재판에 할 수 있는 건과 분위기를 성하 법관의 수를 감소시 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법관 이 의 자유를 리면서 자 의 역 을 할 수 있는 공 의 기회를 고, 에 하는 우를 을 수 있는 제 적 기 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 한 경과 경 을 가 법 인을 법관으로 하자는 지에서 법 원화를 하 시행하고 있 니다. 법 원화의 행으로 법관임 인 식으로 행하며, 인사 등의 를 통해 성과 공정성을 보 에 하고, 실제 법관 임 자 당수가 대형로 인 것으로 인해 관 우의 생을 우 하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판단하는 것이 로 법관 임 경력과 정 당사자 는 소 대리인과의 관 가 재판 결과 재판 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니다 , 의 으로 사법 의 를 하게 로 국민 서 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이 가지 제 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는 재 당 원 을 정하 로 변호사 법관이 임 정기간 안은 해당 로 이 대리하는 사건을 지 하 하 사건을 한 사유가 는 다른 재판 로 재 당 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시 를 사 에 단하고자 력하고 있 니다.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를 보하기 위한 기 의 제 가 원 하게 고 있는지 인하고 점 할 필요가 있 니다. 공 자의 이해 지법, 형사소 법,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가 실 성 있게 고 있는지 점 하고, 한 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화하 로 대안을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정성 등의 제로 관 우를 인할 수 다면, 법관임 의 경력요건을 3 정 로 하향시 고 로 경력이 는 지원자를 임 으로써 관 우의 가능성을 원 적으로 단하는 안 고 할 수 있다고 생각 니다.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른 관 우 현 이 , 것이 사실이 국민이 에 대한 의 심을 게 다면, 국민의 사법 는 으로 하 할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기 의 제 를 적 적으로 하고 점 · 보 하 한 의 의 단 생기지 경 해야 할 것 니다. 법관 로 관 우의 의 을 단하고 에 지할 수 있 력할 필요가 있 니다.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 제11 는 등의 원 을 정하고 있고, 에 은 법률에서 을 지하는 을 고 있 니다. 다 , 이 한 적 으로는 역에서 등권을 실 적으로 실현하기에는 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 인권이사회가 적 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 은 지 고 생각합니다.

○ 지 21대 국회에 의 지법의 법 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 쟁점에 대하 는 한 쟁이 있다고 고 있 니다. 지법 제정의 과는 우리 사회 은 분에 과를 치 로, 다 한 의견을 게 수 하고 분한 의를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 21대 국회에서 지법이 의 으 , 쟁점에 대해 한 쟁이 있 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 지는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헌법 제11 의 등의 원 을 실 적으로 현하기 위한 법 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 다 한 의견을 수 하고 분한 의를 사회적으로 분한 공감대가 형성 을 , 로소 법률이 실 적으로 력을 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 지법이 다시 의 경우, 공론의 장에서 심 은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법의 재 와 관 이 현행 헌법의 해 으로 , 성소수자 역시 헌법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를 권리가 있고 성적 지향이 의 이유가 수 이 합니다.

○ 지법이 성소수자에게 혜를 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역 을 할 수 있다는 우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인의 성적지향은 어 한 정책과 법률로 ‘ 장’하 ‘ 제’할 수 있는 제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 다 , 지법 제정에 관하 사회적으로 은 이 있는 , 지법의 이 다른 을 하지 고 법 적 을 성하 면, 다 한 의견을 수 하고 분한 의를 사회적으로 분한 공감대가 형성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관은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하게 재판을 하 야 합니다. 법관이 어 한 이 과 정치적 지향성을 가 것으로 지고, 한 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이른다면, 는 이 법관이 고 할 수 을 것 니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하 판단을 해야 하 로, 법관의 이 이 지향성과 재판 결과가 어 관관 가 있다고 보기 어 니다. 법관은 자 의 인적·주관적 견해가 종의 이 이 정치적 성향이 고 를 수 있을 정 로 고 화 으로써, 사건을 공정하게 보는 을 리고 종의 로 하지 는지 임 이 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은 본 의 적에 합하게 이 어 야 하고,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하 한 관을 보이는 각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법원에서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 하 국민 정을 린 점에 대해서 하게 생각합니다.

○ 사법 단 의 으로 인한 사법 의 실 가 고 아 재판이 이어서 의 을 해소하고 를 회 하는 에는 당한 시 이 소요 것으로 보 니다. 다 , 로 대법원장의 임 이 사 분 장기화, 법원장 재판의 시행 등으로 재판를 열심 하 는 분위기가 형성 는 한 , 하고 실한 재판을 현하 는 력 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 니다. 이 한 력이 지 다면 사법 의 점 할 것으로 합니다.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 니다.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한, 사건의 경 과 고이유의 하를 지 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심리를 보장한다면, 대법관 수를 아 리 자 것 니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50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대법관 수의 원 제는 고제 의 향과 하게 관 제이기에, 한 가 필요한 제 니다. 대법원의 심적 역할은 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 당사자의 권리 제를 제하는 있는 것이 아니 , 법 해 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있기 니다.

○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와 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면,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을 정로 대법관을 대 원하는 것은 당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대법원을 성하는 대법관 대 분이 성, 법관 으로 성 어 있고, 이 한 인적 성이 국민의 다 성을 대변하고 하기에 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 면,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자 공감합니다.

○ 으로 대법관 성의 다 화를 실현하기 위하 다 성의 기준으로서 세대, 성 ,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대법원의 성이 로이 다 해당 시기에 대법원 성의 다 화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 , , 력, 세대, 경력 등을 고 하 대법관을 성하면, 대법원 성을 다 화하는 에 어 정 이 수 있는 면이 있 니다. 다 , 사회현 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으로 는 인적 성 으로 분하기 어 우 로 한 인적 성 가지고 대법관 성의 실 적인 다 성을 보할 수 니다.

성을 가지고 대법관 성의 형식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실 적인 다 성을 보하지 하는 결과가 우 있 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를 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 인사 법 인 하 대법관 보 위원회를 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대법관의 인적 성을 다 화하는 것 으로 로 국민의 다 성을 할 수 있게 는 것은 아 것 니다. 다 한 이해관 를 가 국민 이 각자의 지에서 가 각 각생의 시각과 사고, 이해관 , 가치관을 하고 할 수 있 , 대법관 은

사안의 본 을 통찰하기 위해 력해야 하고, 열린 사고로 다 한 의견에 기 이는 자세를 어야 할 것 니다.

○ 아가 이 한 과정이 실 적으로 가능하 , 요한 쟁점에 대해 고하고 대법관 리 서로 하고 당하면서 실하게 론할 수 있는 건이 수 있 고제 의 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 대법원 성의 다 성은 지역이 대 , 성 , 등과 은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 대법관의 인생관, 가치관 등 실 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하는 것이 적 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현재의 시 하에서 대법관은 국민 서 해주 보 에서 제청·임 는 보다 다 한 보 이 · 수 있 대법관 위원회의 을 실 화하고 국민 서 이에 은 관심을 가 주시면 겠다는 생각 니다.

[각 법원]

○ 기 에는 사법시 수원 성적을 요한 임 기준으로 고 사법 수원을 수 한 다 로 법관으로 임 는 것이 적이 기에, 다 한 경 과 경을 가 법관을 임 하는 어 정 한 가 있 니다.

○ 이에 대한 제의식에서 법 대 원제 , 법 원화 제 가 어 정 정 에 역, 성 , 법관 경력 등의 면에서 법관 성의 다 성 점 어 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2021 법원 법 제42 제2 단서

의 로, '판사 임 에 있어 성 , , 법 경력의 종 기간, 분야 등 국민의 다 한 기대와 요청에 하기 위한 사 을 적 '하는 것은 법관임 의 대원 이자 의 가 니다. 법원 이에 하 다 한 경력을 법 인을 법관으로 하고 있고, 법관 임 등을 통해 법관의 다 성을 보하기 위한 력 기 이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다 한 경과 경력을 우수한 법 인 의 법관 지원을 유 할 수 있는 제 적 기 은 아 지 고 있 니다. 법관의 다 성으로 인하 우리 사회의 다 한 가치와 이 법원 판결에 수 있 법관임 과 우수한 법 인 의 법관 지원을 유 하는 필요한 제 적 건을 기 위하 력할 필요가 있 니다.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주주의를 관 하고 지 하는 국민의 권리, 인간의 과 행의 기 가 는 사생 의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요한 기본권으로, 기본권 어 하 가 적으로 우 한다고 하기는 어 니다.

○ 서 공적 인물과 관 사안이 , 내 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수한 사적 역에 하는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형 하 , 기본권의 화와 균형을 하는 해결책을 할 필요가 있 니다.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론· 판의 자유와 보호 사이의 한 를 정 에 있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하고 관적으로 국민이 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사안에 관한 현이 론형성이 공 론에 기 하는 경우 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에 이를 어 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화 어야 한다고 시한 있는 (대법원 2002. 1. 22. 고 2000다37524 판결), 기본적으로 판결의 지에 공감합니다.

○ 다 , 아 리 공적인 재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 적 정 의 이 의적으로 하는 이 지 경 해 야 은 물론 대 의 인 을 하는 현 법을 해야 하고, 적인 현으로 을 가하는 은 어야 할 것 니다.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 재판의 원 는 국민의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공소장을 대 에게 공 하 적어 위를 대하는 것이 당하다는 견해가 있는 면, 재적 판단이 당한 대 적 위 을 가 국가소 기관이 공식적으로 유 의 판결을 하는 사실이 기재 공소장이 공 면 고인의 어권,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 정의 원 등을 해하 로 적어 공판 시 지는 공 하면 안 다는 론 있다고 고 있 니다.

○ 해 법 로 에서는 공소장을 게 공 하는 장인 면, 독 에서는 원 적으로 공 하고 공 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공소장 공 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해 법 다 하 로, 공소장 공 , 위, 시기 등은 서 한 가치 을 분 하 실 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형법 제126 는 찰 등 수사에 관한 를 수행하는 자가 의사실을 '공소제기 '에 공 하는 경우를 하고 있고 형사재판은 공 어야 하 로, 공 법정에서 독 는 공소장에 기재 정보는 원 적으로 공 정보 고 할 것 니다.

○ 다 , 공소장 본주의 원 법관의 단을 제할 필요가 있고, 공판 시 론 등을 통해 공소장이 공 는 경우 정한 사회적 력이 형성 수 에 으 로, 이는 정의 원 과 고 인 어권 보장에 한다는 지적 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공소제기 공판 시 공소장의 공 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정원 에 기 한 의자의 헌법 기본권 보호의 에 관한 제 니다. 서 공소장 공 , 위, 시기 등은 서 한 가치 을 분 형 하 결정하고 실 가 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권 보장과 기 변화는 인간의 과 가치에 결 는 요한 제 니다. 최 기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 하고 세대의 생 권 지 위 한다는 지 고 있는 을 보자 이 우 하고 있 니다.

○ 경권은 건 하고 적한 생 을 유지하는 건으로서 호한 경할 권리이고 생 · 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를 이 며 적으로 ‘ 의 ’ 보를 로 하는 권리 니다. 경권의 내 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헌법 제35 제2), 이는 헌법에서 정한 경권을 법자가 지에 합 하 법률로써 내 을 화하 한 것이지 경권 보호를 위한 법이 현 분한 을 인하는 것은 아니 고 할 것이고, 이와 은 헌법재판소 결정 지에 공감하는 장 을 고 있 니다.

○ 경 보호는 우리 세대에서 는 제가 아니 로, 세대에 적하고 지 가능한 생 을 물 수 있 안 과 은 시야를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권은 건 하고 적한 생 을 유지하는 건으로서 호한 경할 권리이고 생 · 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를 이 며 적으로 ‘ 의 ’ 보를 로 하는 권리 니다. 국민은 국가로 건 하고 적한 경을 향유할 수 자유를 해당하지 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 건 하고 적한 경에서 생 할 수 있 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로, 자 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 을 가 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고 2006헌 711 결정).

○ 적한 경은 인간의 과 가치, 건 과 화적 생 의 향유와 관 심적 요소이 로, 국가는 국민 건 과 경 보호를 최우 과제로 아 국민 의 안을 해소할 수 있는 력을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국가의 정책이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 법률을 해 하고 적 할 경권이 분 보장 할 의 가 있다고 할 것 니다(대법원 1995. 5. 23.자 94 2218 결정).

○ 국내에서 다 한 형 의 경소 이 제기 고 있고, 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 소 에 관한 공 변론을 행하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경소 은 당사자의 권리 제에

치지 고 요한 정책 변화, 경 보호에 대한 인식 등 분야의 을 가 수 있으 로, 사법 에서 국제적 향과 판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통찰하 판단할 수 있 기 역 을 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 내 경법분야 회 등 분야 니 를 통하 경 관리 법리에 대한 심 적 가 이 어지는 것으로 고 있고, 법관 수 로 인 것으로 고 있는 , 이 한 력 이 지 고 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의 소 가 국민의 기본권을 해하는지 는 현재 행 인 기 소 의 쟁점과 한 관 이 있으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관한 적인 의견을 리기에 적 치 을 해하 주시기 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보자는 국 대 로 에서 자 과정으로 1 간 수를 하면서, 다 한 기관을 하 심재판 제 , 고 과 관 준사법기관의 실 등 해 사법 제 의 실제 과정을 고, 소 관심 있 분야의 이론을 으로써 시야 를 수 있는 소 한 기회를 가 수 있 니다.

○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적 분쟁을 정의 게 해결하며 적 당성과 법적안정성을 한다는 점에서 해 사법제 는 우리 사법제 와 본 적인 는 다고 할 것 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과 제 시행 과정에서 적 어 해 사 를 분 하고 재판에 고하는 것이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재판실 를 당하면서 형사소 에서의 자 의 과 능력, 자자 보호의 , 지식재 권법에 이 기 지 사법국가의 법과 실 를 법적으로 하 우리 실 에 적 할 안을 하 고 와 은 내 을 과 자 로 정리하 법관 등과 공유하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이 한 자세를 유지하며 국의 사 이 우리 사 법 에 화 게 적 으로써 재판의 수준을 이는 하 겠 니다.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호 화의 임종과정에 있는 자의 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시행 인 것으로 고 있 니다. 위 법은 회생의 가능성이 고 치 에 하고 회 지 아니하며 로 이 화 어 사 에 임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의 단 결정 이행에 관한 사 을 정하는 내 니다.

○ 자에게 약물 등을 실시하 생 을 단 시 는 적 적 안 사는 법 허 지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소 적 안 사, 생 유지에 필요한 약물 등을 단 으로써 자를 에 이 게 하는 치의 경우에는, 회 의 가능성이 이 는 자의 심한 고통을 경감하는 인 적 수단으로서 적으로 인정할 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사 허 는 단 법적인 면은 물론이고 과 적, 종 적, 적 제가 다 하게 있으 로, 은 사회적 의 경 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장기 제가 가하는 본적인 원인은 사건의 잡성과 성이 은 사건의 가 세와 법관 재판보 인력 에 있 니다. 이 에 로 19 사 로 인하 생한 적인 재판지 이 지 적으로 향을 치고 있는 점이 당사자의 소 지 , 감정 를 한 사의 지 등과 이 재판 의 한 해결 의지 으로는 해결하기 어 적 요인 재합니다.

○ 법관의 과 한 사건 은 사건의 장기화 에 이 있는 심리를 제한하게 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한 재판을 을 권리 보장이 소 해 수 있는 , 이를 해결하기 위하 는 법관 재판 원과 은 재판보 인력의 원이 행 어야 할 것 니다.

○ 인공지능기 을 재판시 에 하고, 사실관 의 요와 의 주장 다 는 분을 쟁점으로 정리하 법관에게 기 보고서를 제시한다면, 기 에 소요 는 시간을 기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니다. 아 쟁점이 유사한 기 판결 을 아 제시해 준다면, 법관은 법정에서의 실한 심리와 고 의 판단에 할 수 있을 것 니다.

○ 에 법관과 법원 제 대 실시 사 분 의 장기화, 판결서 적정화 안 시행, 심리위원제 대, 재판의 , 감정 관리 제 과 은 실하면서 한 재판

을 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 재판의 성과 성을 제고하는 향으로 제 가 행 어야 할 것으로 사 니다.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자는 헌법과 법률, 관적· 적 심에 재판하고, 로 심이 고 는 것이 주관적 견이 에서 독단이 아 지 경 하면서 겸 하고 열린 자세로 사건을 대하기 위해 력하 니다. 정 이 에 기 을 고 판결한 적은 니다.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자는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이 사건은 민간기 에 하는 성 로자가 고 보 법 제70 제2 이 정한 아 청기간(아 종 시로 12)을 과하 위 청을 하 다는 이유로 지 분을 고 분의 소를 하는 사건이 니다.

- 해당사건의 1심에서는 위 청기간을 행 정으로 해 하 원고가 소하 으 , 보자는 이와 리 소심 판결에서 아 제 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 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고자 하 고, 고 보 법 제70 제2 의 ‘ 청’은 아 를 지 기 위한 이자

소 시 단사유로서 기 청을 하는 의 의 적
정 정 로 해 이 당하다고 판단하 , 아
지 등 분을 소한 판결 니다.

-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의 다수의견(8인)은 아 이 1 이내에 아 를 청하 한 을 행 정으로 보아 이 기한을 넘 청하면 를 을 수 다는 해 으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하 니다. 다 , 소수의견(5인)은 원심과 이 시 정으로 해 하 니다.

- 위 대법원 원합의 판결은 아 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2021 법률 정 해의 주요판결에 정 고 주요 론에 소 어 법 와 은 로자 의 관심이 사건이 사회가 지 는 대한민국의 어 에서 아 이 니다. 아 의 (고 등과 가정 립 지원에 관한 법률)와 아 지 (고 보 법)이 이원화 어 있는 법 에서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한 법적 해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보자는 기니 공화국적의 원고의 민 인정결정 소 사건(서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에서 민의 이 는 의 와 등을 종합하 민 의 성에 대한 인식

을 하고자 하 니다.

- 1심(서 행정법원 2017. 9. 28. 고 2017 단64197판결)에서 원고에 대해 인종, 종 , 국적, 정 사회 단의 성원 분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보기 어 다고 판단하 것과 리 국 관리소 의 에 대 해야 하는 원고의 수 적인 지위, 우리 법원의 한 민인정기준에 원고의 과장 분이 있다는 사정 등으로 로 원고 의 성을 해서는 안 다고 판단하 니다.

- 보자는 민 약 제1 , 민의정서 제1 의 정을 종합하 민의 요건을 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고 2016 56080 판결) 등을 해 에 있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과 원고와 UFDG 청 회 시 하 사 이 에서 민으로 인정 은 사정 등 종합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를 하는 판결을 하 고,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기각 어 원심대로 정 니다.

○ 보자는 2021. 12. 10. 고 2019 2046214 판결에서 4 대 제로 한 실 시 관리 로자의 당 를 통 로의

장으로 수 있는지가 제 사건에서, 제1심(서 지 법원 2013. 8. 13. 고 2012가합104180 판결)과 리 당 시간 게시간은 4시간, 공 5시간으로 보고 지 시간의 로에 대해 통 로의 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 해야 하며 이를 기 로 다시 정해 이 지 한 을 과하는 을 가로 지 해야 한다고 판시하 고 대법원에서 고기각으로 정 니다. 이 판결은 와 유사한 본 의 를 수행하는 야간 로자의 이 을 보호하는 판결로 가 고 있니다.

○ 사고로 로자의 인과 자 가 로자가 다니 회사를 대로 해 청 소 에서 제1심(의정 지 법원 고 지원 2019. 11. 8. 고 2018가합75743 판결)이 로자가 사고 당시 최 임 에 하는 임 을 은 경우에는 실수 사고 당시 임 을 기준으로 정하 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리, 보자가 재판장이 소심(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에서는 최 임 제 의 지, 통 해자의 실수 은 장 가 임 수 고 는 점 최 임 이행 사 자의 이 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사고 당시 최 임 에 하는 경우 최 임 을 기준으로 실수 을 정하 야 한다고 판시하 니다. 다 , 이 사건은 대법원에 인 사건으로 아 재판이 종결 지 니다.

○ 이 에 보자는 ① 서 고등법원 2021. 4. 2. 고 2020 2036077 판결에서 치 제9호 위 으로 수감 어 재판을 은 원고와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고, ② 서 고등법원 2021. 9. 17. 고 2021 2014364 판결에서 1998. 10. 17. 대 대생이 고 로 하행 에서 23 에 치 고, 현장에서 사 한 로 견 사건에서 통사고를 당하게 경위에 대한 경찰의 실수사를 인정하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사건 등이 있 니다.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현재 대법원을 성하는 대법관 대 분이 성, 법관 으로 성 어 있고, 이 한 인적 성이 국민의 다 성을 대변하고 하기에 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 면,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자 공감합니다.

○ 으로 대법관 성의 다 화를 실현하기 위하 다 성의 기준으로서 세대, 성 ,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대법원의 성이 로이 다 해당 시기에 대법원 성의 다 화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기 에는 사법시 수원 성적을 요한 임 기준으로 고 사법 수원을 수 한 다 로 법관으로 임 는 것이 적이 기에, 다 한 경 과 경을 가 법관을 임 하는 어 정 한 가 있 니다.

○ 이에 대한 제의식에서 법 대 원제 , 법 원화 제 가 어 정 정 에 역, 성 , 법관 경력 등의 면에서 법관 성의 다 성 점 어 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2021 법원 법 제42 제2 단서의 로, '판사 임 에 있어 성 , , 법 경력의 종 기간, 분야 등 국민의 다 한 기대와 요청에 하기 위한 사 을 적 '하는 것은 법관임 의 대원 이자 의 가 니다. 법원 이에 하 다 한 경력을 법 인을 법관으로 하고 있고, 법관 임 등을 통해 법관의 다 성을 보하기 위한 력 기 이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를 어, 법관임 를 인 식으로 행하고, 법률서면 성 가를 법관에 적합한 기본적인 능력을 는지를 인하는 수준으로 을 화하며, 법관 임 의 대 자의 단을 공 하 국민 의 의견을 수 하는 등의 를 행하는 것이 한 력의 니다. 한 대법원은 보 자 와

이지를 통해 임법관의 역, 성 , , 대 , 법 경력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공 하 니다. 2021 법원 법 정에 판사 임 과정과 결과 임 제 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고 있 니다.

○ 이와 이 법관 임 과정에서 국민의 다 한 기대와 요청에 하기 위한 사 이 적 는지에 대한 관적인 가 화 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으로 법원이 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향으로, 법관의 자 을 다 한 경의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 할 수 있 력하 야 할 것 니다.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 한 의 갈등을 정하 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 의 보 이 로, 대법관 성에 있어서 다 성이 필요하고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 을 '20 이 판사·사·변호사 변호사의 자 이 있는 사 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 에 종사한 사 , 변호사자 이 있는 사 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수 이 으로 재 한 45세 이 의 사 '으로 정하고 있 니다. 최고법원을 성하는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 요 는 자 과 능력을 고 하면, 이 한 법률 의 자 요건은 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의 자 요건을 화하는 것이 사회의 다 한 이해관 를 재판에 하는 기 하리 고 단정할 수는 고, 사회현 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와 이 으로 는 인적 성 으로 분하기 어 기 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의 과정 등에 할 수 있으 ,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 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제 적 장치를 보 할 필

요가 있 니다. 이와 시에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치 필요합니다. 대법원 성의 다 화를 통해 사회의 다 한 가치를 실 하 는 력은 사법 에 대한 국민의 제고에 기 할 수 있을 것 니다.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 에 대한 국민의 는 사법 의 재 이자 립 니다. 에 사법 는 국민 의 기대에 치지 하고 있어 가 아 고 안 게 생각합니다.

○ 과 사법의 독립에 대하 의 을 으 사건, 국민의 이에 지 는 판결, 재판지 제 등이 적인 원인이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 의 성원은 사법 하 의 지적에 대하 하 기보다 로를 아보고 고 헌 적인 자세로 재판이 는 본 의 에 최 을 다해야 합니다. 한 사법행정 역에서는, 은 재판으로 를 회 할 수 있 재판제 에 를 가하고, 국민 가 고 적으로 재판에 할 수 있는 안을 해야 할 것 니다.

○ 사법 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재판지 해소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고통 는 국민 이 하 리 으로 할 수 있 해야 합니다. 아 사법 를 해하는 제로 자주 지적 는 관 우 의 을 하고, 위법관에 대한 한 치를 통해 법원의 건 한 화를 보하기 위한 력 행 어야 할 것 니다.

○ 사법 의 력으로 국민의 사법 를 회 하기는 어 니다. 사법 가 공정하고 실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력하는 국민 로 정당한 가를 을 수 있 , 사회적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판결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 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를 보하 면, 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어 한 적 력이 유 에 리지고 성실하고 세심하게 심리하 공정한 판단할 것이 는 이제 어야 합니다.

○ 국민 은 법관에게 은 성을 요 하고, 법관의 위는 사법에 을 수 있는 , 법관 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에 는 정한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06제1 이 법관의 분보장과 분의 한 를 정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의 행위 위에 감기 위한 것이 아니기 니다.

○ 보자는 가 론에 보 는 정 로 법관 사 를 하고 있을 이지 , 최 에는 적 청 가 적 적으로 이어지고 정 화 고 있는 세이며, 과 보다 은 정 기준을 적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관 로 리적 을 수 있 주기적인 을 실시하고 위 법관에 대해서는 정한 를 하 , 면 성실하게 청 한 공 생 을 하고 있는 대 분의 법관 의

를 보호하고 국민의 를 을 수 있 , 지 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관의 행위가 고 있지 은 을 안게 생각합니다. 대 분의 법관은 국민의 이와 사회적 기대에 하며 면성실하고 청 한 공 생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 법관의 책임의식을 화하고 위를 하기 위하 법관에 대한 리 을 화하고 위 법관에 대하 정한 를 하는 등 지 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가 론에 보 는 정 로 법관 사 를 하고 있을 이지 , 최 에는 적 청 가 적 적으로 이어지고 정 화 고 있는 세이며, 과 보다 은 정 기준을 적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관 로 리적 을 수 있 주기적인 을 실시하고 위 법관에 대해서는 정한 를 하 , 면 성실하게 청 한 공 생 을 하고 있는 대 분의 법관 의 를 보호하고 국민의 를 을 수 있 , 지 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관 보자인 에서 임 의 적 을 리는 것이 른 면이 있으 , 인적 이 을 위한 변호사 은 하지 을 정 니다.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 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위사실이 아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로 하는 정에 관하 ,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하는 사가 생하고 현의 자유와 론· 판의 자유를 지 치게 위 시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재판소는 에 사실적시 에 관한 헌법 제307 제1 에 대하 합헌결정을 내 고, 대법원 2020. 11. 19. 고 2020 5813 원합의 판결에서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행위에 대한 형사 의 필요성은 재한다는 지로 판시하 니다.

○ 보자는 이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하는 장을 고 있 니다. 를 어 어 한 성이 성 력 해를 당한 경 이 있고 것이 사실이 고 할 , 이를 제3자가 공 적시하 해자의 회 을 해하는 것이 정당화 다고 보기 어 고, 현의 자유 는 이 아 다른 한 헌법적 기본권을 대하게 해한다면 적 이 아 형 을 통한 국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수 있기 니다.

○ 다 , 사실적시 를 실제 사건에 적 에 있어서는

현의 자유, 론의 자유가 지 치게 해 지 세심한 제한 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허위사실이 아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로 하는 정에 관하 ,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하는 사가 생하고 현의 자유와 론· 판의 자유를 지 치게 위 시 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재판소는 에 사실적시 에 관한 헌법 제307 제1 에 대하 합헌결정을 내 고, 대법원 2020. 11. 19. 고 2020 5813 원합의 판결에서 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행위에 대한 형사 의 필요성은 재한다는 지로 판시하 니다. 보자는 이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하는 장을 고 있니다.

○ 사실적시 의 화 는 국회에서 현의 자유, 론· 판의 자유, 국민의 권리의 위 등 의 정 , 사실적시로 인하 해 수 있는 인의 와 인 권 보장의 필요성, 형사제재가 적 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 분한 의견수 을 에 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 이 고 생각 니다.

○ 다 사실적시 정을 대로 치한다고 하 , 이를 적 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의견이 우 한

것과 이 현의 자유, 론의 자유가 지 치게 해 지 세심한 제한 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의 위헌 가 쟁점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있 니다 , 의 보호법 , 법 적 등에 어 건 한 식과 통 적인 법 감정을 가 인 이 면 지 는 행위가 인지를 하는 것이 현 하다고 보기 어 점, 대법원이 의 의 에 대하 관적인 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 할 , 해당 은 형법 정주의의 성 원 에 위 지 는다는 것 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고 2012헌 37 원재판 결정, 2020. 12. 23. 고 2017헌 456 등 원재판 결정, 2021. 9. 30. 고 2021헌가2 등 원재판 결정).

○ 보자는 기본적으로 이 한 결정 지를 하는 장을 고 있 니다. 다 , 위 결정의 대의견에서 지적한 것과 이 의 성립 위가 지 치게 위하 현의 자유 론· 판의 자유를 과 하게 위 시 우 가 있다는 지적에 수긍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를 적 에 있어서는 위와 은 점을 분 고 하 세심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지 은 사 의 력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해 관행 어 으 , 성과를 지 기 위해 지 적으로 력하고 현재의 해 을 하기 위한 이 이 어지지 는다면 인권 은 제 할 수 있 니다.

○ 보자가 대법관 보자로 임 제청 이유를 하는 것이 심 면이 있으 , 단지 보자가 법원 내 소수자인 성이 기 은 아니 고 생각합니다. 보자가 27 간 법관으로 재 하면서 당한 수 은 재판의 과정과 결과, , 에 사법의 을 위해 력한 을 통해, 보자에게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지 는 대법관의 사 을 감당할 역 이 있다고 은 분 이 생각해주 기 이 고 고 있 니다.

○ 제가 국회의 의를 어 대법관이 다면, 사법 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 실 적 등, 재판청 권

등을 현하기 위해 의 을 다하겠 니다.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와 이 이 화 고 서로간의 과 갈등과 가는 시점에서 법의 지 를 립하고 사회 통합으로 인 하는 대법원의 역할이 어 보다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대법원의 한 성원으로서 대법관은 사법 는 다수결의 원 이 지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균형감각과 력,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으로 다수의 소리에 기 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를 기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 정당한 권 을 보호하는 한 , 우리 사회 내의 적인 등을 해소 는 화하는 기 하고 사회의 인권 을 위한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니다.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행 등이 법의 위임 위를 어 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 , 대법원은 "하위 법 이 정한 내 이 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로 하 야 하는 본 적 사 으로서 의회유보의 원 이 지켜 야 할 역인지, 당해 법률 정의 법 적과 정 내 , 정의 , 다른 정과의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야 하고, 위임 정 자 에서 의 내 을 정 하게 수 있는 어를 사 하 위임의 한 를 분 하고 있는 적 의 의 한 를 어 는지 , 하위 법 의 내 이 법 자 로 위임 내 의 대 을 할 수 있는 위 내에 한 것인지, 수권 정에서 사 하고 있는 어의 의 를 넘어 위를 장하 소하 서 위임 내 을 화하는 단 를 어 로 법을

한 것으로 가할 수 있는지 등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니다(대법원 2015. 8. 20. 고 2012 23808 원합의 판결).

○ 해당 시행 이 의 위임 위를 어 인지 는, 위와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판단하 야 할 것으로 보니다.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의 권한이 분 등의 당 에 관하 정 행정 법이 인지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의 권한이 분 등의 당 에 관하 정 행정 법이 인지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가장 아 판결로는 인민 당 재건위 사건을 수 있 니다. 위 사건은 대법원의 고기각 판결 사형이 행 어 이른 '사법 인'으로 리고, 재심에서 가 고 니다. 재판이 권력으로 독립 어 본인의 기능을 다하지 하 다는 면에서 당 아 판결이 생각하고, 사법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니다.

○ 치 제9호 적 · 행행위가 국가 법 제2 제1 에서 하는 공 원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한 법행위에 해당하지 는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정한 대법원 2014. 10. 27. 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고 2012다48824 판결 아 게 생각합니다. 위 판결은 이 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212610 원합의 판결에 의해 기 니다.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현 대법관 이 치열한 의와 고를 내 은 판결에 대해 대법관 보자로서 가하는 것이 심 고 적 하지 은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소 인적으로 주 하 의 있게 생각한 대법원 판결은 아 와 니다.

- ① 치의 적 · 행에 이 는 의 국가 을 적으로 하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212620 원합의 판결)

- ② 간호사인 원고 이 임 기간 에 기인하 각 아 에게 성 심장 이 생 다면, 이는 재해에 해당하고, 이 원고 의 각 으로 와 아가 분리 어 독립 인 을 가 아가 어 다고 하 각 아 의 성 심장 에 관한 요 수 권을 실하지 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0. 4. 29. 고 2016 41071 판결)

- ③ 적법 에 의하지 고 수 한 를 기 로 한 2 의 능력을 인한 판결(대법원 2007. 11. 15. 고 2007 3061 원합의 판결)

- ④ 제 행 의 행 의 의 를 에 대한 법한 유형력 행사 는 대 에게 공 심을 으 수 있을 정 의 해 고지로 해 하 종 판단을 변경한 판결(대법원 2023. 9. 21. 고 2018 13877 원합의 판결)

- ⑤ 자정보에 대한 수수 시 장 원본 을 원 적으로 제한하고 의사실과 관한 정보의 제를 지하며 제· · 력 과정의 변호인 등 기회를 보장하 으로써, 지 의 수수 과정에서 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 적법성을 화한 판결(대법원 2015. 7. 16. 고 2011 1839 판결)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 제11 는 ' 국민은 법 에 등하다. 지 성 ·종 는 사회적 분에 의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화적 생 의 역에서 을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 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은 사 에게 이 등하게 적 어야 하고, 이 한 등은 ' 은 것은 고, 다른 것은 다게' 하는 실 적인 등이어야 할 것 니다.

○ 우리 의 현실에서 실제로는 등의 원 이 제대로 현 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사법 에 기간 은 보자로서는 이 한 지적을 아 게 아 이고, 으로 사법 가 법 의 등을 현하는 할 수 있 의 을 다하 야겠다는 다 을 합니다.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적, 정 적, 경제적, 사회적, 화적으로 소 열 한 위치에 있어 인간으로서 당 야 할 성이 기본 권리를 분 리지 하 인간다 을 위하는 어 을 는 인이 단을 가리 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성, 성소수자, 인, 아 , 이주민 등이 사회적으로 약한 성원으로서 고 보호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지 은 사 의 력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해 관행 어 으 , 성과를 지 기 위해 지 적으로 력하고 현재의 해 을 하기 위한 이 이 어지지는다면 인권 은 제 할 수 있 니다. 법원 사법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 실 적 등, 재판청 권 등을 현하기 위해 각종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제 을 위한 력을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 있으면 , 이 으면 유 ’ 는 이 아 우리 사회에서 행하는 현실을 안 게 생각하고, 사법 에 은 보자로서 게 아 니다.

○ 과 를 지른 경우에 재 이 분하면 변호인을 임하 분한 법적 력을 고, 재 이 으면 변호인을 임하지는 하는 것은 물론 해자에게 해를 회 하고 원 한 합의를 하는 것 어 형에서 한 유리한 정 하 대적으로 을 게 현 이 당기간 지 어 것이 현실 니다.

○ 국 변호사제 를 통한 변호인 력권의 대, 형 사제를 통한 실 적 형자 의 수 등 경제적 에 른 형가 사법정의를 하지 법원 안 제 적 을 해 으 , 으로 각고의 력을 기 이 한 이 역사의 유물로 사 수 있기를 합니다.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법원은 다수결의 원 이 지 하는 사회에서 다수의 소리에 기 어 소수자의 소리에 를 기 야 하고, 고 소리 낼 수 는 약자 이 법원에 아와 기 내어 할 수 있 을 내 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 정당한 권 을 보호하는 한 , 우리 사회 내의 적인 등을 해소 는 화하는 기 하 야 합니다.

○ 다수결의 사회에서 실 적인 법치주의 실현과 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게 주어 재 의 위에서 임 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 소수자와 약자의 등을 해소하고 보 적 인권이 보장 는 사회로 해 갈 수 있을 것 니다.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 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 니다. 한 사법 은 법원을 위한 관점이 아니 , ·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요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최우 의 과제는 재판지 을 해소 으로써 한 재판을 을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는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하는 과제 니다. , 분하고 관적 자 를 대로 실한 심리를 정의 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기를 는 국민 의 소리에 유 하고 이를 적으로 소화하 , 한 재판이 실한 재판의 다른 이 이 지 법원 내 의 다 한 의견을 경청하 세심하게 제 를 · 하고 이를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을 종의 통 에 유하 본다면, 해결 안은 ① 통 에 하는 로 장 등 기 시 (= 재판),

② 현 간의 원인 제 (= 심리 을 위한 제 재판지 장애 요소 제), ③ 적정한 통 이로에 유 수 있 하는 대 수단의 (= 1심 실화 정 등 대 적 분쟁해결 수단), ④ 과 기 을 한 로 이 의 최적화(= 인공지능 기 과 자소 등의 재판) 등의 다 한 면에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 를 당하는 법관을 분 원하고, 법관임 제를 하 우수한 역 과 자 을 가 법관을 보할 필요가 있 니다. 이 우리 사법 법관 1인이 당하는 수가 은 야 과 주 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 정 로 은 이고, 국민 은 요한 법적 분쟁에서 단독판사보다 법관 3인으로 성 합의 에서 분한 론과 고를 사건의 결론을 내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하 재판 수를 리는 한 가 있기 니다. 법 인 과의 보수 , 국적인 보 제 등의 요인으로 능력이 인재를 하는 것이 지 은 현실 에서, 적정한 법 경력 요건의 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의 요인이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하 이를 하는 것 요합니다. 심리 실기한 공 법에 대한 제재 화 등 기 의 소 법 정에 른 소 지 를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적정하게 하는 한 으로, 재판지 의 원인으

로 지적 고 있는 감정제 의 , 정보의 균형과 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리 제 의 , 사 분 의 장기화를 통한 필요한 재판 지 등 다각적인 면의 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 가 리에서 분쟁 당사자를 주하는 1심 단 를 실화하 분한 자 를 으로 실 적인 공 과 심리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종국적 결론이 하 , 당사자 의 적 감을 제고하고 관성적으로 소심, 고심 지 이 이 어지지 하는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최대한 하고, 자소 과 재판 등 시간과 장소적 한 에 애 지 는 심리 수단을 적 적으로 으로써, 사법 의 성을 최대한 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으로써, 법관은 심적인 판단 에 하 재판 의 와 를 향 시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한 이 하는 인공지능을 사법 역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 할 수 있 , 법원 한 리적 기준과 지 을 하 이를 적으로 제안·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을 위해 안이 고 고허가제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고허가제 안은 요한 법적 쟁점을 하는 고사건에 심리를 할 수 있어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회 을 기대할 수 있는 면, 국민 이 대법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판 역시 재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인권은 향유하는 대적인 자유와 권리이 로, 성을 가 인간인 성소수자의 인권 요한 가치로 보호하 야 합니다. 한 성적 지향성은 지 내 한 사적인 역이 로 인에 대한 요 위해가 수 지 는 한 아야 하고,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당한 견이 적 을 아서는 안 니다.

○ 최 에는 결 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사실 , 성 관 는 물론이고, 성의 을 통한 가 의 성 등 로 유형의 생 공 가 등장하면서, 적 의 로서의 '가 '의 을 어 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 하 다 한 의가 행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이 한 사회적 변화를 하 생 을 공유하고 생 을 호적으로 주고 는 이른 "생 자관 '를 정하 이에 대해 인에 준하는 권리 의 관 성립의 내 을 은 법률안이 의 다가 임기 로 기 것으로 고 있 니다.

○ 성간 애, 성간 결 , 자기 성 결정권 등 성소수자에 대하 어 한 법률적, 제 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현행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 의 인식, 시대적 , 성소수자의 행 권 보장 요청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 형이 가 다는 국민 의 지적이 있 을 고 있으며, 성 는 해자에게 고통을 기고 정 적인 을 어 게 는 대 이 로 이에 대하 정한 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 성 의 한 을 원하는 국민적 요 에 대하 는 게 아 필요가 있으 , 법정형을 과 하게 향하는 것은 형사법 정합성 면에서 가 필요하고, 사건에서 책임에 하는 적정한 형이 어 게 수 있다는 점을 고 할 필요 있 니다.

○ 아가 본적으로는 성 자에 대한 과 성 생원인 등 사회적 경에 대한 원인 의 력이 이 어 야 하고, 성 재 지 대책의 , 아 ·청소 등 성 에 약한 사 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종합적인 법이 의 고 시행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에서 성 가해자의 형 이 어 는 이유에는 가지가 있겠으 , 심에서 해 회 이 이 어지는 등 하 심에서 고 하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가 당 분을 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아가 지 법원 로 생하는 당한 형 에 대하 심 법원이 이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형 이 어 는 경우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성 의 형이 국민의 이에 지 는다는 판에 대하게 아 이고 있으며, 심 을 가리지 고 국민의 정의 관에 합하는 적정한 형이 고 어야 한다는 점에 이 공감하고 있 니다.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 회 등 요한 사정변경이 심에서 생한 경우 , 1심의 형 이 정의 관 이 기 의 형 사 에 어 지 치게 경우 있을 수 있으 로, 심에서 형 이 어 다는 이유 으로 이를 당한 판결이 고 단정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성 의 형이 국민의 이에 지 는다는 판에 대하게 아 이고 있으며, 심 을 가리지 고 국민의 정의 관에 합하는 적정한 형이 고 어야 한다는 점에 이 공감하고 있 니다.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관의 독립이 법관과 국민과의 을 의 하는 것은 아니고 할 것 니다. 재판의 권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에서 는 것이기 니다.

○ 성 의 형이 국민의 이에 지 는다는 판이 있다면, 이를 지하게 아 자 의 형이 적정한 것인지를 아보아야 합니다. 다 , 이 한 성찰이 국민의 시적 론과 감정을 종하는 적인 주의로 변 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 권을 행사 으로써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법관의 기본적 사 을 리지 경 하 야 할 것 니다.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공 자 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7호를 하 , 법관이 SNS를 사 하 의사소통과 다 한 인적관 를 형성할 수 있 을 제로 과정에서의 유의사 을 제시하 니다.

○ 법관은 SNS 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하 의견을 하는 경우에 자기 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으로 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의 심에 이게 향 공정한 재판에 향을 우 를 야기할 수 있는 관을 지 하게 해야 합니다.

○ 보자는 대법관 공 자 리위원회가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유의사 의 내 에 적으로 공감하고, 으로 법관 의 의견과 국민의 이를 종합적으로 고 하 합리적인 SNS 이 안을 지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를 통해 다수 유권자의 과 가를 아 권력을 하고, 다수 국민의 호와 이 을 하 이해관 를 정 으로써 한정 자원을 분하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의 성으로 인해, 다수의 이 과 치 는 소수자의 권리 이를 헌법과 법률에 보호해야 하는 사법 의 사 과 정치 사이에는 필 적으로 장관 가 생할 수 에 니다. 기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 으로써, 법관이 정치권을 한 사법 내 의 당한 향력에 종 정 정 에 기 지 고 헌법과 법률에 판단을 내리 시한 것 니다. 서 사법 의 정치적 립은 을 할 수 이 사법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시 가 야 할 심적 가치 고 하겠 니다.

○ 최 의 정치적 론 등이 판결에 대한 과 한 이 법관 인에 대한 공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 니다. 판결 내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를 정쟁의 수단으로 하 는 행위로 수 있 니다.

○ 사법 는 재판에 당한 향력을 행사하는 의 시 에 대해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 인 헌법과 법률, 리고 적 · 관적 심에 정치적 · 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한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 · 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법관이 사법 내· 로 당한 향을 지 재판 심의 사법행정제 , 법관 인사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제103)을 정하고 사법권을 법관으로 성 법원에 하고 있 니다. 헌법 제1 가 자 한 이치로 정한 국민주권주의에 하고 법 , 행정 와 리 지 은 사법 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심에 독립하 재판하 시한 는, 로는 다수의 론에 치 정치적 력이 있는 경우에 , 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 의 보 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는 국민의 결단이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의 독립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 을 다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세력에 대한 한 로서의 의 가지지 , 사법 내 에서 사법행정이 는 으로 법관의 재판에 해서는 안 다는 법관의 재판 독립 아 의 한 다고 할 것 니다.

○ 한 , 사법 의 독립이 법관의 자의와 위를 호하 , 국민의 건 한 법 식과 어 판결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어서는 안 것 니다. 사법 국민을 위해 국민의 에서 재할 수 있는 것이 로, 의 당한 력에는 단호 대 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와 국민 의 요 에 기 이 는 력을 단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주로 법원 내 정 회 가 경력을 가지고 판사 을 정 이 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 정치적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하 심에 재판하는 것이 판사 본 의 사 니다. 기서 심은 판사 인의 심과 분 는 적 심을 의 하 로, 판사 인이 가 정한 정치적 성향과 판사가 적 심에 한 판결은 분 어야 합니다. 한, 판사는 위 사 을 다하기 위해 임 이 공정성, 독립성, 립성 유지를 위한 력을 하고 있 니다. 서 판사가 정한 이 적 성향이 있는 회에 가 하 하 다고 하 해당 판사가 한 판결 지 판사 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하 우 다고 단정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판사는 공정성, 독립성, 립성에 대한 의심이 우 를 게 하는 관을 형성하 서는 안 니다. 이 한 점에서 판사 인은 회 가 이 을 에 있어 위와 은 관을 형성하게 는 것은 아 지 고 주의할 필요가 있 니다.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관 사 인 이 경 과 관 를 으로 주관적 생각을 가 수 있고 정한 가치를 호할 수는 있을 것 니다.
우리 헌법이 법관 독립을 정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 ‘ 심에 ’ 재판하 정한 것은, 재판에 임하는 로의 자세가 정으로 성심을 다하는 것인지 자 의 내면에 어 성찰하 하는 한 , 헌법과 법률의 공 을 해 으로 는 이 을 주관적 견과 자의에 기 지 임 이 경 하 는 의 고 생각합니다.

○ 한 , ‘ 심’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기 적으로 적 하는 서 어 의 를 정으로 해 하고 적 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 의 건 한 식과 가치관에 합하는 법의 정 을 게 견할 수 있 하는 역할 수행합니다. 한 법률 을 고 50 의 법관과 지 의 법관의 해 이 수 있고, 것이 정당하다고 가 수 있는 것은, 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자 의 주관적 이 과 정치적 지향성이 아 관적 · 적 심에 공정하게 판단하 기 니다.

○ 시대 변화하고, 법의 정 변화합니다. 하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분쟁을 화 게 해결하는 본 적은 변하지 는

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리고 법의 정 과 본 을 하고 로의 견을 경 하는 관적, 적 심에 판단하 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법관의 이 과 지향성은 재판에 향을 치지 아야 하고, 제가 27 간 경 한 대 분의 법관 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관 사건 에 대한 재판이 인 이어서, 대법관 보자로서 사법 단사건에 대한 정의를 의 은 어로 리는 것은 우 심 니다.

○ 다 , 사법행정이 재판에 향을 치 하 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은 와 이 서 으로 한 이 재 것으로는 보이지 으 , 대법관이 다면 법원 내에서 다시는 이 생하지 겠 니다.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은 본 의 적에 합하게 이 어 야 하고,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하 한 관을 보이는 각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법원에서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 하 국민 정을 린 점에 대해서 하게 생각합니다.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관 사건 에 대한 재판이 인 이어서, 대법관 보자로서 기소 분 에 대한 가를 적으로 리는 것이 심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관 사건 에 대한 재판이 인 이어서, 대법관 보자로서 에 대한 가를 적으로 리는 것이 심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보자는 해당 사 이 니다.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법행정권 사 와 관 하 국민 분 심 를 린 점에 대해 법원 성원으로서 심으로 합니다. 다시는 이와 은 이 지 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에서는 관 법관에 대한 내 을 인하 를 한 것으로 고 있고, 에 대하 소 이 현재 행 인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보자가 기로는 법관의 분 에 대한 소소 에서 분 소 판결을 한 사 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행 이 정 사건의 당 에 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법원 내에서 다시는 이 생하지 겠 니다.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장의 제청을 아 대법관 보자가 장으로서 현 대법원장에 대한 가를 내리는 것이 적 치 아니하 , 는 기본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향과 에 공감합니다.

○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제 법관인사를 한 화 등을 최우 과제로 은 점, 이 한 제 을 법원 법에 를 사법정책자 위원회를 통해 하는 점 사법 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 위한 한 · 향이 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인 사법 에 있어 한 와 제가 는 것은 사법 내 적 요인보다는 적 요인이 고 생각합니다. 사법 은 사법 자 으로 이 수 으며, 의 성과 인, 리고 법이 기에 정 , 국회 을 아야 가능한 것 니다. 대법원장 재임 · 에 하 고심 , 법관 원 등 결국 법에 이 지 하 있 니다.

○ 사법 을 적시에 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 물적·인적 건을 보 수 있기를 니다.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자를 제청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책에 대해 보자가 가 하는 것이 다소 심 니다 , 사법 성원 은 적으로 현재의 과 사법 과제에 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의 당면한 과제가 재판지 의 해소 는 점에 대 분의 성원 이 공감하 고, 한 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 적 과 물적·인적 건의 이 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원 의 의견을 다 하게 수 하고, 법에 한 형식과 를 하 제 을 하는 점 성원의 공감을 는 요소 고 생각합니다.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대법원은 권 에 대하 "공 원이 적 권한에 하는 사 에 관하 권을 행사하는 으로 실 적, 적으로 위법· 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권 이 공 원이 적 권한에 하는 사 에 관하 권한을 위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한다(대법원 2018 2236 원합의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고, 보자는 기본적으로 이를 하는 장을 고 있 니다. 면, 이와 은 해 론에 면 권 의 인정 위가 지 치게 아 당하 로, 권행위 지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권 로 할 수 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있다고 고 있 니다.

○ 어 한 를 어 게 할 것인가 하는 제는 기본적으로 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제 니다. 법 를 하고자하는 본 지, 사법정의에 하는 수사·기소를 한 사 판결을 내

린 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법원과 찰에 대한 국민의 를 회 하고, 형사사법 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에 대하 는 인식하고 있 니다.

○ 다 , 사실관 법 적 의 정당성 는 판단자의 관점이 견해에 대적 수 있어서 이를 성요건 요소로 하는 것이 적 한지에 대하 면 한 가 필요하다고 사 니다.

○ 법관의 단 한 판단 의 과 소수적 견해 지 수사 형사 의 대 이 소지가 있어 자 법관의 수행을 지 치게 위 시켜 로 시대 이 당시의 건 한 식과 경 을 한 향적 판결의 등장에 림 이 수 있 니다. 한 정치권력는 사회세력에 의하 자 의 정치적 장과 이해관 에 대 는 판결을 한 법관을 하는 수단으로 어 법관의 독립을 해할 우 가 있 니다.

○ 이 , 법 이 는 의 성, 법원· 찰의 판결·결정에 을 가 사건 관 인 의 고소· 고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해의 우 지 으 로, 위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면 하고 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9. 위 108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권한 사 는 국민 분 아니 법원 성원 에게 실 과 를 주 고, 이에 대하 는 보자 역시 사법 의 원으로서 게 생각합니다.

○ 다 , 현재 사건이 재판 에 있으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관한 적인 의견을 리는 것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법원 내에서 다시는 이 생하지 겠 니다.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권 사 와 관 의 사건 은 아 재판이
에 있 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한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과 가치를 가지고 행을 할 권리를 가 다고 하고, 지 성 · 종 는 사회적 분에 의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화적 생 의 역에서 을 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성수자의 인권 다른 사 과 가지로 실 보호 어야 하고, 서로 다 이 의 이유가 지 갈등과 를 해소하고 다 성이 공 하는 적인 사회가 수 있 우리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치주의 사회에서 한 인의 은 법과 에 제 와 어 재할 수 니다. 한 , 법과 제 는 에 른 을 아가는 대다수 시대 사 의 가치관 인식과 어 재할 수 기 합니다. 성소수자와 관 법과 제 ,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가는 과정에서 향, , 법에 대한

분한 의견 수 을 통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자 다 성이 공 하고 이를 하는 사회, 의 인권이 보장 는 사회가 수 있 최 을 다하겠습니다.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 는 법관으로 성 사법 가 기 의 사회적 는 관 과 어 것 보이는 결정을 내 , 은 이 생 하는 것을 고 있 니다. 한 결정은 시간이 지 고 보면 당해 분쟁과 관 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치지 고 우리 사회의 로 건 한 가치관의 형성과 립에 기 한 것인 니다. 면, 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지 하면 법에 대한 소와 이 이게 다는 점 인하기 어 니다.

○ 법관은 사회의 다 한 가치와 이 하는 어 이 공정하고 실한 판결을 통해 대립하는 이해관 를 화 게 통합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권 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한 판결로 사 을 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자 의 역할과 사 을 심하고, 자 의 자리에서 최 을 다하 야 할 것 니다.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 등 호화 의 법적 성 에 관하 , 대법원은 이를 재 적 가치가 있는 형의 재 으로 보아 수 대 으로 보 고, 이를 사기 의 인 재 의 이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에 호화 의 법적 성 에 관한 적인 법리가 립 은 아니어서, 법적 에 어 이 있고 사회적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세 적으로 호화 의 본 에 관해 의가 고 있고, 식 서로 다른 것으로 고 있 니다.

○ 호화 의 현과 로 실제 법적인 제 이 생하고 있는 이 법적 가와 제 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의 법률 와 화 면서 호화 의 성 고 하는 향으로 가와 사회각 의 의견을 수 하 법

적 해결이 이 어지기를 합니다.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9 , 2014 에 는 의 야간 회 시위를 시간대와 관하게 률적으로 지하는 시법 제10 가 과 지원 에 위 하 회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 다는 결정을 내 고(헌법재판소 2009. 9. 24. 고 2008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7. 고 2010헌가2 결정),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지에 ' 시간 은 24시 지'의 야간 회 공소사실 분을 지로 판단하 는 (대법원 2014. 8. 20. 고 2008 7505 판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론과 지에 공감합니다.

○ 최 론 보 를 통하 , 21대 국회에서 자정 이 의 심야시간대(자정~ 6시)의 회를 지하는 법안이 의 것으로

고 있으 , 론에 보 것 이 의 적인 내 에 대해서는 지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4 결정에서, 자정 지의 시위는 이 보 화 야간의 적인 생 의 주에 하는 것이어서 이를 률적으로 지하는 것은 과 지에 위 다고 판단하면서 , 24시 이 의 시위를 지할 것인지 는 국민의 주 사생 의 , 우리 시위의 현 과 실정, 국민 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을 고 하 법자가 결정할 지를 는 것이 하다고 판시한 있 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지와 이, 야간 회·시위를 제한하는 에 법 적을 성하면서 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위에서 제한할 수 있 , 시위가 지 는 시간대 장소를 한정하 , 한 장소에서의 적인 장기간에 시위를 제한하 , 장치 는 소 유 장 사 에 관한 건을 과하는 등 다 한 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 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 서를 화시 는 합리적인 안이 수 있 국민의 대 자이 국회에서 지혜를 아주시기를 며, 관 사건이 수 있는 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이 이 의 적인 의견을 리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15.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위 사건의 고심이 대법원에 인 것으로 고 있 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인 사건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적인 법리로는, 현재 행 인 사실관 는 법률관 에 적 는 정소 법과 리, 이 종 사실관 는 법률관 에 적 하는 정소 법은 적으로 국민이 소 법을 할 수 있 보호의 요청에 우 하는 심 대한 공의 사유가 소 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 한하 허 수 있다고 할 것 니다(대법원 2012. 2. 23. 고 2010 17557 판결 등).

○ 현재 위 사건의 고심이 대법원에 인 에서, 대법관 보자가 정 재 의 형성 경위와 성 , 에 대한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민사사건 가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제 한 의 성과 능력을 면 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 공감합니다. , 사실 사에서 권주의가 적 는 이른 가 소 사건에서는 제 의 위 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권으로 이를 제대로 인· 하는 를 야 할 것 니다.

○ 다 , 민사소 의 경우 원 적으로 서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고, 형사 와 리 서 의 대 이 수 있는 자 에 관한 법정 법 이 로 으 로, 서의 사본이 적으로 능력이 있 니다. 서의 정성립에 다 이 는 경우 면 기재 내 의 실성에 대해 심리가 어야 할 것이고, 정성립에 다 이 있다면 청인의 에 서감정 등의 를 이를 인하게 것 니다.

○ 사건의 결론에 향을 치는 요 서 의 정성립과 성에 대한 이 실하게 이 어 수 있 주의를 기하는 한 , 서감정 등의 가 하고 적으로 성 있게 이

어 수 있 적 한 수단을 보하는 제 적 력을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 , 단 등 당사자 이 대한 자 를 소지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 를 의 가지고 있지 은 의 재 현 이 심화 고 있 을 감하고 있고, 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식을 가지고 있 니다.

○ 리 제 는 로 사 자 에 대하 당사자에게 위한 을 허 하 , 공정한 경쟁이 이 어 수 있 하는 제 이 로, 이를 하는 것은 의 재 현 을 화 하는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법원에 하면서, 허 해소 에서 국내 기 이 리 제 로 인한 수 의 의성 에 우리 법원이 아 국 법원을 한다는 지적이 아 리 제 에 하는 수 수단이 필요 을 감합니다.

○ 국의 에 의하면 리 제 를 통해 회사 단 내의 정보가 사회에 공 으로써 사회가 해지고 회사 단 내 의 합리한 분이 수 있다고 합니다. 다 , 리 제 시 소 의 가와 소 의 , 리를 가장한 의 가 어 지 제 를 세심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니다.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 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판결경정은 이 기재 등의 를 권 는 청에 의하 로 잡는 것으로 판결내 을 실 적으로 변경하지는 위 내에서 이 어지는 것이지 , 은 판결경정은 기의 실성과 재판결과에 대한 의 심 등을 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 위한 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판결경정의 대 이 는 이 기는 수 은 사건을 은 시간 내에 리해야 하는 법관 의 과 한 과 에서 주의에서 경우 있겠으 , 당사자가 제 한 서면과 자 에 기, , 치가 어 있는 서 생하는 사 적지 은 것이 현실 니다. 재판 보정 , 보정권고, 권 행사 등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대 분 로 잡지 , 가 한 는 경정을 통해서 이를 시정하게 니다.

○ 법원에서 성한 판결 이 소 관 인 사법 의 에 치는 향을 유 하 , 실수를 수 있 지 적으로 주의를 기하는 한 ,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은 기 적 수단을 하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이 으로 수·보 하는 안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결 경정이 은 경우 것이 판결내 을 실 적으로 변경하지는 는 것이 판결서에 가 어 있다는 사실 으로 판결에 대한 가 아 수 있 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 하고 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 경정의 현 을 하 공 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의 경정 청을 경정 결정이 이 어 경우에는 통 가 가능하 이를 공 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권경정을 한 유형은 의 통 를 하는 기 적 어 이 있고, 경 한 에 관한 경정 지 공 하는 것이 사법 를 어 수 있는 점, 판결 내 의 는 경정 결정이 아니 소제 를 통해 시정 수 있는 점 등을 분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판결경정은 이 기재 등의 를 권 는 청에 의하 로 잡는 것으로 판결내 을 실 적으로 변경하지 는 위 내에서 이 어 니다. , 판결내 을 변경하는 는 경정의 대 이 수 고 이는 소제 를 통하 수정 니다. 한 판결의 경정결정 자 에 가 있는 경우 면 이로 인하 이 을 은 당사자는 경정결정에 대하 시 고 등으로 다 수 있 니다(민사소 법 제211 제3).

○ 대 분의 경정 청 사건 은 사소한 기 등을 로잡는 것으로 이에 대하 당사자 이 다 지 는 경우가 대 분 니다. 인 / 기각 사유는 대 분 형적이어서 이를 당사자가 아 국민에게 지 공 하 로서의 가치가 리 지 고, 사유의 적 기재 과정에서 한정 사법자원이 적으로 사 하게 어 정 법관의 한 판단을 요하는 본안판단이 지 실해 우 있 니다. 이와 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 하 , 인 /기각 사유의 공 위, 식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이 가지는 가 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 시 기 위하 립 으로 국가인권회의 결정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가 적 준수 어야 은 이론의 지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권고결정 위 의 력에 관하 는, 권고결정의 내 , 위 의 정 , 수사 재판에 향의 정 등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다 겠으 , 권고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의 요한 분에 관한 것이고 위 의 정 우며 수사 재판에 향 경우에는 재판의 정당성이 약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고결정 위 의 력은 권고결정의 내 , 위 의 정 , 수사 재판에 향의 정 등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니다. 다 서 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립 지 등에 어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 적 준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고결정을 위 한 재판으로 인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형해화 는지 정 는 권고결정의 내 , 위 의 정 , 수사 재판에 향의 정 등에 것으로 생각 니다. 다 서 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립 지 등에 어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 적 준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사소 법 제364 제1 은 소법원이 원 적으로 소이유서에 사유 을 판단하 , 제2 에서 에 지 은 사이 판결에 향을 사유에 관하 는 권으로 심판할 수 있 정하고 있 니다. 이 한 권심판의 정을 것은, 실 적 실 견을 위해, 리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기 위해 원심판결의 을 로잡을 필요가 있기 니다.

○ 보자는 이 한 권심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 한 정이 형사 소심의 사 심적 성 에 하는 것은 아니 고 생각합니다.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에서 고심은 법률심으로 로 소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에 해당합니다. 서 소심에서 기 을 보면서 원심이 등 행, 사실 인정 은 법리 해 과정에 이 있고 한 이 판결 결과에 향을 다면 시 원심 판결을 기하고 권으로 심판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고등법원 형사 에 할 당사자가 소이유서에서 지적하지 기 을 면 면서 원심판결의 을 견 을 에는 권으로 원심판결을 기하 니다.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유 아 권리 약 제9 는 와의 분리가 아 의 최 의 이 을 위하 필요한 경우를 제 하고, 아 은 로 분리 지 아야 하며, 분리 경우 와 을 지 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 니다. 우리 유 아 권리 약에 가 , 준하 으 로 헌법 제6 에 위 약은 국내법과 한 력이 있 니다.

○ 서 아 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각 리지 고 수사하는 것은 유 아 권리 약을 위 하 위법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치소에 수감 인 사 은 장애인과 아 이 고 할지 공 적 적에 법률에 정한 대로 기본권이 정 분 제한 수 에 고 이는 가 한 면이 있 니다. 치소에 수감 장애인과 아 의 경우 의 약성이 수한 과 결합하 기본권 해 위 이 은 고 수 있으 로, 의 권리가 당하게 해 지 보호할 필요성이 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면을 고 할 장애인, 아 수감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의 권리가 과 하고 당하게 해 지 수감자에 대한 분보다 세심한 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수사기관의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기본권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은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현대사회의 성 수·수 을 통하 대 화, 등에 장 내 한 사생 정보가 분 하게 수 수 있으 로, 이를 지하기 위해 사법 가 적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실 수·수 장 를 기각할 한 사안은 지 고, 통 기각의 법으로 과 한 수·수 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사법 가 수·수 장을 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하 법관 에게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등의 제 적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수 장 당 법관 이 사건에서 의 소 정 등을 하게 고 하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수·수 장 이 적 고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이 있는 것 고 있 니다.

서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대 화, , 서 등에 장 자정보에 대한 수·수 이 화 고 있고, 자정보와 장 의 본 적 성으로 인하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해할 우 가 다는 점에서 법원에 의한 적 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고 있는 것으로 고 있고, 지에는 분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법관 대면심리제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판의견이 있다는 점 고 있 니다. 서 제 를 하 심 의 대 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청하는 고인으로 제한하는 등 수사의 행성과 성을 해하지 는 적인 제 안에 대하 분 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정보 장 는 의사실 관 정보는 물론 와 관 지은 위한 사생 관 자 를 하고 있는 경우가 으로, 수의 원 이 하게 준수 필요가 있 니다. 한 위한 수·수 을 통하 보 관정보 이 의자에 대한 당한 수단으로 위법한 건 수사 로 사는 분에 대한 제의식에 공감하고 있 니다.

○ 보자가 2011 서 지 법원에서 장 법관으로 할 당시 수수 장의 지에 자정보의 수수 이 종 고 자정보의 결성 을 위한 보 의 필요성이 종 에는 사실과 관한 정보는 기하 하는 내 을 하기 하 으 , 이행 는 인하지 하 니다.

○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하 는 수·수 장 단 에서 수 대 정보를 최대한 하 할 수 있 실한 심리 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 니다. 아가 장의 행 과정에서 수자 변호인의 권을 분 보장하 유관정보 이 하고 합리적으로 이 어 수 있 하 야 할 것 니다. 현재 수 정보의 기가 적 이 어지고 있는지에 관하 적 통제수단이 는 것으로 고 있는 , 이에 관하 적 한 제 적 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수사기관이 대 화 등 자정보 장 를 수·수 하면서 이 자정보 를 통 로 보관하 이를 건 수사 는 의자에 대한 당한 수단으로 할 우 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분 경청할 한 의견이 생각합니다.

○ 장에 유관정보 수하 기재 어있 에 관정보가 어있는 을 보관하고, 이를 가 장청 를 통하 건 수사에 하는 것의 위법성은 최 대법원 판에서 인 있 니다. 보자 위 판 의 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장을 고 있 니다.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 해소 의 소 이 지 은 이유는 해행위 해 정에 관한 자 가 대 분 해자에게 있어 권리자가 해에 대한 를 보하지 해 에 어 을 기 니다.

○ 가 사실 사제 가 다면 법원이 지정한 가가 대 당사자의 사 실, 공장 등에 하 , 자 열 , 장치 등 필요한 사를 하고 를 보할 수 있게 로 허 해소 에서의 균형 현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 자 제 제 역시 허 해 자 를 정하기 어 자 제 청이 기각 어 제를 해결하고, 자 제 제 의 실성을 이는 기 할 수 있을 것이 니다.

○ 가 사실 사제 자 제 제 가 기 의 제 와 화를 이 며 실 성 있는 보가 가능하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은 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 제2 은 하 관에 있는 소기 에 대한 기 유 에 대해, 허법 제128 제4 은 인의 허권 는 실시권에 대한 고의적인 허해에 대해, 각 적 해 을 인정하고 있 니다. 적 해 제 의 지에 게 적 해 을 적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적 해 의 정과 관 대법원 이 가이인을 정하는 것은, 사건 다 해의 , 정 가 이를 유형화하 기준을 정하기 어 고, 적인 사건의 해 을 인정할지 는 재판사 인 다, 내 적 기준으로 재판사에 관한 적인 지 을 제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행위가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한 실 가 적 고 에 할 한 기준이 형성 다는 공감대가 있기 에는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로자의 로3권, 권 등은 국민의 행 과 생 을 우하고 인간의 과 가치 의 가 는 기본권으로 우리 사회에서 는 요성과 의 가 우 다고 생각합니다. 합 쟁의행위의 가 성을 판단 에 있어서는 위와 은 헌법적 가치를 분 고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 하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서의 이 제 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것은 아니고, 할 수 는 시기에 적으로 이 어 사 자의 사 에 심대한 내지 대한 해를 하는 등으로 사 자의 사 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 · 수 있다고 가할 수 있는 경우에 로소 단적 제공의 가 위력에 해당하 해 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있 니다(대법원 2011. 3. 17. 고, 2007 482 원합의 판결에서는). 이는 로자의 3권을 분 보장하기 위하 해 의 성립 위를 제한하 해 하는 법리로, 보자는 위와 은 대법원 판 의 지에 이 공감하고 있 니다.

○ 로자의 단 행 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당 보호 아야 할 권리지 ,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과 가지로 이를 향유 에 있어 다른 기본권과 화 어야 하는 등 정한 한 가 재합니다. 쟁의행위는 적· 법· 에 있어서 법

기 사회 서에 위 어서는 아니 고, 합원은 합에 의하 주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 서는 아니 다는 등의 내 을 정한 합 관 정법 제37 는 이 한 한 를 화한 것으로 수 있 니다.

○ 다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 본 의 책인 법원이 적 사건에서 로자 단 행 권의 위법를 판단할 에는 사회적 약자인 로자의 단 행 권이 당하게 해 는 이 세심한 주의를 기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법원에 인 사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 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립 판 는 주주와 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 을 가 주 이고, 이사는 위임 약의 대 인 회사에 대하 실의 를 과할 주주에 대하 관주의의 는 실의 를 하지 는다는 지로 판시하 니다. 이 한 법리는 적으로 적 고 있고, 하 정 기 과 관 하 서 적 는 것은 아니 고 고 있 니다.

○ 우리 에서 최 이사가 회사 아니 주주에 대하 실의 를 하 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관 하 법 정안이 제 어 있으며, 이에 대하 사회 각 에서 한 의가 행 이 고 고 있 니다. 국에서는 이사가 회사 아니 주주에 대해서 실의 를 하는 법 있다고 고 있 니다.

○ 법 이사의 실의 를 주주에 대해서 지 대하 는 정안은, 이사가 회사 아니 적으로 주주의 이 보호에 하게 하 는 것으로 수 있 니다. 이에 대하 , 우리 에서는

은 회사에서 지 주주가 재하고 있고 지 주주가 이사를 통해 소수주주의 이 을 해하는 경우가 으 로 소수주주의 이 을 보호하기 위하 이사의 실의 내 으로 주주의 적 이 을 화하자는 의견과, 법 실의 의 대 은 주주가 아 회사이고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 에 있을 이 로 위임인인 회사에 대해 한 관리자의 주의의 를 하는 것에 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회사의 이 과 주주의 이 사이에 리가 생하지 고 화 수 있고, 지 주주가 당하게 소수주주의 이 을 해하지 하는 안을 하 법의 다른 법리와 화 수 있는 향으로 재 , 정 등에서 한 의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이 한 사회적 의와 국의 사 , 리고 우리 법의 기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이사의 실의 의 내 을 어 게 정하는 것이 당할 지에 대하 지하게 고민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과 에 재 수의 · 임 에 대한 관대한 형에 대해 은 판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하지 법원에서 한 국민의 판을 수 하고 경제 에 대한 형기준을 립하 점 기준에 합하는 관적인 형을 위해 력해 것으로 고 있 니다. 실제로 최 고 사건 에서는 형기준에 합하는 실형 등 형이 고 것으로 고 있 니다.

○ 회사를 위한 경 판단 과정에서 생한 사건이 아 경 자 인이 가 의 사적인 이 을 하기 위한 , 임 에 대해서는 기 인이 는 사정을 어 감형하 서는 안 고, 책에 합하는 정한 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향 에 국민의 건 한 식을 하 형기준을 수립하고, 한 형에 대한 지 적인 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 배우자의 다량의 주식으로 인해 차후 본인이 맡을 재판이 이해 충돌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당사자가 어 대법원에 인 사건은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이해 이 생 한 사건이 당 다면 회 하 하겠 니다.

142. 141번과 같은 우려를 없애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유 주식 중 사업연관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또는 처분을 권유할 것입니까?

○ 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당사자가 어 대법원에 인 사건은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 우 에는 경청할 분이 있으 로, 사 관성이 는 주식에 대해서는 우 를 식시 수 있 치할 것을 우자에게 적 적으로 권유하겠 니다.

143.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에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 보자로서 적인 사실관 를 지 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론으로 리면, 헌법 제21 가 보장한 론의 자유는 다한 사회 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건 한 판과 대안을 제시 으로써 우리 사회가 른 향으로 아갈 수 있 하는 민주사회의 심적인 권리 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이 보장 지 으면 론 에 제약이 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을 한 국가기관 론의 자유가 보장 수 있는 건이 성 수 있 력할 필요가 있겠 니다.

144. 143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적인 사실관 에 대하 정 하지 하고 있는 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 론으로 리면, 헌법 제21 가 보장한 론의 자유는 다한 사회 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건 한 판과 대안을 제시 으로써 우리 사회가 른 향으로 아갈 수 있 하는 민주사회의 심적인 권리 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이 보장 지 으면 론 에 제약이 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을 한 국가기관 론의 자유가 보장 수 있는 건이 성 수 있 력할 필요가 있겠 니다.

145.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 적인 사실관 에 대하 정 하지 하고 있는 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 론으로 리면, 헌법 제21 가 보장한 론의 자유는 다 한 사회 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건 한 판과 대안을 제시 으로써 우리 사회가 른 향으로 아갈 수 있 하는 민주사회의 심적인 권리 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이 보장 지 으면 론 에 제약이 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을 한 국가기관 론의 자유가 보장 수 있는 건이 성 수 있 력할 필요가 있겠 니다.

146.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적인 사실관 에 대하 정 하지 하고 있는 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 론으로 리면, 헌법 제21 가 보장한 론의 자유는 다한 사회 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건 한 판과 대안을 제시 으로써 우리 사회가 른 향으로 아갈 수 있 하는 민주사회의 심적인 권리 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이 보장 지 으면 론 에 제약이 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을 한 국가기관 론의 자유가 보장 수 있는 건이 성 수 있 력할 필요가 있겠 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 면,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자 공감합니다.

○ 성 , , 력, 세대, 경력 등을 고 하 대법관을 성하면, 대법원 성을 다 화하는 에 어 정 이 수 있는 면이 있 니다. 다 , 사회현 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으로 는 인적 성 으로 분하기 어 우 로 한 인적 성 가지고 대법관 성의 실 적인 다 성을 보할 수 니다.

성을 가지고 대법관 성의 형식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실 적인 다 성을 보하지 하는 결과가 우 있 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를 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 인사 법 인 하 대법관 보 위원회를 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

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의를 어 대통 이 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의를 어 대통 이 임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를 어 대법원장이 임 하 정하고 있 니다. 헌법이 임 제 식으로 법관을 하 정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니다.

○ 대법원 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 , 자 민주적 정당성을 보하는 와 법이 사법 의 독립과 정치적 립성을 해치고, 다수의 성 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 야 할 사법 의 사 을 성하는 지장을 주는 향으로 지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법은 대법관 보 위원회에 관한 정을 어 위원의 성, 자 , 의결 를 정하고 제청 시 이를 대법원장이 하 시하고 있고, 이 에 성 어 한 대법관 보 위원회 법관이 아 위원이 과 수를 지하 것으로

고 있 니다. 법 등으로 역, 성 , 등 대법관 성의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대법관 보의 ,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고 대법관 보 위원회 의 을 실 화하는 향으로 대법관 성의 실 적인 다 성을 보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 의 정치적 론 등이 판결에 대한 과 한 이 법관 인에 대한 공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 니다. 판결 내 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를 정쟁의 수단으로 하 는 행위로 수 있 니다.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위와 은 행위로 인하 사법 에 대한 국민의 가 당하게 우 가 있으 로, 사법 는 이에 대하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 인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법관이 사법 내· 로 당한 향을 지 재판 심의 사법행정제 , 법관 인사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고 에서 법관 인을 공 하고 하는 경우가 있 니다. 물론 사법 의 재판권 국민으로 은 것이고, 판결에 대한 의견 은 국민 의 법감정과 변화하는 가치관을 할 소 한 통로가 다는 점에서 건 한 판을 장 어야 하는 면 있겠 니다. 판결 내 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의 독립을 해하는 결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 사회가 게 인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가 헌법이 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 을 분 감당할 수 있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 론으로 의 사법 독립이 하게 지켜 야 합니다. 이를 위하 는 적어 법관에 대한 과 한 판이 자제 는 사회적 합의와 화가 형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수준의 는 에 대해서는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법관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인적인 생 에 있어서 각 행에 주의를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설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의 법행위로 인한 해 청 권은 해 가해자를 안 로 3 간 는 행위 로 5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로 소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해 청 권에 대해 소 시 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에 해당할 수 있 니다. 를 어 국가의 위법행위로 형사 유 판결을 아 해 을 청하는 경우, 재심 판결이 정 지는 권자의 해 청 를 기대할 수 는 사실 의 장애사유가 있으 로, 이 한 경우에는 국가의 소 시 변이 권리 에 해당할 수 있을 것 니다.

○ 대법원 2013. 12. 12. 고 2013다201844 판결은, 국가의 소 시 변이 권리 으로 는 경우 권자가 국가의 소 시 변을 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 당한 기간'에 대하 , 이를 민법 시 정지에 준하 단기간인 6 로 해 하 , 사건의 수 한 사정이 있으면 장 수 있지 아 리 어 민법 제766 제1 이 정한 단기소 시 기간인 3 을 넘을 수 다고 판시하 니다. , 권리행사에 당한 기간을 원 적으로 6 로 해 하 , 사안에서는 적인 사정에 기간이 3 지 장 수 있다고 본 것 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이 재판 의 대 이 는지 는 사법행정 권 과 관 하 인 재판과 관 어 있고, 위 법리가 쟁점이 다수의 과 사 사건이 재판 이 향 재판이 가능성이 으 로, 대법관 보자로서 법리의 당 에 관하 이 의 적인 견해를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 사법 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 니다. 한 사법 은 법원을 위한 관점이 아니 , ·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요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최우 의 과제는 재판지 을 해소 으로써 한 재판을 을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는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하는 과제 니다. , 분하고 관적 자 를 대로 실한 심리를 정의 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기를 는 국민 의 소리에 유 하고 이를 적으로 소화하 , 한 재판이 실한 재판의 다른 이 이 지 법원 내 의 다 한 의견을 경청하 세심하게 제 를 · 하고 이를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을 종의 통 에 유하 본다면, 해결 안은 ① 통 에 하는 로 장 등 기 시 (= 재판),

② 현 간의 원인 제 (= 심리 을 위한 제 재판지 장애 요소 제), ③ 적정한 통 이로에 유 수 있 하는 대 수단의 (= 1심 실화 정 등 대 적 분쟁해결 수단), ④ 과 기 을 한 로 이 의 최적화(= 인공지능 기 과 자소 등의 재판) 등의 다 한 면에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 를 당하는 법관을 분 원하고, 법관임 제를 하 우수한 역 과 자 을 가 법관을 보할 필요가 있 니다. 이 우리 사법 법관 1인이 당하는 수가 은 야 과 주 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 정 로 은 이고, 국민 은 요한 법적 분쟁에서 단독판사보다 법관 3인으로 성 합의 에서 분한 론과 고를 사건의 결론을 내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하 재판 수를 리는 한 가 있기 니다. 법 인 과의 보수 , 국적인 보 제 등의 요인으로 능력이 인재를 하는 것이 지 은 현실 에서, 적정한 법 경력 요건의 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의 요인이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하 이를 하는 것 요합니다. 심리 실기한 공 법에 대한 제재 화 등 기 의 소 법 정에 른 소 지 를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적정하게 하는 한 으로, 재판지 의 원인으

로 지적 고 있는 감정제 의 , 정보의 균형과 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리 제 의 , 사 분 의 장기화를 통한 필요한 재판 지 등 다각적인 면의 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 가 리에서 분쟁 당사자를 주하는 1심 단 를 실화하 분한 자 를 으로 실 적인 공 과 심리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종국적 결론이 하 , 당사자 의 적 감을 제고하고 관성적으로 소심, 고심 지 이 이 어지지 하는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최대한 하고, 자소 과 재판 등 시간과 장소적 한 에 애 지 는 심리 수단을 적 적으로 으로써, 사법 의 성을 최대한 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리 잡한 사건의 요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으로써, 법관은 심적인 판단 에 하 재판 의 와 를 향 시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한 이 하는 인공지능을 사법 역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 할 수 있 , 법원 한 리적 기준과 지 을 하 이를 적으로 제안·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법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 원화제 는 사회적 경 과 이 한 사 을 법관으로 임 하 사회현 에 대한 은 이해를 으로 수준 은 재판을 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기 위한 제 니다. 보자는 이 한 법 원화제 의 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 , 법관 임 자 을 화하는 것 으로 국민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법관을 당 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법 원화제 를 성공적으로 정 시 기 위해서는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을 분 보하고, 법관 보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를 하 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을 지 는다면, 법 원화제 의 장점은 사 지고, 사건 리의 성 해 어 재판지 등 각종 제가 심화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 안 법 원화 정 을 위한 제 과제에 대해 · 해 것으로 고 있 니다. 지 10 간의 제 시행 경과를 으로 향 제 가 지에 게 정 어 갈 수 있 와 를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 원화 지에 분한 사회적 경 과 , 자 을 법 인을 법관으로 임 할 수 있 지원자의 자 과 경력을 공정하고 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할 필요가 있 니다.

○ 아 , 한 능력과 인 을 겸 한 법 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임 아니 재판제 와 법관의 역할, 경 등 해 갈 필요가 있 니다.

○ 한, 법관임 을 위한 법 경력요건을 단 하는 등 합리적으로 하 우리 사법현실에 게 법 원화 제 를 재 할 필요가 있 니다. 이를 통해 원 한 경 과 을 법관과 열정적이고 실력을 법관이 법원을 성 으로써 하고 공정하면서 실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 니다.

○ 한 , 현대 사회의 한 변화에 법적 분쟁이 점 다 하고 잡해지면서 사건의 이 가 가하고 있고, 심리주의와 공판 심주의의 화 등 심리 경이 변화하 법관의 사건 이 지고 있는 니다. 이 한 사법 경의 변화에 과적으로 대 하고 국민의 실하고 한 재판을 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법관이 적 한 수준으로 원 필요가 있 니다.

○ 21대 국회에서 법 경력 건을 화하고 법관 정원을 원하는 내 의 법률안이 제 어 의를 으 내 통과 지 하 고, 현재 법관 현원이 정원에 하 적정한 수준의 법관 임 에 어 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 원화에 은 한 법관 임 의 어 과 법관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 내 아니 에서 은 분 이 공감하고 있는 , 적 한 이 른 시 내에 이 어 국민 에게 은 사법서 를 제공할 수 있기를 합니다.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65 는 대통 , 국 리, 국 위원, 행정각 의 장 등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의 소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 제1 이 정한 ' 심판 청 가 이유 있는 경우'를 ' 청 인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로 해 하는 한 , 행정각 의 장은 대통 과 면의 과에 본적 이가 있으 로 '법 위 의 대성'과 ' 면 결정으로 인한 과' 사이의 법 형 을 할 이 점을 고 하 야 한다는 원 을 시한 있 니다(헌법재판소 2023. 7. 25.자 2023헌 1 결정). 한 헌법재판소는 대통 에 대한 면결정은, '대통 의 을 유지하는 것이 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수 대통 이 국민의 임을 하 국정을 당할 자 을 실한 경우'에 정당화 수 있다고 시하 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 1 결정). 보자는 기본적으로 이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에 공감하는 장을 고 있 니다.

○ 다 , 적으로 어 한 위 행위가 사유가 수 있는지는 화하 하기 어 분이 있고, 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 면 보자가 인적인 의견을 기 적 치 한 면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법 회는 법원 내 공식 임은 아니지 법관 로 성 단 로 고 있고, 국제인권법 회는 대법원 하 분야 회 의 하 로 하는 법관이 면 가 할 수 있고 회원수가 500 이 넘는다고 고 있 니다.

○ 우리법 회, 국제인권법 회가 정한 정치적 향성을 고 있어 사법 의 화를 우 하는 시각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보자가 법관으로 재 하면서 경 하기로는, 법관 로 성 단 가 리 정치화, 세력화 다 , 소 회원의 으로 인해 사법 의 화가 고 있다고 보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 공 자 이 가지겠으 , 법관 자 에게 주어 을 해내고 어 하고, 이를 위해 분야의 회 을 통해 성을 화하기 위한 력을 게을리 하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법 회 국제인권법 회 한 한 임 하 고 생각합니다.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단소 제 의 의 하 는 대 당사자가 수행하는 해 청 소 에서 판결의 력을 지 겠다는 '제 고'를 하지 는 이 해자 원에게 판결의 력이 다는 것 니다. 이는 다수의 해를 게 제하는 는 과적 수 있지 , 우리 의 기 민사소 법 와 지 는 면이 있고, 치 하게 기판력을 아 권리 행사를 할 수 는 사 이 생 수 있는 제 있 니다. 서 단소 제 를 대하기 위해서는 이 한 점 을 가로 하고 사회 각 의 의견을 청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적 해 제 의 경우, 기 이 지식재 권 해자에게 실제 해 보다 은 의 해 을 하 으로써 위법행위를 지하고, 위한 해 생을 하 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 고 생각합니다. 다 , 이 제 역시 경제성장 해 우 , 소 의 등 이 있을 수 있는 , 이 적 해 제 를 하고 있는 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정보 보호

법, 허법 등의 시행 사 등을 고하 대 적 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07 형사소 법 제243 의2가 어, '정당한 사유가 는 한' 사 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의자에 대한 에 하게 하 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이에 관하 , 대법원은 "헌법 기본권인 ' 의자 고인이 변호인의 력을 을 권리', '변호인의 보호권'을 화한 법률 권리로서, 의자 에 있어 수사기관과 의자 사이의 당사자 대등을 보 으로써 헌법 적법 의 원 과 변호인의 력을 실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로, 는 준수 어야 한다"고 판시한 있 니다(대법원 2013. 3. 28. 고 2010 3359 판결 등). 형사소 법 제243 의2는 변호인의 의자 권과 에 관하 세한 정을 고 있으 로, 수사기관은 위 정을 준수하 의자 변호인의 권리가 당하게 해 는 이 각 주의를 기 야 할 것 니다.

○ 보자는 이 한 대법원의 판결 지에 공감하고, 형사소 법이 시한 와 이 '정당한 사유가 는 한' 의자 권은 최대한 보장 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는 하게 해 할 필요가 있 니다.

○ 찰은 의자 에 한 변호인이 해 수사기 등 수사에 현 한 지장을 하는 사유(사의 인 이 당하게 에 하 적인 등을 행하는 경우, 의자를 대 하 변하 정한 변 는 을 유하는 경우, 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자 내 을 · ·기 하는 경우 등)가 있으면 이 를 제한할 수 있 하는 내 정을 로 변호인의 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변호인의 력권이 수사를 해하는 수단이 어서 안 지 , 인적으로는 이 한 찰 내 정에 른 실 이 변호인의 력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 에 각한 것인지 다소 의 이 있 니다. 으로 어 경우에 변호인의 권 제한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하고 관적인 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 에게 한 본 지를 고 하 , 대통의 사면권은 법 의 등이 는 헌법이 이 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적정하고 한 를 행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면제 는 법치주의가 립 현대사회에 어 리지 는다는 지적 있고, 사면권의 행사가 합리적 기준 이 정치적 이해관 가 결정 다는 판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사면은 법이 과 다른 이 과의 갈등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결단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 인 , 제 의 당성에 대한 의보다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을 위한 력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 의 사면은 국가이 과 국민통합이 는 제 의 지에게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를 보 적·적으로 이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 제109 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의 안 보장 는 안 서를 해하 한 을 해할 가 있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심리’이지 판결은 아 니다. 판결을 적시에 공 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성을 제고하 사법의 책임성을 화할 수 있을 것 니다.

○ 위와 은 헌법 의 판결 공 의 원 은 판결 의 공 이는 정할 수 는 것이어서, 판결 은 공 할 경우 당사자의 이 시를 게 해할 수 있는 가사, 소 사건이 , 정의 원 에 위 수 있는 정 형사 판결이 아 한 원 적으로 고 지 이 리고 면적으로 공 어야 한다는 것이 보자의 의견 니다.

- 다 , 정 사건의 형사 판결 을 공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정 원 에 할 우 가 있고, 사건이 소 심에 어 있는 경우 판단에 향을 수 있어 독립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해할 가능성, 해자 등의 사생 해 는 우 등의 제점이 있으 로, 이 한 우 을 종합적으로 고 할 필요가

있 니다. 이에 2023 시행 고 있는 정 민사(행정, 허) 판결서 공 의 시행경과를 면 지켜본 이를 기 로 정 형사 판결서 공 를 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법원의 판결 제공의 가 는 민사소 법과 형사소 법 정에 의하 공 는 판결 의 시적 위가 제한 어 있고 인정보가 공 지 아니하 실 리를 하 야 합니다. 한 판결 을 열 하 할 것을 우 하 , 판결서 인 열 서 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건당 1,000원을 고 있 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판결 공 에 소 적인 것 보 지 있 니다.

○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법에 의하 , 실 화의 위를 으로 정하고(인의 주민등 호, 주소지, 생 등 실 화하고 인의 성 과 법인은 실 화 대 에서 제), 이를 넘어서는 분의 실 화는 고 당사자의 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는 의 으로 하며, 이 한 치를 할 경우 판결 공 로 인한 법원과 성원 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률이 다면, 판결 공 가 원 해 것으로 보 니다.

○ 우리 의 판결 에는 은 사실관 가 기재 어 있어 당사자의 이 , 주소 등을 실 화한다고 하 사실관 를 통하 당

사자가 정 사생 이 이 유 지가 있니다. 재판제 를 이 하는 국민 이 판결서 공 에 이 한 인정보 해의 우 가 있다는 점을 고 하 적 한 판결서 공 의 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한 국민 의 을 법률을 통하 제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 변호사제 는 법원이 한정 국 변호 위 내에서 국 변호의 적 수준을 향 시 기 위해 국 제 를 해 우리 실정에 게 한 제 로서, 2006 본 실시 이 국 변호의 적 수준이 아 다는 가를 아 니다.

○ 국 변호사제 과정에서 법원의 관 · 감독이 지 치게 화 면 이를 의식하 변호인이 고인의 이 을 세우기보다 법원의 원 하고 리한 재판 행에 하는 형 의 이 수 있다는 지적 있 다고 고 있 니다. 이에 법원은 과 재위 을 심의하는 고등법원 국 변호 위원회 위원이 과 수가 대하고, 위원 변호사위원은 지 변호사회장 을 하는 등 안을 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우 국 변호사에 대한 가 식과 가·위 의 관 성을 보할 수 있는 제 적 안을 우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 를 하 공공형사변호인이 국 변호 지 당하게 하 , 수사·소 기관의 관 와 향 위를 어 국 변호사 제 를 독립

적· 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 가
는 것을 제로 하 해당 기 가 국 변호사제 를
하는 안 고 해 수 있을 것 니다.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 력에 관한 장 이가 있고, 법률 법 의 위헌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해 의 치가 생 지가 있다는 점 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제에 관한 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 의 해 ·적 권한은 사법권의 본 적 내 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 과 화 해 하는 것은 법 을 해 하고 적 하는 대원 에 해당하며, 합헌적 법률해 을 하는 법 의 해 ·적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하는 것이 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적인 분쟁에서 법률의 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각 기관에 한 권한 분장을 넘어서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 이 법의 를 넘어서는 해

을 한다면 사실 법률을 다른 내 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 국회의 법형성권이 해 지 있 니다. 한 한정위헌결정에서 제시 해 에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소하게 는 경우, 소한 당사자가 통 의 소 가 아니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 제를 으 고 시 으로써 심 제 에 심각한 을 하고, 사법권의 행사를 통한 정당한 권리 제가 단적으로 지 가능성을 제할 수 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정의 지에 기관에게 주어 책 를 적정하게 분 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관의 관 , 고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기관의 력을 지켜보시고, 헌법 정권자인 국민 서 지혜 게 판단해주시기를 합니다.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사법 성 시, 행정 서와 한 대로 재정당국의 심사를 은 , 국회의 심의를 통하 이 정 고 있습니다.

○ 적으로 독립기관 은 인사, , 을 행정의 기본으로 고 있고, 인사와 이 지 으면 실 적인 과를 기 어 경우가 있을 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0 에 정 가가 을 성할 독립기관의 장으로 에 관한 의견을 는 를 하고 있으 사법 에 대한 을 성할 위와 은 법률의 지가 제대로 현 고 있는지, 재정당국의 심사 기준으로 변화 사법수요와 사법 고유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 는 는지 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니다.

○ 본적으로는 헌법 대원 인 3권 분립의 원 사법 독립의 원 에 는 제 가 수립 필요가 있고, 사법 가 독립적으로 안을 성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안 지가 수 있을 생각합니다. 이는 법원의 물적 독립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보장과 게 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 법률안 제 권은 국회의원과 정 에 어 있으로, 법률안 제 권이 는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재판의 법원의 에 관한 사법정책에 관하 주 권을 행사할 수 는 어 이 있 니다. 현행 법원 법에 면, 대법원장은 재판 법원 와 관 법률의 제정 는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할 수 있을 니다. 법률안 제 을 위해 정 는 국회의원에게 하는 과정이 자 사법 와 법 , 정 사이의 과 한 결 으로 변어 사법 의 독립에 정적 향을 수 있고, 과 사법행정권 사 를 은 경에 제한 건 에서 법원의 재판권을 하 고 하는 이 있 기 이 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정 시 사법 의 실 적 독립이 보장 수 있 법원의 , 인사, 등 사법행정과 소 를 한 재판제 에 관한 사법 의 법률안 제 권을 인정하는 안 적 적으로 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안에서 대법원장 는 법원행정 장이 법률안을 국회에 하 제 을 요청하는 제 를 하는 안을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 재판제 는 국민이 재판의 주 로 하 유·결과 형의견을 재판 에 제시 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성을 시 고 국민의 제고에 당한 과를 다고 생각합니다. 심원 은 법관이 하는 사 실이 아니 법정에서 제시 는 기 과 를 판단의 자 로 게 로, 사와 고인, 변호인이 쟁점과 관 심자 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호 하는 과정을 시 치게 어 주의, 당사자주의, 공판 심주의 등 형사소 법의 대원 에 각한 소 의 을 현하는 기 를 하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국민 재판제 의 시기의 기대와 리 실시 건수가 지 아 국민이 감하는 과가 어 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현행과 은 고인 청주의 아 에서는 국민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고인의 의사에 서 국민 재판을 실시할 수 에 는 한 가 있으 로, 정 에 대하는 필수적 국민 재판을 하고 고인에게는 제 청권을 하는 등으로 대 을 대하는 안을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국민 재판은 다수의 심원, 심원 보자 이 지정 기에 법정에 하 야 하고 적 장시간 재판이 행 로,

적인 형사재판보다 은 사법자원이 어야 하는 것이 현실 니다. 국민 재판의 대가 다른 형사재판에 자원의 감소로 이어 재판지 의 다른 원인이 지 , 법관 원 등을 통해 법원에 분한 인적·물적 건이 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국민 재판 청 를 실하고 적으로 안내하고, 적 한 보를 통해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기하는 등 다 한 력을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를 이기 위해 국민 재판 제 의 지에 어 보면, 심원 결이 기 력을 가 수 이를 분 하 야 합니다. 대법원 한 정 를 식 있는 시민으로 성 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 재판 에 제시하는 단적 의견은 최대한 어야 한다는 지로 판시한 있고(대법원 2010. 3. 25. 고 2009 14065 판결), 보자 이에 공감합니다.

○ 실제로 국민 재판으로 행 대 분의 사건에서 재판 는 유· 결은 물론 형에 관한 심원의 의견 하 이를 판결에 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27 제1 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을 권리를 으로 보장하고 있 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에 관한 법률」은 심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의 인정, 법 의 적 형의 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 하고(제12 제1), 심원의 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 하지 는다는 정을 고 있 니다(제46 제5).

○ 국민 재판 제 의 지에 어 심원 결이 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 는 공감하지 , 심원 결에 원 적 기력을 하는 경우 헌법 제27 제1 위 에 관한 이 있을 우 가 있으 로, 법 정 의에 서 분한 헌법적 가 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10 허소 을 시 으로 우리 소 제 에 자소 이 점 적으로 어 현재는 형사소 을 제 한 대 분 에서 자소 이 이 고 있고, 국민 의 사법 성 제고는 물론 법원의 하고 적인 리에 기 를 하 다고 생각합니다. 2023 민사본안사건의 수건수 제1심 소심 사건의 자화 이 99%를 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원행정 는 화 자소 시 을 면 하는 세대 자소 시 사 을 행하고 있고 내 로 시 이 적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면서 리하게 자소 을 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 으로 「형사사법 에서의 자 서 이 등에 관한 법률」에 른 형사 자소 이 실시 면, 과다한 분 의 재판서 의 이 으로 인한 , 열 · 사 의 로 등이 하 형사소 역에서 대대적인 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 다 , 위 법률 제3 가 법 적 대 사건을 ‘ 시행 이 수사가 시 사건’으로 시하고 있는 제약으로 인해, 최 법 고 대법원 자소 대 사건을 형사 자소 시 통 정 인 2025. 6. 9. 이 수사가 시 어 법원에 수

사건으로 정하 으며, 이 에 수사가 시 사건은 법원에 수 시기가 형사 자소 통 이 종이소 으로 행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형사 자소 가 이와 자소 실시의 과를 면 관찰하 필요하다면, 법률 제3 의 법적 보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로 제 와 시 이 는 에서 형사사법 리기관의 가 자 고 유기적으로 자화 수 있 , 법원 시 법 정 과정에서 세심한 력을 기 이 는 한 , 자소 의 을 제고할 수 있는 다 한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관에 대한 기 청이 있는 경우 실제로 인 는 경우는 의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통 의 본적인 원인에는 기 청 에 실제로 요건을 한 사건, , '법관이 공 한 재판을 할 가 있는 '에 해당하는 사건이 적어서 있겠지 , 법원이 요건 를 판단한 원인 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가 있으 로,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우 가 있을 당사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어야 합니다. 서 당사자의 기 청을 기각 어야 할 대 으로 보 , 당사자의 기 청에 대해 정적 견을 는 것은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 지 을 적으로 한 기 청권의 이 있는 경우 이를 기각하 재판을 행하 야 합니다.

○ 한 , 현행 실 에서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로 사건을 회 하 , 해당 사건에 대한 재당을 요청하는 제 가 고 있으며, 공 자의 이해 지 법에 유사한 제 가 어 있는 점 고 할 필요가 있 니다.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 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는 국과 리 고허가제가 지 아 사건에 대해 고가 허 는 점과 아 , 1심·2심 재판을 통해 권리 제의 기회를 실 보장 다는 을 당사자 에게 주지 하는 점이 고 사건이 가하는 주 원인이 고 생각합니다.

○ 우리 는 대법관 1인당 리하는 사건 수가 을 아니 , 법관 1인당 리하는 사건 수가 기 합니다. 한 심원 이 판단의 주 가 고 판사는 행에 하는 법 국가와 리, 우리의 사법제 는 법관이 사건의 실 과 판단에 당한 력을 기 야 하는 한 결론에 이 는 과정을 하는 판결 성에 당한 시간을 해야 합니다. 이 한 과 건이 지 면 법관은 사건 하 를 고하 시간적 유가 대적으로 하게 고, 법정에 국민 이 감하기에는 판사는 자 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 사건을 ' 리'한다는 을 게 니다. 이 국민 은 '재판은 세판'이 는 으로 소를 결심하게 지 니다.

○ 고심 은 고심 제 자 아니 1·2심의 실화와 행 어야 합니다. 법관이 당사자의 사건기 을 은 분 지 세세 보고 법정에서 실 당사자의 소리를 경청하며, 당사자는 자 의 사건이 실한 심리를 내 공정한 결론

이 는 이 있어야 하 심 판결에 기 이 할 것 니다. 적정한 의 법관을 적시에 원하는 것이, 실한 고심을 보장하는 법이기 합니다.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이고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 한 현재의 당면한 재판지 제를 해결하 면, 적정한 수의 법관 원이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21대 국회에서 법관의 원을 5 간 370 적으로 원하는 내 이 정 안이 제 으 , 임기 로 기 것으로 고 있 니다. 국민의 하고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실 적으로 보장할 수 있 , 법관 수가 적어 370 이 분 원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 해 다 고사건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대법원이 법 해 통 기능은 물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에 당한 지장이 고 있는 임을 고 있 니다. 이 한 제 을 하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위 을 제고하기 위하 서는 어 한 식으로 고제 에 대한 이 이 어 야 할 것 니다.

○ 기 고제 을 위해 안이 의 고 고법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고법원 안은, 고심의 법 해 통 기능과 권리 제 기능을 분리 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 하고, 국민은 실한 권리 제의 기회를 게 다는 장점은 있 니다. 한 , 대법원이 당하는 사건과 고법원이 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 기준이 하지 고 대법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른 안으로는,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현실과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는 ,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 우 고심의 을 경감하는 안 니다.

○ 장기적으로는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고이유가 있는 사건, 판결이 고 을 사회적으로 향력이 사건을 하 고심을 행하고, 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 는 소심 판결로 종결 으로써, 한정 사법 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 하고 고심을 적과 지에 게 하며 다수의 분쟁을 기에 종 시 수 있을 것 니다.

○ 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장기 제가 가하는 본적인 원인은 사건의 잡성과 성이 은 사건의 가 세와 법관 재판보 인력 에 있 니다. 이 에 로 19 사 로 인하 생한 적인 재판지 이 지 적으로 향을 치고 있는 점이 당사자의 소 지 , 감정 를 한 사의 지 등과 이 재판 의 한 해결 의지 으로는 해결하기 어 적 요인 재합니다.

○ 법관의 과 한 사건 은 사건의 장기화 에 이 있는 심리를 제한하게 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한 재판을 을 권리 보장이 소 해 수 있는 , 이를 해결하기 위하 는 법관 재판 원과 은 재판보 인력의 원이 행 어야 할 것 니다.

○ 인공지능기 을 재판시 에 하고, 사실관 의 요와 의 주장 다 는 분을 쟁점으로 정리하 법관에게 기 보고서를 제시한다면, 기 에 소요 는 시간을 기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니다. 아 쟁점이 유사한 기 판결 을 아 제시해 준다면, 법관은 법정에서의 실한 심리와 고 의 판단에 할 수 있을 것 니다.

○ 에 법관과 법원 제 대 실시 사 분 의 장기화, 판결서 적정화 안 시행, 심리위원제 대, 재판의 , 감정 관리 제 과 은 실하면서 한 재판

을 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 재판의 성과 성을 제고하는 향으로 제 가 행 어야 할 것으로 사 니다.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적 소 은 ‘ 대 의 공적 에 의하 이 을 는 자가 대 의 공적 공적 의제에 관한 판이 대 론을 위 시 적으로, 사회적 요성이 있는 제에 관한 대 의 공적 을 하는 것에 적을 소 ’이 고 고 있 니다.

○ 이 한 현 은 대적으로 소 력이 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 권리 주장을 제한할 수 있고, 아가 사법 의 필요한 을 가시켜 사회적 을 린다는 점에서 하지 다고 생각 니다.

○ 이에 헌법 기본권 행사를 위 시 는 국가 은 기 의 소권을 제한하는 『국가 등의 소 에 관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권리 제를 보장하기 위한 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 이른 소 으로 분 하 소권 를 면 필 대 과, 의 심 이 필요한 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 실 에서 적 소 과 정당한 소 을 분하기는 지 겠지 , 적 소 의 한 법으로 과 한 청 의 가 청이 제기 것이 한 경우에는 법원은 한 심사를 통하 결정에 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가의 법행위로 인한 해 청 권은 해 가해자를 안로 3 간 는 행위 로 5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가 성 어 소 하지 , 과 사 사건과 은 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 국가가 국민의 해 청 권에 대해 소 시 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에 해당할 수 있 니다.

○ 대법원 2013. 12. 12. 고 2013다201844 판결은, 국가의 소 시 변이 권리 으로 는 경우 권자가 국가의 소 시 변을 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 당한 기간’에 대하 , 이를 민법 시 정지에 준하 단기간인 6 로 해 하 , 사건의 수한 사정이 있으면 장 수 있지 아 리 어 민법 제766 제1 이 정한 단기소 시 기간인 3 을 넘을 수 다고 판시하 니다. , 권리행사에 당한 기간을 원 적으로 6 로 해 하 , 사안에서는 적인 사정에 기간이 3 지 장 수 있다고 본 것 니다.

○ 권리행사의 당한 기간을 판단 에 있어 대법원 판 를 적 하는 경우 해자의 해 청 권이 위 수 있다는 우 분 고 하 적인 사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 니다. 다 , 위 법리가 쟁점이 다수의 과 사 사건이 재판 이

향 재판이 가능성이 으 로, 대법관 보자로서 법
리의 당 에 관하 이 의 적인 견해를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하게 재판을 하 야 합니다. 법관이 어 한 정치적 성향을 가 것으로 지고, 한 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이른다면, 는 이 법관이 고 할 수 을 것 니다.

○ 대법원은 헌법이 하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를 책임지는 최 의 보 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과 원리에 각한 최종적 법 해 을 통해 국민 생 에 요한 의 를 지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 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대법관은 이 한 대법원을 성하는 원으로서, 공정 과 사 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 다 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균형감각을 어야 합니다.

○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 보'로 분하는 것은, 이 한 대법관의 역 과 자 을 하는 적정한 지 른 식으로 수 다고 생각합니다.

31.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졸업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자는 공대를 하고 대 원 현장경 을 고자 제 에 대 공 사원으로 사하 하 , 과 시간 시내에서 열린 회를 우 하고 시적으로 가 하 다는 이유로 면 어 해고를 당한 이 있 니다.

○ 보자는 해고 인의 소를 제기하 고 1심에서 보자 본인이 원고로 소 을 행하면서 준 서면을 성하고 관 법률을 공 하는 과정에서 법 에 관심을 가지게 니다. 1·2·3심을 최종 소에 이 기 지 소 기간이 어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 의 보 로서 법의 역할에 력을 법 을 공 하리 고, 이 한 경 이 고 대 법과대 에 하 법 인의 로 어서는 기가 니다.

32. 후보자는 2006년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어 2년 간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맡아 법관업무 포탈을 처음으로 개발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자는 2006 ~20077 법원행정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면서, 공대 사· 사 과정을 치며 은 정보통 관 지식과 법관으로 재 하며 은 경 을 결합하 법관통합재판시 을 하는 하 니다. 당시 한 시 이 과 을 하 현재 지 은 법관 의 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하게 생각합니다.

○ 향 세대 자소 시 이 통 면, 현재 법관통합재판시 을 성하는 적인 하위 성시 이 유기적인 하 의 시 으로 통합 고 으로써, 로 기 을 하고 하는 것이 이해 것으로 하고 있 니다. 시 통 이 안정화 단 를 치고 다 , 인공지능 기 을 하 를 화하는 향으로 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후보자는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 업무 관련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는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며 법관통합재판지원시 을 한 경 을 통해, 재판 시 의 고 화와 지능화가 재판의 성· 성을 가시 수 있는지를 감할 수 있 니다. 최 에 등장한 기 인 인공지능을 법원 에 적 한다면, 는 야 과 주 는 고 적 식을 고 하지 재판의 성과 성을 게 시 수 있으리 생각합니다.

○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하 법관의 를 경감 으로써 인간 판사가 심적인 판단 에 할 수 있 하고, 이를 통해 하고 적인 재판을 지원하는 향으로 정책적 력을 우 해야 할 것 니다. 법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 리서치 당사자 제 건 요약, 쟁점 정리 유사판결 , 심리 향 제안 등을 인공지능 이 수행할 수 있다면 에 시간 을 다른 에 사 할 수 있으 로, 하고 실한 재판에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인공지능은 과 이 를 하 고리 을 고 을 결론 에 하는 것이 로 적 사건의 수

한 사정을 하 로 법리를 제시하는 는 한 가 있고, AI의 고리 의 내 적 식을 · 하기 어 한 가 있 니다. 이 한 한 로 인해 해 에서 AI 판사가 판단을 대 하 재판을 행하는 경우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 · 가치적 판단을 수 하는 사법 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한 가 있다는 현실은 인식하면서, 인간 판사의 기 적 · 적 을 보 하는 역에서 점 적으로 AI를 하고 해 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대법원은 헌법이 하고 있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를 책임지는 최 의 보 니다. 헌법이 과 원리에 각한 최종적 법 해 을 통하 국민 생 에 요한 의 를 지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 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성하는 원으로서, 해 한 법률지식은 물론 은 통찰력, 공정 과 사 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 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균형감각, 은 사 감 등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대법관은 사법적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법관으로서, 분쟁에 관하 성의와 정성을 다하 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해내고, 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소 과 한 책임감을 가 야 할 것 니다.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현 대법관 이 치열한 의와 고를 내 은 판결에 대해 대법관 보자로서 가하는 것이 심 고 적 하지 은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소 인적으로 주 하 의 있게 생각한 대법원 판결은 아 와 니다.

- ① 치의 적 · 행에 이 는 의 국가 을 적으로 하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212620 원합의 판결)

- ② 간호사인 원고 이 임 기간 에 기인하 각 아 에게 성 심장 이 생 다면, 이는 재해에 해당하고, 이 원고 의 각 으로 와 아가 분리 어 독립 인 을 가 아가 어 다고 하 각 아 의 성 심장 에 관한 요 수 권을 실하지 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0. 4. 29. 고 2016 41071 판결)

- ③ 적법 에 의하지 고 수 한 를 기 로 한 2 의 능력을 인한 판결(대법원 2007. 11. 15. 고

2007 3061 원합의 판결)

- ④ 제 행 의 행 의 의 를 에 대한 법한 유형력 행사 는 대 에게 공 심을 으 수 있을 정 의 해 고지로 해 하 종 판단을 변경한 판결(대법원 2023. 9. 21. 고 2018 13877 원합의 판결)

- ⑤ 자정보에 대한 수수 시 장 원본 을 원 적으로 제한하고 의사실과 관한 정보의 제를 지하며 제· · 력 과정의 변호인 등 기회를 보장하 으로써, 지 의 수수 과정에서 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 적법성을 화한 판결(대법원 2015. 7. 16. 고 2011 1839 판결)

○ 가장 아 판결로는 인민 당 재건위 사건을 수 있 니다. 위 사건은 대법원의 고기각 판결 사형이 행 어 이른 '사법 인'으로 리고, 재심에서 가 고 니다. 재판이 권력으로 독립 어 본인의 기능을 다하지 하 다는 면에서 당 아 판결이 생각하고, 사법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니다.

○ 한 치 제9호 적 · 행행위가 국가 법 제2 제1 에서 하는 공 원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한 법행위에 해당하지 는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정한 대법원 2014. 10. 27. 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고 2012다48824

판결이 있 니다. 위 판결은 이 대법원 2022. 8. 30. 고 2018다 212610 원합의 판결에 의해 기 니다.

3-1.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보자는 법원에 재 하면서 사건에 정성을 아 기 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제 능력의 한 로 지 한 사정이 재 하 한 판결이 있 을 수 있겠으 , 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기 이 지 니다.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행 인 적 사건과 관 수 있는 분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 찰이 공 고인 을 분리기소하 공 고인 1인에 대한 1심 판결이 고 해당 재판을 당한 재판 에 다른 공 고인의 쟁점이 한 사건이 당 는 경우, 이 심 이 정해 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우 가 있어 재 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고, 경청할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현재로서 기 , 회 제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에 른 재 당 제 가 어있고, 합의가 2 이 있는 법원이 지 은 각 법원의 건 현실적으로 공 고인 1인에 대한 고가 있다는 사정 으로는 관 사건을 재 당하는 것은 어 면 있 을 고 해야 할 것 니다. 한 공 고인 1인의 고가 경우 , 자 사건이 쟁점이 다른 사건은 시 행 사건의 재 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 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현행 제 를 력적으로 하 단 우 를 최소화하는
안을 하 , 필요하다면 를 적 정하는 안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민의 기본적 인권 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적으로 하며 법인의 책임을 화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를 제고하 는 지에 공감합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 원 재 의 위법행위로 인하 형사소 는 분을 위법행위와 관 하 한 자로서 변호사 를 수행하는 것이 현 적당할 경우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1 이 2 이하의 등 지기간을 정하 등 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니다.

○ 변호사등 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 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보자로서 다른 기관 위원회의 법 적 심사에 대하 하는 것이 심 우 , 변호사법의 지에 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우리 형사법은 행위와 관 형인자 아니 '행위자'에 관한 인자 역시 형에 시 하 하고 있 니다.

○ ' 력'은 형법 제51 에 ' 인의 성행'으로서 형에 어야 하고, 법원 법 제81 의6 제3 에 형기준을 정·변경할 에 고 어야 합니다. ' 지한 성' 은 정에 ' 행 의 정 '으로서 형기준의 정·변경 적 형에 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보 독 , 국, 본 등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에서 성 를 형에 하고 있 니다. 다 , 형위원회는 '형사 력 ', ' 지한 성' 이 는 형인자의 우 를 고 하 최 이에 관한 정의 정을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한 형기준에서는 형법 제10 제2 에 '심 약'을 감경인자로 고 있을 , 주 를 감경사유로 하지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형기준에서는 (인 , 력 , ·감 등 , 약 ·유인 등 , 성 · 성 · 지 성 , 주 , ,

해 , 권리행사 해 , · , 공갈 , , 공 행 해 , 화 통 등)에 적으로 ‘ 주 는 약물로 인한 에서 를 한 경우’에 관한 서 식 기준을 어 ‘심 약’ 감경인자가 지 하고 있고, 이에 면 주 는 약물로 인한 에서 를 한 경우 사안에 서는 형이 가 수 있다고 고 있 니다.

○ 향 재판 가 ‘형사 력 ’ ‘ 지한 성’의 정의 정이 ‘심 약’에 관한 서 식 기준에 가 는 감경에 대한 실한 형심리를 통해 고인의 책임에 는 합리적인 형을 현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형사공 제 는 고인이 해자의 인적사 을 는 경우에 공 할 수 있는 기회를 하 해 회 을 하는 한 , 해자의 사생 을 보호하기 위한 지에서 것이지 , 제 지와 리 해자의 의사와 관하게 고인의 감형 요인으로 한다는 우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형기준에서는 해 회 과 관 형인자로 '실 적 해 회 (공)' ' 당한 해 회 (공)'을 고 있으 , 이는 공 으로 로 감형이 다는 지는 아 니다. , 감형인자인 해 회 에 해당한다고 인정 면 공 등 경제적 보 에 하 , 해 회 을 위한 지한 력 에 합의에 준할 정 로 해를 회 시 정 의 해 회 이 실시 는 경우(실적 해 회), 정 에는 치지 하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한 결과 형에서 유의 하게 고 할 한 수준의 할 한 ' 당성'이 있는 경우(당한 해 회) 야 합니다.

○ 공 제 의 본 적 성 해자의 의사와 관하게 공 이 이어 수 있겠으 , 이 경우 재판 는 공 의 경위, 의 내 성 , 해자의 의사, 향 해자에 의한 공 가능성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해당 공 사실의 형
와 정 를 결정하게 것 니다.

○ 다 , 고인이 판결 고 에 기 적으로 공 을 하 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인할 수 는 경우가 생하지 해야 합니다. 최 공 소에서 찰에 로 공 사실을 로 통지 하 제 가 고, 법원에서 공 사실을 통지 고 해자의 의사를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해자가 공 수 의사를 현하 하지 은 경우), 해자로 의견을 제 변론을 재 하 법원 사관에 의한 형 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에 해자의 의사를 인한 형 를 결정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해자는 '공 물 회수 의서'를 공 소에 제 하 공 에 관한 의사 시를 할 수 있고, 이 한 서면은 고인에게 공 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것이자, 재판 는 이를 통 적으로 고인을 에 해 는 해자의 의사 시로 이해하고 있 니다. 다 , '공 물 회수 의서' 제 의 재 실에 하지 은 국민 의 해가 생하지 , 형사공 과정에서 해자의 의사 시를 적 할 수 있는 실 안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형사공 을 형에 할 것인지, 한다면 어 정 할 것인지는 재판 에서 형사공 을 다 한 제

요소 을 분 고 하 결정하 야 할 재판 사 에 해당한다고 할 것 니다.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이에 는 재판 실 가 이 어 수 있 임 이 력을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어의 향 등으로 인하 점 수위가 아지는 청소 에 대한 을 법소 하향을 통해 대 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을 위한 하 의 안으로 경청할 한 의견이 고 생각합니다.

○ 다 , 적인 책임능력과 리 형사책임 을 하 정하면 책임능력이 어 다고 보기 소 지 형사 의 대 이 우 가 있고, 아 은 어린 이의 소 에게 사회적 인 과로 인한 이 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우리 사회는 소 이 건 한 인 을 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을 할 책 가 있다는 점과, 보보다는 화를 하는 소 형사사법의 적 분 고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사회 경의 변화, 의 필요성 법, 해 국가 의 사 , 청소 에 대한 재 지

과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 니다.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통 의 사면권은 헌법에 정 제 로, 대통 은 국민 통합, 국가의 이 , 인권 등 다 한 적으로 사면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니다. 다 사면권은 제 의 본 적에 게 행사 어야 하고, 법치주의 권력분립을 하는 식으로 행사 어서는 안 것 니다.

○ 사면제 는 법치주의가 립 현대사회에 어 리지 는다는 지적 있고, 사면권의 행사가 합리적 기준 이 정치적 이해관 가 결정 다는 판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 사면은 법이 과 다른 이 과의 갈등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결단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 인 , 제 의 당성에 대한 의보다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을 위한 력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 의 사면은 국가이 과 국민통합이 는 제 의 지에 게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를 보 적·적으로 이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지 은 사 의 력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해 관행 어 으 , 성과를 지 기 위해 지 적으로 력하고 현재의 해 을 하기 위한 이 이 어지지 는다면 인권 은 제 할 수 있 니다.

○ 보자가 대법관 보자로 임 제청 이유를 하는 것이 심 면이 있으 , 단지 보자가 법원 내 소수자인 성이 기 은 아니 고 생각합니다. 보자가 27 간 법관으로 재 하면서 당한 수 은 재판의 과정과 결과, , 에 사법 의 을 위해 력한 을 통해, 보자에게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지 는 대법관의 사 을 감당할 역 이 있다고 은 분 이 생각해주 기 이 고 고 있 니다.

○ 제가 대법관이 다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 인간 과 가치, 실 적 등, 재판청 권과 인권 보

장을 위해 력하겠 니다.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고위 판사· 사의 관 우에 대한 우 가 사법 의 를 하시 는 원인이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실제 재판 내에서 관 우 등의 공정한 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니다 , 적지 은 국민이 관 우 관행이 재한다고 고 있고 실제 분쟁이 생하면 관 우를 기대하고 가능한 당 법관과 분관 가 있 한 경 이 있는 변호사를 임하 고 력하며 고 의 수임 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관 우를 기대할 한 요소를 단하는 등 사법 를 회 하기 위해 시 해결해야 할 제 고 생각합니다.

○ 현재 대법원 내 등에 법관 주심 당은 고이유서에 대한 변서 제 기한이 과 에 실시하고, 대법관이 고심 사건의 소 대리인, 변호인인 경우 와 대법관은 주심이 수 하고 있 니다. 이 한 제 를 분 으로써 관 우에 대한 의 을 사 에 지할 수 있을 것 니다.

○ 관 우를 지하는 제 를 고 있는지와 관 이, 대법관이 임 에 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의 면에서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법관이

공 에 할 수 있 경 에 은 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니다.

○ 보자 역시 대법관이 다면 임 변호사 은 하지 고,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 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 는 을 고 있 니다.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고위 판사· 사의 관 우에 대한 우 가 사법 의 를 하시 는 원인이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지 은 국민이 관 우 관행이 재한다고 고 있고 실제 분쟁이 생하면 관 우를 기대하고 가능한 당 법관과 분관 가 있 한 경 이 있는 변호사를 임하 고 력 하며 고 의 수임 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 사법 를 회 하기 위해 관 우의 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공 자의 이해 지법, 형사소 법,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가 실 성 있게 고 있는지 점 하고,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한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 주의의 실 화를 위해서 력을 하 야 할 것 니다.

○ 아가,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정 이 에 하 변호사로서 을 하는 현 과 관 우의 해의 지 적 등으로 유사한 지의 법률안이 의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 적이 있 다시 한 공론의 장에서 적 적인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관하 · 론이 대립하고 있고, 주장 대로 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는 인간의 생 자 를 원 하는 것으로, 단 사형이 행 경우에는 판이 있 다고 해 이 수가 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 행한 역사적 경 있 니다.

○ 면,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 가 있 을 제로 한 정(제110)이 있는 점으로 보아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하고 있다고 지가 있고, 인이 다수의 인 인 등 인 적 가 재하고, 한 로 안 하다고 수 는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 보형으로서의 성을 게 시 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 지 는 해 의 사 합리성, 당성 으로 결정할 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 의 법 감정과 의견의 분한 수 을 결정하 야 할 것 니다. 국회에서 이 점 을 종합적으로 고 하 결정하 주실 것이 고 생각합니다.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권관 단소 법에 단소 제 가 어 있으 , 단소 제 를 분야로 대 하자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단소 제 의 의 하 는 대 당사자가 수행하는 해 청 소 에서 판결의 력을 지 겠다는 '제 고'를 하지 는 이 해자 원에게 판결의 력이 다는 것 니다. 이는 다수의 해를 게 제하는 는 과적 수 있지 , 우리 의 기 민사소 법 와 지 는 면이 있고, 치 하게 기판력을 아 권리 행사를 할 수 는 사 이 생 수 있는 제 있 니다.

○ 서 단소 제 를 대하기 위해서는 이 한 점 을 가로 하고 사회 각 의 의견을 청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국제적인 사법 사 결과에 면 적인 재판 서 에 대하 는 가 아 위권에 있는 면, 적인 사법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하는지 에 대하 는 하위권에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결과를 국민의 사법 를 제고하 면 실 적으로 공정한 재판임은 물론이고, 관 으로 공정한 재판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관은 판결 자 는 물론 재판 와 에 사적인 역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 해를 으 지 각 주의를 기 필요가 있 니다.

○ 법관이 당의 자세로 공정하게 국민이 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은 물론이 , 로는 정치적 이해관 에 적 재판의 결론에 대하 다른 기준과 대를 적 하 건 한 판을 넘어 을 하는 사 를 아 수 있 니다. 이 한 이 정치재판에 대한 해를 하고, 판결을 하게 는 원인이 로 재판결과를 하는 정치 화의 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론으로 리면, 대통 을 한 고위공 자의 우자가 인사 등 청 을 으로 고가의 을 는 것은 당 하지 한 행 이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수사가 인 사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 해 다 고사건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대법원이 법 해 통 기능은 물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에 당한 지장이 고 있는 임을 고 있 니다. 이 한 제 을 하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위 을 제고하기 위하 서는 어 한 식으로 고제 에 대한 이 이 어 야 할 것 니다.

○ 기 고제 을 위해 안이 의 고 고법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고법원 안은, 고심의 법 해 통 기능과 권리 제 기능을 분리 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 하고, 국민은 실한 권리 제의 기회를 게 다는 장점은 있 니다. 한 , 대법원이 당하는 사건과 고법원이 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 기준이 하지 고 대법

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는 ,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 우 고심의 을 경감하는 안 을 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고이유가 있는 사건, 판결이 고 을 사회적으로 향력이 사건을 하 고심을 행하고, 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 는 소심 판결로 종결 으로써, 한정 사법 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 하고 고심을 적과 지에 게 하며 다수의 분쟁을 기에 종 시 수 있을 것 니다.

○ 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이른 ‘ ’에 관하 는 성 가 아 재물 의 로 기소 어 재판이 행 는 로 고 있 니다. 이에 대하 해당 를 로 유형의 성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고, 관 법률안 의 어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해당 의 성 이 해자에 대한 법 해의 정 등에 어 , 책에 하는 정한 이 이 어 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 , 사건의 형은 행위의 내 , 당시의 , 의 정 등 제 사정을 고 하 정하 지는 것이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 이 의 적인 의견을 리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성 력 의 등에 관한 법 정법률안」은 이 행위자가 성적 감을 으 는 물건을 대에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 로 정하고 2 이하의 역 는 2 원 이하의 으로 하는 내 을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행법으로 하기 어 우 가 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정을 으로써 를 하고 재적 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지에 공감하고 있 니다. 한 행위를 성로 정한다면 성 력 법 의 각종 정(성 력 관 수 ·이수 의 과, 화물의 능력 , 력인 관 정, 19세 해자등에 대한 정 등)을 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이 있으리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의 필요성, 적인 성요건, 국민의 건 한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지혜 게 결정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위원회는 2023. 4. 24. 회의에서 통 형기준을 수정하 2023. 7. 1. 시행하 는 , 기 형실 보다 형위가 적으로 향 다고 고 있 니다.

○ 이는 주 에 대한 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 가 결과 고 생각하고, 향 에 형위원회가 국민의 건 한 식을 지 적으로 하 주 형기준을 정립해 것으로 기대합니다.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주 으로 인한 사 사건 등에 대하 책임에 하는 정한 형이 이 어 야 한다는 지적에 이 공감합니다. 이에 형위원회 법률의 정과 국민의 건 한 식을 하 주 관 형기준을 수정해 것으로 고 있 니다.

○ 2023 형위원회는 주 주 정 등 유형에 대하 형기준을 하는 내 으로 통 수정 형기준을 의결하는 , 주 이 의 유형으로 으로써 주 이 결합 통 의 권고 형 위가 적으로 향 고, 통사고 주 의 권고 형 위 향 것으로 고 있 니다.

○ 주 사 사건에 대한 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와 변경 형기준의 지, 내 을 분 고 하 , 향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책임에 합하는 합당한 형이 이 어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각 회생법원은 인회생 에서의 생 정기준, 주식 는 가 화 자 실 의 리 등과 관 한 내 을 한 실 준을 정하고 있 니다. 다 이 한 사 은 인회생 에서 청 가치 정에 관한 것으로, 적 · 적 사건에서 청 가치 정에 관한 판단은 재판사 에 해당합니다.

○ 각 법원은 에 고할 수 있는 준 등을 정할 수 있고 이는 법 성을 가지지 아니하 로, 청 가치 정 등 재판사 에 대하 률적인 기준을 하 통 적으로 적 하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어 한 가 필요합니다.

○ 다 , 수요자인 당사자 장에서 관 재판을 는 것이 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한 실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법관 회생위원의 니 를 성화하는 등 성원간 의사소통을 하고, 각 법원 회생법원 실 준 을 합하 공유하는 등 실 가 자 적으로 통 수 있 경을 성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성을 이기 위해 경찰청과 국 18 시 경찰청에 치 기 로 고 있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 에 관한 법률」 제9 에서 정하는 공 대 정보에 해당하는지 는 사건에서 각 재판 가 판단할 사 으로 보이 로, 대법관 보자가 적인 사건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법관 보자로서 재판의 대 이 는 적인 사건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는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며 법관통합재판지원시 을 한 경 을 통해, 재판 시 의 고 화와 지능화가 재판의 성· 성을 가시 수 있는지를 감할 수 있 니다. 최 에 등장한 기 인 인공지능을 법원 에 적 한다면, 는 야 과 주 는 고 적 식을 고 하지 재판의 성과 성을 게 시 수 있으리 생각합니다.

○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하 법관의 를 경감 으로써 인간 판사가 심적인 판단 에 할 수 있 하고, 이를 통해 하고 적인 재판을 지원하는 향으로 정책적 력을 우 해야 할 것 니다. 법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 리서치 당사자 제 건 요약, 쟁점 정리 유사판결 , 심리 향 제안 등을 인공지능 이 수행할 수 있다면 에 시간 을 다른 에 사 할 수 있으 로, 하고 실한 재판에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인공지능은 과 이 를 하 고리 을 고 을 결론 에 하는 것이 로 적 사건의 수

한 사정을 하 로 법리를 제시하는 는 한 가 있고, AI의 고리 의 내 적 식을 · 하기 어 한 가 있 니다. 이 한 한 로 인해 해 에서 AI 판사가 판단을 대 하 재판을 행하는 경우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 · 가치적 판단을 수 하는 사법 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한 가 있다는 현실은 인식하면서, 인간 판사의 기 적 · 적 을 보 하는 역에서 점 적으로 AI를 하고 해 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의 사법 를 회 하기 위하 법관의 대 위에 대한 정한 책임 이 필요하다는 지에 공감합니다. 법관에게는 재판의 결과 아니 관의 공정성 지 보할 수 있는 은 리의식과 자기 제가 요 고, 법관의 분 보장은 어 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니다.

○ 다 , 헌법 제106 제1 에 면 '법관은 는 고 이 의 형의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 지 아니하고,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지 아니 한다' 고 정하 법관의 분보장에 른 분의 한 를 하고 있기 합니다. 이는 과 유 헌법에서 로 법관을 면 할 수 있 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해하 역사적 경 에 대한 성적 고 에서 것이자, 법률 정 으로 면·해임 등의 분을 할 수 한 를 정하 재판의 독립이 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서 법률로써 해임제를 하는 안에 관하 는, 헌법 정과의 화 , 재판 독립 해 는 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법원 내 회가 다 한 분야 로 성 어 고 있고, 보자 인공지능 회, 법 회, 지적재 권법 회, 기 법 분야 회, 헌법행정법 회, 형사법 회, 사법정보화 회 등 다 한 회 을 통해 에 은 을 니다.

○ 이 한 법원 내 회는 법관 이 재판 에 필요한 실력과 성을 할 수 있는 다 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회와 관 하 한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니다.

○ 다 , 임에 가 하 다는 사정으로 법관의 공정성이 립성에 대해 의 을 제기하는 분이 생하지 , 임의 과 성, 에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 내 회는 재판 에 간 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하기 위한 지의 수한 임인 것으로 고 있 니다.

○ 공 자 이 가지겠으 , 법관 자 에게 주어 을 해내고 어 하고, 이를 위해 분야의 회 을 통해 성을 화하기 위한 력을 게을리 하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임에 가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 을 형성하고 장한다는 의 을 제기하는 것은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법관의 립성은 국민의 보 원에서 요한 제인 , 이 해의 소지가 임의 성과 , 에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성 자를 대 으로 하는 단 성 력 사건은 사회 가 보호하 야 할 성 해자에게 회 하기 어 적, 정적 고통을 한다는 면에서 한 과 사회 위적인 책 을 위하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자를 대 단 성 력과 은 이 우 한 성 에 대해서는, 형위원회가 2009 최 로 성 형기준을 한 이 기준이 화 는 향으로 수정·보어 고, 성 사건의 형은 대 분 형기준의 위 내에서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에 성 의 형이 국민의 이에 지 는다는 판이 지 적으로 제기 고 있는 분에 관하 는 게 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으로서는 형이 국민의 정의 관 에 합하는지 임 이 고민하고 해자 의견 의 분한 보장, 형 사관을 통한

형 사 등을 통하 형심리를 실 행하 국민의 이에 는 형이 이 어 수 있 단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이 력이 성 사건 등 에 공 지 은 공간에서 이 어지는 행의 경우 다른 사건 유형에 해 자 CCTV 등 관적 자 가 하 가해자와 해자의 의 성 판단이 어 경우가 적지 니다. 가해자와 해자의 이 치 을 가해자의 의 는 가 종종 해자에 대한 고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고, 에 해자의 권이 위 수 있다는 우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론으로, 수사기관이 고 를 인지 에 있어 해자가 한 사정을 분 고 하 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한 , 고 의 보호법 인 국가의 심판기능 보호, 고자의 법적 안정성 시에 고 하는 하고 제 실 의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써 해당 재판 의 판단을 하고, 적 사건

에 대하 이 이 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법원이 국민의 이에 지 아니한 판결로 인하 공 등 사적 제재가 행하는 것이 아니 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 있고, 한 판 의견을 사법 의 원으로 게 아 니다.

○ 공정하고 적정한 형 권의 실현이 는 를 성하기 위해 국가에게 형사사법 권능이 자 해자의 고통과 적 사정을 고 하지 은 기 적인 , 분 한 관 으로 이어 형사사법의 능으로 이어지지 , 법원의 형사사법권한 본적으로는 국민으로 은 것임을 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이 책에 하는 형을 통해 국민적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합하는 형기준이 적시에 수 있 력하고, 형심리의 실 화, 법관 사이의 형 론 성화, 형 사관을 통한 실한 형심리 등 다 한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공 자의 지와 청 하고 공정한 사회 서를 립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지에 적 공감합니다.

○ 공 자의 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률을 준수하는 것 요하지 , 보다 공 자 로 국민 에 대한 사자 는 사감과 의 공정성과 청 성이 의심 한 행위 자 를 하지 으 는 의지를 가지고 공 생 을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시행 등이 법의 위임 위를 어 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 , 대법원은 “하위 법 이 정한 내 이 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로 하 야 하는 본 적 사 으로서 의회유보의 원 이 지켜 야 할 역인지, 당해 법률 정의 법 적과 정 내 , 정의 , 다른 정과의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야 하고, 위임 정 자 에서 의 내 을 정 하게 수 있는 어를 사 하 위임의 한 를 분 하고 있는 적 의 의 한 를 어 는지 , 하위 법 의 내 이 법 자 로 위임 내 의 대 을 할 수 있는 위 내에 한 것인지, 수권 정에서 사 하고 있는 어의 의 를 넘어 위를 장하 소하 서 위임 내 을 화하는 단 를 어 로 법을 한 것으로 가할 수 있는지 등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 니다(대법원 2015. 8. 20. 고 2012 23808 원 합의 판결). 정 시행 이 법의 위임 위를 어 인지 는 위와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 니다.

○ 대법원 보자로서 법원의 · 심사의 대 이 수 있는 적인 사안에 대해 인적인 의견을 리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 수·수 장 당 법관 이 사건에서 의 소 정 등을 하게 고 하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수·수 장 이 적 고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이 있는 것 고 있 니다. 서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수·수 장은 적 수사 기 단 보를 위하 청 로, 청 를 기각하는 것보다는 의 유 를 인하기 위해 수수 의 대 필요하 과다하게 청 분을 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 하는 경우가 으며, 이와 이 장을 기각 은 10%에 이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장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수의 필요성이 분 소 는지 면 심사할 필요가 있 니

다. 장실 에서는 청 는 수수 장의 수가 지 치게 은 경우 실한 심리를 하는 에 당한 어 을 니다. 법관이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 게 고 할 수 있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제 적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최 대 화, , 서 등에 장 자정보에 대한 수·수 이 화 고 있고, 자정보와 장 의 본 적 성으로 인하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해할 우 가 다는 점에서 법원에 의한 적 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고 있는 것으로 고 있고, 지에는 분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법관 대면심리제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판의견이 있다는 점 고 있 니다. 서 제 를 하 심 의 대 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청하는 고인으로 제한하는 등 수사의 행성과 성을 해하지 는 적으로 제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자정보 장 는 의사실 관 정보는 물론 와 관 지 은 위한 사생 관 자 를 하고 있는 경우가 으로, 수의 원 이 하게 준수 필요가 있 니다. 한 위한 수·수 을 통하 보 관정보 이 의자에 대한 당한 수단으로 위법한 건 수사 로 사는 분에 대한 제의식에 공감하고 있 니다.

○ 보자가 2011 서 지 법원에서 장 법관으로 할 당시 수수 장의 지에 자정보의 수수 이 종 고 자정보의 결성 을 위한 보 의 필요성이 종 에는 사실과 관한 정보는 기하 하는 내 을 하기 하 으 , 이행 는 인하지 하 니다.

○ 2022. 5. 형사소 법 제198 제4 은 '수사기관은 수사인 사건의 의를 기 위한 적으로 합리적인 이의 사건을 당하게 수사하 서는 아니 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 보 는 자 를 내세 관 는 사건에 대한 자 이 을 요하 서 아니 다' 고 정하고 있 니다. 이와 이 으로 정을 것은 건 수사가 고인의 어권을 대하게 제한하고 실 실 견을 하는

이 기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자정보에 대한 장 재판의 심리에 있어 의와 관 정보 이 수·수 의 대 이 수 있 수·수 의 위를 적 제한하 야 하고, 이를 위하 제 안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수자 변호인의 권을 분 보장하 유관정보 이 하고 합리적으로 이 어 수 있 하 야 할 것 니다. 아가 위법한 건 수사로 한 의 능력을 적 적으로 정하고, 아가 법론으로 수 자정보의 관리 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안 을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지 성 는 성 한 유 면 해 을 단하기 가 어 해자로 하 생 안감에 시 리게 하는 로서, 이 한 에 대한 정한 과 행 과정에서 해자에 대한 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 현행 형사소 법 을 재생하는 법으로 사를 하는 것이 가 하다고 하 , 공 심리, 인지원제 의 적 적인 등 적 한 치를 하 해자를 보호하고 할 필요가 있 니다. 아가 해자의 2 해 지 등의 필요성이 우 사안의 경우 사 식의 에 관한 법적인 안 지하게 고 해 보아야 할 것 니다.

○ 법관 인 시 적 한 소 지 를 통하 사건과 관한 사생 에 관한 이 성적 수치심을 유 하는 이 이 어지지 하 야 하고, 시 의 , 인지원제 력인 제 , 인 제 의 등 다 한 법으로 성 력 해자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 력하 야 할 것 니다.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 약 건수가 하고 청소 약에 로 고 있는 등 약 에 대한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 고 있다고 고 있 니다. 약 의 세가 이어 어 수준 이 의 임 치를 하게 면 이를 리기 어 우리 사회는 대가를 치 야 하 로, 약 에 대한 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 형위원회 이 한 사회 변화에 른 약 형기준 수정 필요성을 인식하 , 최 성 자에 대한 약 , 대 , 대 관 등에 대한 형을 화하는 향으로 형기준을 정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약 는 성 력한 으로는 의 재 을 기 어 면이 있으 로, 은 물론 약사 의 재 에 이 수 있는 과적인 치 로 의 , 사회 적인 화와 인식 등 다각적인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사청 회에 임하는 대법관 보로서 이를 적으로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론으로, 공 보자의 한 을 위하 자 제 요 에 성실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 , 공 로 행 는 청 회의 성과 이에 른 인정보의 위 성, 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정보 유 해를 지하기 위한 안 장치를 하는 등 국회의 자 요 와 인의 기본권을 화하는 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서 에 어 있는 국가기관의 분 을 통하 서 의 과 화를 해소하고 국 의 균형 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 , 각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국민의 재판청 권 실현과 하게 관 이 있다는 점을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 소재 사법기관의 이 이 국민의 사법 성 재판과 사법행정에 치는 향, 이 에 소요 는 사회적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하고, 위한 의견 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녀가 가지고 있는 제주반도체 주식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보자의 우자는 고 을 통해 의 장 인 성식을 게 고 성식이 ㈜제주 [변경 호 ㈜이 에 아이]를 할 기인이자 주주로 하면서 약 19 주를 인수하 다고 합니다. 기에는 변호사 를 하면서 위 회사의 감사 역할을 하다가 2003 경 이사로 임하 고, 2013 공 대 이사로 임하 니다.

○ 우자는 향 경 권 위 등에 대 하기 위하 2011 준 주식을 하 최대 약 52 주를 보유하 으며, 우자의 를 한 으로 수한 것으로 니다. 2024. 5.경 10 주를 제주 로 지기 에 하 현재 42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10 주에 대하 는 향 5 간 분할하 10 주를 하기로 하 다고 합니다.

○ 보자는 위 회사가 장할 인 2005. 2.경 2,000주를 수하다가 2005 경 1,000주를 한 지 1,000주를 현재 지 대로 보유하고 있2 니다. 본인이 법관으로 하며 한 으로 수하 니다.

○ 보자의 자 은 ㈜제주 주식을 수한 사실이 고 보유하고 있지 니다.

42.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베네비오/아란코스메틱 채권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우자가 보유한 장주식 수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 우자는 사 을 시 한 사회 의 이 주위의 소 로 지원 자 적으로, 주로 기 을 보유한 기 의 주식을 수하 다고 하고, 수자 은 우자가 를 한 에서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자한 회사 ㈜ 와 ㈜ 를 제 한 기 은 대 분은 이 이 하고 사 하 실 한 자 할 수 있 니다.

(금액 단위: 천 원)

순번	회사	매입 시기	매입규모 (주식수)	취득 가액	비고
1	㈜아이스팩토리	2017.	100	100,000	
2	㈜라피끄	2017.1.	3,200	48,000	
			-135		2021. 일부 매도
		2023.5.	400	385,292	
		잔여	3,465		
3	㈜비디에스랩	2018.	3,000	15,000	
4	㈜아란코스메틱	2018.	2,000	10,000	
5	㈜밥스누	2015.	8,700	87,000	
			-1,347		2019. ㈜밥스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기부
		잔여	7,353		
6	㈜벨라씨앤씨	2022.	3,725	31,145	
7	㈜하운드	2023.11.	800,000	800,000	

○ 우자는 2018. 6. 25. ㈜ 에 8,000 원을, 2018. 6. 6. ㈜아

에 2 9,000 원을 사 자 으로 대 하 으
아 변제 지 한 니다. 대 자 은 우자가 를
한 에서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42-1. 각 회사의 사업 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개요, 연평균 매출액 등

○ 보자는 우자가 수한 장 회사의 사 요 등을 지 합니다. 장 회사의 , 자 , 등 정보는 임 의안에 서 (공 자 재 고 기 정보 인서)에 기재어 있으 로, 이로써 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43. 장녀의 용산 효창동 건물 매매 경위와 목적 및 자금 출처

○ 보자의 장 는 대 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 하기 위해 2022. 8. 23. 서 소재 다세대 주 을 7 7,000 원에 수하 니다.

○ 약 3 800 원은 보자의 우자로 고, 세(약 4,600 원)를 하 니다.

○ 4 6,200 원 (1) 2 6,000 원은 임대 보 으로 당하고, (2) 지 2 200 원은 으로 하 한 2023. 5. 장 가 기 보유하고 있 ㈜ 주식을 우자에게 하고 주식 수대 과 하 니다.

44.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발생 경위 및 근로소득을 받은 사업체에6서 배우자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은? 각 건별로 기술.(예: 램스웨이, 주식회사 밥스누 등)

○ 우자가 재 인 회사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법인등록번호	법인상호(명칭)	임원구분	비고(급여 등)
110111-2596108	램스웨이 주식회사	사내이사	2024.3.부터 급여 수령 (월 1,500만 원)
110111-3487398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주식회사	감사	무보수
110111-5017573	리아에스엔유 주식회사	감사	무보수
110111-6695352	주식회사 동행복권	사내이사, 대표이사	급여 수령
110146-0088782	법무법인 에토스	구성원	휴업 중
131111-0047918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사내이사, 대표이사	급여 수령
110111-5898733	주식회사 밥스누	사내이사	2020. 3. 이후 무보수
131111-0047918	제주반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무보수
160111-0001480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	이사	무보수

45. 후보자 본인, 장녀,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발생 경위, 금액, 납부 날짜

○ 보자의 소 세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순번	양도소득세 납부일	납부금액	발생 경위
1	2024. 4. 11.	147,998,560	㈜금남고속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차분 (양도소득세를 2회로 분할납부하도록 결정 고지받았습니다)
2	2024. 2. 26.	147,998,560	㈜금남고속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2차분
3	2022. 5. 13.	74,150	국외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4	2020. 8. 25.	68,693,130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소재 임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 우자의 소 세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순번	양도소득세 납부일	납부금액	발생 경위
1	2024. 4. 24.	247,579,830	㈜금남고속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차분 (양도소득세를 2회로 분할납부하도록 결정 고지받았습니다)
2	2024. 2. 27.	247,579,830	㈜금남고속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2차분
3	2022. 7. 29.	4,226,940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1/2 지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 장 의 소 세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순번	양도소득세 납부일	납부금액	발생 경위
1	2024. 2. 27.	11,657,610	㈜금남고속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2	2023. 8. 14.	78,610,690	㈜라피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46. 후보자 본인, 장녀, 배우자 앞으로 발생한 증여세 발생 경위, 금액, 납부 날짜

○ 보자, 우자의 세 와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순번	납부자	증여세 납부일	증여세 납부금액	대상 재산
1	후보자	2019. 1. 30.	5,867,860원	후보자의 모친 소유 또는 부모님 공동 소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토지를 후보자 포함 4자매가 각 1/5지분을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증여받은 데 따른 증여세를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납부함.
		2019. 1. 30.	30,464,030원	
		2020. 1. 22.	33,190,490원	
		2021. 1. 28.	32,648,400원	
		2022. 1. 25.	32,094,290원	
		2022. 12. 30.	31,546,190원	
		2023. 12. 5.	30,917,010원	
2	배우자	2019. 11. 18.	64,990,000원	2019. 8. 14. 신원 CC 골프회원권 수증

○ 장 의 세 와 관 정보는 아 와 니다.

순번	납부자	증여세 납부일	증여세 납부금액	대상 재산
1	장녀	2022. 11. 8.	16,296,000원	- 2020년 8월 후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수증 - 2022년 1월 후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수증(원룸 임차보증금) 2022년 8월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1억 5,400만 원 수증(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부동산 매수 시 계약금)
2	장녀	2022. 11. 8.	29,876,000원	2022년 9월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1억 5,400만 원 수증(위 부동산 중도금)
3	장녀	2023. 8. 14.	21,138,050원	2023. 8. 14.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108,959,000원 수증(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세금 등 부대비용)
4	장녀	2024. 1. 29.	2,292,660원	2017년 1월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라피끄 주식 800주 인수대금 중 900만 원을 수증한 데 따른 추후 신고

47. 배우자 및 두 자녀의 금남고속 주식 매매 경위, 매수가, 매도가, 매수일, 매도일,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 보자가 고 있는 보자, 우자, 보자 의 ㈜ 고 주식 분내역은 아 와 니다.

○ (단위: 원)

	매입시기	매입규모 (주식수)	취득가액	최종 보유주식	매도시기	매도금액
배우자	2011.	2,445	63,814	4,075	2023. 11. 30.	1,449,599
	2016.	1,630	42,543			
장녀	2006.	117	3,053	117		41,620
장남	2006.	116	3,027	116		41,264

- 우자의 형이 하는 ㈜ 고 의 경 권 보 어를 위하 형제 이 ㈜ 고 지분을 수하는 과정에서, 보자의 자 이를 수하 다가 2023 각한 사실이 있 니다.

- 우자의 자 은 자 의 등으로 적한 재 에서 것이고, 의 ㈜ 자 은 보자의 우자로 으며 이는 세 면제한 이하의 로 세를 하지 은 것으로 기 하고 있 니다.

4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별지 틀' 정비 내용 및 정비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

○ 보자는 2011 서 지 법원 장 판사로 재 하면서, 형사법관 과 수사기관 등 관 인 의 의견을 하 자 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 니다. 수 , 사 등 유 물의 수가 제 종 과 리 기 적 으로 대 화 등 정보 장 에 장 자적 정보가 주 수수 의 대 이 는 정보화 사회가 하 에 , 이에 관한 법적인 이 , 실 가 재하지 는 이 니다.

○ 보자는 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장 자 의 분한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안으로 장 시 ' 수 대 법의 제한'의 건을 가하고 이를 지로 하는 식을 고안·정 하 고, 이 한 실 가 국으로 고 공유 으로써 실 적으로 수사기관의 제 분 권한 을 지하고 수자의 권, 재적 고인의 어권을 보장하는 기가 니다.

○ 이 한 지에 세 사 으로 기재 내 (정보 장 의 적 원본 , 필요한 자정보의 기, 수자의 권 보장 등), 이 자정보에 대한 수수 시 권 보장의 법리를 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16.자 2011 1839 판결)이 는 이론적, 실 적으로 기 하 니다.

49. 후보자의 2021, 2022년 사업소득 발생 경위

○ 보자는 2021. 3.경 2022. 1.경 지 대한변호사 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 어 하며 약 1회 정 회의에 하고서 등을 성한 사실이 있 니다. 보수는 2021 합 80원, 2022 합 40 원을 수 한 것으로 보 니다.

50. 후보자 장녀의 2020년부터 2022년 기타소득 발생 경위

○ 장 가 대 원 재 시 실에 소 어 과제를 수행하며 은 니다.

51. 후보자 장녀의 라피끄 주식 매매 경위 및 매수를 위한 자금 출처는?

51-1. 후보자 장녀의 2017년~2024년 라피끄 주식 거래내역

○ 보자의 장 는 2017. 1. 보자의 우자의 으로 립 ㈜ 의 주식 800주를 1,200 원에 수하 보유하고 있 는 , 2023. 5. 400주를 보자의 우자에게 하 니다.

(금액 단위: 천 원)

순번	회사	매입 시기	매입규모 (주식수)	취득 가액	매도 시기	매도금액	차익
1	㈜라피끄	2017.	800	12,000	400주 (2023. 5. 31.)	385,292	376,942
		잔여	400				

- 수자 1,200 원은 장 가 한 (300 원)과 보자의 우자가 한 (900 원)으로 하 니다. 위 900 원에 대하 는 세 를 니다.

- 고로, ㈜ 주식의 가 은 인 2023. 4. 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 (= 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정 니다. 위 회사는 2017 립 5 간 지 적으로 하 고, 기 가치 성장가능성을 게 가 아 2020. 12. 보 기 , 기 은행 등 자자 로 에 주 행 형 로 자를 유치하 는 , 2022. 5.에는 주당 약 80 원에 자 을 유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52. 후보자의 겸직 신청 현황 및 결과

○ 의 고서, 겸 허가 청서 등 의 겸 허가에 관
자 는 법원기 물 관리 (대법원 제3031호)에 의
하 보 기간이 5 으로 이 내역은 기 어 할 수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보자의 최 5 간 의 현 은 아 와 니다.

소속	직급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교육과	당사자계 심판-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22. 11. 15. 15:10 ~ 17:00	526,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카이스트	과학기술과 법	카이스트	2022. 11. 28. 16:00 ~ 18:00	456,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KAIST	강의 (인공지능이맞닥뜨린법률문제)	KAIST	2023.9.1. 13:00~14:30	400,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KAIST	강의 (각국의인공지능 관련규범수립동향)	KAIST	2023.10.27. 13:00~14:00	400,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KAIST	강의 (코딩에윤리심기)	KAIST	2023.12.1. 13:00~14:30	400,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사단법인 올	강의 (인권보호를위한 인공지능관련규범 의현황과개선책)	모두의연구소 강남캠퍼스	2023.12.4. 16:00~17:30	450,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블레츨리 선언 등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국내입법방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2024.4.29. 15:00	450,000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한국젠더법학회	인공지능은 무죄인가-젠더편향과 딥페이크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	2024.5.27. 15:30~17:00	200,000원

○ 보자의 최 5 간 겸 (역) 현 은 아 와 니다.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내용	신청날짜	보수
겸직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편)집필 제2장계약,특수무명계약중리스계약,가맹(프랜차이즈)계약,(아파트/상가)분양계약부분집필	2019.11.14.	인세 1,343,662원

○ 보자의 최 5 간 겸 (위 임) 현 은 아 와 니다.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내용	신청날짜	보수
겸직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겸직교수	2022.12.9.	무보수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후보자 본인은 그 덕목을 갖추었다고 보는지

○ 대법원은 헌법이 하고 있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를 책임지는 최 의 보 니다. 헌법이 과 원리에 각한 최종적 법 해 을 통하 국민 생 에 요한 의 를 지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 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성하는 원으로서, 해 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은 통찰력, 공정 과 사 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 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균형감각, 은 사 감 등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대법관은 사법적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법관으로서, 분쟁에 관하 성의와 정성을 다하 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해내고, 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소 과 한 책임감을 가 야 할 것 니다.

○ 제가 지 27 간 재판을 당해 지 시간 을 아보며, 은 사건이 당사자에게는 의 수 있 을 심하고 가

고 경 하는 으로 정성을 아 재판에 임하 니다. 한 “
간 보” 는 경 를 의 우 으로 고 헌법과 법률에
다수의 성 에 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의 등을 현하는 향으로, 기 있게 한 을 내 고자
력하 니다.

○ 으로 제가 국회의 의를 아 대법관의 를 게 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 성과 이를
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하고 화 게 해결하기 위해 력하겠 니다. 한 사법 가
변화하고 하는 지 사회와 인공지능을 수 하
하고 실한 재판을 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성을 향
시 수 있 의 을 다하겠 니다.

2. 대법관후보자로 거론되고, 최종적으로 제청되기까지의 절차 중 후보자 본인의 인지시점과 인지방식

○ 제청 당 대법원장 으로 화로 니다.

3.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와 현재 대법원·사법조직에서 이러한 폐단이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 사법행정은 본 의 적에 합하게 이 어 야 하고,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하 한 관을 보이는 각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법원에서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 하 국민 정을 린 점에 대해서 하게 생각합니다.

○ 대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하 니다. 사실심 실화, 회생·가정법원 등 법원 치 대, 대법원 공 변론 대, 국민 재판의 대, 생법관제 정 력 등에서 당한 성과가 있 으 ,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수 소 , 법원 내 관 화 심화 등의 제가 있 것은 아 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 사건 에 대한 재판이 인 이어서, 대법관 보자로서 에 대해 적 분 과 가를 리는 것이 심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은 법원의 재판 기능이 공정하고 원 하게 현 수 있 제 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 재판이 사법정책 의 수단이 지 각 한 경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 은 와 이 서 으로 한 이 재 것으로는 보이지 으 , 보자

가 대법관이 다면 법원 내에서 다시는 이 생하지
겠 니다.

4.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위법심사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 니다.

○ 헌법 제107 제2 은 " · 는 분이 헌법이 법률에 위 는 가 재판의 제가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다." 고 정하고 있으 로, 대법원 아니 하 심 법원은 · 에 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가 니다. 서 법원은 재판이 대 이 고 있는 적 사건을 적 할 · 의 력을 심사하 이를 고 판단할 경우 당해 · 을 사건에 적 을 하 의 위헌·위법 등을 인할 권한이 있 니다.

5. 한정위헌·한정합헌과 같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2017년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 역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법 의 해 ·적 권한은 사법권의 본 적 내 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 과 화 해 하는 것은 법 을 해 하고 적 하는 대원 에 해당하며, 합헌적 법률해 을 하는 법 의 해 ·적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하는 것이 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적인 분쟁에서 법률의 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각 기관에 한 권한 분장을 넘어서는 것이 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 이 법의 를 넘어서는 해 을 한다면 사실 법률을 다른 내 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 국회의 법형성권이 해 지 있 니다. 한 한정위헌결정에서 제시 해 에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소하게 는 경우, 소한 당사자가 통 의 소 가 아니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 제를 으 고 시 으로써 심 제 에 심각한 을 하고, 사법권의 행사를 통한 정당한 권리 제가 단적으로 지 가능성을 제할 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은 인정 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력을 인정하지

는 등으로 헌법재판소와 견해가 다 다고 하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 는 아 니다. 헌법은 헌법 서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및 재판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국민 재판 제 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성화 으로써 사법 에 대한 국민의 를 이는 에 기 하고 있으 로 국민 재판을 적· 적으로 성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과 은 고인 청주의 아 에서는 국민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고인의 의사에 서 국민 재판을 실시할 수 에 는 한 가 있 니다. 서 정 에 대하 는 필수적 국민 재판을 하고, 고인에게는 정한 요건 하에 제 청권을 하는 등으로 대 을 대하는 안을 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 국민 재판 청에 대해 어 경우에 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하고, 재판 에서 국민 재판을 적 적으로 할 수 있 기를 하고 재판으로 인한 을 화할 수 있는 안(당 가 치 등)을 할 필요가 있 니다.

○ 국민 재판 성화를 위한 안으로, 보자 인적으로는 심원의 결에 대하 기 력을 하고 유 판결 에는 사실

과 의 요지, 법 의 적 을, 판결 에는 공소사실을 각 결결과와 기재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과감 생 으로 써 판결 성을 간이화하고 소심은 적인 위법 을 판단하 하 , 심재판의 위 을 이고 재판 의 을 경감하는 안 할 필요하다고 보 니다.

○ 다 , 헌법 제27 제1 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을 권리를 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원 결에 원 적 기 력을 하는 경우 헌법 위 에 관한 이 있을 우 가 있 니다. 국민 재판을 대하기 위해서는 법 정 의에 서 분한 헌법적 가 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사형제 폐지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다 , 1997. 12. 이 현재 지 사형을 행하지 고 있 에 하고 인사건이 게 감소하는 세 는 통 가 있고, 사형제가 의 적 과가 있다는 실 적 가 는 , 아리 한 인자 하 다른 적(위하 과)을 위해 생 을 해서는 안 다고 생각 니다.

○ ,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의 을 제로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은 치가 기 에는, 현행법 법정형으로 사형이 정 어 있고 제 형 건을 하게 고 하 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고 어야 할 사건이 면 사형을 고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 고 생각합니다.

8.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최 소 가 가하고 화 고 있다는 보 가 고 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이와 관 하 법소 하향과 은 소 법 정이 소 법 지 주장이 제기 고 있는 것 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한 가 필요합니다. 소 은 정 적 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성인에 해 사회성이 고정 지 아 을 통한 가능성이 로, 보적 관점에 각하 형사 에 의 하는 것이 아니 , 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 한 보호 분을 하 과 치 를 행 으로써 은 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 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사회 경의 변화, 의 필요성 법, 해 국가 의 사 , 청소 에 대한 재 지 과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하게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 니다.

9. 「차별금지법」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지 21대 국회에 의 지법과 관 하 , 헌법 제11 등의 원 을 현하기 위한 법안 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 쟁점에 대하 는 한 쟁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향 지법이 다시 의 경우 지를 넘어 어 한 법률적 · 제 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사회의 다 한 의견을 게 수 하고 분한 의를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형사재판 양형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접하는 형사판결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최 세사기 등 서민 의 주 권과 재 권, 생 기 을 리는 형 의 가 하면서, 사기 화에 대한 요 가 은 것으로 고 있고, 사회적 치한 에 대해 법의 준 한 심판과 력한 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점 고 있 니다.

○ 현재 형기준이 국민의 이에 하게 합한다고 리기는 어 겠지 , 형위원회 관 기관에 대한 의견 회, 공청회, 이지 의견 수, 심 지 등의 법으로 각 각 의 다한 의견을 수 하 적에 합하는 형기준을 정하고자 지 적으로 력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현재 법원 실에서 적 는 균적인 형을 하는 치지 고, 국민의 다 한 의견을 적 하 적인 요소 지 고 한 형 위를 정하고 형인자를 정 하는 력을 지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형위원회가 향 한 분을 하고 국민의 다 한 소리에 기 형기준을 시켜 가기를 기대하면서, 역시 지 적으로 관심을 고 력하겠 니다.

11. 법조계에도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 보자는 법 에 이른 ' '이 재한다고 생각하지 니다. 다 , 법 의 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 가 있다는 점은 론 등을 통해 고 있 니다. 실제 재 와 관 이 재에 대한 우 으로 법원 아니 사법 에 대한 하 의 원인이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인의 한 사 으로서 이 한 을 게 아 이고 있 니다.

○ 이 한 우 를 식시 기 위해서는 법원은 공정하고 한 재판를 현하기 위해 력하 야 할 것이고, 법관 인 공적인 는 물론 사적 역에서 자 의 행 과 을 각 심하고, 의 해가 공정하고 실한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니다. 법원과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법원 아니 사법 의 가 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수·수 장 당 법관 이 사건에서 의 소 정 등을 하게 고 하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수·수 장 이 적 고 과 한 수·수 으로 인하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이 이 있는 것 고 있 니다. 서 법원이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하 과 한 수·수 을 적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수·수 장은 적 수사 기 단 보를 위하 청 로, 청 를 기각하는 것보다는 의 유 를 인하기 위해 수수 의 대 필요하 과다하게 청 분을 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 하는 경우가 으며, 이와 이 장을 기각 은 10%에 이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장재판을 당하는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수의 필요성이 분 소 는지 면 심사할 필요가 있 니다. 장실 에서는 청 는 수수 장의 수가 지 치게 은 경우 실한 심리를 하는 에 당한 어 을 니다. 법관이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 게 고 할 수 있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제 적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후보자가 생각하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세칭 '변호사시험 오탈자'관련 후보자의 입장

○ 2007 시행 법 대 원 제 는 변호사의 과다 제, 과 한 의 소요 등 가지 우 의 소리가 있고, 변호사시 합 준 에 지 치게 치 하 법 대 원 생 의 다 한 경을 분 리지 한다는 지적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아가 이 한 제점을 어 변호사 시 을 하 지 사법시 을 시 자는 주장 있는 것 니다.

○ 하지 사회적 합의를 이 제 가 고 이 당한 기간이 경과한 , 제 의 지를 하기보다는 법 대 원 제 가 본 의 지를 현하는 향으로 제대로 고 있는지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 하고 분한 지원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의 적 면에서 사법시 제 와 법 대 원 제 를 적으로 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다 , 법 대 원 제 와 법 원화 제 가 정 어 감에 과 사법시 제 에 하 법 인 아니 법관 성 자 다 해지고 있 어 향 법원의 다 성은 보다 화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고, 이로 인하 우리 사회의 다 한 가치와 이 법원 판결에 수 있을 것이 기대합니다.

○ 변호사시 의 시기간을 제한한 변호사시 법 정에 대해서 이 한 이 시 시자 의 의 자유 등권을 해한다는 이 있 고, 헌법재판소는 에 합헌 결정을 하 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유로, 사법시 의 해로 어 시 제한 시로 인한 인력 , 시인원 적으로 인한 시 합 률의 하, 법 대 원의 적인 과 소 지 등의 공 이 시자 이 는 이 에 해 대하다는 점을 니다.

○ 보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 의 시기간과 수를 제한할지 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공 을 고 하 법정책적으로 결정 어야 할 사 이 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해충돌'의 정의

○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 '이 있 관 우 관 우 등을 지하기 위하 공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와 형사소 법 제 을 통해 재판의 공정과 사법 를 지 고 력하고 있고 법관 각자는 공 자 리법 리 이해 을 지해야 할 책 있 니다.

○ '이해 '의 정의와 관 하 , 공 자의 이해 지법 제2 제 4호에서 "공 자가 를 수행할 에 자 의 사적 이해관 가 관 어 공정하고 청 한 수행이 해 해 우 가 있는 "이 고 정의하고 있으 , 적인 사안에서 이해 에 해당하는지는 관 재판에서 판단 어야 할 것으로 보 니다.

○ 한 , 법관 은 공 자로서 단 공 자 리, 공 자의 이해 지법과 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국민 에 대한 사자로서 헌 하는 책임 있는 자세, 소 의식, 공정성, 청 성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대중에게 판결이 자유롭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후보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 우리 헌법 제109 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의 안 보장 는 안 서를 해하 한 을 해할 가 있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심리’이지 판결은 아 니다. 판결을 적시에 공 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성을 제고하 사법의 책임성을 화할 수 있을 것 니다.

○ 위와 은 헌법 의 판결 공 의 원 은 판결 의 공 이는 정할 수 는 것이어서, 판결 은 공 할 경우 당사자의 이 시를 게 해할 수 있는 가사, 소 사건이 , 정의 원 에 위 수 있는 정 형사 판결이 아 한 원 적으로 고 지 이 리고 면적으로 공 어야 한다는 것이 보자의 의견 니다.

○ 다 , 법원의 판결 제공의 가 는 민사소 법과 형사소 법 정에 의하 공 는 판결 의 시적 위가 제한 어 있고 인정보가 공 지 아니하 실 리를 하 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한 판결 을 열 하 할 것을 우하 , 판결서 인 열 서 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건당 1,000원을 고 있 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판결 공 에 소 적

인 것 보 지 있 니다.

○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현재 정 시점 이 의 판결 을 열 대 을 정한 민사소 법, 형사소 법의 해당 을 사회적 의 를 위를 대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에 의하 , 실 화의 위를 으로 정하고(인의 주민 등 호, 주소지, 생 등 실 화하고 인의 성 과 법 인은 실 화 대 에서 제), 이를 넘어서는 분의 실 화는 고 당사자의 열 제한 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는 의 으로 해당 분을 실 화 내지 열 제한 치 를 하며, 위와 은 실 화 치 등을 한 경우 판결 공 로 인한 법원과 성원 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률이 다면, 판결 공 가 원 해 것으로 보 니다.

○ 아 법원으로서 행력과 기판력의 준이 는 당사자의 인적사 이 기재 분과 본 분을 분리하 판결서를 성하 , 자는 권한 있는 자에게 공 하 , 자는 면 공 하고, 민감한 사실관 는 가 적 판결서에 기지 는 등의 력 행 어야 할 것 니다.

16.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사법 의 재판은 국민을 위해 재하고, 국민의 가 있어야 사법 의 판단이 권위를 어 분쟁을 실 적·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감정이 어 정 고 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시적· 적인 것이 아니 법의 원 , 시대의 정 , 변화하는 가치관을 하는 것이면, 이를 지하게 고하 우리 사회가 아가야 할 가치로서 재판 과정에서 하고 적 할 수 있는지 적 적으로 고 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로 사건)의 주심으로서,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을 하 고 2013. 7. 30.「 정경쟁 지 보호에 관한 법률」 정 시 정경쟁행위에 '성과 행위'가 는 기가 사건이기 합니

다.

○ 보자가 사고로 로자의 인과 자 가 로자가 다니 회사를 대로 해 청 소 에서 제1심(의정 지 법원 고 지원 2019. 11. 8. 고 2018가합75743 판결)이 로자가 사고 당시 최 임 에 하는 임 을 은 경우에는 실수 사고 당시 임 을 기준으로 정하 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리, 보자가 재판장이 소심(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에서는 최 임 제 의 지, 통 해 자의 실수 은 장 가 임 수 고 는 점 최 임 이행 사 자의 이 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사고 당시 최 임 에 하는 경우 최 임 을 기준으로 실수 을 정하 야 한다고 판시하 니다. 위 사건은 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고 지 니다(2020다300299).

17. 후보자의 판결 중 기억에 남는 5가지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 민간기 로 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아 제 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 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 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 기니 공화국적 의 원고의 민 청에 대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을 종합하 정치적 견해 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하 소수자를 보호 하 니다.

18.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사법 는 재판 하고 등기, 가 관 , 공 등 행정의 성이 있는 사 에 대해서는 행정 로 이관하 야 하는 것이 아 가 하는 주장이 주로 등기 에 대해 제기 적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등기와 대장의 이원화로 국민이 2 의 장 를 열 하 서를 을 2 의 기관을 하 야 하는 은 이유 의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 등기관의 심사는 국민의 재 권에 향을 치는, 성이 요 는 "준사법적" 로서 등기법 등에서는 등기관의 독립적인 리 식을 하고 있 니다. , 등기제 는 물권법과 법 등 실 법의 행에 필요한 제 로서 적 성이 하 사법 가 이를 관장하고 있고, 행정 기 보다는 사법 행· 견 으로서의 수성이 있 니다. 서 등기관의 분이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아 법원에 이의 청을 하는 법으로 제를 을 수 있 니다. 국의 사 독 과 이 법원에서 등기사 를 관장하는 와 본의 법 성과 이 행정 에서 관장하는 가 있는 것 등기제 가 고 해 과정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등기 의 종 에는 등기 에 등기를 한 법인

등기 , 공장재단등기 , 재단등기 , 유한책임 등기 , 등기 , 등기 , 권 보등기 , 재 약정등기 , 호등기 등 다 하고, 은 등기 의 종 이에 대한 적 기준이 는 실 법과 법이 종 다 합니다.

서 기본적인 법률 소 이 고 관 법 을 하고 정 하게 해 ·적 하는 법원공 원(등기관)이 등기사 를 리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하고 이 한 적인 성을 고 있는 가를 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원에 자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현행의 공 이원화의 제로 종 에 제기 제 등기와 대장의 화로 인하 당 분 해소 다고 할 것 니다.

○ 으로 법원에서는 등기, 가 관 등 , 공 등 자 로는 재판 는 아니지 국민의 권리의 와 하게 관 준공 행위로서 를 당하며 국민의 를 제고하기 위해 당 원 의 화와 각종 인 의 지원을 위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피의사실공표죄 폐지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반대한다면 그 이유

○ 의사실 공 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정원 에 기 한 의자의 헌법 기본권 보호의 에 관한 제 고 생각합니다.

○ 수사기관의 의사실 공 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으로 한 것으로 국민 에게 내 이 실이 는 한 를 할 가능성이 니다. 이와 은 점에서 사회적 이 이 리는 사건에서는 사 에 의사실이 대 적으로 공 에 의자의 어권을 해하고 정의 원 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 니다.

○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사실 공 행위는 원 적으로 국민 의 정당한 관심의 대 이 는 사 에 관하 관적이고 분한 자 를 으로 한 사실 에 한정 어야 하고, 이를 에 있어서 정당한 적 하에 수사 결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자에 의하 공식의 에 행하 야 하며, 정의 원 에 하 유 를 단하게 할 우 가 있는 현이 는 단을 으 우 가 있는 현을 하는 등 내 이 현 법에 대하 유 하 야 하며, 아가 의사실과 가분의 관 는 등의 한 사정이 는 한 수사기관이 ‘ 를 성하지 는 사실관 ’ 지 의사실에 시

켜 수사 결과로서 하는 것은 원 적으로 허 수 다(대법원 2022. 1. 14. 고 2019다282197 판결)"는 지로 판결한 있니다. 보자는 기본적으로 위 판결의 지와 내 에 공감하고 있니다.

20.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나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등기는 관 자가 이 하는 제 로서 등기기 의 열 이 서의 은 제 를 이 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수 자 의 관점에서 합리적이 고 생각합니다.

○ 인 에 의한 등기사 의 열 을 로 하는 경우 로 인한 세 감소분을 다른 국민 이 대 하게 는 결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니다.

○ 등기사 서는 주민등 등본이 가 관 서 등과 이 정한 인에게 열 자 이 제한 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이 에 가 권자, 당권자 등 수 은 다른 등기 의인 의 인정보 제공 기 에 적 적에 른 등으로 인정보가 분 하게 공 · 해 우 있 니다.

○ 한, 분 한 열 · 에 등기 시 에 과 한
을 주게 우 가 있고, 이것은 시 의 안정적 을 통한 국민
재 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 수 있 니다.

2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와 (2)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방안

○ 대법원은 권 에 대하 "공 원이 적 권한에 하는 사 에 관하 권을 행사하는 으로 실 적, 적으로 위법· 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권 이 공 원이 적 권한에 하는 사 에 관하 권한을 위법· 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한다(대법원 2018 2236 원합의 판결 등)"고 판시하 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 의 인정 위가 고, 지적하 것 공 원이 권행위를 하 지위를 한 경우에 권 로 할 수 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있다고 고 있 니다.

○ 권 권리행사 해 는 성요건의 성으로 인해 의 성립 를 판단하기가 우 어 니다. 와 형 은 하게 법률로 정해 있어야 한다는 형법정주의 원 을 고 하면 현행법 정을 대로 유지하면서 법해 을 통해 위를 대하는 것은 리가 있고 이 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행위 등을 형사적으로 할 필요성에 관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다면, 우리 의 법 화와 국민감정, 해 사 , 법률의 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국회의 법을 통하 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22.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에는 후관예우도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 관 우 관 우에 관하 국민 의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판단하야 하고 법관 임 경력과 정 당사자 는 소 대리인과의 관 가 재판결과 재판 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니다 , 한 의 해를 에 지하는 것 한 사법의 역할이자 의 할 것 니다.

○ 관 우 관 우 등을 지하기 위하 공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 형사소 법 제 사유, 법관 등의 사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이 지대로 실 성 있게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리고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 력을 하 야 할 것 니다.

○ 관 우에 관하 는,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

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 관 우,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

○ 대법원의 원합의 사건의 판결 고는 현재에 대 분 생 하고 있고, 공 변론은 가 의 사 은 아니지 에 적 한 사건은 허가를 통해 유 등으로 , 공 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를 의 화할 것인지는 소 당사자가 는 심리적 감, 과 한 론 등이 재판과정이 결과에 향을 우 가 있고, 소 당사자, 인, 청인 등의 권이 해 인정 보가 유 수 있는 로, 분한 사회적 의를 점 적으로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이고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 한 현재의 당면한 재판지 제를 해결하 면, 적정한 수의 법관 원이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21대 국회에서 법관의 원을 5 간 370 적으로 원하는 내 이 정 안이 제 으 , 임기 로 기 것으로 고 있 니다. 국민의 하고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실 적으로 보장할 수 있 , 법관 수가 적어 370 이 분 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법 원화제 는 사회적 경 과 이 한 사 을 법관으로 임 하 사회현 에 대한 은 이해를 으로 수준 은 재판을 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기 위한 제 니다. 보자는 이 한 법 원화제 의 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 , 법관 임 자 을 화하는 것 으로 국민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법관을 당 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법 원화제 를 성공적으로 정 시 기 위해서는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을 분 보하고, 법관 보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를 하 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을 지 는다면, 법 원화제 의 장점은 사 지고, 사건 리의 성 해 어 재판지 등 각종 제가 심화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 안 법 원화 정 을 위한 제 과제 에 대해 · 해 것으로 고 있 니다. 지 10 간의 제 시행 경과를 으로 향 제 가 지에 게 정 어 갈 수 있 와 를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대법원 소재지는 법원 법에서 정하고 있으 로 대법원을 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이 필요합니다.

○ 국가의 균형 잡힌 을 위하 국가의 요 기관을 지 으로 이하 는 기본적인 지는 공감할 한 면이 있 니다.

○ , 법원의 소재지는 국민의 성과 적으로 관 는 , 우리 는 고사건의 제한이 어 대법원에 간 7 2,000건(2022 기준) 이 의 사건이 수 고 등 변호사의 75% 이 이 서 에 있는 에서 대법원이 지 으로 이 다면 당사자와 소 대리인 다수가 은 을 을 것으로 생각 니다. 대법원 청사에는 법원행정 , 형위원회 등이 위치하고 있는 사 를 리하기 위한 법 ,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 니다. 에 이 을 위한 지 건 , 대법원 자 의 주 이 등을 위해 은 이 소요는 등 국민의 이 게 가할 수 있 니다.

○ 대법원의 지 이 은 이와 이 이 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 하 하게 결정할 사안이 생각합니다.

27.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우리 헌법 제53 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 의 재의요 권과 재의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화 요건 하의 재의결에 른 법률안 정에 관하 정하고 있 니다. 이는 권분립의 정 하에 행정 와 법 가 호 견제와 균형을 이 게 하기 위한 우리 헌법 의 장치로 고 있 니다.

○ 사법 의 원이자 대법관 보자로서 대통 의 헌법 권한인 재의요 권 행사에 관하 적으로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8.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

○ 한 법률을 해 ·적 하면서 는 다른 결론이 내 다면 에 대하 국민 이 의아하게 기 법원에 대한 가하 소지가 있 은 분 합니다. 다 관 사건이 하 적인 사실관 가 서로 하지 은 경우가 으 로, 이를 법리적으로 한 결론을 내 할 사안이 고 단정하기는 어니다.

○ 한 법원이 아니 유사한 사건에 관하 각 법원 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지 니다. 의 법관이 각자 헌법과 법률에 의하 자 의 심에 해 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치기 에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해 이 가능하지 니다. 이 한 경우 심 제 하에서 심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률의 해 ·적 을 통 하는 기능을 수행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니다.

○ 유사 쟁점을 가 사건 이 법원에 있는 경우 관 분야 회에서 자 적으로 한 와 론을 으로써 법관 이 심 있게 의하 가장 당한 결론에 수 할 수

있 하 , 각기 다른 결론에 이 다른 주장을 분
으로써 판결의 력을 이고, 이와 은 한 의를
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결론을 내 수 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행 인 적 사건과 관 수 있는 분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30.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그 이유

○ 정청 등 수수의 지에 관한 법률 제8 제4 에서 공 자등의 우자는 공 자등의 와 관 하 제8 제1 제2 에 공 자등이 는 것이 지 는 등을 요 하 제공 기로 약 해서는 아니 다고 정하고 있 니다.

○ 아가 법관은 청 지법에 위 지 는다고 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할 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을 지 는다고 정한 법관 리 제6 에 어 사회통 당하지 아니한 정 에 이 는 물은 주는 것이 하다고 할 것 니다.

31.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수원지 법원 2013. 8. 22. 고 2013 8981 판결은 한 사정이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성권 사생 의 과 자유를 당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법행위를 성한다는 지의 판결로 고 있 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 를 보면, A가 B의 의 이 통화내 을 리에 하 서를 성하고 이를 A와 C회사(B가 하 회사) 사이의 소 에 로 제 하 대화내 이 으로써 B가 C회사 임 원 사이에서의 판 과 에 정적인 향을 는 등 정 고통을 이 인정 사안으로, 단 한 대화의 과는 사안이 다 니다.

○ 민사 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형사 대 이 는지와 관 이 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인의 해)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대법관 보자로서 이 정 판결에 대하 이 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한 면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위 사건은 유사한 사안에서 통 보호법 제14 제2 , 제4 에 의 능력을 인한 대법원 판 (대법원 2024. 1. 11. 고 2020 1538 판결)와 리, 공 지 아니한 인간의 대화를 한 경우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각 는 경우에는 능력이 인정 다는 지의 판결이 고 것으로 고 있으며, 심 적인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니다.

○ 대화 당사자 하 대화 대 의 의사에 하 이를 할 경우 사생 의 을 해할 수 있으 로, 이를 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할 한 분이 있 니다. 다 한 행위를 형사 하는 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 현재 은 대 화에 통화 기능이 재하고 국민 이 이를 이 하고 있는 에서

이를 률적으로 제하는 것이 적 한지 등에 대하 는
과 을 면 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추진과 이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현재 행 인 의 에 대해 은 우 를 합니다. 이는 국민 건 과 결 요한 사안이며, 국민의 건 권 보장과 의 서 의 유지, 리고 의 의 경 등 다 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 해야 합니다.

○ 다 , 이는 정 의 정책과 관 사 으로 사회적으로 한 쟁점이 고 있으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해 이 의 견해를 는 것이 심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4.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국변호사 자격내역(취득일시, 외국 로스쿨 학력, 외국법자문사 등록여부 포함)

○ 해당 사 니다.

35. 후보자 장녀·장남의 현재 직업(학생인 경우 학교·학년 등 포함)과 직업이력(직종, 사명, 직급, 재직기간, 급여(총계 및 수급기간단위에 따른 평균)

○ 보자의 장 는 2021. 2. 이화 자대 식 공 과(사)를, 2024. 2. 이화 자대 대 원(식 생 공 과, 사)을 하고, 현재 공 분야 을 성하며 는 을 준 에 있 니다. 장 는 2022. 12.~2023. 2. ㈜ 에서 인 으로 3 하 니다.

○ 보자의 장 은 2019. 3. 서 대 경제 과에 하 를 치고 하 현재 재 니다.

36. 후보자 장녀·장남의 (주)제주반도체 주식 보유·처분이력 및 각 경위

○ 보자 장 장 은 (주)제주 주식을 보유한 적이 니다.

37. 후보자 장녀·장남의 비상장주식 보유·처분이력 및 각 경위

○ ㈜ 고 주식 분내역은 아 와 니다.

○ (단위: 원)

	매입 시기	매입규모 (주식 수)	취득가액	최종 보유주식	매도시기	매도금액
장녀	2006.	117	3,053	117	2023. 11. 30.	41,620
장남	2006.	116	3,027	116		41,264

- 우자의 형이 하는 ㈜ 고 의 경 권 보 어를 위하 형제 이 ㈜ 고 지분을 수하는 과정에서, 보자의 자 이를 수하 다가 2023 각한 사실이 있 니다.

- 자 의 ㈜ 고 주식 자 은 보자의 우자로 으며, 이는 세 면제한 이하의 로 세를 하지 은 것으로 기 하고 있 니다.

○ 보자 장 의 ㈜ 주식 분내역은 아 와 니다.

(금액 단위: 천 원)

순번	회사	매입 시기	매입규모 (주식수)	취득 가액	매도 시기	매도금액	차익
1	㈜라피끄	2017.	800	12,000	400주 (2023. 5. 31.)	385,292	376,942
		잔여	400				

- 보자의 장 는 2017 보자의 우자의 으로 립 ㈜ 의 주식 800주를 1,200 원에 수하 보유하고 있 는 , 2023. 5. 400주를 보자의 우자에게 하는 식으로 위 을 하 니다.

- 고로, ㈜ 주식의 가 은 인 2023. 4. 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 (= 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정 니다. 위 회사는 2017 립 5 간 지적으로 하 고, 기 가치 성장가능성을 게 가 아 2020. 12. 보 기 , 기 은행 등 자자 로 에 주 행 형 로 자를 유치하 는 , 2022. 5.에는 주당 약 80 원에 자 을 유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위 주식 와 관 하 소 세 등 세 을 적법하게 하 니다.

38.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근거

○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의를 어 대통 이 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의를 어 대통 이 임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를 어 대법원장이 임 하 정하고 있 니다.

○ 헌법이 임 제 식으로 법관을 하 정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니다. 사법 는 정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의 향을 지 아야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지 으면서 헌법과 법률에 다수의 이 이 아 소수의 이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니다.

○ 한 판사 임 임 등에 관한 사 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 법 제25 의2에 이 11 의 위원 법관 3 을 제 한 8 이 찰, 변호사, 법 등 다 한 역을 대 하 국민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로 성 어 있어 법관 인사에 국민의 시각과 의사가 수 있 하고 있 니다. 대법관 위원회 위원 10 7 이 인사로 어 있고, 다 한 역의 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한, 대법관 보 과정의 당 분은 에 공 고 있고, 내 적으로 법관대 회의에서 한 위원 1인을 시 으로서 법원 내 적으로 성 공정성을 수 있 하고 있 니다. 이 한 점은 사법 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기 위한 치 고 할 수 있 니다.

39.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합 관 정법 제37 에 의할 쟁의행위는 적· 법· 에 있어서 법 기 사회 서에 위 어서는 아니고, 합원은 합에 의하 주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 서는 안 니다.

○ 이와 관 하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서 이 제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것은 아니며, 할 수 는 시기에 적으로 이 이 어 사 에 해가 을 경우에 해 가 성립 다.'는 지로 판시하 , 위력에 의한 해의 성립 위를 게 해 하고 있 니다(대법원 2011. 3. 17. 고 2007 482 판결).

○ 로자의 로3권, 권 등은 국민의 행 과 생 을 우하고 인간의 과 가치 의 가 는 기본권이 로, 법원은 합법적인 의 위를 판단 에 있어 사 자의 경 권이 공의 경제 서를 당하게 해하지 는 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로자의 권리가 게 보호 수 있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자의 단 행 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당 보호 아야 할 권리 니다. 다 단 행 권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과 가지로 이를 향유 에 있어 다른 기본권과 화 어

야 하는 등 정한 한 가 재합니다. 쟁의행위는 적· 법·
에 있어서 법 기 사회 서에 위 어서는 아니 고,
합원은 합에 의하 주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 서는
아니 다는 등의 내 을 정한 합 관 정법 제
37 는 이 한 한 를 화한 것으로 수 있 니다.

○ 다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 본 의 책
인 법원이 적 사건에서 로자 단 행 권의 위법
를 판단할 에는 사회적 약자인 로자의 단 행 권이 당하게
해 는 이 세심한 주의를 기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40.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억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재판의 대 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법관 보자로서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41.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국가재정법은 '각 관서의 장은 요 서를 기 재정 장관에게 제 하 야 하며, 이 법에서 관서 은 헌법 는 정 법 의 법률에 치 행정기관을 하며, 법원행정 장은 이 법을 적 할 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 니다(제6 , 제31). 법률 정에 요 서를 제 하고, 국민의 대 기관인 국회에서 · 결 심사를 는 것이 사법 의 독립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 다고 생각 니다.
아가 사법 의 독립을 공고 하기 위해서는 사법 가 독립적으로 안을 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안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 하는 국회에 현 을 보고하는 것은, 권분립과 국민주권주의에 합하고, 한 가 사법 의 독립을 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니다. 다 각 국가기관과의 적 한 견제와 균형을 이 수 있 해당 기관의 위 과 권위를 하는 식으로 이 어지는 것이 합니다. 사법행정의 위를 넘어 적인 사건의 행이 재판의 결론에 대한 의와 판은 재판의 독립이 사법 의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식으로서 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국가재정법에 대법원의 요 서는 법원행정 장이 제 하고 있으며, 대법관 보자로서 사 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43.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예산안의 하자 치유여부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대법관 보자로서 사 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44. 광주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5·18 주민주화 은 헌정 서 에 서 시민 이 민주주의를 위해 지 가며 한 고한 의 를 가 사건니다.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통치 를 정하는 치지 고 우리 사회가 적으로 아가야 할 향과 원 , 가치를 제시하는 본적 으로서, 정은 고 의 정치적 성 을 가지고 있 니다. 5·18 주민주화 의 헌법 수 는 분한 의 과정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 어야 할 사안이 고 생각합니다.

45. 대법관 등 사법분야 인적구성에 있어서 성평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는 안 성 법관의 이 점 가하 현재 법관의 35%가 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대법관의 경우에 최 의 성대법관인 대법관 이 로 성 대법관이 준 임 어 2017 는 13 3~4 (23~31%)의 성 대법관이 임 어 것으로 고 있 니다.

○ 재판은 실제로 공정한 것 요하지 , 공정한 을 는 것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서 대법원의 성 으로 성 등이 현 다고 는다면 사법 에 대한 향 에 기 할 수 있다고 니다. 대법관 성 은 지 보다 대 는 것이 하고 종국에는 이 의 성 가 제 지 는 시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심신미약·주취 등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것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형기준에서는 심 약을 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으 , 위 인자가 지 주 는 약물로 인한 에서 를 하 을 에 정한 경우(행을 견한 에서 자의로 주한 경우 등)에는 아 감경을 하지 하 가 하 서 식 정을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주로 인한 심 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 에는 이 한 형기준의 지에 게 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가 적으로 보 지 는 해가 생한 사건에서 정한 성과 사과가 이 경제적 보 이 있 다는 이유 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하는 경한 형이 고 어서는 안 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 니다.

○ 다 형이 가 기 에 가 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에 관하 책에 하는 정한 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회 적으로 을 위한 안 등의 력을 종합적으로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판례에 관한 설명 및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성, 성소수자, 인, 아 , 이주민과 이 적, 정 적, 사회적, 화적으로 열 한 위치에 있어 인간다 을 위하는 어 을 는 인이 단이 고 할 수 있 니다.

○ 법원의 사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원의 가장 책 는 인권 최 의 보 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니다.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시당하는 이 세심하게 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으로 아가야 할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자가 소수자 약자를 위하 한 판결은 다 과 니다.

-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

(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 기니 공화국적의 원고의 민 청에 대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을 종합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하 니다(서 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

- 4 대 제로 한 실 시 관리 로자의 당 를 통 로의 장으로 수 있는지가 제 사건에서, 당 시간 게시간은 4시간, 공 5시간으로 보고 지 시간의 로에 대해 장 로수당을 지 해야 하며 재 정하 가로 지 해야 한다고 판단하 , 와 유사한 본 의 를 수행하는 야간 로자의 이 을 보호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1. 12. 10. 고 2019 2046214 판결)

- 이 에 보자는 ① 서 고등법원 2021. 4. 2. 고 2020

2036077 판결에서 치 제9호 위 으로 수감 어 재판을 은 원고와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고, ② 서 고등법원 2021. 9. 17. 고 2021 2014364 판결에서 1998. 10. 17. 대 대생이 고 로 하행 에서 23 에 치 고, 현장에서 사 한 로 견 사건에서 통사고를 당하게 경위에 대한 경찰의 실수사를 인정하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사건 등이 있 니다.

○ 에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회장으로 한 시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하 니다.

48. 현재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근거 포함)

○ 우리 의 형사사법은 의자 해자의 인권을 점 보호해 가는 향으로 하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에 하고 할 분은 이 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인권 최 의 보 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사 으로 합니다. 서 법원 형사사법 의 과정에서 사건 관 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 다각적인 력을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과 한 수·수 , 건 수사,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등으로 당한 을 주고, 국민의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해 는 사 가 있다는 우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장 재판이 준 고, 능력 판단 등을 통하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고인의 어 권이 실 적으로 보장 수 있 국 변호인 제 , 국인을 위한 통· 역 제 등을 실 야 할 것 니다.

○ 한 형사사법 에서 해자, 인 등에게 2 해가 생하지 인지원 화 등을 한 각종 보호 치를 실시하고, 인정보보호에 각 유의하는 한 , 해자의 권의 실 적 보장을 위하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 사회적 약자의 사법 권을 실 적으로 보장하기 위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적인 지원시 을 어야 할 것 니다. 이를 위해 판결 , 소 서 점자 역, 수어 통역 서 를 제공하고, 행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 를 하고, 력인을 적 할 필요가 있 니다.

49.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관한 형사법체계가 인권보호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 형사사법 는 실 적 실 견이 는 적 아니 , 수사 재판과정에서 헌법 보장 고인과 사건관 인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적이 실 적으로 현 수 있 어야 합니다.

○ 서 형사사법 를 하는 각종 실 법 법은 인권보호의 가치를 분 고 하 어야 하고, 이 한 관점에서 형사사법 의 인권보호에 관한 통합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 경청할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현재 형사소 법을 한 다 한 법률에서 고인을 한 각종 관 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을 고 있으로, 제정법을 고안 에 있어서는 관 법률 사이의 이 이 이 어지지 면 한 가 행 어야 할 것으로 생각니다.

50.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 인 사건에 대해 대법관 보자로서 인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51.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지관할 합심리 청 제 가 기본적으로 고인의 시 심판의 이 을 보장하기 위한 지는 니다.

○ 형사소 법은 지관할 합심리 청을 건 인 하 정하지 고, 법원이 제 사정을 고 하 재 으로 결정하 하고 있 니다. 당 재판 는 적 사건 로 공소사실의 내 , 공 고인이 있는지, 사건인지 , 각 사건 의 행 정 , 심리의 향 성 등 제 사정을 고 하 합 를 결정하고 있 니다.

○ 고로 사건이 합 지 고 한 사건의 판결이 고 경우 법원은 고인이 시에 판결을 을 경우와 형 을 고 하 형을 감면할 수 있 정하고 있 니다(형법 제37 단, 제39).

52.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대법관 보자로서 적인 대법원 결정에 대하 인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53.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향 사건화가 수 있는 적인 사안에 대하 대법관 보자로서 인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 한 를 대법관 보자로 하 분 과 대법원 장 서 를 제청하 이유를 하 리는 것이 심 니다.

○ 사법 의 본 인 재판 와 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에 과 기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가 하 니다. 는 이공 이자 지식재 권법에 대한 성이

있고,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사법 가어 한 향으로 아가고 준 해야 하는지 고민해 니다. 이 한 분야에서 제가 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고 한 것이 아 생각합니다.

○ 한, 보자는 법 회 회장을 역임하며 법원 내 성 등 화 정 과 재판에서의 이 를 대성한 재판자 간을 주 하 는 , 성법관 에 대한 로서의 역할 수행 고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후보자의 좌우명

○ 는‘ 간 보(百尺竿頭 進一步)’,‘ 이 을 자 이 사 하 ’는 을 우 으로 아 니다.

○ 법관으로서, 한 인이자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에게 주어 에 최 을 다하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한 을 내 고자 력하 니다.

○‘ 이 을 자 과 이 사 하 ’는 은 분 실 하기 지 지 , 이를 다 하면서 이 이에 가 의 에 가 지고자 력하 니다. 법관에게 필요한 것은 법리에 대한 해 한 지식과 론능력, 유 한 장으로 판결 을 성할 수 있는 능력 은 아 것 니다.‘ 이 을 자 과 이 사 하는’ 으로 재판에 임할 , 분쟁으로 은 당사자 의 을 아 사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 법정과 기 에서 주하는 당사자 의 소리에 기 이며 감하는 한 재판을 실 하고자 최 을 다하 니다.

3. 존경하는 법조인

○ 는 우리 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 의 기 을 으 가인로 생 을 경합니다.

○ 의 아호인 '가인(街人)'은 ' 를 기 에는 하는 리의 사 '이 는 으로, 는 제 점기 한 현실 에서 한 과 민 의식으로 은 독립 가를 로 변론하고, 대법원장으로 재 하는 안 어 한 에 하지 고 사법 의 독립을 지 기 위해 헌 하 니다.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 인은 법 에 등하다”는 법 을 소 하게 생각합니다.

- 헌법 제11 는 ’ 국민은 법 에 등하다. 지 성 ·종 는 사회적 분에 의하 정치적·경제적·사회적·화적 생 의 역에서 을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 니다. 법원을 은 당사자 의 법 의 등을 감할 수 있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 적 권리를 하 하고, 결론을 내 은 것은 고 다른 것은 다게, 실 적 등에 각한 결론을 내리고자 최 을 다하 니다.

○ “법은 국민의 생 과 재 을 지 는 최 의 보 이다”

- 법은 우리 사회 성원 이 합의하 기로 리 정한 이자, 행 와 자유 실현의 기 이 는 생 과 재 을 지켜주는 와 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 과 론이 력이 어 한 인의 권리를 해하 고 할 , 법에 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관의 사 을 에 기고자 하 니다.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 우리 헌법은 국민은 한 재판을 을 권리를 는다고 하고 있 니다. 재판이 어 수 당사자의 이

지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회 이 요원해지며 위
법하고 정의 지 한 가 지 는 결과 법의 지 에 대
한 공 성원의 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는 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내 에 대해서는 아 7. 의에서 리겠 니다.

○ 보자는 이공 공으로 과 기 과 법 이 하는 분야에 은 관심을 가지고 해 고, 이 한 경 을 로 형 의 로 관 서 의 권 인 권에 관한 법리, 지적재 권법 하에서 법행위 관 법리를 화하고 자리 하는 력이 기 하 다고 생각합니다.

○ 한, 장 법관으로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점이 기 에 니다.

○ 의 과 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이어 서, 정보화 기 의 과 인공지능 의 에 어 2023. 10. '인공지능 회'를 립하 니다. 인공지능 회는 법관과 재판 원 33 으로 하 으 , 현재 회원 수가 160 으로 가하 니다. 간 세 , 법률이 에 대한 , 공 등을 통해 사법 가 인공지능을 에 · 하고 법률이

에서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다고 생각하 , 지 변호사회가 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정 지 한 점은 아 점으로 니다.

7. 법관 재직 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

8. 법관 재직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2012 ~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 보자는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보자는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법 회, 지적재 권 법 회, 기 법분야 회, 헌법행정법 회, 형사법 회, 사법정보화 회 등에 가 하 하고 있고, 사건 에 할 당시(2020~2021)에는 법 회에 가 하 재판 에 을 기 하 니다.

○ ,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회장으로 한 시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한 것을 보 있게 생각합니다.

○ 한, 정보화 기 의 과 인공지능 의 에 어 2023. 10. '인공지능 회'를 립하고, 간 세 , 법률이 에 대한 , 공 등을 통해 사법 가 인공지능을 에 · 하고 법률이 에서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관 우가 실제 재하는지 와 관 이 관 우 제에 대해 국민 의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인 에서 임 의 적 을 리는 것이 른 면이 있으 , 인적 이 을 위한 변호사 은 하지 을 정 니다.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은 치가 기 에는, 현행법 법정형으로 사형이 정 어 있고 제 형 건을 하게 고 하 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고 어야 할 사건이 면 사형을 고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 고 생각합니다.

12.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가 는 종 형 제 에 대하 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법감정, 사형제 지를 제로 의할 것인지 , 세 국가의 가 는 종 형 제 에 대한 기준 실 등 요소 을 한 다 한 사· 와 사회 각 각 의 분한 의견수를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고 생각합니다.

○ 각에서는 법원이 사형 고에 소 적이고 사형이 행 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 는 종 형을 하 기 역이 가지고 있는 한 를 하 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 는 종 형 자 에 대하 국에서 위헌성 이 적지은 점에 어 사형제를 지 이 가 는 종 형을 하는 것에 대하 는 등에 대한 보다 한 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법자원의 적 분과 공판심리의 실화를 위하 국 등을 하 해 에서 이 고 있는 유 제 를 우리 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이는 헌법 공 재판을 을 권리에 위 우 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허위자 을 유 하 권을 약화시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실 실의 견과 형 성을 시하는 우리 국민 의 법 감정이 우리 형사사법 의 과정에 어 , 이를 에 있어서는 서 한 각종 고 요소 을 면 하고 하게 할 필요가 있 니다.

○ 인적으로는 법원의 공 재판을 통하 자 하는 고인에게는 자 이 는 형요소를 고 한 형 을 제시하고 이를 고인과 사가 수 할 경우 간이공판 를 합의 형 의 유 판결을 고하고 이 소를 기하 으로써, 고인의 권리를 보호하 사법자원을 적으로 할 수 있 하는 안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이 한 경우에 고인이 국 변호인 등으로 필요한 자 을 실하게 어 자 의 과, 유, 리를 고 자 할 수 있 하고, 법원 고인의 자 이 실한 것인지 주의 게 심리하 야 할 것 니다.

○ 서 유 제 보다는 현행 형사소 법 의 약식 제 간이공판 를 성화하 , 경 한 에 대한 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제 등을 하는 등 사법자원의 적인 분에 대하 다른 대안을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어의 향 등으로 인하 점 수위가 아지는 청소 에 대한 을 법소 하향을 통해 대 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을 위한 하 의 안으로 경청할 한 의견이 고 생각합니다.

○ 다 , 적인 책임능력과 리 형사책임 을 하 정하면 책임능력이 어 다고 보기 소 지 형사 의 대 이 우 가 있고, 아 은 어린 이의 소 에게 사회적 인 과로 인한 이 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우리 사회는 소 이 건 한 인 을 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을 할 책 가 있다는 점과, 보보다는 화를 하는 소 형사사법의 적 분 고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 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사회 경의 변화, 의 필요성 법, 해 국가 의 사 , 청소 에 대한 재 지

과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 니다.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16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으로 요한 의제를 민주화의 공론의 장이 아 사법적 과정을 통해 이 어지는 현 을 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보자 인적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는 법의 지 를 공고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 , 대의 민주주의를 으로 한 정치의 역에서 대화와 을 통해 원 해결 어야 할 제로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한 현 은 아니 고 생각합니다. 다 ,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해 수 법관이 소 을 고 법과 심에 른 재판을 하 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정치적 립성 에 리지 게 법원 안· 에서 한 건을 성하기 위해 력하 야 할 것 니다.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5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사법의 정치화‘와 관 하 정 정치세력에 유리하 리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립성 위 을 판하는 경우 법관 인의 이 SNS 등을 통해 이 적 향성에 대해 주로 사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론으로 보면, 법원의 재판이 국민 의 를 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가 공정하고 합당해야 하고 법관은 심에 독립하 재판을 하 야 합니다. 법원의 소 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인사, 사건의 당 등을 하 사법행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 지 원 있는 재판 심의 행정을 주면 하게 실 하 야 할 것이고, 법관 인 장에서는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하 심의 판결 의 대다수는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고 있 니다. 2019 에 하 심 판결 에 소수의견을 기재한 사 가 등장하 (주지 법원 지원 2019. 8. 22. 고 2018가합12187 판결) 법원내 에서 의가 있 니다.

- 현행 법원 법 제65 에서는 '심판의 합의는 공 하지 아니한다', 제15 에서는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 한 대법관의 의견을 시하 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 이에 관하 는, ① 합의재판의 인성,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② 의 가 력을 하지 고 소 합의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③ 법관 사이의 의견 치를 에 으로써 재판의 권위가 는 것을 을 필요가 있는 점, ④ 소수의견 기재 시 재판에 대한 률이 하 수 있는 점 등을 어 대하는 견해가 있고,

면에 ① 재판공 의 원 에 합하고, ② 한 합의를 유 할 수 있으며, 실한 합의를 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사회의 다 한 의견을 재판에 할 수 있는 점, ④ 합의 재판의 본 은 수인의 법관이 행하는 의 재판을 하 로 는 것인 점 등을 어 성하는 견해 있 니다.

○ 보자의 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의 공 원 을 정한 법원 법 제65 합의 의 역할과 기능 등을 고 하면, 하 심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실 는 법원 법 위 재판 에 대한 를 해할 우 가 있어 보다 실이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 하 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주장하는 소리에 경청할 분이 있으 로, 이 분은 합의 내의 한 의사결정 식 등을 하 법원 내 의 분한 의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니다.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과제는 재판지 해소 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 에 으로 하지 하는 국민 이 고통을 고 있 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 는 법관사 분 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재판을 당하 하고, 감정제 등 각종 재판제와 인사제 를 하 고 력하고 있 니다.

○ 재판지 의 원인으로는 지식을 요하는 잡한 사건의 가와 로 인한 사의 어 , 법관의 고 화, 2020~2022 간 행 로 19 사 , 사회 적인 분위기의 변화 등을 수 있으 , 본적으로 사법 의 법관 재판보 인력의 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의 자 적인 력 으로는 재판지 제를 해결하는 한 가 있 니다. 법관, 재판 원을 원할 필요가 있고,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 을 인재를 법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과 민원서 에 인공지능기 을 할 필요 있 니다. 이 한 은 법적 이 으면 실현하기 어 고, 분한 보 필수적이 고 생각합니다.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공 자 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7호를 하 , 법관이 SNS를 사 하 의사소통과 다 한 인적관 를 형성할 수 있 을 제로 과정에서의 유의사 을 제시하 니다.

○ 법관은 SNS 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하 의견을 하는 경우에 자기 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으로 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의 심에 이게 향 공정한 재판에 향을 우 를 야기할 수 있는 관을 지 하게 해야 합니다.

○ 2023. 12. 열린 국법관대 회의에서 '법관은 SNS를 이 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으 한 관을 법관으로서의 위를 하지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로 의결하 고, 법관 분한 경각심을 게 것으로 고 있 니다.

○ 보자는 대법관 공 자 리위원회가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유의사 의 내 에 적으로 공감하고, 으로 법관 의 의견과 국민의 이를 종합적으로 고 하 합리적인 SNS 이 안을 지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법 원화제 는 사회적 경 과 이 한 사 을 법관으로 임 하 사회현 에 대한 은 이해를 으로 수준 은 재판을 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기 위한 제 니다. 보자는 이 한 법 원화제 의 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 , 법관 임 자 을 화하는 것 으로 국민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법관을 당 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법 원화제 를 성공적으로 정 시 기 위해서는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을 분 보하고, 법관 보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를 하 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을 지 는다면, 법 원화제 의 장점은 사 지고, 사건 리의 성 해 어 재판지 등 각종 제가 심화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 안 법 원화 정 을 위한 제 과제에 대해 · 해 것으로 고 있 니다. 지 10 간의 제 시행 경과를 으로 향 제 가 지에 게 정 어 갈 수 있 와 를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

○ 고등법원 판사 제 가 시행 은 로 인하 법관 생 의 안정성이 해 고, 고등법원 판사 보임 장기간 하 은 소심 재판 를 당 에 의 이 하는 등 다 한 제가 제기 고 있으며, 이 한 제가 고등법원 판사의 사 유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법관인사 이원화의 간인 고등법원 판사의 사 이 이어지는 현 에 대해서 다각 에서 보고, 향 우수한 능력과 인 을 법관이 기에 법원을 이 하지 가지 안을 할 필요성이 다고 생각합니다.

○ 고등법원 판사의 의 을 고 하고 우를 하는 원에서 2024 법관 정기인사에서 수 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 권를 최소한의 위로 소한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아가 고등법원 판사의 형 와 보임 안 등에 관하 적인 제 안 가 행 는 고 있 니다.

○ 에 고법판사를 한 법관의 의 을 고 하고 우를 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하 적 한 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 한 안을 · 하 우수 법관이 유 지 최대한의 력을 기 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법 의 보가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변호사시 의 시기간을 제한한 변호사시 법 정에 대해서 이 한 이 시 시자 의 의 자유 등권을 해한다는 이 있 고, 헌법재판소는 에 합헌 결정을 하 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유로, 사법시 의 해로 어 시 제한 시로 인한 인력 , 시인원 적으로 인한 시 합 률의 하, 법 대 원의 적인 과 소 지 등의 공 이 시자 이 는 이 에 해 대하다는 점을 니다.

○ 보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 의 시기간과 수를 제한할지 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공 을 고 하 법정책적으로 결정 어야 할 사 이 고 생각합니다.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위원 에서 호 하 정 어 있으 , 관 적으로 대법관 1인이 으로 겸임하고 있어 관리위원회의 를 실 적으로 감독하고 통 하는 한 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안 대법관이 위원장 을 는 관행이 형성 어 것은, 국회의 의를 어 대통 이 임 하고 분이 보장 는 대법관 위의 성과 최고 법원에서 법 해 의 통 과 법의 가치를 하는 의 성, 법적 식견과 경 의 면에서 , 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는 는 대법관이 위원장 을 는 것이 적 하다는 공통 인식이 있 기 이 고 생각합니다.

○ 현재와 은 임 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대한 사 를 과적으로 리하기 어 성을 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경청할 분이 있 니다. 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이 유지 어 관행을 변경하 면 분한 사회적 의와 가 있어야 하고, 한 대법관이 준하는 독립성을 인사가 위원장이 수 있 하는 제 적 장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종 법률 아 의 생기 은 고의 자의 생 고에 의하지 , 최 통과 생통보제로 의 기관에서 생한 아 을 생 고 하지 아니하면 시· ·면의 장이 최고한 감독법원의 허가를 아 권으로 생 기 을 하게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한 생통보제의 에 사실이 는 것을 리는 성이 의 기관에서 을 기 할 수 있다는 우 가 제기 고, 이로 인해 어 을 고 있는 성을 보호하고 자 에 대한 안 한 과 경을 보장하 '보호 제'가 니다.

○ 생통보제와 이에 대한 보 책으로 보호 제에 기본적으로 성하는 이장이고, 2024. 7. 19. 위 제 가 시행 이 에는 아 이 적 한 보호를 으면서 건 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이 보장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은 법률이 어 한자어로 성 어 있지 , 민법에는 제정 당시 정 어 한자어, 어법에 지 는 현, 본식 현이 이 어 있어 국민 이 법 의 내 을 이해하는 어 을 다는 지적이 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생소하고 어 법률 어를 기 현으로 수정하는 민법 정안이 다수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률을 한 화하 은 국민 이 법률을 게 읽고 이해할 수 있 하 는 지에 공감합니다. 다 , 간결하고 정 한 현을 써야하는 법률 어의 , 로는 한자를 대로 사 하는 것이 의 를 정 하게 하는 법이 수 있기에 이 한 점을 고 하 한 화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을 위해 안이 고 고법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고법원 안은, 고심의 법 해 통 기능과 권리 제 기능을 분리 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 하고, 국민은 실한 권리 제의 기회를 게 다는 장점은 있 니다. 한 , 대법원이 당하는 사건과 고법원이 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 기준이 하지 고 대법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서 심리 행제 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를 판단할 수 있 우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 고심의 을 경감하기 위한 안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 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호 화의 임종과정에 있는 자의 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시행 인 것으로 고 있 니다. 위 법은 회생의 가능성이 고 치 에 하고 회 지 아니하며 로 이 화 어 사 에 임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의 단 결정 이행에 관한 사 을 정하는 내 니다.

○ 자에게 약물 등을 실시하 생 을 단 시 는 적 적 안 사는 법 허 지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소 적 안 사, 생 유지에 필요한 약물 등을 단 으로써 자를 에 이 게 하는 치의 경우에는, 회 의 가능성이 이 는 자의 심한 고통을 경감하는 인 적 수단으로서 적으로 인정할 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사 허 는 단 법적인 면은 물론이고 과 적, 종 적, 적 제가 다 하게 있으 로, 은 사회적 의 경 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법 의 실 적 독립이 보장 수 있 법원의 , 인사, 등 사법행정과 소 를 한 재판제 에 관한 사법 의 법률안 제 권, 사법 의 독자적인 성권을 인정하는 안을 적 적으로 고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 원에 대한 이 을 지하고 있는 헌법 제29 제2 , 향 사형제 지가 의 경우에 대 하 사형제의 재를 제로 하는 사재판 관 헌법 제110 를 수정하는 안 의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정치적 장 이가 한 사안에 대하 보자가 인적으로 법적 견해를 는 것은 적 하지 은 면이 있는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30.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재 사법 가 면한 가장 시 한 과제는 재판지 을 해소하는 안을 하는 것 니다. 고 이 , 고분쟁성 사건이 가 에 과 에 해 법관 이 가 고 있고, 법관의 고 화가 가 화 어 사건 리의 성이 하 고 있 니다. 공판 심주의, 심리주의가 는 등으로 재판제 가 변화 에 법관의 가하고 있 니다. 다른 국과 할 우리 의 사건 수 대 법관 재판보 인력의 수 분 하지 니다. 최 아 법관이 가하는 등으로 실제 재판 에 할 수 있는 가 법관의 수 분하지 니다.

○ 사법 성원 가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 로 해결 안을 하고 있지 , 법관 원이 제 지 는다면, 재판지 제는 본적으로 해결하기 어 니다. 법관이 원 어 재판지 이 해소 다면, 법적 분쟁이 적기에 해결 고 실한 재판을 현할 수 있으며, 재판지 에 른 경제적 실성을 해소할 수 있 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제가 하게 이 어지고 국민의 고통이 경감 며,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이 지하게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 , 사 원에 관하 는 제 사정 등을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이 고 생각 고, 대법관 보자로서 국가기관의 정원에 관하 적인 의견을 리는 것

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1. 후보자는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관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해박한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음. 현재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발전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음.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변호사법을 비롯한 국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는?

○ 보자의 인적인 소견으로는, 법률사 에 인공지능을 하는 것은 를 수 는 국제적 세로서 이를 정적인 시각에서 제할 경우 우리 리 의 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실하게 우 가 있 니다. 한 리 은 변호사 의 경쟁자가 아니 , 변호사의 서 의 생력을 대시켜 를 화하고 종국적으로 시장 를 수 있는 긍정적인 과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 리 에서 인공지능을 기 으로 법률 서 를 제공하는 을 시하 는 ,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 를 , 한 자를 하는 변호사법 제109 에 위 는 것은 아 지 제 고 있는 것 니다.

- 국의 경우 시민을 대 으로 인 법률 서 성 서를 제공해 리 (LegalZoom)가 변호사 회와 장기간의 소 을 에, “위 가 제공하는 법률서식을 변호사가 리 하고 위 는 이 자에게 제공 는 법률서식

이 변호사의 자 을 대 할 수 을 고지한다.” 는 공생의 을 아 합의에 이 고 합의의 내 이 이 주법으로 법화 으로써, 다른 리 은 정을 적 을 수 있게 는 등 리 서 의 위법의 소지를 해소한 것으로 니다.

- 본 법 성은 ① 변호사 자 이 는 자가 보수를 을 적으로, ② 적인 법률 다 이 있는 사건에 관해 ③ 법률 지식에 해 견해를 기하는 경우에 한하 본 변호사법 제72 에 위 며, 이에 해당 지 는 경우는 허 다는 가이 인을 제시하기 하 니다.

- 이 국 등의 리 는 변호사와 제 하 변호사시장과는 지 는 역을 아 리 의 성장을 하며 호 공 하는 형 의 을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위 본 법 성의 가이 인을 하 , 변호사법 제109 제1호에 “다 , 지능화 시 을 이 하는 경우로서, (1) 보수를 을 적이 적인 법률 다 이 는 사건에 대한 법률사 는 (2) 변호사가 결과의 는 을 주 (관)하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를 가하는 안 등을 고 할 수 있다고 보 니다.

○ 적인 법률지식과 리적 소 을 변호사에게 법률사 를

으로써 법률사 에 대한 성, 공정성 성을 보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 는 변호사
법의 법 지와 , 변화하는 법률서 경과 인공지능 관
의 국가경쟁력 등을 고 하 국회에서 리 의 허
위와 제 법에 대해 합리적인 법안을 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리 의 성장에는 대한 이 가 필요하며, 판결 은 가
장 은 자 가 것 니다. 국내 리 AI 의 을
위하 정한 요건(보안, 인정보보호, 이 관리 등)을
에 대하 는, 실 화의 정 를 화하고 API 식으로 대
의 판결 을 하게 제공하고, 은 리 국가
가 하게 하며, 로 인한 이 을 시민 합리적인 으로
수 있 하는 법적 를 하고, 법원은 위 제공으로
인하 생할 제로 면책 하는 내
의 법을 고 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한 본과 국, 독 의 권법 정을 고하 , 우리 권
법에 Text and Data Mining을 위한 물의 이 은 재
권 제한사유로 간주한다는 의 이 필요합니다. 이 21대
국회에서 권법 정안이 의 으 , 법률 정으로
이어지지 하 으 로, 22대 국회에서 열 어지기를 기원합니
다.

32.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는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며 법관통합재판지원시 을 한 경 을 통해, 재판 시 의 고 화와 지능화가 재판의 성· 성을 가시 수 있는지를 감할 수 있 니다. 최 에 등장한 기 인 인공지능을 법원 에 적 한다면, 는 야 과 주 는 고 적 식을 고 하지 재판의 성과 성을 게 시 수 있으리 생각합니다.

○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하 법관의 를 경감 으로써 인간 판사가 심적인 판단 에 할 수 있 하고, 이를 통해 하고 적인 재판을 지원하는 향으로 정책적 력을 우 해야 할 것 니다. 법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 리서치 당사자 제 건 요약, 쟁점 정리 등을 인공지능 이 수행할 수 있다면 에 시간 을 다른 에 사 할 수 있으 로, 하고 실한 재판에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인공지능은 과 이 를 하 고리 을
고 을 결론 에 하는 것이 로 적 사건의 수
한 사정을 하 로 법리를 제시하는 는 한 가 있고,
AI의 고리 의 내 적 식을 · 하기 어 한
가 있 니다. 이 한 한 로 인해 해 에서 AI 판사가 판단을
대 하 재판을 행하는 경우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 · 가치적 판단을 수 하는 사법 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과 한 가 있다는 현실은 인식하면서, 인간 판사의 기 적 ·
적 을 보 하는 역에서 점 적으로 AI를 하고
해 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앞서 리걸테크 산업이 많이 발전한 국가들을 보면, AI의 출현으로 크고 작은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소송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리 에 한정 것이 아니 인공지능의 의 과 사 에 관하 법적· 리적 기준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합에서는 인공지능법안이 제정 고, 세 각국에서 인공지능 리기준을 하고, 관 법안을 준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우리 에서 정 의 인공지능 리기준이 있고, 지 21대 국회와 이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 법안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분한 의를 인공지능 관 법을 성 으로써 관 분쟁을 사 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 국내 리걸테크 관련 여러 법률서비스들이 있음.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후보자가 인상깊게 보았던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사법부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 것이 있는지?

○ 국내 리 의 서 에 AI를 통해 필요한 법률 정보를 하게 하고 분 해주는 서 가 있고, 대화형 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판 (하 심)를 아주는 서 가 인 적 니다. 식이 아 대화형으로 법률 헌이 판 를 하고, 소 자 의 분 을 보 하는 인공지능 기 은 사법 의 적이고 한 재판을 지원할 수 있으리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제가 에 고 있는 법 은 세 가지 니다. “ 인은 법 에 등하다”, “법은 국민의 생 과 재 을 지 는 최 의 보 이다”,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 “ 인은 법 에 등하다” : 헌법 제11 는 ’ 국민은 법에 등하다. 지 성 ·종 는 사회적 분에 의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화적 생 의 역에서 을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 니다. 법원을 은 당사자의 법 의 등을 감할 수 있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 적 권리를 하 하고, 결론을 내 은 것은 고 다른 것은 다 게, 실 적 등에 각한 결론을 내리고자 최 을 다하 니다.

- “법은 국민의 생 과 재 을 지 는 최 의 보 이다” : 법은 우리 사회 성원 이 합의하 기로 리 정한 이자, 행 와 자유 실현의 기 이 는 생 과 재 을 지켜주는 와 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 과 론이 력이 어 한 인의 권리를 해하 고 할 , 법에 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관의 사 을 에 기고자 하 니다.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 우리 헌법은 국민은 한 재판을 을 권리

를 는다고 하고 있 니다. 재판이 어 수 당사자의 이 지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회 이 요원해지며 위법하고 정의 지 한 가 지 는 결과 법의 지에 대한 공 성원의 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는 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 는‘ 간 보(百尺竿頭 進一步)’,‘ 이 을 자 이 사 하 ’는 을 우 으로 아 니다.

- 법관으로서, 한 인이자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에게 주어 에 최 을 다하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한 을 내 고자 력하 니다.

- ‘ 이 을 자 과 이 사 하 ’는 은 분 실 하기 지 지 , 이를 다 하면서 이 이에 가 의 에 가 지고자 력하 니다. 법관에게 필요한 것은 법리에 대한 해 한 지식과 론능력, 유 한 장으로 판결 을 성할 수 있는 능력 은 아 것 니다.‘ 이 을 자 과 이 사 하는’ 으로 재판에 임할 , 분쟁으로 은 당사자 의 을 아 사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 법정과 기에서 주하는 당사자 의 소리에 기 이며 감하는

한 재판을 실 하고자 최 을 다하 니다.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아 제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니다.

○ 서 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 기니 공화국적의 원고의 민 청에 대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을 종합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하 소수자를 보호하 니다.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2012 ~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영장, 이유

○ 당시 각종 · 경제 사건, 성 사건의 장을 다수 리하면서 고인의 어권 보장, 재판의 원 과 실 실 견을 위한 적정한 형사 의 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은 고민을 하 기 이 있 니다.

○ 정한 사건보다는, 당시 형사법관 과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 하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 · 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점이 기 에 니다. 이 한 경 을 대로 다수의 과 자 를 하고 법관 수 등을 통해 지 법의 을 위해 력하 고, 이 한 력이 이 어 대법원 판 가 화 고 수수 에서 적 권리 보장에 력이 기 하 다고 생각합니다.

6.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보자는 이공 공으로 과 기 과 법 이 하는 분야에 은 관심을 가지고 해 고, 이 한 경 을 로 형의 로 관 서 의 권 인 권에 관한 법리, 지적재 권법 하에서 법행위 관 법리를 화하고 자리 하는 력이 기 하 다고 생각합니다.

○ 한, 장 법관으로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점이 기 에 니다.

○ 의 과 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이어 서, 정보화기 의 과 인공지능 의 에 어 2023. 10. '인공지능 회'를 립하 니다. 인공지능 회는 법관과 재판 원 33 으로 하 으 , 현재 회원 수가 160 으로 가하 니다. 간 세 , 법률이 에 대한 , 공 등을 통해 사법 가 인공지능을 에 · 하고 법률이 에서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7.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보자는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법 회, 지적재 권 법 회, 기 법분야 회, 헌법행정법 회, 형사법 회, 사법정보화 회 등에 가 하 하고 있고, 사건 에 할 당시(2020~2021)에는 법 회에 가 하 재판 에 을 기 하 니다.

○ ,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회장으로 한 시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한 것을 보 있게 생각합니다.

○ 한, 정보화 기 의 과 인공지능 의 에 어 2023. 10. '인공지능 회'를 립하고, 간 세 , 법률이 에 대한 , 공 등을 통해 사법 가 인공지능을 에 · 하고 법률이 에서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8.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보자는 안 위 을 하 단행본 4권, 21 을 성하 고, 3건의 이 기 에 니다.

○ 2010 서 대 기 과법 를 통해 간한 “지식재 권법 하에서의 법행위법의 역할”이 기 에 니다. 보자는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소위 ’ 로 ‘ 사건)을 당하면서, 법, 권법, 정경쟁 지법 등의 지적재 권법으로 보호 지 는 권리 하 법행위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있고, 과정에서 수 한 대한 자 을 하 위 판결의 법리를 어 니다. 보자의 판결과 성과는 2013. 7. 30.「 정경쟁 지 보호에 관한 법률」 정 시 정경쟁행위에 ’ 에 인의 당한 자 력으로 어 성과 등을 공정한 관행이 경쟁 서에 하는 법으로 자 의 을 위하 단으로 사 으로써 인의 경제적 이 을 해하는 행위(’성과 행위‘)가 는 기가 것으로 고 있 니다.

○ 2012 ’헌법 ‘지에 한 “ 자정보에 대한 수수 과 기본권, 리고 장주의에 관하 ” 는 니다. 보자의 고대 정보보호대 원 사 위 인 ’형사 에서의 지 의 과 능력‘을 헌법적 시각에서 시켜 성한

으로, 자정보 수 과 과정에 수 하 제 는 헌법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제한 한 등을 하고 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안 등을 은 니다.

○ 2023 에 '법 '지에 한 "인공지능 관 수립의 국내 현 과 과제" 는 기 에 니다. 인공지능의 과 으로 대 는 법적 제점과 에 대한 해결 안을 제안한 내 으로, 인공지능 기 로 인한 을 사회가 고 수 있는 에 대한 향과 국제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의 우리의 인공지능 관 에 대해 제안한 니다.

9. 자녀의 주택구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녀의 주택구입과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입장

○ 보자의 장 는 2022. 8. 23. 서 소재 다세대 주 을 7 7,000 원에 수하 니다. 약 합 3 800 원은 보자의 우자로 고 세(약 4,600 원)를 하 니다. 4 6,200 원 ① 2 6,000 원은 임대 보 으로 당하고, ② 지 2 200 원은 으로 하 한 2023. 5. 장 가 기 보유하고 있 ㈜ 주식으로 대물변제하 니다.

○ 장 의 과정에서 우자의 지원이 있 으 , 법을 준수하고 세 을 성실 하 을 하 니다. 다 , 이 한 과정이 국민의 이에 지 을 수 있다는 점을 게 아 니다.

10. 후보자 또는 가족이 이제까지 꾸준하게 기부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기부하게 된 계기, 기부 단체와 규모

○ 보자는 2011 경 대, 가정해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을 수는 청소 을 보고 성장을 지원하는 단 인 '사단법인 청소 세 '에 기 하게 것을 기로, 기 와 사는 사회적 대와 공 의식을 화하고 자 과 인의 을 요게 다고 생각하며, 력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 기 등을 하고 있 니다.

- 위 '사단법인 청소 세 '과 2011 경 인 을 고원하기 시 하 현재 지 약 13 안 정기적으로 원 을 보내고 있 니다. 한, 제 소 의 1/10 이 을 로 분하 사 의 장기기 본 , 사회 지법인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이 , 대 성인권 ,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 , 고 대 의 기 등 다 한 단에 기 를 이어가고 있 니다.

<최근 5년 간 기부액>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금액	1,780만원	2,453만원	1,860만원	2,343만원	31,910만원	40,346만원

- 보자 우자 보유 주식 가치 으로 각 을 게 자, 2023 에는 보자가 우고 성장할 수 있

는 이 어준 공과대 과 고 대 에 각 1 원의 기 을 기 하 고, '사단법인 청소 세 '에 청소 자립기 으로 1 원을 기 하 니다. 최 (2024 4~5)에는 보자와 우자가 사 의 열 에 3 원 (= 보자 1 원 + 우자 2 원)을 기 하 아 소사이어 회원이 니다.

- 어 보자는 사회에 대한 지 사 고 생각하고 '재단법인 사 의 장기기 본 '를 통해 수 에 장기기 서약을 하 니다.

○ 보자의 우자 이 한 보자의 에 공감하면서, 회사의 주식가치 으로 인한 이 을 회사를 성장시 임 원을 위해 기 하는 의 에서 로자 의 지 향 을 위하 사내 지기 을 하 니다. 2019 ㈜ 에 사내 로 지기 으로 우자가 보유한 ㈜ 주식 1,327주를 기 하 고(= 약 1 8,000 원 당), 2024. 4. 29. ㈜제주 에 사내 로 지기 으로 우자가 보유한 ㈜제주 20 주를 기 하 니다(= 기 기준 시가 44 5,000 원 당, 10 주는 권리이 , 10 주는 향 5 간 2 주 이 약).

○ 보자와 우자의 최 5 간 기 을 합 하면 3,111,818,530원 (= 보자 503,472,800원 + 우자 2,608,345,730원)이고, 향 5 간 우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분 지 합 하면 5,336,818,530

원(= 3,111,818,530원 + 2,225,000,000원) 니다.

11.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대법관 보자인 에서 임 의 적 을 리는 것이 른 면이 있으 , 인적 이 을 위한 변호사 은 하지 을 정 니다.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 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12.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점 잡하고 다 해지는 사건에 대 하 재판 의 성을 화하는 한 재판 지 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고 있고, 보자 역시 기본적인 지에 공감합니다.

○ 대법원 사법행정자 회의에서 2020 우 적으로 법원 해사법원의 치를 하는 것이 당하다는 의견을 힌 것으로 고 있 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치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의 고, 22대 국회에서 경하는 의원 을 하 의원 서 해사법원 치를 위한 법률안을 의하시는 등 해사법원 치를 위해 력하시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해사법원을 치한다면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어 국에서 리하는 국내 해사사건을 우리 에서 리할 유인을 제공하고, 해 국으로서 해사법 관 지식 이 할 수 있는 기가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 , 해사법원의 치 수, 지역, 관할 등 적인 치 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성과 성, 해사사건의 위를 어 게 정할 것인지, 에 른 해사사건의 수, 관할 을 통한 성 보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 한 해사법원을 치하는 것은 당사자 의 의성과 성을 하시 우 가 있고, 대로 다수의 해사법원을 치하는 것은 관할의 가 어 재판의 성 보에 장애가 수 있는 , 관할의 필요성과 당사자 의 의성· 성을 균형 있게 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 각 의 의견을 수 하면서 심 은 의를 법 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2017. 3. 최 의 법원으로 서 회생법원이 원하 고, 2023. 3. 1. 수원회생법원, 회생법원이 가로 원하 니다. 이 한 법원은 민사법의 적인 법리에 법리와 의 수성을 분 한 적· 적인 실 을 통해, 재정적 어 에 한 자의 제와 권자 등 이해관 인의 법률관 정에 기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인회생· 의 경우 당사자를 게 제하는 것이 요한 , 최 회생법원에서 지 법원 보다 하게 사건을 리하고 있어 당사자 이 회생법원이 치 으로 주소지를 기는 사 있는 것으로 론에 보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재 국회에 대 ·대 · 주회생법원을 가로 치하는 법안 등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한정 사법자원의 적 과 관할 분의 면, 적인 사법서 에 할 수 있는 지역균형 의 면 등을 고 하 , 건이 허 하는 위 내에서 법원을 고등법원 권역 내에 가로 · 대 하는 것을 적 적으로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회생법원의 사건 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현재 로 -19 사 의 에 이은 경기 와 리 인 등으로 인하 사건이 하고 있다고 고 있 니다. 재정적 어 으로 에 면해 있는 자에 대하 권자 등 이해관인의 법률관 를 정하 자의 한 경제 를 하고, 회생이 어 자의 재 은 공정하게 가 · 당할 수 있 , 인적 · 물적 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법원행정 하 자 기 인 회생· 위원회에서 하고 적인 사건 리를 위한 회생법원 가 치 법관 등의 원을 권고한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 하게 사건을 리하는 법원에 사건이 면서, 회생법원에 하는 원 이 를 이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적 사건 리가 어 지지 을 우 는 면 있 니다. 하는 사건에 대 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물론 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사건 당인력이 분 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법관임 을 위한 최소 법 경력요건은 다 한 경 과 경 을 가원 한 법 인 을 법관으로 임 하 사법에 대한 국민의 를 보하기 위한 것 니다. 법 원화 시행과정에서 보 할 분이 고 있고, 은 경력요건 에 하지 하는 우로 인해 우수한 법 인의 법관 지원이 어 면서 제 의 지에 역행할 우 가 있 니다.

○ 주요 국의 사 를 보 우리 와 이 최소 법 경력을 10 이 요 하는 사 는 의 고, 법관 지원의 대 (Pool) 이 는 변호사의 수 역시 우리 가 국에 하 대적으로 우 적은 것으로 고 있 니다. 한, 법 원화에 현재 법관 이 적으로 고 화 고 있는 로 인하 리의 성이 어 수 있고, 합의 재판을 위한 판사 자원을 보하기 어 제점, 법관 성에 있어 의 다 성이 어 우 는 면이 있 니다.

○ 법 원화 제 가 시행 지 10 이 지 , 법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 하 는 법 원화의 지는 대로 유지하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 와 이에 른 재판지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국회법 제123 제4 은 청원 수 제 대 을 정하고 있고(1. 재판에 간 하는 내 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독하는 내 의 청원, 3. 국가기 에 관한 내 의 청원), 청원법 제6 는 청원 리의 를 정하고 있 니다(1. 국가기 는 공 에 관한 사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 정· 재 등 다른 법 에 의한 사· 는 제 가 행 인 사 , 3. 허위의 사실로 인으로 하 형사 분 는 분을 게 하는 사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를 실 시 는 사 , 5. 사인간의 권리관 는 인의 사생 에 관한 사 , 6. 청원인의 성 , 주소 등이 분 하 청원내 이 한 사). 이와 관 해 해당 청원이 수대 인지 를 고 국회 내에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적 사안에 대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의 적정성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7.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는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며 법관통합재판지원시 을 한 경 을 통해, 재판 시 의 고 화와 지능화가 재판의 성· 성을 가시 수 있는지를 감할 수 있 니다. 최 에 등장한 기 인 인공지능을 법원 에 적 한다면, 는 야 과 주 는 고 적 식을 고 하지 재판의 성과 성을 게 시 수 있으리 생각합니다.

○ 적인 사 리 잡한 사건의 요약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하 법관의 를 경감 으로써 인간 판사가 심적인 판단 에 할 수 있 하고, 이를 통해 하고 적인 재판을 지원하는 향으로 정책적 력을 우 해야 할 것 니다. 법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 리서치 당사자 제 건 요약, 쟁점 정리 유사판결 , 심리 향 제안 등을 인공지능 이 수행할 수 있다면 에 시간 을 다른 에 사 할 수 있으 로, 하고 실한 재판에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인공지능은 과 이 를 하 고리 을
고 을 결론 에 하는 것이 로 적 사건의 수
한 사정을 하 로 법리를 제시하는 는 한 가 있고,
AI의 고리 의 내 적 식을 · 하기 어 한
가 있 니다. 이 한 한 로 인해 해 에서 AI 판사가 판단을
대 하 재판을 행하는 경우는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 · 가치적 판단을 수 하는 사법 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과 한 가 있다는 현실은 인식하면서, 인간 판사의 기 적 ·
적 을 보 하는 역에서 점 적으로 AI를 하고
해 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최 감독원장이 임 의 성과 위의 지 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지하 , 형법 임 를 치하 법 이사의 실의 대 을 주주로 대하면서 법 의 임 는 화 는 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힌 것을 론보 를 통해 하 니다.

○ 형법 임 는' 인의 사 를 리하는 자가 임 에 위 하는 행위로써 재 의 이 을 하 제 자로 하 이를 하게 하 본인에게 해를 가하 성립하는 '인 , 임 정이 재 으로써 기 의 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임 를 지하면 공공의 를 리는 행위가 해 수 있으 로 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니다. 헌법재판소 2015 원 치 의견으로 임 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있 니다.

○ 다 , 임 의 적 위가 고 법정형이 아 기 에 어 을 하며, 이 지 아 이 다는 점을 로 임 지를 주장하는 의견 있 니다. 보자가 형사재판을 당할 에 의 성으로 인해 유 판단에 어 을 기 하 니다.

○ 법 임 의 경우 이 한 기능과 역기능이 공 할 수 있 니다. · 화 는 경 판단의 원 , 민사재판을

통한 적 보 의 실 성 보 제, 기 의 지 에
향, 국민 의 법감정과 가치관, 의 필요성 을
위한 형사정책적 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하고, 법
와 등의 의견, 국민의 론 등을 게 수 하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 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은 안 ·보건 치의 를 위하 인 해를 생하게 한 사 주, 경 책임자, 공 원 등을 으로써 대재해를 하고 시민과 로자의 생 과를 보호하기 위한 적으로 제정 어 2022 시행 고 있고, 법원 법은 법정형이 1 이 인 대재해 법 제6 제1, 3 , 제10 제1 의 정에 관한 사건(1 이 사 자가 생한 대 재해, 1 이 사 자가 생한 대시민재해)을 원적으로 합의 심판대 에서 제 하고 있 니다.

○ 다수의 생자가 생하고 사회적 력이 사건의 경우, 법관 3인의 합의 재판을 통해 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이 있 니다. 다 , 법원의 사물관할은 한정 사법자원을 은 심 리는 물론 다른 심 사이에서 과적으로 분으로써, 공정하고 하면서 실한 재판이 는 사법 의 적인 적을 성할 수 있는지와 관 합적인 제이기 합니다. 합의 사건보다 단독 판사의 심리가 한 경우가 적지

고, 시 소심 재판을 어 에서 행할 지의 제는 고인, 해자의 사법 권과 관 제이기 합니다. 현재와 이 적인 단독판사의 관할로 , 필요한 경우 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지 있 니다.

○ 위 법률은 시행 지 약 2 에 지 아 아 재판 판결 수가 지 은 것으로 고 있 니다. 향 재판 판결 사 가 적 고 실제 단독 · 합의 재판으로 행 과 에 른 장 단점을 면 분 하 ,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민 의 의견을 수 하 법적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현재 사법 가 당면한 과제는 재판지 해소 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 에 으로 하지 하는 국민 이 고통을 고 있 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 는 법관사 분 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재판을 당하 하고, 감정제 등 각종 재판제와 인사제 를 하 고 력하고 있 니다.

○ 재판지 의 원인으로는 지식을 요하는 잡한 사건의 가와 로 인한 사의 어 , 법관의 고 화, 2020~2022 간 행 로 19 사 , 사회 적인 분위기의 변화 등을 수 있으 , 본적으로 사법 의 법관 재판보 인력의 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의 자 적인 력 으로는 재판지 제를 해결하는 한 가 있 니다. 법관, 재판 원을 원할 필요가 있고,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 을 인재를 법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과 민원서 에 인공지능기 을 할 필요 있 니다. 이 한 은 법적 이 으면 실현하기 어 고, 분한 보 필수적이 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하 심 재판이 지 원인 에는 관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를 대기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고심 수 하 한 재판을 하기 위하 력하고, 하 심 재판에 향을 사건에 관하 는 우리 사회가 아가야 할 향과 가치 기준을 적시에 제시하는 지혜로 재판을 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법원 내에 지 법 이론에 관한 기 를 세우는 에 력이 하 니다. 최 어 자정보 수 수 의 위와 법의 제한, 위법수 와 능력 판단에 관해 쟁이 화 고 있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자 와 관 하 , 국가의 정당한 형 권 행사 실 적 실 견과 의 자의 이 시 보호 등 기본권 보호 형사 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고, 보다 적이고 관 며 가능한 법리를 세우기 위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현재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재판 에의 한 인공지능 안 인공지능에 관한 등 의를 성화하 , 현재 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재판 에 하고, 법원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 대 하는 기 하고 니다.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한 권리 제를 위하 재판지 을 해소하는 것이 요합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는 법관 의 면 성실 으로 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국민 의 기대 수준과 요 사 에 하 재판 제 를 지 적으로 하고 적시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인 력이 수 어야 하는 과제 니다. 재판지 의 해소를 위하 법관 정원 원은 물론 사 분 의 장기화, 감정제 의 , AI 등 기 의 등 다 한 안이 어야 할 것으로 생각 니다.

○ 법적 안정성 보를 위하 는 주요 법적 쟁점 에 관하 법원 내 의 와 의를 성화하 심 , 법원 를 가는 한 , 재판의 독립성을 지 고 시대의 변화를 한 을 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니다.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법원장 보 제는 민주적·수 적 사법행정 현을 하기 위하 2019 에 어 의 시 실시 과정을 2023 에는 국적으로 대 실시 것으로 고 있 니다.

○ 법원장 보 제에 관하 는 사법행정에 민주적이고 수 적인 요소가 다는 긍정적인 가가 있는 면, 이른 인기로 변 고 법원장이 책임감을 고 사법행정권한을 적 하게 행사하는 본 의 역할을 실 수행할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한다는 판이 있 니다. 한, 수의 보자로 대 법원장이 법원장을 인 하고 과정이 하지 으 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화 다는 판 있 니다.

○ 이와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면, 종 과 은 형 의 법원장 보 제는 이 유지하기 어 지 생각 니다. 제의 성과와 한 를 면 ·분 하고 법원 성원 의 분한 의견 수 등을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성원의 의견을 하면서 사법행정에 적합한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 인사 원 과 를 합리적으로 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를 어, 고등법원 장판사, 고법판사, 지 법원 장판사 재판능력과 인 이 한 분 을 하고 법원 성원 의 의견을 하 법원장 보 을 성한 다 , 법원장인 위원회(가) 등의 기 를 통하 재판 능력과 성, 리

을 고 판단하 법원장을 인 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으로써, 법관의 의 을 고 하고 법원 성원 의 을 하면서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하는 안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정한 사법 의 수행을 위해 국과 은 ‘사법 해(Obstruction of Justice)’의 을 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지 을 적으로 한 각종 청의 ,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지 권 행사에 대한 , 재판 의 준 에 대한 해 , 유지 등을 이유로 재판 가 내린 열 제한결정의 위 등 사법 서 립을 해하는 행위에 관하 는 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으로 하 주 다면 사법 서 립에 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 위 , 고, 인 사와 은 사법 서를 해하는 에 대해서는 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 고 는 경찰, 찰, 법원의 적정한 수사·재판기능을 · 해하고, 경우에 서는 인에게 심각한 법적 안정성을 하고 아가 형 에 지 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가지 은 고 할 것 니다. 다 , 위 , 고 가 지 치게 게 적 경우에는 정당한 고소·고 권 행사 심리에 필요한 지 위 지 있으 로, 국가의 심판기능 보호 해자의 정당한 고소·고 권 보장 등의 면을 고 하 적정하게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은 법정에서 아니 인적인 생 에 있어서 각 행에 주의를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고, 재판에 대하 어 의 해 야기하 서는 안 기 니다.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정치적 에 리지 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 보자는 역대 대법원장이 사법 의 정치적 립성을 지 기 위해 대로 력하 다고 인정하 , 국민의 이에 지 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요 과 이 판결에 대한 과 한 판과 법관 인에 대한 공 이 이어지는 에서는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 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 인은 법 에 등하다”는 법 을 소 하게 생각합니다.

- 헌법 제11 는 ’ 국민은 법 에 등하다. 지 성 ·종 는 사회적 분에 의하 정치적·경제적·사회적·화적 생 의 역에서 을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 니다. 법원을 은 당사자 의 법 의 등을 감할 수 있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 적 권리를 하 하고, 결론을 내 은 것은 고 다른 것은 다게, 실 적 등에 각한 결론을 내리고자 최 을 다하 니다.

○ “법은 국민의 생 과 재 을 지 는 최 의 보 이다”

- 법은 우리 사회 성원 이 합의하 기로 리 정한 이자, 행 와 자유 실현의 기 이 는 생 과 재 을 지켜주는 와 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 과 론이 력이 어 한 인의 권리를 해하 고 할 , 법에 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관의 사 을 에 기고자 하 니다.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 우리 헌법은 국민은 한 재판을 을 권리를 는다고 하고 있 니다. 재판이 어 수 당사자의 이

지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회 이 요원해지며 위
법하고 정의 지 한 가 지 는 결과 법의 지 에 대
한 공 성원의 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는 한 재판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2012~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하면서 당한, 지 통화 인 ‘ (KIKO)’의 판 사건 이 기 에 니다(서 고등법원 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에서, 당사자 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제해 수 있는 이 안 것으로 기 합니다.

○ 보자는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이 사건은 민간기 에 하는 성 로자가 고 보 법 제 70 제2 이 정한 아 청기간(아 종 시 로 12)을 과하 위 청을 하 다는 이유로 지 분을 고 분의 소를 하는 사건이 니다.

- 해당사건의 1심에서는 위 청기간을 행 정으로 해 하

원고가 소하 으 , 보자는 이와 리 소심 판결에서 아 제 의 사회적, 정책적 의 아 수 권의 성 (사회보장수 권이자 재 권)에 대한 고찰을 으로, 고 보 법의 관 정을 합리적이고 화 게 해 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하고자 하 고, 고 보 법 제70 제2 의 ‘ 청’은 아 를 지 기 위한 이자 소 시 단사유로서 기 청을 하는 의 의 적 정 정 로 해 이 당하다고 판단하 , 아 지 등 분을 소한 판결 니다.

-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2018 47264)의 다수의견(8인)은 아 이 1 이내에 아 를 청하 한 을 행 정으로 보아 이 기한을 넘 청하면 를 을 수 다는 해 으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하 니다. 다 , 소수의견(5인)은 원심과 이 시 정으로 해 하 니다.

- 위 대법원 원합의 판결은 아 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2021 법률 정 해의 주요판결에 정 고 주요 론에 소 어 법 와 은 로자 의 관심이 사건이 사회가 지 는 대한민국의 어 에서 아 이 니다. 아 의 (고 등과 가정 립 지원에

관한 법률)와 아 지 (고 보 법)이 이원화 어 있는 법 에서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 의 보장을 위한 법적 해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공 을 위해 소 을 제기한 경우에 소자에게 소 을 률적으로 시 경우, 경제적으로 어 원고는 공 소 을 제기하기 어 고 적으로 공 소 이 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 분 수긍할 면이 있 니다.

○ 민사소 법 제99 , 제100 는 적인 소 제기를 고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 소 소자 주의를 기본 원 으로 하 , 적으로 소한 당사자에게 소 을 할 수 있 정하고 있 니다. 서 소 의 성 과 당사자의 지위 등 제 사정을 고 하 공 소 의 경우 소 을 소자에게 시 한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게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현행 '변호사 보수의 소 에 관한 '은 소 에 는 변호사보수 을 재 으로 감 하는 제 를 고 있 니다. 공 소 의 소 정에 있어서 이 정을 력적으로 적 한다면 공 소 소자의 을 화하는 안이 수 있을 것으로 보 니다.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헌법 제53 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 의 재의요 권과 재의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화 요건 하의 재의결에 른 법률안 정에 관하 정하고 있 니다.

○ 이는 국 헌법에서 유 한 제 로서 의 권력분립 론에 기 을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대통 이 법률안을 보 하 결국 기 게 하는 국 헌법의 '보 '와 리, 우리 헌법은 대통 이 국회에 재의를 요 하고 국회는 화 요건 하에 재의결을 하 법률안을 정시 수 있 하는 ' '를 정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 대통 의 재의요 권은 권분립의 정 하에 행정와 법 가 호 견제와 균형을 이 게 하기 위한 우리 헌법 의 장치로 고 있 니다.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고위 판사· 사의 관 우에 대한 우 가 사법 의 를 하시 는 원인이 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실제 재판 내에서 관 우 등의 공정한 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니다 , 관 우를 기대하고 고 의 수임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관 우를 기대할 한 요소를 단하는 등 사법 에서 보다 적 적으로 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 우 등을 지하기 위하 공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를 고, 형사소 법 제 사유의 하 로 정하고 있으며,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이 지대로 실 성 있게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리고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 력을 하야 할 것 니다.

○ 아가,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본적인 해결책이 것으로 보 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정 이 에 하 변호사로서 을 하는 현 과 관 우의 해의 지 적 등으로 유사한 지의 법률안이 의원 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 적이 있 다시 한 공론의 장에서 적 적인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대 대법원장 임 이 법원장과 사 국장 정한 재판 를 당하는 등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해 각 법원에서 각고의 력을 기 이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보자인 국회의 의를 어 대법관이 다면 고심 사건을 하고 실하게 리하기 위해 최 의 력을 다하겠다는 다 을 하게 니다. 본적으로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관 재판 원을 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 한 역에서 지혜를 아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안을 하 야 할 것 니다.

○ , 재판지 을 종의 통 에 유하 본다면, 해결 안은 ① 통 에 하는 로 장 등 기 시 (= 재판), ② 현 간의 원인 제 (= 심리 을 위한 제 재판지 장애 요소 제), ③ 적정한 통 이 로에 유 수 있 하는 대 수단의 (= 1심 실화 정 등 대 적 분쟁해결 수단), ④ 과 기 을 한 로 이 의 최적화(= 인공지능 기 과 자소 등의 재판) 등의 다 한 면에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 를 당하는 법관을 분 원하고, 법관임 제를 하 우수한 역 과 자 을 가 법관을 보할 필요가

있 니다. 이 우리 사법 법관 1인이 당하는 수가 은 야 과 주 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 정 로 은 이고, 국민 은 요한 법적 분쟁에서 단독판사보다 법관 3인으로 성 합의 에서 분한 론과 고를 사건의 결론을 내 주 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하 재판 수를 리는 한 가 있기 니다.

법 인 과의 보수 , 국적인 보 제 등의 요인으로 능력이 인재를 하는 것이 지 은 현실 에서, 적정한 법 경력 요건의 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의 요인이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하 이를 하는 것 요합니다. 심리 실기한 공 법에 대한 제재 화 등 기 의 소 법 정에 른 소 지 를 화하고 공판 심주의를 적정하게 하는 한 으로, 재판지 의 원인으로 지적 고 있는 감정제 의 , 정보의 균형과 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리 제 의 , 사 분 의 장기화를 통한 필요한 재판 지 등 다각적인 면의 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 가 리에서 분쟁 당사자를 주하는 1심 단 를 실화하 분한 자 를 으로 실 적인 공 과 심리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종국적 결론이 하 , 당사자 의 적 감을 제고하고 관성적으로 소심, 고심 지 이 이 어

지지 하는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최대한 하고, 자소 과 재판 등 시간과 장소적 한 에 애 지 는 심리 수단을 적 적으로 으로써, 사법 의 성을 최대한 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리 잡한 사건의 요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역에서 AI를 으로써, 법관은 심적인 판단 에 하 재판 의와 를 향 시 수 있을 것이 고 생각합니다. 한 이 하는 인공지능을 사법 역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 할 수 있 , 법원 한 리적 기준과 지 을 하 이를 적으로 제안·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다른 국과 할 우리 의 경우 사건 수 대 법관 재판보 인력의 수가 분하지 니다. 게다가 사회변화에 사건의 이 가 아 현재 법관의 이 가 고 있 니다. 하고 공정한 재판을 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원이 필요합니다.

○ 통 에 의하면, 우리 법관의 간 사건 리건수는 국 법관의 2 내지 5 에 이 니다. 재판지 으로 고 있으 현재 인적인 을 감당하고 있으며, 사법서 수요자인 국민의 장에서는 국 국민의 1/2 내지 1/5의 법관인력 을 할 수 있는 니다. 이 한 간 을 우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적어 현재 법관정원의 2 에 이 는 법관 원이 필요합니다.

○ 지 21대 국회에서 법관의 정원을 5 간 370 적으로 원하는 내 의 정 안이 제 으 , 안 게 임기 로 기 니다. 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하고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의 실 적 보장을 위하 최소 370 이 의 법관이 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5. 舊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舊 '사법정책자 회의'는 과 법원 법 제25 에 를 '사법정책자 위원회'에 대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 변 리겠 니다.

○ 사법정책자 위원회는 법원 법 제25 에 를 대법원장 자 기 니다.

○ 1기 사법정책자 위원회는 이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 7. 2010. 6. 지 고 법 대 원 이 로 법관임 안, 고법판사와 지법판사 이원화 안, 고심 제 판 안 등을 의해 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 2기 위원회는 2013. 7. 2014. 6. 지 법원 치, 법 원 화 정 을 위한 안, 국민의 사법 성 제고 등에 대해 자 것으로 고 있 니다.

○ 사법정책자 위원회는 사 어 분야의 적 식견을 하고 법원 내 의 의견을 수 하 가정법원 회생법원의 치, 고등 장 제 지 법관이원화, 법 원화 제 정 등을 위해 실 적인 건의안을 하 고 실제로 은 건의안이 정책으로 어 행 것으로 고 있 니다.

16.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사법 는 재판지 심화, 대한민국 사법시 지수 하 , 사법 의 한 감소 등 대내 적 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 의 본 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 이 요 고 있으 , 기 사법행정자 회의는 법적 이 어 이 하기 어 사법 의 현안 해결을 위해 법원 법 제25 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정책자 위원회가 2024. 6.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최 에 대 대법원장 이 사법정책자 위원회에 1 로 의한 안건이 4대 역(재판 , 법관인사제 , 법원공 원 관 제 , 사법정보화) 12 과제로 고 있 니다. 론인, 수, 법 인을 하 인사로 성 사법정책자 위원회가 실 적인 자 의견을 제시하면 사법 에서 제 의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화 등 실 적인 안 현에 을 는 등 사법 에 당면한 위 현안의 해결에 게 이 것이 는 기대를 고 있 니다.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법관 법은 '법관'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청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 법 제5 제1 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 법관은 판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 니다. 이 한 법관 법의 해 대법관 법관 법의 대 에 다고 해 하는 것이 당하다고 생각 니다.

○ 한 대법관이 공 자로서 위유지를 위 할 경우에는 법관 리 위 행위로 인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 에는 사법 와 결 는 하고 정한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사건에 관하 적인 을 하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론을 리면, 대법원 2018. 4. 12. 고 2017 74702 판결 2018. 10. 25. 고 2018 7709 판결에서 성 ·성 력 관 사건의 해자 의 성을 판단하는 기준 하 로 '성인지 감수성' 을 제시하 고, 한 최 대법원 2024. 1. 4. 고 2023 13081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이 성 해자 의 력을 관적 정 이 다른 경 등에 에 제한 이 인정하 야 한다 , 에 해당 공소사실을 건 유 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 는 아니 는 점을 하 니다. 이는 기 성인지 감수성 관 판 에 치 는 지는 아니며 정의 원 에 른 시 고 생각 니다.

○ 법관으로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은 물론 정의 원 에 각하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하 임 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사법 에 대한 국민의 는 사법 의 재 이자 립 니다. 에 사법 는 국민 의 기대에 치지 하고 있어 가 아 고 안 게 생각합니다. 과 사법의 독립에 대하 의 을 으 사건, 국민의 이에 지 는 판결, 재판지 제 등이 적인 원인이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법 의 성원은 이 한 지적에 대하 하기보다 로를 아보고 고 헌 적인 자세로 재판이 는 본 의 에 최 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쟁점을 기에 하고 적 한 소 지 를 통해 실한 심리를 에는 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지 이 판결을 고 으로써 재판지 등 필요한 해를 사는 이 어야 할 것 니다.

○ 한 사법행정 역에서는, 은 재판으로 를 회 할 수 있 재판제 에 를 가하고, 국민 가 고 적으로 재판에 할 수 있는 안을 해야 할 것 니다. 최 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제의식을 안고 제3기 사법정책자 위원회를 하 는 사법 의 를 제고할 수 실적인 자 의견이 제시 어 제 으로 이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니다.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국 변호 제 는 헌법 기본권 하 인 변호인의 력을 을 권리를 실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한 제 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제로서 과정이 공정하 야 하고, 이를 위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의 사법 권이 화 필요가 있니다. 서 국 변호 제 와 소 제 가 지에 게 실하게 는 것이 합니다.

○ 법원이 국 변호인의 기본 보수를 2022 에는 사건당 45 원, 2023 에는 50 원으로, 2024 에는 55 원으로 준 하고, 소 보를 위해서 지 적으로 력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고인의 실한 어권 보장과 이를 위한 우수 국 변호인 보를 위한 이 하다는 가가 있는 것이 사실 니다. 국 변호사 보수 은 수 인 지 하 는 , 국 변호인 보수 현실화할 수 있 등 분한 의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어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 재심을 허 할 것인가는 법자가 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적정성, 법원의 등을 고 하 결정하 야 할 법정책의 제 고 하겠 니다(헌법재판소 2023. 6. 29. 고 2020헌 519 결정 등).

○ 우리 민사소 법 제451 와 형사소 법 제420 는 판결이 정 에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 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 할 수 있 정하고 있 니다. 이는 정 종국판결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정판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시에 이 의 사유로는 정판결을 다 수 정 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제를 보장하는 한 , 정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재심을 지하 분쟁해결의 실 성을 보 과 아 사법자원의 적인 을 하기 위한 것 니다.

○ 로 사실관 등장이 재심사유에 경우 재심이 허 지 지 을 경우 정판결의 력을 정하기는 어 것으로 보 니다.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법정주의 적법 의 원 에 의 성립과 은 시 성 의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를 가능합니다.

○ 정판결 이 게 견 사실이 있다 하 , 형사소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재심 에 의하 종 판결을 소하고 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니다. 법률이 정한 에 의하지 고 정의 관 을 어 자의적으로 재심판결을 한다면 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제 에 대한 가 사회적으로 실을 을 수 있으 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은 사건에서 1, 2심의 결론 이유에 이가 경우 국민의 장에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재판이 는 판을 할 수 있고, 이 분에 대해서는 이해 는 면이 있 니다.

○ 법관은 법과 심에 재판하 야 합니다.
가 분하지 고 사실 인정이 법률의 적 이 다로 어 사건에서 가치 판단이 법 해 의 이로 인해 재판의 결론에 이가 생할 수 있 니다. 경우 종국적으로 심 제에 의해 대법원에서 하 심의 를 시정하고 법 해 을 통 하는 역할을 하고, 한 대법원에서 법리가 고 면 이 에는 하 심에서 이를 하 통 적인 법해 을 하게 니다.

○ 다 가 는 사건에서 법원 내 에서 관 법리와 실 등에 관하 회 등을 통해 하게 의견을 한다면 이 한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 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재판 가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사 에 대해 리 대법원이 법원행정 에서 기준이 지 등을 하는 것은 재판권 해의 소지가 있으 로 하 야 합니다.

○ 다 가 는 사건에서 법원 내 에서 관 법리와 실 등에 관하 회 등을 통해 하게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하고, 자 등을 법원 내 에서 공유하는 것은 분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원 , 심 판결의 관성을 자 게 하는 것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25. 배우자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보자의 우자가 대 이사 으로 재 인 ㈜ 행 권은 2018 권의 행 유통을 당하는 권수 사 자로 정 어 수 사 자 를 하고 있 니다.

○ 권수 사 자 찰 과정에서 한 경쟁 에서 2023. 6.경 2023. 12.경 지 4 에 보자의 우자를 권법위 등 의로 고소·고 을 하 으 , 4건 3건은 이 의 는 각하 의견으로 치 결정이 있 고, 2024. 5. 경찰이 서 지 찰청으로 치한 사건 사의 2024. 6. 10.자 보 수 사요 에 다시 경찰로 사건이 아간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수사가 행 인 사건에 대해 적인 장 을 는 것이 심 면이 있 니다. 위 권법위 사건은 행 권이 주 약한 인 권 의 인 에 대해 행 권이 권 위를 정하 회수하 사고를 수 한 것의 법적 가를 고 다 이 있는 사건 니다. 권 행을 관리하는 당 서(기 재정 권위원회 행관리과) 수사 과정에서 ㈜ 행 권의 치에 권법 위 소지가 다는 장을 힌 것으로 고 있 니다.

26. 자녀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보자의 장 는 2022. 8. 23. 서 소재 다세대 주 을 7 7,000 원에 수하 니다. 약 3 800 원은 보자의 우자로 고 세를 하 니다. 4 6,200 원 2 6,000 원은 임대 보 으로 당하 으며, 지 2 200 원은 보자의 우자로 하 하 니다.

○ 보자의 장 는 2017 보자의 우자의 으로 립 ㈜ 의 주식 800주를 1,200 원에 수하 보유하고 있 는 , 2023. 5. 400주를 보자의 우자에게 하는 식으로 위 을 하 니다.

- 고로, ㈜ 주식의 가 은 인 2023. 4. 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 (= 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정 니다. 위 회사는 2017 립 5 간 지 적으로 하 고, 기 가치 성장가능성을 게 가 아 2020. 12. 보 기 , 기 은행 등 자자 로 에 주 행 형 로 자를 유치하 는 , 2022. 5.에는 주당 약 80 원에 자 을 유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보자의 장 의 경우 아 지의 으로 생회사의 주식

기회를 게 고 회사 가치가 한 분이 있
니다.

○ 결과적으로 장 가 이와 경력에 해 은 재 을 보유하게
는 , 이를 지켜보는 국민 의 장에서 생경 과 의 심을
을 수 있을 것 아 이 니다. 보자와 우자는
장 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 세 등 세 을
하 니다. 한 자 에 대한 지원 지 게, 준한 기 와
사 을 으로써 이 한 기회를 지 한 은 어 이
을 기 위해 력하 니다.

27.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과거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던 전력이 있던 곳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회사에 재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 보자의 우자는 ㈜제주 의 이사 는 기 이사(2003. 3. 23. ~ 2013. 3. 27.), 공 대 이사(2013. 7. 29. ~ 현재)로 재 하 니다.

○ 보자 우자는 주식회사 성 자에 하 고 을 통해 의 장 인 성식을 게 고, 성식이 성 자를 하면서 주식회사 제주 를 할 기인이자 주주로 이 하게 니다. 기에는 변호사 를 하면서 위 회사의 감사 역할을 하다가 2003 경 이사로 임하 고, 이 회사 지면서 하게 고 회사가 경 에 을 에는 변호사 를 겸 하기 하 니다.

○ 하 사건은 ㈜제주 의 인 ㈜이 에 의 대 이사 성식과 원 이 2006 경 인 사의 심 의 80%를 사 하고 단기 을 국의 GSMC 사에 하다는 사실이 유 로 인정 사건으로, 당시 재판에서 해 회사와 합의하고 자 한 점, ㈜이 에 아이가 기 관 이 지 서 사 을 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 행유가 고 것으로 고 있 니다.

○ 보자의 우자가 ㈜이 에 아이 립 기 감사 는 이사로 재 한 것은 사실이 , 보자는 법 인 으로 관리를 당하고 기 는 지니어 인 성식이 당하 , 우자로서는 위와 은 법행위에 관 한 사실이 고 기소 지 은 것으로 고 있 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 에서 제 사정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대법관 보자가 이에 대해 적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은 해하 주시기 니다.

28.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 제 고 있는 사건의 재판 행의 당 사건에 서 제 는 법률 해 에 관하 대법원장 보자가 하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은 기 청, 국민 재판 청, 재판장 고 등으로 인하 재판이 지 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위와 은 고인의 권리행사는 법률에 한 것이 , 재판지 의 수단으로 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 에서 법률에 정 수단(대 형사소 법 제20 제1 에 소 의 지 을 적으로 이 한 기 청의 간이한 기각 등)을 통하 재판의 지 을 지하고자 최대한 력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현행법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어 경우 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기간 장 는 , 기 청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 제한 등의 을 재판 지 지책으로서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경우 고인의 적 권리 어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으 로, 제한의 필요성과 로 인해 생

수 있는 등에 관하 종합적이고 분한 와 위한 의견수 이 행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당면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에게는 최종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하고 열린 자세,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지 정의는 정의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하 심 재판이 지 원인 에는 관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를 대기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고심 수 하 한 재판을 하기 위하 력하고, 하 심 재판에 향을 사건에 관하 는 우리 사회가 아가야 할 향과 가치 기준을 적시에 제시하는 지혜로 재판을 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법원 내에 지 법 이론에 관한 기 를 세우는 에 력이 하 니다. 최 어 자정보 수 수 의 위와 법의 제한, 위법수 와 능력 판단에 관해 쟁이 화 고 있 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자 와 관 하 , 국가의 정당한 형 권 행사 실 적 실 견과 의 자의 이 시 보호 등 기본권 보호 형사 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고, 보다 적이고 관 며 가능한 법리를 세우기 위하 력하겠 니다.

○ 보자는 현재 대법원 하 인공지능 회 회장으로서, 재판 에의 한 인공지능 안 인공지능에 관한 등 의를 성화하 , 현재 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재판 에 하고, 법원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 대 하는 기 하고 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법관으로 재 하면서 에게 주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주장에 기 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법과 원 에 른 판단을 할 수 있 최 의 력을 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서 고등법원 2010. 1. 14. 고 2009 4116 판결: 로 인형을 인기 의 주인공의 로 며 생 , 판 한 행위가 권 해, 권 해, 정경쟁행위에 해당 지 , 의 인기에 하 당한 이 을 고자 를 하게 하는 형 의 제 을 제 · 판 하 다면, 이는 이 관 등 사회 서에 하 인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 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법행위를 성한다고 판결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 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 사법 에 대한 국민의 는 사법 의 재 이자 립 니다. 에 사법 는 국민 의 기대에 치지 하고 있어 가 아 고 안 게 생각합니다.

○ 과 사법의 독립에 대하 의 을 으 사건, 국민의 이에 지 는 판결, 재판지 제 등이 적인 원인이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법 의 성원은 사법 하 의 지적에 대하 하기보다 로를 아보고 고 헌 적인 자세로 재판이 는 본 의 에 최 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쟁점을 기에 하고 적 한 소 지 를 통해 실한 심리를 에는 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지 이 판결을 고 으로써 재판지 등 필요한 해를 사는 이 어야 할 것 니다.

○ 한 사법행정 역에서는, 은 재판으로 를 회 할 수 있 재판제 에 를 가하고, 국민 가 고 적으로 재판에 할 수 있는 안을 해야 할 것 니다.

○ 사법 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재판지 해소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고통 는 국민 이 하 리 으로 할 수 있 해야 합니다. 아 사법 를 해하는 제로 자주 지적

는 관 우의 을 하고, 위법관에 대한 한 치를 통해 법원의 건 한 화를 보하기 위한 력 행 어야 할 것 니다.

○ 사법 의 력으로 국민의 사법 를 회 하기는 어 니다. 사법 가 공정하고 실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력하는 국민 로 정당한 가를 을 수 있 ,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판결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관 우는 법관 등 공 에 사 이 한 변호사 등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 는 결과 등에서 당한 혜 이 혜를 는 것을 의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실와 관 공정해야 하고, 사법 의 독립은 국민의 가 이 어야 하 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 심을 수 있는 이른 관 우가 재하지 는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이 할 수 있을 지, 단한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가 실제 관 우를 경 한 적은 고, 재판 내에서 법관이 는 이유로 공정한 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니다. 변호사 의 현실에서는 법관 등 재 경력을 가 사 이 이를 보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른 관 우가 있는 것 시하 , 적어 한 기대를 가 사 의 인식에 하 고 의 수임 를 지 는 사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적지 은 국민이 관 우 관행이 재한다고 고 있고 실제 분쟁이 생하면 관 우를 기대하고 가능한 당 법관과 분관 가 있 한 경 이 있는 변호사를 임하 고 력하며 고 의 수임 를 지 하고 수임하는 사 가 있는 , 사법 를 회 하기 위해 관 우의 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공 자의 이해 지법, 형사소 법,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가 실 성 있게 고 있는지 점 하고, 지 적으로 보아야 할 것 니다. 한 형기준 재판 원 의 립, 국 변호의 대, 공판 심주의의 실 화를 위해서 력을 하 야 할 것 니다.

○ 본적으로, 법관인사제 의 과 법관에 대한 우 을 통하 생법관제를 정 시켜 한 법관이 면 굳이 변호사로 하지 아 는 경을 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의 시니어판사와 은 제 를 으로써 법관이 생 법관으로 사할 수 있는 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한 이유 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정 이에 하 변호사로서 을 하는 현 과 관 우의 해의 지 적 등으로 유사한 지의 법률안이 의원 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 적이 있 다시 한 공론의 장에서 적 적인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니다.

○ 관 우의 제는 법 의 제가 아니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있는 제 니다. 이 제를 고민 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로 실 하 야 할 과제가 있기 하지 법원 에서 심 있는 의와 제 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생각합니다.

6.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대법관으로 임 경우 임 를 의하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법관 보자인 에서 임 의 적 을 리는 것이 른 면이 있으 , 인적 이 을 위한 변호사 은 하지 을 정 니다. 의 수로 임하 은 법 인 을 하 어 지에 있는 청소 을 보고 이 의 자립을 는 등의 공 적 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호 화의 임종과정에 있는 자의 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시행 인 것으로 고 있 니다. 위 법은 회생의 가능성이 고 치 에 하고 회 지 아니하며 로 이 화 어 사 에 임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의 단 결정 이행에 관한 사 을 정하는 내 니다.

○ 자에게 약물 등을 실시하 생 을 단 시 는 적 적 안 사는 법 허 지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다 소 적 안 사, 생 유지에 필요한 약물 등을 단 으로써 자를 에 이 게 하는 치의 경우에는, 회 의 가능성이 이 는 자의 심한 고통을 경감하는 인 적 수단으로서 적으로 인정할 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사 허 는 단 법적인 면은 물론이고 과 적, 종 적, 적 제가 다 하게 있으 로, 은 사회적 의 경 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관하 · 론이 대립하고 있고, 주장 대로 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는 인간의 생 자 를 원 하는 것으로, 단 사형이 행 경우에는 판이 있 다고 해 이 수가 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 행한 역사적 경 있 니다.

○ 면,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 가 있 을 제로 한 정(제110)이 있는 점으로 보아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하고 있다고 지가 있고, 인이 다수의 인 인 등 인 적 가 재하고, 한 로 안 하다고 수 는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 보형으로서의 성을 게 시 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 지 는 해 의 사 합리성, 당성 으로 결정할 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 의 법 감정과 의견의 분한 수 을 결정하 야 할 것 니다. 국회에서 이 점 을 종합적으로 고 하 결정하 주실 것이 고 생각합니다.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가 는종 형제 에대하 는기본적으로국회에서국민의 법감정, 사형제 지를 제로 의할것인지 , 세 국가 의가 는종 형제 에대한기준 실 등 요소 을 한다 한 사· 와사회각 각 의 분한의견수 를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고 생각합니다.

○ 각에서는 법원이 사형 고에 소 적이고 사형이 행 지 고 있는 현실에서 가 는종 형을 하 기 역이 가지고 있는 한 를 하 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 는종 형자 에대하 국에서 위헌성 이적지 은점에 어 사형제를 지 이가 는종 형 을 하는것에대하 는 등에대한보다 한 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 소 가 가하고 화 고 있다는 보 가 고 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우 가 다는 점을 고 있 니다. 이와 관 하 법소 하향과 은 소 법 정, 아가 소 법 지와 은 주장 제기 고 있는 것으로 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한 가 필요합니다. 소 은 정적 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성인에 해 사회성이 고정 지 아 을 통한 가능성이 로, 보적 관점에 각하 형사 에 의 하는 것이 아니 , 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 한 보호 분을 하 과 치 를 행 으로써 은 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소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 의 경제적 등 소 생의 본적 원인에 관한 다각적 와 , 재 지를 위한 인 등 적 적인 사회의 지원과 대 이 필요합니다.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의 안보 의 수성 역사적 경을 고 할 , 국가보안법 지 에 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는 국회에서 이 한 국민 의 다 한 의견을 분 하 법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지 지 은 이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 합헌결정을 은 현행 법률을 하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 우리 는 과 국가보안법이 아 과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제 적이 있 ,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 하는 경우 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지 치게 해 지 형법정주의 의 원 에 적 제한 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안 게 한 주민이 제 이 고 과 은 인 적 행위에서 어 지 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한 주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위할 수 있 우리 국제사회와 력해야 합니다.

○ 유 인권이사회에서는 2003 한인권 결의를 통해 한과 유 등 국제사회에 한인권 을 위한 력을 하고 있고, 유 회에서 2005 회 결의를 통해 한 내의 인권 해·식 위기 등 인 적 에 대해 우 하고 한의 력을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국내에서 2016. 9. 한주민의 인권 보호 을 위한 한인권법이 시행 고, 2024. 4.에는 정을 통해 한주민에 대한 인 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의 우 지원 대 으로 장애인을 시적으로 정하 니다.

○ 하 리 한주민이 인권 과 유린에서 어 기를 하고, 우리 가 한주민의 인권 제에 지 적으로 관심을 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지 21대 국회에서 지법이 의 으 , 쟁점에 대해 한 쟁이 있 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 지는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지법이 성소수자에게 혜를 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역 을 할 수 있다는 우 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인의 성적지향은 어 한 정책과 법률로 ‘ 장’하 ‘ 제’할 수 있는 제가 아니 고 생각합니다. 지법의 재 와 관 이 현행 헌법의 해 으로 , 성소수자 역시 헌법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를 권리가 있고 성적지향이 의 이유가 수 이 합니다.

○ 헌법 제11 의 등의 원 을 실 적으로 현하기 위한 법 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 다 한 의견을 수 하고 분한 의를 사회적으로 분한 공감대가 형성 을 , 로소 법률이 실 적으로 력을 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법 제정에 관하 사회적으로 은 이 있는 , 지법의 이 다른 을 하지 고 법 적을 성하 면, 다 한 의견을 수 하고 분한 의를 사회적으로 분한 공감대가 형성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 니다.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 해 다 고사건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대법원이 법 해 통 기능은 물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에 당한 지장이 고 있는 임을 고 있 니다. 이 한 제 을 하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위 을 제고하기 위하 서는 어 한 식으로 고제 에 대한 이 이 어 야 할 것 니다.

○ 기 고제 을 위해 안이 의 고 고법원 하 것으로 고 있 니다. 고법원 안은, 고심의 법 해 통 기능과 권리 제 기능을 분리 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 하고, 국민은 실한 권리 제의 기회를 게 다는 장점은 있 니다. 한 , 대법원이 당하는 사건과 고법원이 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 기준이 하지 고 대법원의 판단을 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른 안으로는, 대법관 1인이 4,000건 이 을 리해야 하는

현실과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심리 행제 를 유지하는 것이 가 한 면이 있는 , 대법원이 심리 행사유 심사기간(4)을 분 하 심리 행사유 유 를 판단할 수 있 고이유서 원심법원 제 제 를 하 우 고심의 을 경감하는 안 니다.

○ 장기적으로는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고이유가 있는 사건, 판결이 고 을 사회적으로 향력이 사건을 하 고심을 행하고, 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 는 소심 판결로 종결 으로써, 한정 사법 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 하고 고심을 적과 지에 게 하며 다수의 분쟁을 기에 종 시 수 있을 것 니다.

○ 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고등법원 장판사 제 에 대한 의견

- 종 고등법원 장판사 제 가 사실 ‘ ’ 으로 어 법관의 관 화를 기고 에서 제 법관 이 대 사 하는 이 있으며 법 원화, 생법관제의 정 에 합하지 는다는 지적이 있 니다. 이 한 제의식을 으로 법원 법 제27 제2 을 제하 고등법원 장판사 제 를 지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고등법원 장판사 제 의 지로 인하 종 보다 법관 의 가 약화 다는 의견이 있는 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 가 실 화 으로써 대등한 경력을 법관 로 성 합의 에 의한 실한 심리가 보장 는 긍정적 면이 있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사정을 고 하 법적 결단에 고등법원 장판사 제 가 지 현 시점에서, 분한 의견 수 이 이 이를 다시 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 이 가 재판 역 을 최대한 할 수 있 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적정한 법을 하는 한 , 고등법원 장판사 제 지와 법관인사 이원화 제 의 경과와 성과를 면 분 하 필요한 분을 보 하고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장 보 제에 대한 의견

- 법원장 보 제는 민주적·수 적 사법행정 현을 하기 위하 2019 에 어 의 시 실시 과정을 2023 에는 국적으로 대 실시 것으로 고 있니다.

- 법원장 보 제에 관하 는 사법행정에 민주적이고 수적인 요소가 다는 긍정적인 가가 있는 면, 이른 인기 로 변 고 법원장이 책임감을 고 사법행정권한을 적 하게 행사하는 본 의 역할을 실 수행할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한다는 판이 있 니다. 한, 수의 보자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인 하고 과정이 하지 으 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화다는 판 있 니다.

- 이와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면, 종 과 은 형 의 법원장 보 제는 이 유지하기 어 지 생각니다. 제의 성과와 한 를 면 ·분 하고 법원성원 의 분한 의견 수 등을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성원의 의견을 하면서 사법행정에 적합한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 인사 원 과 를 합리적으로 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를 어, 고등법원장판사, 고법판사, 지 법원 장판사 재판능력과 인

이 한 분 을 하고 법원 성원 의 의견을 하 법원장 보 을 성한 다 , 법원장인 위원회(가) 등 의 기 를 통하 재판 능력과 성, 리 을 고 판 단하 법원장을 인 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 으로써, 법 관의 의 을 고 하고 법원 성원 의 을 하면 서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하는 안 고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으로 고등법원 장판사 제 , 법원장 보 제를 한 법 관인사제 에 관하 법원 내· 의 의견을 분 고하 한 향을 수립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론을 통해 사법행정권 기능이 원 하게 하지 는 것 다는 지적이 있 다는 점은 고 있으 , 법원에서 재판을 당하고 법관 의 를 지켜본 로서는, 법원장 의 사법행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지 다고는 생각하지 니다.

○ 국 각 법원에서 관 게 적 한 사법행정권 행사가 이 어지 사법 성원에게 적 할 수 있는 내 을 제정하는 것은 하 의 이 수 있 니다. 현재 우수한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을 보하는 것이 최우 과제이며, 과 한 의 제정은 의 재판을 당하는 재판장의 권한 행사를 해할 소지가 있으 로, 보다 적 한 다른 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회의는 1949 법원 법 제정 당시 를 고, 국법원장회의와 국법관대 회의의 경우 2018 에 이에 관한 대법원 을 하면서 를 으며, 각 회의의 성, 기능, 역할, 적, 성 등이 다 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 판사 임 임 의, 대법원 의 제정과 정에 관한 사 등을 의 의결한다는 점에서, 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 장과 법원장 이 사법행정 사 에 관한 안건을 의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국법관대 회의는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관하 법관 이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 하는 고유의 역할을 당하고 있으 로, 각 회의가 화를 이 면서 호 보 할 수 있 의 를 리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경 과 이 한 법 경력 15 이 이고, 지위, 기수, 경력 등이 대등한 장판사 3인으로 성 는 지 법원 경력대등재판 는 2019 시 실시 어 현재 지 준 위가 대 고 있 니다. 안 인 경 과 재판 내 의 수 적 의사결정 를 으로 실 적인 합의 재판을 현하 재판의 실화에 기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경력대등재판 는 실 적인 3자 합의의 과정을 통해 수정, 른 결론 을 기대할 수 있는 제 이고, 소 당사자 장에서는 분한 경 을 법관 3인으로 성 재판 에서 재판을 는 점에서 적 감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경력대등재판 가 실 적인 합의에 른 의사결정 과정을 치기보다 주심인 장판사 인의 의견에 재판이 이 어 단독재판 우 가 있다는 점 고 있 니다.

○ 기본적으로는, 경 이 한 법관이 법정에서의 재판 행과 법리적인 판단에 보다 역 을 할 수 있 재판 원 등 보인력을 분 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 으로써 은 세대의 가치관이 시각 판결에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 보다 실 이 어 수 있기 니다.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면 한 심리를 판단한 것으로, 법관으로서 하는 것이 당하다는 을 립니다.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고 2017다46274 판결)은 법 행위를 한 합원의 해 책임이 인정 는 것을 제로, 법원이 해 책임 제한 정 는 합원의 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경위 정 , 해 생에 대한 기 정 , 현실적인 임 수준과 해 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 판단해야 한다는 지의 판결 니다.

○ 책임 제한은 다 한 역에서 안 아 판 실 니다. 한, 정 대 관 에 있는 공 법행위자 의 책임 제한 을 리 정하는 법리 역시 주주대 소 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해 책임을 정하는 경우, 자 을 판 한 권회사와 자 회사의 책임을 정하는 경우에 적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사안에서 최 로 법리가 아 니다.

○ 보자 역시 은행의 위사 자자 이 은행의 임원 을 대로 분식회 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125 제1 의 해 청 사건에서 분식회 에 관 한 정 고의성의 유 , 주의의 위 의 정 등에 책임제한의 정 에 등(90%에서 60% 지)을 어 인정한 판결을 고한 있고(서 고등법원

2015. 2. 5. 고 2014 2012933 판결), 고심 이 분에 관한 고는 기각하 니다(대법원 2015다210194 판결).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행정 역은 재판권 행사를 제 한 역, 법원의 , 법관 인사 등 각 법원과 법관 에게 민감한 사 지 하고 있 니다. 법원행정 가 아 다른 의 사법행정기 에서 이를 당한다 하 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수 있 니다.

○ , 사법행정으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는 사법행정을 당하는 주 가 인지의 제가 아니 , 사법행정 역과 재판사 의 한 분리, 법관의 관 화 지, 사법행정사 의 성·민주성 보를 실현할 수 있는 법론의 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사법행정기 를 는 것이 사법 의 민주성과 성을 제고하는 것에 치지 고 사법 로의 향력 행사와 의 통로로 어 사법 의 독립을 해할 우 있다는 점에서,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원 공 자 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7호를 하 , 법관이 SNS를 사 하 의사소통과 다 한 인적관 를 형성할 수 있 을 제로 과정에서의 유의사 을 제시하 니다.

○ 법관은 SNS 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하 의견을 하는 경우에 자기 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으로 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의 심에 이게 향 공정한 재판에 향을 우 를 야기할 수 있는 관을 지 하게 해야 합니다.

○ 2023. 12. 열린 국법관대 회의에서 '법관은 SNS를 이 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으 한 관을 법관으로서의 위를 하지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로 의결하 고, 법관의 합리적인 SNS 이 안에 관하 분 의를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보자는 대법관 공 자 리위원회가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유의사 의 내 에 적으로 공감하고, 으로 법관 의 의견과 국민의 이를 종합적으로 고 하 합리적인 SNS 이 안을 지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 대법원장은 수 적, 민주적 사법행정의 립을 통해 법원의 성과 법관의 독립성을 화하는 한 , 재판 대, 판결서 공 위 대, 사회적 약자 해자를 위한 사법지원 화, 법관 제 , 법원 대 치 등 제 을 하 고 정 분 성과를 다고 생각합니다.

○ 한 으로, 와 보다 실한 심리를 통한 재판이 고 이와 어 로 19 사 , 법관 임 인사 제 의 변화, 사건 이 의 심화 등 요건이 결합한 결과, 적인 사건 리가 지 는 이 점은 아 점이 고 생각합니다.

○ 사법 는 재판과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하고 를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하면서 한 재판이 는 리 를 잡기 위해, 역대 대법원장 의 사법정책을 한 점을 하고 점은 보 하기 위한 다각 의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론에 보 에 면, 수 대법원장이 분 한 기 에 의 하 변한 것에 대해 하다는 을 한 것으로 고 있으 , 보자는 이 이 의 적인 사실관 를 고 있지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하 의견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회는 재판 에 간 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하기 위한 지의 수한 임으로 다수의 법관 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이 있는 를 위해 회에 가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정 임에 가 하 다는 사정 으로 법원 주요 요 에 자리 다는 의 을 제기하는 것은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보자가 가하기에 적 한지 겠으 , 제가 기간 법관으로 재 하면서 경 하기로는, 법원의 인사시 이 정 회에 소 어 하는 인 으로 우 향을 는 등 화 향 게 다고 생각하지 니다. 법원 성원 어 건 에서 주어 임 를 해내기 위해 법과 원을 기준 아 최 을 다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공정하고 정의로 재판이 는 사법 의 재 적을 성하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 아니 재판 , 관 면에서 정치적 향성이 있다는 해가 생하지 , 법원의 인사 을 하 사법행정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 우리 사회의 다 한 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대법관 성의 다 성이 필요합니다.

○ 제가 대법관 보자로 제청 것 성, 이공 으로서의 경 , 지식재 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경력이 대법원 판결에 다 한 가치관을 할 수 있으리 는 기대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임 에 의하 국민이 대법관 보자를 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 인사 법 인 하 대법관 보 위원회를 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대법원 성의 다 화에 관한 국민의 요 와 기대가 실적으로 다 한 경과 경 을 가 인사 이 대법관으로 임 수 있 대법관 임 의 성과 공정성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는, 법 대 원 제 와 법 원화 제 가 정 어 감에 법 인 아니 법관 성 자 다 해지고 있어 대법원의 다 성은 보다 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재판 지 은 최 쟁점이 잡하고 장기간 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아지고 있는 면에 법관 수가 분하지 아 다른 에 하 법관 1인당 리하는 사건 수가 현 고, 법 원화로 법관이 고 화 는 에 하고 재판 원과 은 재판 보 인력의 수 분하지 다는 에 본적인 원인이 있 니다. 로 19 사 로 사회적 리 기를 에 사 이 이는 재판의 행이 지 수 에 고 향이 현재 지 치고 있 니다. 에 사의 어 , 가의 견해가 필요한 사건의 회 지 등 재판 지 의 원인 니다.

○ 최 법원장과 사 국장 정한 재판 를 당하는 등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해 각 법원에서 각고의 력을 기이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제를 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관 재판 원을 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니다.

○ 현재 실시 인 가정, 건 , 의 법관제 를 지식재 분야에 대 실시 으로써, 사건지 이 제 는 지식재 소 제1심의 사건적 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니다. 에 법원 제 를 대 실시 으로써 성을 요하는 사건을 하고 적으로 리하는 과를 수 있을 것 니다.

○ 한 , 현재 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을 재판 에

할 필요가 있 니다. 현재 대형 어 을 이 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게 시 , 이 한 인공지능기 을 재판시 에 하고, 사실관 의 요와 의 주장 다 는 분을 쟁점으로 정리하 법관에게 기 보고서를 제시한다면, 기 에 소요 는 시간을 기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니다. 아 쟁점이 유사한 기 판결 을 아 제시해 준다면, 법관은 법정에서의 실한 심리와 고 의 판단에 할 수 있을 것 니다.

○ 이와 어 법원 내 은 사 분 정기인사 의 사건 리 를 감소시 는 원인 하 인 , 사 분 을 적으로 장기화하면 이 한 제가 화 수 있을 것 니다.

○ 에 2025 기에 실시 것으로 는 형사 자소 과 재판 제 의 성화 역시 한 기 지정을 가능하게 하 재판의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고심 사건의 하고 실한 리를 위해 최 의 력을 다할 것 니다.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은 국민에게 사하는 사 감을 가지고 재판과 사건 리에 최 을 다해야 할 것 니다. 현재 제 는 재판지 의 원인이 단 법관 의 에 있다고 보기 어 고, 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 사건 이 의 가 등 원인이 합적으로 관 는 것으로 정 는 , 재판지 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에게 야 와 이 정 적으로 은 를 요 하는 것은 본적인 해결책이 수 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종 민사합의 소가가 2 원 과 와 리 2022 민사합의 소가가 5 원 과로 향 어 사건의 이 가 현 하고 기 면수 가하 기 에, 1주에 3건 고하는 것이 적은 이 고 수는 기 합니다.

○ 본적으로 재판의 실성과 성을 시에 제고하 면, 법관의 원이 필수적이 생각합니다. 한 우수한 인재를 보할 수 있는 법관 임 제 를 하고, 지 적으로 기를 하는 한 인 역 화를 독 할 수 있는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장기 제가 가하는 본적인 원인은 사건의 잡성과 성이 은 사건의 가 세와 법관 재판보 인력 에 있 니다. 이 에 로 19 사 로 인하 생한 적인 재판지 이 지 적으로 향을 치고 있는 점이 당사자의 소 지 , 감정 를 한 사의 지 등과 이 재판 의 한 해결 의지 으로는 해결하기 어 적 요인 재합니다.

○ 법관의 과 한 사건 은 사건의 장기화 에 이 있는 심리를 제한하게 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한 재판을 을 권리 보장이 소 해 수 있는 , 이를 해결하기 위하 는 법관 재판 원과 은 재판보 인력의 원이 행 어야 할 것 니다.

○ 인공지능기 을 재판시 에 하고, 사실관 의 요와 의 주장 다 는 분을 쟁점으로 정리하 법관에게 기 보고서를 제시한다면, 기 에 소요 는 시간을 기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니다. 아 쟁점이 유사한 기 판결 을 아 제시해 준다면, 법관은 법정에서의 실한 심리와 고 의 판단에 할 수 있을 것 니다.

○ 에 법관과 법원 제 대 실시 사 분 의 장기화, 판결서 적정화 안 시행, 심리위원제 대, 재판의 , 감정 관리 제 과 은 실하면서 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 재판의 성과 성을

제고하는 향으로 제 가 행 어야 할 것으로 사 니다.

30.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제청 당 대법원장 으로 화로 니다.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허 등 약 13,000 건이 넘는 사건을 리 하 니다. 사건이 지 으 , 기 에 는 사건은 다 과 니다.

○ 보자가 가장 판결 내리기 어 사건으로 사건 판결이 있 니다. 2008 경 세 적으로는 국 위기를 게 고, 국내에서는 이른 ‘ (Knock-In Knock-Out)사 ’로 어지는 장 생 로 인한 소기 의 해가 사회 제가 고 약 919 의 기 이 약 3 에 하는 해를 은 에서, 대법원은 2013. 9. 26. 고 2013다26746 판결 등에서 원 적으로 자 는 공정 행위가 아니고 은행은 ‘ 판 ’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다는 판시를 하 고, 보자가 2012 ~ 2014 서 고등법원 사 에 시 사건의 해 기 의 소심(2011 5358, 2011 6481, 2011 18682, 2011 21961, 2011 23066 등)을 적으로 당하면서 위 기 의 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 으로 대하고 잡한 사건 기 을 과정과 사안에 서는 제가 어 소 의 아픔을 지켜 수 에 이 가장 어 사건으로 기 고 있 니다.

○ 2015 서 고등법원에서 주심을 은 인사건의 고인의 행

인에 관한 사건(서 고등법원 2015. 6. 26. 고 2015 259 판결)
은 가 아 기 으로 아 있 니다.

- 이 사건은 자 에 수 있 에서 경찰관 의
력으로 사 를 고 를 보하 1심에서 유
판결을 으 , 고인은 소심에서 행을 인하 고,
보자가 소 소심 재판 가 화 지 현장
을 다 는 등 를 세심하게 분 하 합리적 의심 이
유 를 인정하고 소를 기각하 으며 대법원의 고기각으
로 정 니다. , 기회를 어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 것을 호소하 해자의 유 ( )의 이 아
지지 니다.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제가 사건 에 정치적으로 게 쟁점이 사건은 것으로 기 합니다.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경 수사권 정에 관한 형사소 법, 찰청법 정안은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우 에 법 니다. 법 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결권을 해하 다고 판단하 지 법안 통과 자 는 가 아니 고 판단하는 등 적 정당성을 치열한 법적 분쟁이 있 니다. 현재에 찰 수사 위를 한 다 한 분에서 은 쟁이 이 어지고 있 니다.

○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법률의 지를 할 필요가 있고, 다 각에서 수사가 지 잡한 사건에서 실한 수사가 이 어지지 는다는 우 가 있는 , 이 한 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하 이 이 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정보원법 정안에는 국정원이 안보 와 관 한 정보를 수 할 필요한 현장 사· 서열 ·시 ·자 제 요 · 요청 등의 사권을 지하는 내 을 고 있고, 이는 국정원의 사권을 지 으로써 인권 해 과 적법 준수를 에 적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국회에서 이 의 인 법률안에 관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안이 로, 대법관 보자로서 적인 견해를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 법관은 국민 의 사자로서 책임감과 사 감을 가지고 사건에 정성을 다해야 하지 , 법관의 사 감에 기대어 생 요하는 것은 하지 고 지 가능하지 을 것 니다. , 과 가정의 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아 분 화의 변화 등으로 법관 인의 책임감과 생 을 하는 식의 기 는 이 유지 수 다고 생각합니다.

○ 우 법 대 원 법 원화 시대에는 사회적 경 과 이 있는 법 인이 법관으로 임 에 법관의 균 이 10 세 가 아 것으로 고 있 니다. 법관이 심적인 에 역 을 할 수 있 재판 원 등 재판보 인력이 어야 합니다. 아가 법관 원이 사법보 관 위 대를 통해 현재 과 한 을 정할 필요가 있 니다.

○ 한 법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를 할 수 있 법관의 등 우를 하고, 국 단위 보 을 소하는 향으로 인사제 를 할 필요가 있 니다.

○ 열심 하고 하는 법관을 위한 해 수 법관 제 의 대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제3자의 변제공 은 제3자 변제에 관한 제로 민법 제469 제1 단서의 ‘ 의 성 이 당사자의 의사 시’의 해 과 관 하 변제가 허 는지, 공 관이 이 한 사유로 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에 관하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정 의 제3자 변제안을 기 로 한 공 청에 대해 공 관의 수리 분과 이에 대한 이의 청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 고, 위 기각결정에 대해 고 가 행 이 로, 결과를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 어 있는 사안에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관한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소심 인 사건의 재판 행에 관하 대법관 보자가 적인 의견을 리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론으로 리면, 법원에는 현재 공 법 위 등 다수의 정치인 관 재판이 행 고 있고, 고인에 사건의 리 기간이 통 의 사건보다 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것으로 고 있 니다. 국민의 관심이 는 정치적 사건에서 재판이 지 는 것은 찰과 고인 에서 수 이지의 와 다수의 인을 청하고 이 한 를 실 사하는 은 시간이 소요 는 것이 주 원인 니다. 재판 에서 적 한 소 지 를 통해 실한 심리와 한 재판이 는 가치를 화시 기 위해 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 적으로 재판을 지 시 는 당사자의 소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리현 을 분 하고, 공판· 행· 고기 의 지정, 사 의 등에 있어 리

안을 하 이를 재판실 수 등에서 공유하는 등으로 한 행과 정한 형의 실현을 위하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과 국회법은 대통 , 국 리, 국 위원, 행정각 의 장 등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소 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 제1 이 정한 ‘ 심판 청 가 이유 있는 경우’를 ‘ 청 인 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로 해 하고 있 니다.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가 국회의 소 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아니한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 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론으로 리면, 의자 요 는 수사기관이, 장실 심사를 위한 기 지정 의자 소 은 법원이 권한을 가지며 행사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적인 사건에 관하 정 정치인이 행한 에 대해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 의 정치적 론 등이 판결에 대한 과 한 이 법관 인에 대한 공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 니다. 판결 내 에 대한 한 이 자 의 정치적 견해와 다 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를 하 법관 인에 대해 인 공 을 하는 것은 재판에 당한 향을 치고 사법 를 정쟁의 수단으로 하 는 행위로 수 있 니다.

○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는 본 적 사 을 실하게 이행할 수 있 하기 위한 것 니다. 사법 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을 해하는 위와 은 행위로 인하 사법 에 대한 국민의 가 당하게 우 가 있으 로, 사법 는 이에 대하 단호한 장을 할 필요가 있 니다. 한 법관이 로지 법과 심에 실 재판할 수 있 당한 과 공 으로 법관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 인 헌법과 법률, 리고 적· 관적 심에 정치적·사회적 력으로 독립하 공 사(公平無私)하게 재판을 하 야 하며, 재판에 대한 어 의 해 야기하지 법정에서 아니 재판 (, SNS, ·

임 등)과 관 관에 있어서 어 한 이 적·정치적 향성을 가 다는 해가 생하지 세심한 주의를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법관이 사법 내· 로 당한 향을 지 재판 심의 사법행정제 , 법관 인사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경 수사권 정이 기소권한 분에 관하 는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법이 고, 현재 수청, 공소청 과 관 하 정치권, 국민, 정 등에서 치열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론으로 리면, 형사사법 와 관 국가기관은 실 실의 견을 통한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실현, 고인 등의 인권 보호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재하는 것이 로, 헌법이 정한 위 내에서 면 이 한 본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제 와 기관 간 분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 니다. 법원이 찰이 기관은 로 이 한 본적 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실 이행하고 있는지 아보고 을 위한 력을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찰의 권한 에 의하 국민의 기본권이 당하게 해

형사사법의 공정, 아가 정치적 립성이 해 서는 안 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다 , 자 에 대한 수사권과 형 권의 정한 실현에 대한 국민 의 간 한 요 를 고 할 , 찰의 권한 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가 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게 약화 지 을 수 있 과정에서 분한 의견 수 을 통해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의 적 성, 에 른 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의 사법 를 회 하기 위하 법관의 대 위에 대한 정한 책임 이 필요하다는 지에 공감합니다. 법관에게는 재판의 결과 아니 관의 공정성 지 보할 수 있는 은 리의식과 자기 제가 요 고, 법관의 분 보장은 어 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니다.

○ 다 , 헌법 제106 제1 에 면 '법관은 는 고 이 의 형의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 지 아니하고,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지 아니 한다' 고 정하 법관의 분보장에 른 분의 한 를 하고 있기 합니다. 이는 과 유 헌법에서 로 법관을 면 할 수 있 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해하 역사적 경 에 대한 성적 고 에서 것이자, 법률 정 으로 면·해임 등의 분을 할 수 한 를 정하 재판의 독립이 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서 법률로써 해임제를 하는 안에 관하 는, 헌법 정과의 화 , 재판 독립 해 는 을 종합적으로 고 하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법관의 임기제와 임제를 정하고 있는 헌법의 지는, 법관의 분을 보장하면서 법관이 수행하는 의 대성을 고 하 정 적인 를 수행하지 하는 법관을 임에서 제 할 수 있 으로써 국민의 재판 을 권리를 실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임심사가 해 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임심사를 통해 해당 법관이 수행하 재판 의 과 이 현 고 법관으로서의 위를 심각하게 한 경우를 정하게 가 내 , 임심사를 통과한 법관은 보수 우를 적으로 향시으로써 인 를 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니다. 다 , 임심사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해 사법행정권이 는 이 공정한 심사가 이 어 야 할 것으로 생각 니다.

○ 현재 판사에 대한 임 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 니다. 11 의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 임심사에 관 하는 위원은 9 이고, 위 9 2/3에 해당하는 6 이 위원이며, 위원 에서 2 은 법 인 위원으로서, 법 역과 국민을 대 하는 다수의 위원 의 다 한 시각을 하면 하게 임심사를 하기 위해 력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으로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으면서 법관이 국민의

이에 는 성과 능력을 수 있는 향으로 적정한 임심사가 이 수 있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에 대한 가를 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면이 있니다. 법관의 관 화 등 정제 의 제점으로 지적 는 분을 하는 력을 할 필요가 있고, 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으면서 법관이 국민의 이에 는 성과 능력을 수 있는 향으로 법관 가 제 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법관에 대한 정 결과의 적 공 는 필요한 해와 을 야기할 우 가 있고, 변호사단 의 법관 가결과는 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관에 대한 정 등에 하는 경우 자 사법 와 재판의 독립이 약화 우 가 있으 로, 하게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내 의 재판 성원과 법원 의 재판관 자 등으로 다 한 가 자 를 수 할 수 있 하는 안 등 안을 · 하 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가 제 를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대법원은 헌법이 하고 있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으로서 다수결의 원 이 지 하는 법의 역과 리, 법치주의에 각 하 국민의 권리 제와 법 서 유지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 야 합니다.

○ 서 다수의 소리에 기 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를 기 야 합니다. 법원이 법을 기 적·형식적으로 적 하는 것이 아니 균형감각과 력,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으로 사회의 다 한 소리에 기 이며 실 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사회 내 갈등과 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으로 보장 는 사회가 현 것이 생각합니다.

○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 적인 소 결정, 국 변호사 임 등 법률 가의 력을 을 수 있 하고, 인공지능을 이 한 서 등을 하 사회적 약자의 사법에 대한 성을 이기 위한 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27 간 법관으로 재 하면서 당한 수 은 재판의 과정과 결과, , 에 사법 의 을 위해 력한 을

통해, 보자에게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지 는 대법관의 사 을 감당할 역 이 있다고 은 분 이 생각해주 다고 고 있 니다. 보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 는 판결을 통해 이 의 권 을 보호하고자 하 니다.

○ 보자가 소수자 약자를 위하 한 판결은 다 과 니다.

- 민간기 로자 의 아 수 권의 보장을 위해 성 로자가 아 지 등 분의 소를 하는 사건(서 고등법원 2018. 5. 23. 고 2017 80815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소하고 아 지 등 분을 소 하는 판결을 한 있 니다. 다 , 대법원 원합의 판결 (2018 47264)에서 원고 청 기각 지로 기 어 판결 결과에 아 이 있 니다.

- 최 임 에 치지 하는 을 고 하 로자가 사고 로 사 하 유 이 제기한 소 에서, 1심과 리 적어 최 임 이 의 실수 이 보장 어야 한다고 판단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0. 12. 2. 고 2019 2053731 판결).

- 기니 공화국적의 원고의 민 청에 대해 기니의 정치적 , 원고의 정치적 , 원고가 제 한 의 성 등 을 종합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을 우 가 있다 고 한 분한 있는 공 가 있다고 인정하 민

인정 분 소하 니다(서 고등법원 2018. 3. 28. 고 2017 76960 판결).

- 4 대 제로 한 실 시 관리 로자의 당 를 통 로의 장으로 수 있는지가 제 사건에서, 당 시간 게시간은 4시간, 공 5시간으로 보고 지 시간의 로에 대해 장 로수당을 지 해야 하며 재 정하 가로 지 해야 한다고 판단하 , 와 유사한 본 의 를 수행하는 야간 로자의 이 을 보호하 니다(서 고등법원 2021. 12. 10. 고 2019 2046214 판결)

- 이 에 보자는 ① 서 고등법원 2021. 4. 2. 고 2020 2036077 판결에서 치 제9호 위 으로 수감어 재판을 은 원고와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고, ② 서 고등법원 2021. 9. 17. 고 2021 2014364 판결에서 1998. 10. 17. 대 대생이 고 로 하행 에서 23 에 치 고, 현장에서 사 한 로 견 사건에서 통사고를 당하게 경위에 대한 경찰의 실수사를 인정하 유 의 국가 청 를 인 하 사건 등이 있 니다.

○ 에 보자는 법 회에서 2016~2017 간사, 2022~2023 회장을 아 애정을 고 하 니다. 간사로 하면서, 법원 내 성 등 해 사 를 정리하는 실 를

하 을 최하고 법원 내 성 등 해 사 의 리에 관한 지 수립 안을 제시하 니다. 회장으로 한 시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각 역에서의 성 등 해 소수자 소 제를 하고 재판 에서의 소수자 보호 안을 대성한 '재판자 ' 간을 하 으며, 심 지 을 통해 법원은 물론 , 법 와 공유하 법 의 성 등 화 을 위해 력하 니다.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종합법률정보’는 주로 적 가치를 고 하 정 판결을 제공하는 으로, 민사소 법, 형사소 법에 른 공 대 인 판결서의 공 를 위한 ‘판결서 인 열 ’ 시 과는 성 이 다른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재 민사소 법 형사소 법에 지 민사, 행정, 허 사건의 정 는 정 판결서를, 형사 사건의 정 판결서를 인 으로 열 사할 수 있 니다. 열 대 판결서의 의 100%를 인 으로 열 할 수 있고, 임의어로 하 원하는 판결을 아 열 할 수 있 니다.

○ 다 , 현재 열 대 에 어 있지 은 형사 정 판결서를 공 하는 것은 정의 원 이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 해 제, 소 관 인의 인정보 보호 제 등에 대한 우 가 있다고 고 있 니다. 판결서 공 위를 대할 것인지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정보 해 우 , 정의 원 등에 대한 우 를 고 하 분한 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 재판 제 는 국민이 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하는 제 로 2008 시행 니다. 국민 재판은 국민의 의견을 재판 결과에 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화하고 심원이 재판 에 하 경 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를 이는 에 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재판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국민 재판제 의 시기의 기대와 리 실시 건수가 지 아 국민이 감하는 과가 어 다는 의견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현행과 은 고인 청주의 아 에서는 국민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고인의 의사에 서 국민재판을 실시할 수 에 는 한 가 있으 로, 정 에 대하는 필수적 국민 재판을 하고 고인에게는 제 청권을 하는 등으로 대 을 대하는 안을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국민 재판은 다수의 심원, 심원 보자 이 지정 기에 법정에 하 야 하고 적 장시간 재판이 행 로, 적인 형사재판보다 은 사법자원이 어야 하는 것이 현실 니다. 국민 재판의 대가 다른 형사재판에

자원의 감소로 이어 재판지 의 다른 원인이 지 , 법관 원 등을 통해 법원에 분한 인적·물적 건이 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국민 재판 청 를 실하고 적으로 안내하고, 적 한 보를 통해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기하는 등 다 한 력을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대법관을 한한 고위 공 임 법관, 사 등이 임 로 대형로 , 기 고 변호사로 하는 것은 관 우에 대한 국민 의 우 를 고 할 사법 에 대한 를 하시 수 있어 적 하지 고, 자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 이 재 기간 은 경 과 능력을 하 법률 화 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생 를 위해 정기간은 을 고 을 해야 하는 현실적 건과 의 자유 등 아 고 할 필요가 있 니다.

○ 의 자유의 해 에서 어 면서 사법에 대한 제고할 수 있 , 법 인 이 공 을 에 성 리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 할 수 있는 제 적 건이 기를 니다.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에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한 지 권을 가 니다. 대법원장의 이 한 권한은 사법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 보를 위한 것 아니 , 각 기관의 성에 있어서 법 , 행정 , 사법 가 관 하게 으로써 해당 기관의 성과 수행의 정치적 립성을 보하기 위한 지로 이해하고 있 니다.

○ 대통 대법원장의 권한을 소하고, 국회 보 위원회 을 통한 기관 성으로 변경하 면 헌법 는 법률 정이 필요합니다. 이 한 정이 사법 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 헌법재판소 등 해당 국가기관의 정치적 립성에 어 한 향을 치게 지 면 하게 할 필요가 있고, 분한 의견 수 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으로 하 국회, 대통 과 각 3인 을 지 하 헌법재판소를 성하 하고 있고, 이는 관리 위원회의 경우 가지 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 에 법·행정·사법권에 각기 균등하게 기관의 성 권한을 으로써 기관 성과 수행의 정치적 립성과 공정성을 보 하기 위한 국민적 결단이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대법원장이 지 하는 3인은 대 로 어 에 치우치지 는 균형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를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 과정의 성이 보장 어야 하고, 다 한 사회의 가치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니다. 이에 대법원은 관 내 를 제정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 위원회'를 하고 있고, 대법원장 내 을 하 의 성과 관성을 보한 가 지 권을 행사해 다고 고 있 니다.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 력에 관한 장 이가 있고, 법률 법 의 위헌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해 의 치가 생 지가 있다는 점 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제에 관한 이 있다고 고 있 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하고 · · 분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정하는 한 , 제6장에서 위헌법률심사권 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사 을 정 으로써, 적 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의 지에 기관 자 에게 주어 책 를 적 분 하 본 의 역할을 수행 으로써,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력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관의 관 에 대해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기관의 력을 지켜보시고, 헌법 정권자인 국민 서 지혜 게 판단해주시기를 합니다.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 법에 대법원에 치 형위원회의 적은 '형을 정할 국민의 건 한 식을 하고 국민이 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적인 형을 실현'하는 있 니다. 형기준은 합리적이고 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식과 법감정에 합하 야 한다는 에 공감합니다.

○ 현재 형기준이 국민의 이에 하게 합한다고 리기는 어 겠지 , 형위원회 관 기관에 대한 의견 회, 공청회, 이지 의견 수, 심 지 등의 법으로 각 각 의 다한 의견을 수 하 적에 합하는 형기준을 정하고자 지 적으로 력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현재 법원 실에서 적 는 균적인 형을 하는 치지 고, 국민의 다 한 의견을 적 하 적인 요소 지 고 한 형 위를 정하고 형인자를 정 하는 력을 지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형위원회가 향 한 분을 하고 국민의 다 한 소리에 기 형기준을 시켜 가기를 기대하면서, 역시 지 적으로 관심을 고 력하겠 니다.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정과 관 하 다 한 의가 있는 것으로 고 있으 , 고 의 정치적 제에 관하 대법관 보자가 적 의견을 는 것이 심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원론적으로, 현행 헌법 정 의 시대적 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기본권 보장이 는 헌법의 사 을 실 다할 수 있는 향으로 국민적 합의 하에 헌이 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향과 제에서, 사법 의 실 적 독립이 보장 수 있 법원의 , 인사, 등 사법행정과 소 를 한 재판 제 에 관한 사법 의 법률안 제 권, 사법 의 독자적인 성권을 인정하는 안을 적 적으로 고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 원에 대한 이 을 지하고 있는 헌법 제29 제2 , 항 사형제 지가 의 경우에 대 하 사형제의 재를 제로 하는 사재판 관 헌법 제110 를 수정하는 안 의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대사회는 대 분의 정보가 자정보의 형 로 생성·보관 고, 장 의 본 적 성 해당 에 에 관 정보와 지 은 정보 이 재 어 있을 수 에 으 로, 는 자정보 수·수 으로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대하게 해 우 가 당 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수사의 행성과 성을 고 할 심 의 대 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 는 것이 당하리 생각 니다.

○ 이를 형사소 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 것으로 고 있 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이 의 , 국회에서 면 한 와 분한 의견 수 을 지혜로 결론을 기를 기대합니다.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다 한 경과 경 을 가 법 인을 법관으로 하자는 지에서 법 원화를 하 시행하고 있 니다. 법 원화의 행으로 법관임 인 식으로 행하며, 인사 등의 를 통해 성과 공정성을 보 에 하고, 실제 법관 임 자 당수가 대형로 인 것으로 인해 관 우의 생을 우 하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판단하는 것이 로 법관 임 경력과 정 당사자 는 소 대리인과의 관 가 재판 결과 재판 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니다 , 의 으로 사법 의 를 하게 로 국민 서 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이 가지 제 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를 보하기 위한 기 의 제 가 원 하게 고 있는지 인하고 점 할 필요가 있 니다. 공자의 이해 지법, 형사소 법, 법관 등의 사 분 사건 당에 관한 , 각 법원의 고관 재 당 기준 등에서 정한 고·회 , 제 , 재 당 등의 제 가 실 성 있게 고 있는지 점 하고, 한 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화하 로 대안을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정성 등의 제로 관 우를 인할 수 다면, 법관임 의 경력요건을 3 정 로 하향시 고 로 경력이 는 지원자를 임 으로써 관 우의 가능성을 원 적으로 단하는 안 고 할 수 있다고 생각 니다.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어의 향 등으로 인하 점 수위가 아지는 청소 에 대한 을 법소 하향을 통해 대 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을 위한 하 의 안으로 경청할 한 의견이 고 생각합니다.

○ 다 , 형사책임 을 률적으로 하향하면 책임능력을 다고 보기 어 소 지 형사 의 대 이 우 가 있 니다. 한 우리 사회는 소 이 건 한 인 을 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을 할 책 가 있다는 점과, 보보다는 화를 하는 소 형사사법의 적 분 고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 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니다.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국법관대 회의는 각 법원에서 한 법관 대 이 회의 행을 통해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관한 사 에 대해 건의하는 기 로 고 있 니다.

○ 법원 법 제41 의2 제3 7호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 법관 1 '을 대법관 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 하 정하고 있 니다. 이에 안 대법원장은 국 각 법원을 대 하는 판사 로 성 어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한 사에 대해 의견을 하는 회의 인 국법관대 회의에서 하는 법관을 위원으로 지 해 것으로 고 있 니다.

○ 국법관대 회의가 각 법원에서 대 로 성 회의 인 , 국법관대 회의가 대법관 보 위원회 위원을 하는 것은 대법관 보 과정의 민주성과 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각 법원의 대 가 아 법관이 보 위원으로 자원하고 다른 자원자가 어 보 위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대 성에 대해 제제기가 있 니다. 이에 국법관대 회의의 임원 이 당 보 위원으로 하 각 법원 대 수의 보자를 세 국법관대 회의의 를 통해 보 위원을 정하는 등 대 성을 화하는 의 이 필요하다고 생각 니다.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 보 위원회에 하는 법관 재판 등 본인에게 주어
시 를소 할수 어 로의 력 으로는 분
한 정보를 수 하고 에기 한 관적인 의견을 하기 어
한 가 있으 로, 이를 보 하기 위해 국법관대 회의가 자
적으로 지원단을 성한 지는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국법관대 회의가 자 적으로 '지원단'을 성한 것이
지의 에 위 고 위원의 에 력을 행사할
우 가 있다는 지적 역시 경청하 지원단의 과 기능이 변
지 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법관대 회의
의 성 과 기능을 고 을 , 대법관 보자가 대 회의 내
에 관하 이 의 적 의견을 는 것이 적 치
을 해하 주시기 니다.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사건에서 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 시 기 위해 기 청, 국민 재판 청, 관할이 청 등을 적으로 하는 제점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고인은 정당한 적을 위해 소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재판의 지 등 당한 적으로 이를 해서는 안 것 니다.

○ 소 관 인이 적 권리 행사를 으로 지 을 하는 것이 하다면, 법원으로서는 소 지 권을 적 행사하 이를 지할 책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기 청이 소 의 지 을 적으로 이 한 경우에는 청을 은 법원 는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는 , 이를 적 하 야 할 것 니다.

○ 다 , 소 지 권의 행사로 현행법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어 경우 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기간 장 는 , 기 청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 제한 등의 을 재판 지 지책으로서 고 해 수 있겠으 , 이 경우 고인의 적 권리 어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으 로, 제한의 필요성과 생 가능한 등에 관하 종합적이고 분한 와 위한 의견수 이 행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고인에게 행해 보 결정이 보 의 건은 당 재판 에서 제 사정을 고 하 결정한 사 니다. 대법관 보자로서 적 사건의 재판 결과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치 아니을 해하 주시기 니다.

61. 계속 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법원 민원 리 내 」는 법원행정 각 법원에 수 민원의 리 를 정하고 있 니다.

○ 위 내 에 면, 민원사 이 행 인 재판의 변론, , 형에 관한 것인 에는 사법 에 해당하 판단· 리할 수 다는 지로 안내하 리결과의 통지에 갈 할 수 있 하고(제28 제4), 민원서 는 당재판 에 인 하 재판에 고할 수 있 합니다(제28 제5).

○ 국회의원의 요청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은 에 리 것으로 보 니다.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정 정치인과 관 에 대해 적으로 변하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인사청 회 에 인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리기 어 을 해해 주시기 니다.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단 은 적으로 성원인 로자의 건과 기 로자의 대우, 당해 단 적 사관 의 에 관한 사 으로서 사자가 분할 수 있는 사 을 대 으로 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재판기 지정은 재판 의 행을 위한 고유의 권한이 로, 의 대 이 수 다고 생각합니다.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는 헌법 제46 제2 국회법 제114 의2가 정한 자유위임의 원 과 정당기 이 하는 제로, 원 의 화로 해 이 필요한 제 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정 정당이 국회의원의 정치 의 당 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한 인 이 사적 인 은 니다.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2024 3 대법원장 서 국 법원 행사의 으로
대 소재 법원 을 하 을 허법원 가자 1인으로
에 하 니다.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사적 을 가 적은 니다.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대 대법원장 은 법원 법이 정한 정 으로 인해 헌법 대법원장 임기인 6 을 우지 하고 임하게 로, 적 은 재임 기간에 사법 에 적한 제 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고 있 니다.

○ 역사적으로 이 대법원장을 하 정 으로 헌법 정해 임기를 우지 한 대법원장 이 분 것으로 고 있고, 대법원장 서는 임기의 고 과 관 이 사법의 당면 과제를 하고 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를 회 하겠다는 향을 정하 면에서 제 적 을 하고 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장 한 분의 역할 으로 사법 에 주어 사 을 다할 을 것 니다. 사법 성원 각자의 자리에서 최 을 다하 국민의 로 한 사법 를 기 위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에 대하 2019. 4. 11. ‘자기 은 아의 생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 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는다면 이 면적, 률적으로 임 의 유지 을 제하고 있으 로 과 지원 에 위 하 임 한 성의 자기결정권을 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합치 결정을 하 고, 결정을 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2020. 12. 31. 지 법이 이 어지지 아 현재 은 력을 실한 로, 법이 공 인 니다. 안 한 임 지, 치 기 재생 건 서 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대 법이 하 리 이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 단 에 관하 성의 자기결정권이 어야 할 것 니다. 다 , 를 임 기간 안 면적으로 허 하는 것은 임 의 생 , 의 안 에 대한 위 , 적 의 우 등 을 수 할 수 있으 로, 아의 단 , 독자적 생 능력 등을 고 하 를 어 정 로 허 할지 를 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가 가능할 경우 임 한 성이 안 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경우 한 자 를 할 수 있 지원하는 시 어야 할 것 니다.

○ 향 국회에서의 은 의견수 과 론을 통해 임 의 자기결 정권과 아의 생 보호가 호 화를 이 는 법이 이 어지기를 기대합니다.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최 론보 를 통해 36주 아를 하는 과정을 이로 형로 은 사 의 지 을 은 것으로 고 있고, 보건 지에서 인 로 수사를 의 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권 보자로서 향 사건화가 수 있는 적인 사안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적인 사실관 를 지 하는 사 에 대하 대법관 보자가 인적인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청원법 제4 제1호, 제5 제5호는 국민이 국회의 권한에 하는 사 에 대한 청원을 제 할 수 있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37 제1 제2호는 소 에 관한 사 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 으로 정하고 있 니다. 국회법 제123 제4 은 청원 수 제 대 을 정하고 있고(1. 재판에 간 하는 내 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독하는 내 의 청원, 3. 국가기 에 관한 내 의 청원), 청원법 제6 는 청원 리의 를 정하고 있 니다(1. 국가기 는 공 에 관한 사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 정· 재 등 다른 법 에 의한 사· 는 제 가 행 인 사 , 3. 허위의 사실로 인으로 하 형사 분 는 분을 게 하는 사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를 실 시 는 사 , 5. 사인간의 권리관 는 인의 사생 에 관한 사 , 6. 청원인의 성 , 주소 등이 분 하 청원내 이 한 사). 이와 관 해 해당 청원의 수대 에 관하 국회 내에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가 다른 헌법기관의 사 리에 관한 사 에 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수사가 행 이 사 임 가 국회에서 의 고 있는 사안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건 리의 법정기한을 공 법의 지 공 법 위 사건 리 지 으로 인하 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에 어 공 법위 사건이 하게 리 어야 한다는 점에 이 공감합니다.

○ 사건의 법정 리기한이 준수 지 는 이유에는 가지가 있겠으 , ① 기 이 대하고 쟁점이 잡한 사건이 어 고 있는 점, ② 형사합의 의 과 법관 으로 공 법위 사건을 적으로 리할 수 있는 건 성(당 지, 재판 등)이 어 점, ③ 잡한 사건에서 찰 단 의 기 열 · 사가 지 어 제1회 공판기 이 공 는 경우가 은 점, ④ 최 고인 변호인의 어권 보장에 대한 요청으로 인하 정 야간 정이 현실적으로 어 점 등을 이유로 수 있으리 생각 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 는 ① 법관 원 재판 등을 통하 공 법을 당하는 재판 에 대한 당 지 등의 치를 실시하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할 수 있는 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한 당 유· 사건에 관하 는 기 ·열 사가 하게 행 수 있 찰 원에서의 적

한 치가 필요하리 생각 니다. ③ 아가 법관 소 관 인이 「 사건의 리 등에 관한 」에 정한 대로 기 의 기 지정 지정, 의 청 실권 준수, 한 공판준 를 통한 적 심리 등을 실현하기 위하 최의 력을 다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헌법과 국회법은 대통 , 국 리, 국 위원, 행정각 의 장 등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소 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 제1 이 정한 ‘ 심판 청 가 이유 있는 경우’를 ‘ 청 인 의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로 해 하고 있 니다.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가 국회의 소 에 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아니한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 론을 통해 이른 '사이 '로 리는 유 이 수 을 위해 인 공간에서 분 하게 사생 을 로하고 허위의 를 게시 으로써 해자 에게 회 수 는 고통을 야기하는 사 가 적지 을 게 니다.

○ 사이 공간의 성 허위의 으로 인한 해가 가 역적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한 공간에서의 행에 대하 의 수위를 야 한다는 제의식에 이 공감합니다.

○ 다 , 형기준과 관 하 , 인 공간에서의 로 등으로 해자에게 심한 정 적 고통이 경우 가 인자인 ' 해자에게 심각한 해를 야기한 경우'에, 합성 사 이 SNS 대화내 을 하는 등 정한 수단을 사 한 경우 가 인자인 ' 행수법이 우 한 경우'에 각각 해당 수 있으 로, 가 형이 권고 수 있을 것으로 보 니다.

○ 향 형위원회에서 형기준의 한 분을 하고, 형기준을 시켜 가는 한 , 국민의 다 한 소리에 를 기 이고 의견을 게 수 하는 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78. 배우자 조형섭의 2025 APEC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기는?

○ 보자의 우자가 공 대 이사에 임한 이 ㈜제주 는 제주 소재 기 수 실적이 가장 고 안 지역사회 인재에 대한 장 수 와 원 을 실 하 제주 지역사회와 민 의 와 기대를 아 것으로 고 있 니다.

○ 에 우자는 제주 공회의소 회장을 고 있고 은 에서 제주 의 요청으로 2023. 3. 2024. 6. 지 '2025 APEC 제주유치 민위원회' 위원장에 재임한 것으로 고 있 니다.

79.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재임 시기는?

○ 보자는 2022 경 현재 지 한국 법 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 니다.

80. 한국젠더법학회 소속으로 한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활동 세 가지.

○ 한국 법 회는 회이며, 보자는 재판 와 지 (2022. 2.~ 2024. 7. 5.)로 인해 은 을 하지 니다 ,

- 2022. 2. 26. 대법원 법 회의 ‘ 판 ’ 간 기 으로 한국 법 회와 공 으로 ‘ 판 간기 세 , 판 아보기’ 세 를 최한 이 고,
- 2024. 5. 27. 인 세 로 최 법 회 대 회에서 제자로 하 ‘인공지능은 인가- 향 이 제 해결 안 ’를 제하 AI의 향 성과 이 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할 수 있 이 가장 니다.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사형제 지 관

-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관하 · 론이 대립하고 있고, 주장 대로 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 자 를 원 하는 것으로, 단 사형이 행 경우에는 판이 있 다고 해 이 수가 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 행한 역사적 경 있 니다.

- 면,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 가 있 을 제로 한 정(제110)이 있는 점으로 보아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하고 있다고 지가 있고, 인이 다수의 인 인 등 인 적 가 재하고, 한 로 안 하다고 수 는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 보형으로서의 성을 게 시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은 해자의 소 한 생 을 아간 행위에 대한 보로, 해자와 유 에게는 정의가 실현 다는 원(伸冤)을, 고인에게는 자 의 을 치른다는 (贖罪)의 의 를 을 수 있다 할 것 니다.

- 이 한 점에 어 인적으로는 사형제의 지에 대하 는

하게 하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니다. 다 세 적으로 사형이 지 는 세에 해자와 유 의 와 고통을 치유할 다른 안이 고, 종 의 고인에 대한 감형 가 가 기 역제 와 이 고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이 다면 사형제 의 지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 지 는 해 의 사 합리성, 당성 으로 결정할 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 의 법 감정과 의견 의 분한 수 을 결정하 야 할 것 니다. 국회에서 이 점 을 종합적으로 고 하 결정하 주실 것이 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 지 관

- 우리 의 안보 의 수성 역사적 경을 고 할 , 국가보안법 지 에 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는 국회에서 이 한 국민 의 다 한 의견을 분 하 법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지 지 은 이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 합헌결정을 은 현행 법률을 하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 우리 는 과 국가보안법이 아 과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성이 제 적이 있 ,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 하는 경우 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지 치게 해 지 형법정주의의 원 에 적 제한 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권력분립의 원 대법관 보자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의결의 당 에 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 한 사건 으로 인하 이 한 역할을 실 수행하기 어 니다.

○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 니다. 대법관 원 역시 고제 안 하 로 할 수 있 니다. 대법관의 수는 통 적 법해 을 위하 대법원 재판의 심인 원합의 를 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 야 합니다.

○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법률을 해 , 적 에 있어 관적이고 통 적인 기준을 정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치주의에 기 한 사회통합의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 수 는 사건 수 등을 고 할 대법원이 위와 은 기능을 실 수행하기 어 으로 고제 를 하는 것이 이 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적인 법이 고 생각합니다.

○ 다른 과 가지로 고심에서 심리할 실 적인 사건을 하는 고심사제를 하는 안에 대해 적 적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 , 이 권리가 시 고심 지 세 재판을 을 권리를 의 한다고는 생각 지 니다. 소 을 감당하기 어 소 에 소요 는 기간을 기다리기 어 사회적 약자로서는 대 의 고로 인해 의사에 하 고심이 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고 필요가 있 니다.

○ 다 , 한 고제 은 심 과 국민의 권리 제에 적인 향을 치 로,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분한 시간을 사회적, 국민적 합의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국민권 위원회 결정의 당 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 해 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대법관 보자로서 각 법원의 판결에 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다는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 징계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징계 절차의 위법성만 강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대거 해촉하고 교체한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소위 "패소할 결심"이 논란을 낳기도 했음. 현직 대통령과 검사 재직시절부터 특수관계를 형성

해 온 한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음.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직 대통령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고위공직 당사자(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인지?

○ 대법관 보자로서 각 법원의 판결에 대하 적인 의견을 , 정치적 견해가 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적 적인 견해를 하는 것이 심 을 해하 주시기 니다.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대법관 보자로서 법 고 기의 당 재판의 대 이 적인 사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9-1. 오석준 대법관과 라과디아 판사의 평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정 판결에 대하 의견을 기는 어 다는 점을 해하 주시기 니다. 다 ,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법의 리 안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 정 하 사법이 국민으로 을 수 있
력하겠 니다.

9-2. 평생을 법관에 봉직해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평소 후보자가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의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경력 또는 이력이 있는지?

○ 소위 ‘ 리주’의 실 사 고 할 수 있는지 심 우 , 2011 경 대, 가정해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을 수 는 청소 을 보고 성장을 지원하는 단 인 ‘사단법인 청소 세 ’에 기 하게 것을 기로, 기 와 사는 사회적 대와 공 의식을 화하고 자 과 인의 을 요 게 다고 생각하며, 력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 기 등을 하고 있 니다.

- 위 ‘사단법인 청소 세 ’과 2011 경 인 을 고 원하기 시 하 현재 지 약 13 안 정기적으로 원 을 보내고 있 니다. 한, 제 소 의 1/10 이 을 로 분하 사 의 장기기 본 , 사회 지법인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이 , 대 성인권 ,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 , 고 대 의 기 등 다 한 단 에 기 를 이어가고 있 니다.

- 2023 에는 보자가 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어 준 공과대 과 고 대 에 각 1 원의 기 을 기 하 고, ‘사단법인 청소 세 ’에 청소 자립기 으로 1 원을 기 하 니다. 최 (2024 4~5)에는 보

자와 우자가 사 의 열 에 3 원(= 보자 1 원 + 우자 2 원)을 기 하 아 소사이어 회원이 니다.

- 어 보자는 사회에 대한 사 고 생각하고 '재단법인 사 의 장기기 본 '를 통해 수 에 장기기 서약을 하 고, 대법원 내 기독법 인 임 회원으로 하면서 장애인 시 '주보 의 '에 장애인 사에 하는 등, 사의 의 를 기고 는 기 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을 고자 력하 니다.

○ 보자의 우자 이 한 보자의 에 공감하면서, 회사의 주식가치 으로 인한 이 을 회사를 성장시 임 원을 위해 기 하는 의 에서 로자 의 지 향 을 위하 ㈜ 에 1 8,000 원, ㈜제주 에 22 5,000 원 당의 보유 주식을 사내 지기 으로 하 니다.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 하 주시기 니다.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재판의 대 이 적인 사안과 쟁점에 대하 대법관 보자로서 견해를 리는 것이 적 치 을 해해 주시기 니다.

○ 사법행정은 본 의 적에 합하게 이 어 야 하고,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하 한 관을 보이는 각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재판지원을 본 로 해야 할 사법행정이 본분을 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을 한 사건이 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보

자로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 하 국민 정을
린 점에 대해서 하게 생각합니다.

○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 에서 아니
사법 내 에서 는 과 향을 단하는 것이 요하다는
점을 주 고, 법관 에게 향을 수 있는 사법행
정 역이 재판사 과 하게 분리 어야 할 필요가 있 을 사법
성원 에게 각인시켜 준 사 고 생각합니다.

○ 이 로 사법행정 역에서 재판사 에 대하 관 하
하는 이 생하지 각 주의를 기 이고 있으며, 사법
내 화에서 은 변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다 ,
이 한 화의 변화에 기 것이 아니 , 사법행정과 재판
사 의 분리 재판지원의 제고를 위한 제 의 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자가 대법관이 다면 법원 내에서 다시
는 이 생하지 겠 니다.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12-1.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법원 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법원에 에 대한 감찰을 할 수 니다. 다 법원에 대한 회 사 권한이 있고, 이에 필요한 경우 관 자 는 감사사 과 관 이 있는 자의 · 변을 요 할 수는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이 감사는 법원 임원의 사실 임 와 관 하 , 임 을 하지 은 로 를 지 으면서 합의 에 종사하 는지 사실관 를 인하고, 지 의 적정성을 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현재 감사가 행 인 사안에 관하 대법관 보자로서 적 인 의견을 리는 것은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2-2. 감사원의 사실상의 직무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평정비율 개정,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보자가 적 사실관 를 지 하 , 법원 공 원 의 건을 시 는 의 에서 한 치가 있 다고는 생각하지 니다. 다 , 공 원에게 인사와 제 , 과 수당 등 보수가 가지는 요성과 민감성을 고 하 , 제 변경이 있을 는 분한 의견 수 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적인 사안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론으로 리면, 정의 원 에 하고 수사기관의 사실 공 가 는 력에 의자, 해자 주변인 에게 수 있는 해를 고 하면, 수사기관의 의

사실 공 는 원 적으로 하게 제한 어야 합니다. 다 , 의 자 등의 내지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균형을 이 는 위 내에서 이 어지는 제한적인 사실의 공 는 가능할 것 니다.

○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사실 공 행위는 원 적으로 국민 의 정당한 관심의 대 이 는 사 에 관하 관적이고 분한 자 를 으로 한 사실 에 한정 어야 하고, 이를 에 있어서 정당한 적 하에 수사 결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자에 의하 공식의 에 행하 야 하며, 정의 원 에 하 유 를 단하게 할 우 가 있는 현이 는 단을 으 우 가 있는 현을 하는 등 내 이 현 법에 대하 유 하 야 하며, 아가 의사실과 가분의 관 는 등의 한 사정이 는 한 수사기관이 ' 를 성하지 는 사실관 ' 지 의사실에 시켜 수사 결과로서 하는 것은 원 적으로 허 수 다(대법원 2022. 1. 14. 고 2019다282197 판결)"고 판시하 니다. 보자는 이 한 판시 내 이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자는 서 고등법원 2021. 7. 23. 고 2020 2011542판결에서 수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이 지는 ' 인 세우기'의 한 를 하고, 의자 인권보호, 의사실 공 지, 정의 원 을 실 하 니다.

14.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 자 리법은 공 자의 정한 재 식을 지하고 공 행의 공정성을 보하는 등 공 과 사 의 이해 을 지하 국민에 대한 사자로서 가 야 할 공 자의 리를 립하는 것을 적으로 합니다. 이 한 법 지를 성하 면, 공 자와 공 보자가 재 등 고의 를 실 이행한다는 점은 이론이 을 것 니다.

○ 공 자 리법은 등 사 을 심사하고 보 을 하며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경고 시정 치 의결 요 를 할 수 있는 권한, 심사과정에서 사 지 은 요한 가 로 견 경우의 재심사 권한을 공 자 리위원회에 하고 관 를 정하고 있으 로(법 제8 의2, 제9 의2), 적 사안에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의결로 적 한 치를 할 수 있을 것 니다.

○ 다 , 독립 공 자 리위원회의 판단에 향을 수 있어 대 법관 보자가 이 의 적인 을 하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5.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어의 향 등으로 인하 점 수위가 아지는 청소
에 대한 을 법소 하향을 통해 대 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을 위한 하 의 안으로 경청할 한 의견
이 고 생각합니다.

○ 다 , 형사책임 을 률적으로 하향하면 책임능력을 다
고 보기 어 소 지 형사 의 대 이 우 가 있 니다.
한 우리 사회는 소 이 건 한 인 을 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을 할 책 가 있다는 점과, 보보다는 화를
하는 소 형사사법의 적 분 고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보다 소 화 현 을 국과 국의 경
우에 2000 대 어 화 정책에서 다시 지와 지원을 심
으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 이는 화 정책
이 소 를 할 수 다는 결과에 한 것으로 보
니다. 유 아 권리위원회는 2019 경 형사책임 을 13세로
는 우리 정 정안에 대해 우 를 하기 하 니다.

○ 서 법소 하향은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 법소 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재 을
지하기 위해, 정한 보호 분의 결정과 실한 행, 지 적인
과 화 등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 야 할 것으로 보 니다.

16.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 시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 와 요성을 생각하면, 이 어야 할 고위공 자가 자 시 지원을 위한 ‘ 리기’ 등의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지 고, 대필 당 해서는 안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적인 사실관 를 지 하는 사 에 대해 대법관 보자가 이 이 의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아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7.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론에 보 것 이 의 사실관 를 지 하고, 정치적으로 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대법관 보자가 적인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8. 현재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합 관 정법 정법률안, 이른 ‘ 법’의 주 내 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 청 시 행위자의 책사유와 기 에 적으로 책임 위를 정하는 내 사관 에서 사 자의 위를 대하 로 약의 형식과 관 이 로자의 로 건에 대해 실 적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시 는 내 으로 고 있 니다.

○ 21대 국회에서 대통 의 재의요 권 행사와 재 결로 인하 기 으 , 22대 국회에 한 내 의 법률안이 의 어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다시 법이 고 있는 법률안에 대하 적인 의견을 는 것은 대법관 보자로서 심 면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19.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 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현재 행 인 의 에 대해 은 우 를 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기를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각 법원에 인 사건과 관 대법원 결정의 당 , 각 법원에 인 사건에 대해 적인 의견을 기 어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0.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통위 이 보자 관]

○ 대법관 보자로서 재판을 통해 정 적인 사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MBC, YTN 심위 치 관]

○ 대법관 보자로서 심위 제재의 당 등 적인 사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1.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사 보 식은 사법의 법 지를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이 로, 대법관 보자로서 이에 대하 의견을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2.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최 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이 정 어 대통 실 이 원로를 한 11 로가 주요 로로 가 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이 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시위를 지하 통 서 유지 건을 제한할 수 있게 다는 론 기사를 한 있 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 관 의 경 지점으로 100 이내의 장소에서는 회 는 시위를 률적으로 지하는 「 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정이 위헌이 고 판단하 니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고 2018헌 48 등 결정). 대통 실 인 이 는 이유 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률의 지에 지 는다고 생각하고, 향 경찰서장이 법률 정의 지에 게 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 회·시위를 제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 보이 , 세사기 사건 등 사회적 해 이 사기 가 생하면서, 사기 의 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형기준 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 제기 는 것으로 고 있 니다. 사기 형기준은 2011 정 어 시행 이 권고 형 위가 수정 지 으 로, 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른 이 국민인식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 형위원회 심 지 을 최하고 형실 에 대한 사와 분 을 행하는 등 사기 형기준의 형 위 형인자를 수정하기 위한 의와 에 수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향 형위원회에서 형에 대한 국민의 건 한 법감정을 하 공정하고 관적인 형기준을 정하 주기를 기대합니다.

24.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24-1.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검찰 내부지침인 예규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보자로서 현재 행 인 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는 것이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24-2. 현재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 헌법은 · , 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하고,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을 분 하고 있 니다. 현재 위헌 , , 분심사권의 에 대해서는 다 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 , 사법 는 이 권한을 하고 적 하게 행사하기 위해 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위헌 , , 분심사권의 이 한 점이 있 다면, 이는 위헌적 법률에 대한 통제를 주 판단대 으로 는 헌법재판소와 리, 법원은 수 은 적· 적 사건의 분쟁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주안점을 어야 하는 건의 이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의 권한이 게 행사 수 있 사법 가 헌법과 법률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 수 있는 경이 성 어야 합니다. 법관 합헌적 법 해 의 한 를 넘는 위헌적 · ·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위헌·위법을 해야 하고, 아가 사법 내 에서 지 적인 와 론을 통해 이 권한을 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을 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3. 검찰의 과도한 영장 행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제안 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대사회는 대 분의 정보가 자정보의 형 로 생성·보관 고, 장 의 본 적 성 해당 에 에 관 정보와 지 은 정보 이 재 어 있을 수 에 으 로, 는 자정보 수·수 으로 사생 의 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대하게 해 우 가 당 니다.

○ 이 한 위한 수·수 과 기본권 해에 대한 제의식을 기로, 법관에게 대면심 과 은 가적인 심리수단을 으로써 실한 심리를 통하 수·수 의 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 하는 지의 제 이 것으로 고 있고, 지에 공감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수사의 행성과 성을 고 할 심 의 대 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 는 것이 당하리 생각 니다.

○ 이를 형사소 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 는 다 한 의견이 있 것으로 고 있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관 법률안이 의 , 국회에서 면 한 와 분한 의견 수 을 지혜로 결론을 기를 기대합니다.

25.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찰의 준사법기관성이 로는 사법기관의, 로는 행정기관의 위을 겸유하면서 권한이 지 치게 장 고 어 다는 판이 있고, 에 22대 국회에서 찰의 권한을 분 하고 제한하는 형 의 정안 이 의 것으로 고 있 니다.

○ 형사사법 와 관 국가기관은 실 실의 견을 통한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실현, 고인 등의 인권 보호 등 헌법이 보장

한 국민의 기본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재하는 것이 로, 헌법이 정한 위 내에서 면 이 한 본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제 와 기관 간 분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 니다. 법원이 찰이 기관은 로 이 한 본 적 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실 이행하고 있는지 아 보고 을 위한 력을 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찰이 권한을 하 서는 안 고, 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해 형사사법의 공정, 정치적 립성이 해 서는 안 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 찰의 권한 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수사 소 역 이 약화 으로써 의 수사 형 권의 실현에 지장이 생기지 분한 의견 수 을 통해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의 적 성, 에 른 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경 수사권 정이 기소권한 분에 관하 는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법이 고, 현재 수청, 공소청 과 관 하 정치권, 국민, 정 등에서 치열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다 , 서 린 것과 이 찰의 권한 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게 약화 지 을 수 있 과정에서 분한 의견 수 을 통해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 니다.

○ 이는 국민, 사회단 , 찰, 법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 과 론 등을 통하 각 각 의 분한 의견수 등을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27.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위 4개 주요사항별 각각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이관에 그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 ·경 수사권 정이 기소권한 분에 관하 는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의를 법이 고, 현재 수청, 공소청 과 관 하 정치권, 국민, 정 등에서 치열한 의가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행정 내 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 게 분 는 것이 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다 , 서
린 것과 이 찰의 권한 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가
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게 약화 지 을 수 있
과정에서 분한 의견 수 을 통해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 니다.

○ 이는 국민, 사회단 , 찰, 법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
과 론 등을 통하 각 각 의 분한 의견수 등을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
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28.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 현재 의 인 수사 법의 내 을 면 분 하지 하 대 법관 보자의 장에서 적인 변을 리기 어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의사 으로 인 는 내 에 어 , 정 법안은 수사 의 성과 관성을 보하고 찰의 수사권 을 적 통제하고자 하는 지로 보 니다. 이 한 법 지에 공감하는

면이 있으 , 정 법은 현재 형사사법제 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사 을 다수 하고 있으 로, 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가 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게 약화 지 을 수 있 과정에서 분한 의견 수 을 통해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니다.

○ 이 한 국민, 사회단 , 찰, 법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과 론 등을 통하 각 각 의 분한 의견수 등을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 국회에서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제 고 생각합니다.

29.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1)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편을 분리 독립

2)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3)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 필요적 심문 및 필요적 증거조사 도입, 2. 3개월 시한 폐지, 3. 심리 공개를 규정하여 재정신청이 활성화, 신속화할 수 있도록 함.

- 준항고 제도의 활성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적 심문 제도 및 심문 종료 후 2주 내 결정을 하도록 함.

○ 현재 의 인 수사 법 관 형사소 법 정안의 내 에 대하 정 지 하 변을 리기 어 점이 있 을 해하 주시기 니다. 찰의 수사권한을 적 통제하고 사의 기소 의주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화하 수사 의 성과 관성을 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 정 지에는 공감할 면이 다고 생각 니다.

30.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월 12일,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정보공개를 판결하였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취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견해는?

- 비공개된 대검찰청 예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책은?

○ 「 사의 수사 시 위에 관한 정」은 사의 수사 시 위를 판단하는 세 기준 관 리 등 세 사 을 정하기 위해 것으로, 제1심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의 성을 보할 필요성 등을 로 위 정에 대한 정보공 분이 위법하 공 어야 한다는 지로 판결한 것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보자로서 아 정 지 은 적인 사건에 대하 인적인 견해를 는 것은 적 하지 을 해하 주시기 니다.

○ 다 , 정 의 가 하게 공 으로써 국민 이 법 행에 대한 합리적 견가능성을 야 한다는 점에 대하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 니다.

31.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해 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한 정을 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이하게 한 경우에는 해 가 성립할 수 있으 , 로자 합이 3권을 행사할 제3자의 력을 게 을 수 있 할 필요가 있고, 아가 로자 합에 력하는 제3자 헌법 제21 에 른 현의 자유 헌법 제10 에 내재 적 행 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 로,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은 기본권이 위 지 해 의 성립 위를 하게 판단하 야 한다고 시한 있 니다(대법원 2021. 9. 16. 고 2015 12632 판결).

○ 보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 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를 적 에 있어서는 헌법 3권, 현의 자유, 적 행 의 자유 등의 면을 분 고 하 야 로자 제3자의 권리가 당하게 제한 지 세심한 주의를 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추가)

2024. 7.

대법관 후보자 이 숙 연

- 목　　차 -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 ····· 3

17.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

19. 법관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운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5

39. 영장전담법관을 하면서 가졌던 현행 영장제도의 문제점은? ····· 6

55. 코로나 이후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

17.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 헌법 제109 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의 안 보장 는 안 서를 해하 한 을 해할 가 있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심리’이지 판결은 아 니다. 판결을 적시에 공 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성을 제고하 사법의 책임성을 화할 수 있을 것 니다.

○ 위와 은 헌법 의 판결 공 의 원 은 판결 의 공 이는 정할 수 는 것이어서, 판결 은 공 할 경우 당사자의 이 시를 게 해할 수 있는 가사, 소 사건이 , 정의 원 에 위 수 있는 정 형사 판결이 아 한 원 적으로 고 지 이 리고 면적으로 공 어야 한다는 것이 보자의 의견 니다.

- 다 , 정 사건의 형사 판결 을 공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정 원 에 할 우 가 있고, 사건이 소 심에 어 있는 경우 판단에 향을 수 있어 독립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해할 가능성, 해자 등의 사생 해 는 우 등의 제점이 있으 로, 이 한 우 을 종합적으로 고 할 필요가

있 니다. 이에 2023 시행 고 있는 정 민사(행정, 허) 판결서 공 의 시행경과를 면 지켜본 이를 기 로 정 형사 판결서 공 를 하는 것이 당할 것으로 생각 니다.

19. 법관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운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 사회 적으로 과 가정의 립이 요하다는 인식이 에 아기 자 를 법관 아 을 하는 경우가 적지 니다. 로 인해 재판 를 당할 수 있는 이른가 법관의 수가 하고 에 대한 적 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법관은 법원 법에 임기가 보장 고 분이 보장어야 하는 성이 있기 에, 임시 형 의 대 인력으로 법관을 임 하기는 어 것이 고 생각합니다.

○ 한 국가적 위기인 제의 해결에 하는 것은 법원가 아니고, 한 인간을 하면서 는 소 한 경 은 법관이 세 과 지 은 한 인간으로서 세 을 보는 을 하게 것이 고 생각하기에, 아 을 하는 것 자 를 권장하지 는 식으로 제를 해결할 수는 니다.

○ 보자가 기로는 아 법관의 수는 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 있 니다. 법관 등을 제 하고 실제 재판를 당할 수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재판지 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 , 분한 수의 법관 원이 이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영장전담법관을 하면서 가졌던 현행 영장제도의 문제점은?

○ 보자는 2011 서 지 법원 장 판사를 으면서, 자정보에 대한 수수 장에 하는 지의 을 정 하고 내 을 수정·보 하는 등 자 에 대한 수수 의 위와 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을 실 보장하 수자의 사생 의 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력하 니다.

○ 법원은 자정보에 대한 장재판의 심리에 있어 의와 관 정보에 한정하 수·수 의 위를 적 제한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법한 건 수사로 한 의 능력을 적 적으로 정하고, 아가 법론으로 수 자정보의 관리 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안, 수 정보가 실 기 는지 인할 수 있는 제 안 역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장실 에서는 청 는 장의 수가 지 치게 은 경우 실한 심리를 하는 에 당한 어 을 니다. 법관 이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화 게 고 할 수 있 분한 심리 수단을 하는 제 적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우리 의 형사사법 에서 국민의 관심과 수사기관의 역 이 에 지 치게 어 있는 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는 고인이 본안재판 기

론에 의한 유 정을 고, 어권이 심각하게 제약 어 재판에 임하며, 을 위해 게 자 해 리는 등 실 실이 생하는 경우 있을 것 니다. 이 고인의 , 인 해자 위해 가능성을 최대한 제하면서 시에 고인의 어권 공정한 재판을 을 권리를 분 보장할 수 있 , 건 장제 의 역시 적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코로나 이후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보자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대 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21 시행 정 민사소 법 형사소 법에 , 민사소 에서는 변론준 기 , 심 기 , 변론기 을, 형사소 에서는 고인에 대한 이유 등의 고지 인 , 공판준 기 을 재판으로 행할 수 있게 것으로 고 있 니다.

○ 국 법원의 재판 건수 지 적으로 가하는 것으로 고 있고, 국민의 사법 성 제고를 위해 재판을 적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내 의 공감대 형성 고 있다고 보니다.

○ 다 , 재판의 경우 화면 사각지대에서 제3자가 당하게 관하 법 이 이 어 수 있는 제, 물리적 법정보다 사건관 인 의 정 변화, 어적 등을 관찰하기 어 다는 단점이 있고, 물리적 법정이 형성하는 권위와 이 주는 긍정적 과가 당하 로 재판을 정 대할 수 다는 의견 당한 력을 가 다고 생각합니다.

○ 향 재판의 실시 성과와 장단점에 대한 면 한 분 을 종합하 재판을 대해 가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재판 시 , 재판 당자 원, 의성 대, 보안 화 등 재판이 원 하게 이 어 수 있는 제 건

을 하기 위해서 지 적으로 력할 필요가 있겠 니다.